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102-10

www.mogef.go.kr

# 2013 청소년백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행복한 세상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바둑이 끝나면 그 한판을 다시 그대로 두며 의견을 나누는 '복기復碁'를 합니다. 장점은 살려서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단점은 보완하여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서」를 발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했던 부분을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복기'의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1965년 처음 발행된 「청소년백서」는 매년 한 해 동안 청소년정책의 주요성과와 핵심통계를 담아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3 청소년백서」 또한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각 분야별로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전망, 각종 통계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성별통계자료를 강화하고, 수요자 이용 편의를 위한 각 영역별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작업을 거쳤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백서가 올 한해 청소년 정책의 '복기'가 되어 정책의 완결성을 기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을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럴 수 있는 사회여건을 온전히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편견과 어려운 주변 환경 때문에 원치 않게 꿈을 접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출범과 함께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 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위기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상담·복지 서비스 확대, 청소년·가족 서비스 연계모형 개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정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 청소년의 사회참여, 청소년 근로보호 등 새롭게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미치려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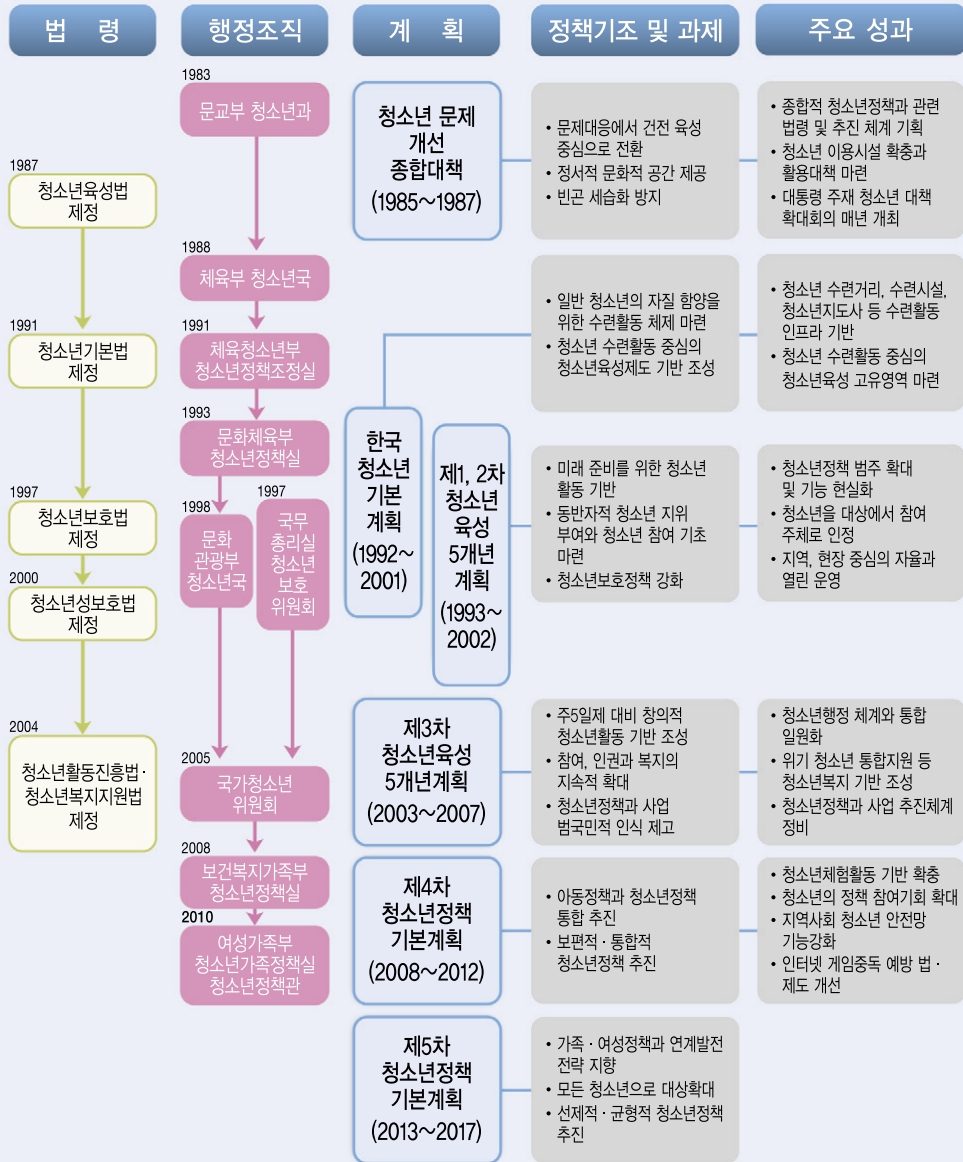
백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항상 응원합니다.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장관 조 윤 선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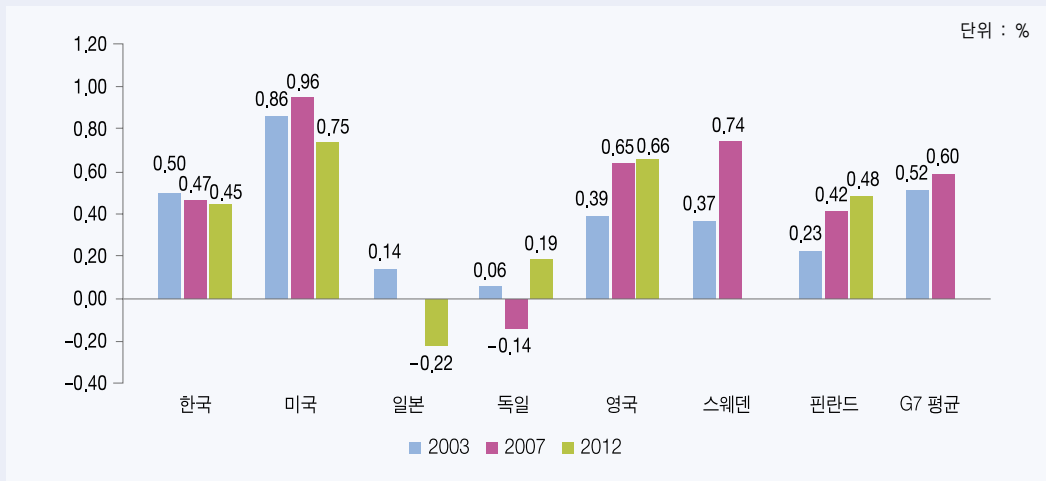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 ▶▶ 1. 국제비교 지표

### [인구 성장률]



주 : 인구성장률 = (당해년도 연앙인구 / 전년도 연앙인구 - 1) × 100.  
 자료 : OECD(2013), OECD StatExtracts.

### [전체 청소년 대비 아동·청소년(0 ~ 24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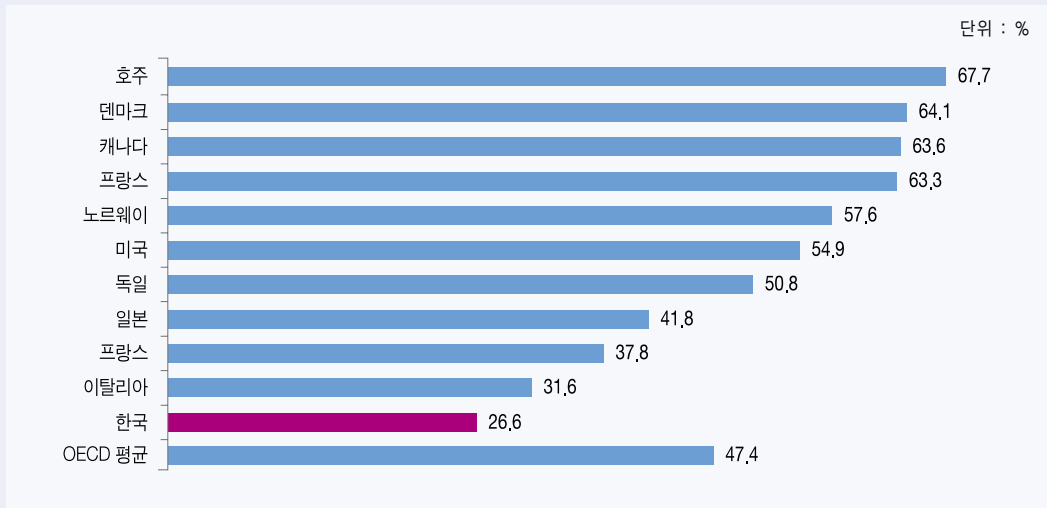
자료 : OECD(2013), OECD StatExtr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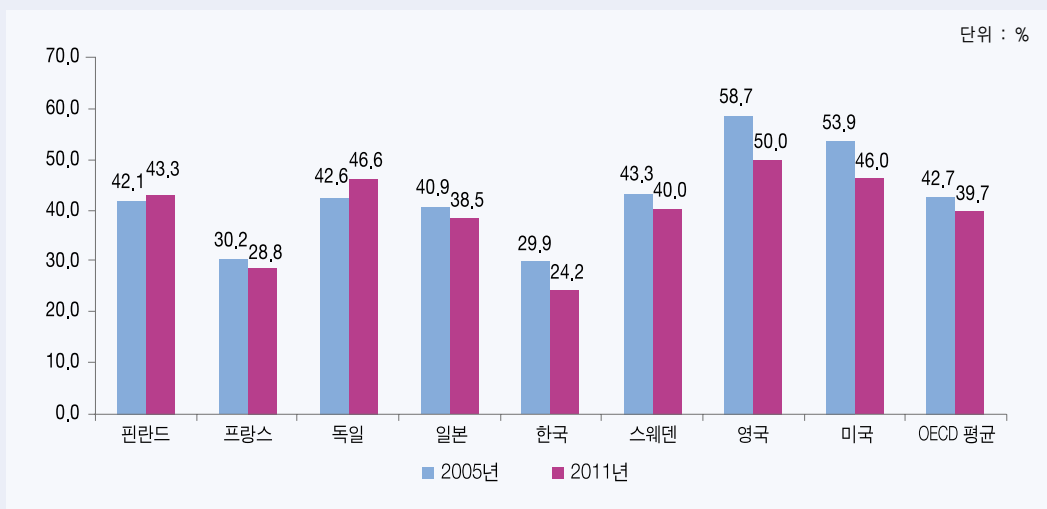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 [2012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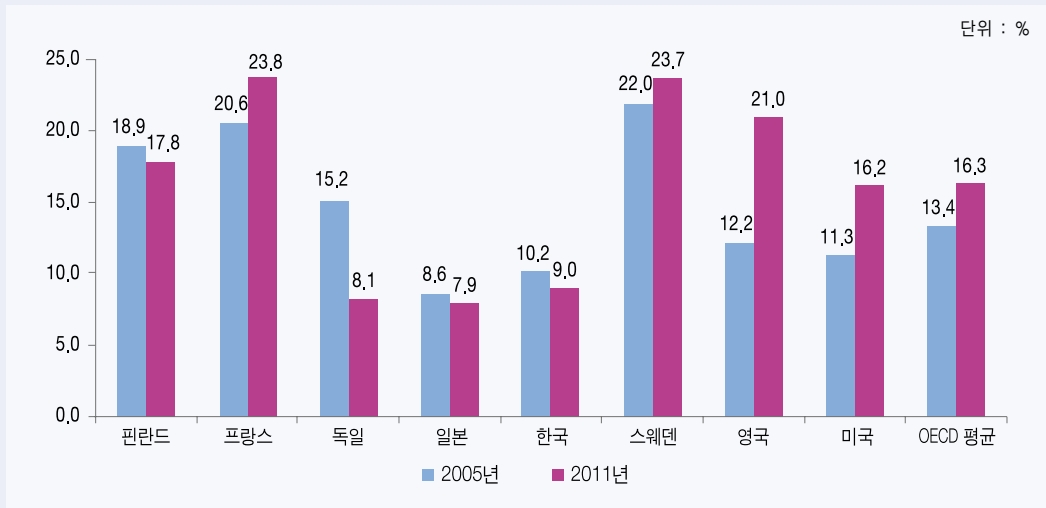
자료 : OECD(2013), Employment Outlook 2013.

### [청소년(15~24세) 고용률(200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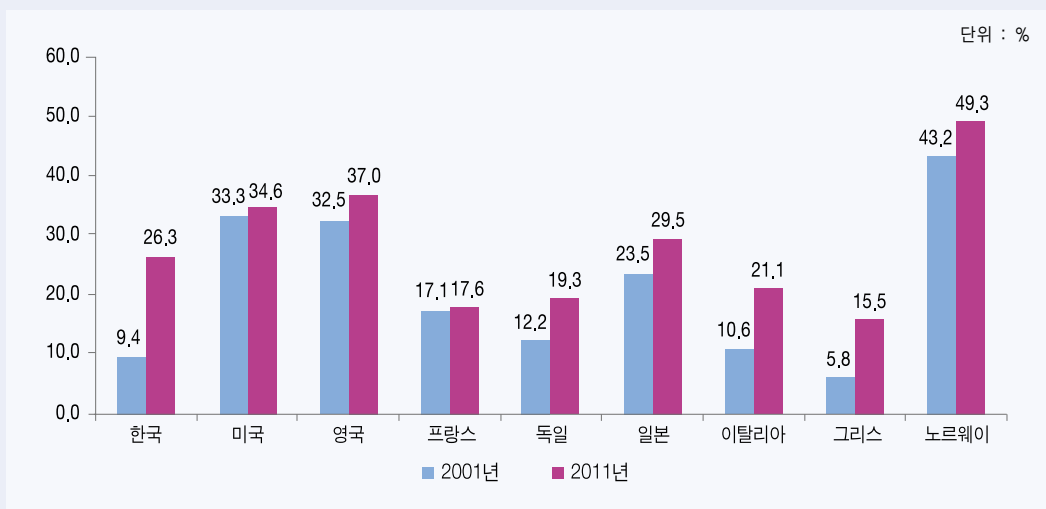
자료 : OECD(2013), Employment Outlook 2013.

### 【청소년(15~24세) 실업률(2005/2011)】



자료 : OECD(2013), Employment Outlook 2013.

###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01/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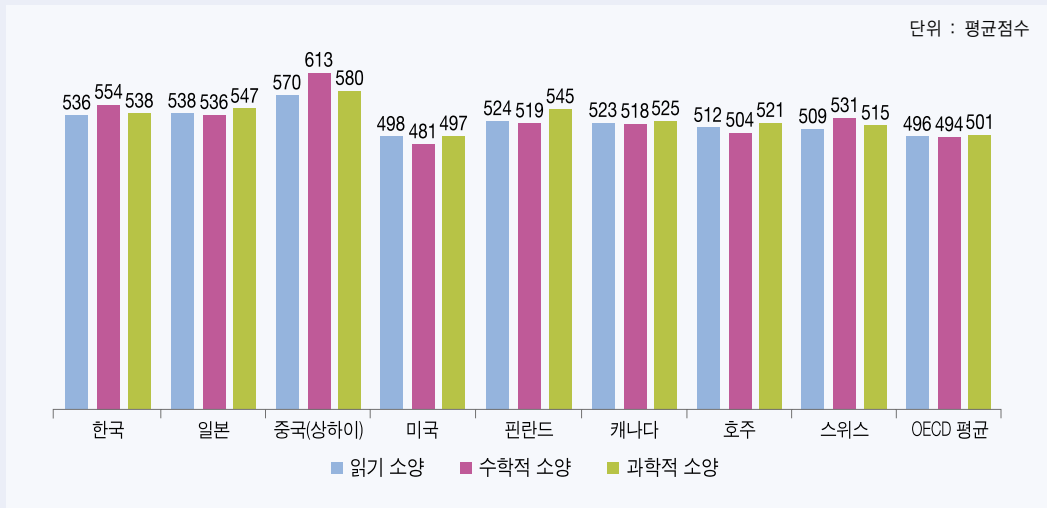


자료 : OECD(2012), Scoreboard for youth aged 1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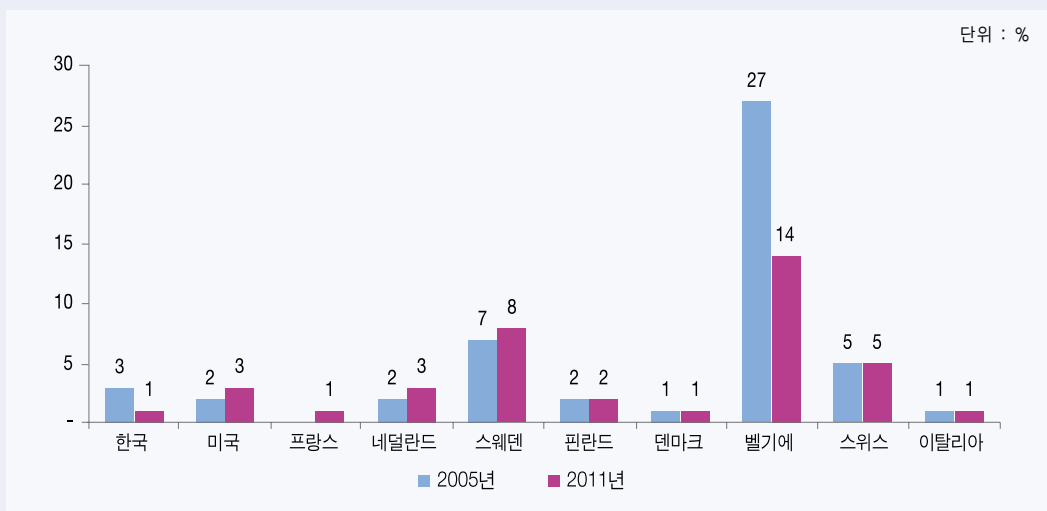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2012 PISA 결과 국제 비교]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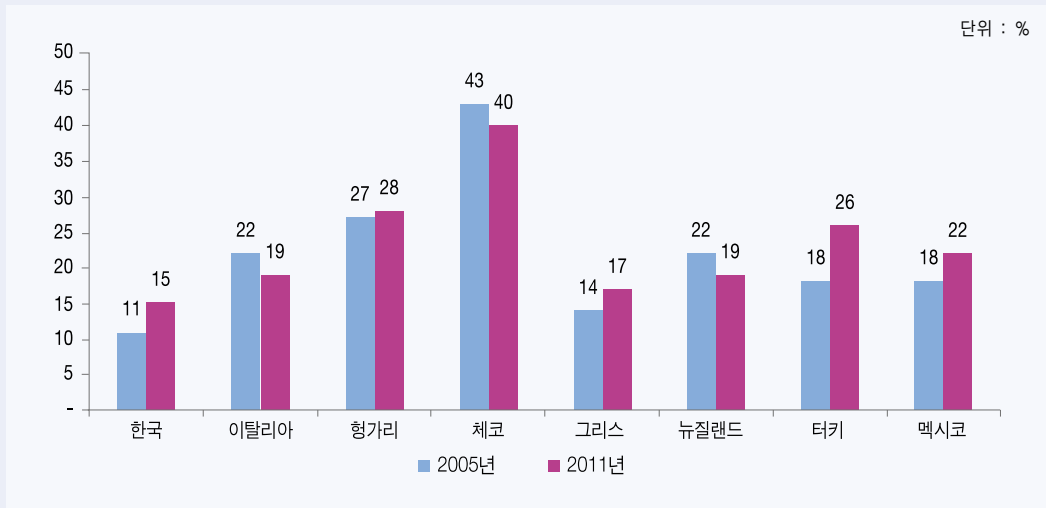
[중등교육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비율(2005/2011)]



자료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인구조사회국(PRB)(2013), The World's Youth 2013 DATA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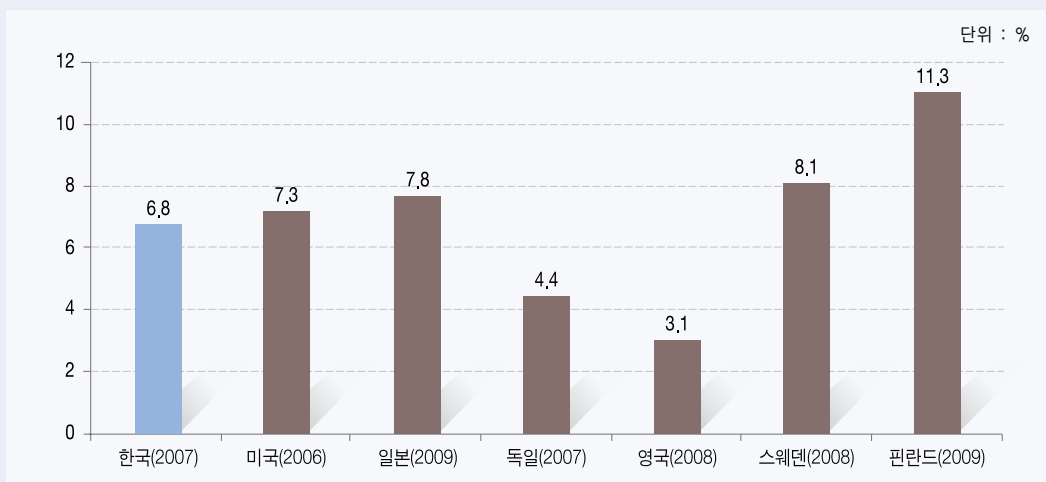


### 【청소년(13 ~ 15세) 흡연율】



자료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인구조사국(PRB)(2013), The World's Youth 2013 DATA SHEET.

### 【청소년(15 ~ 24세) 자살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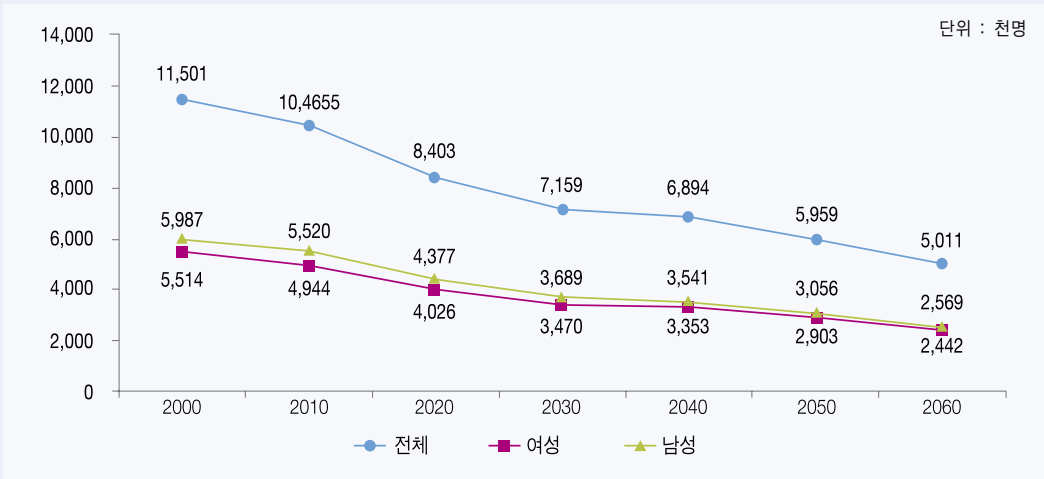
주 :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자료 : OECD(2012), Family Database.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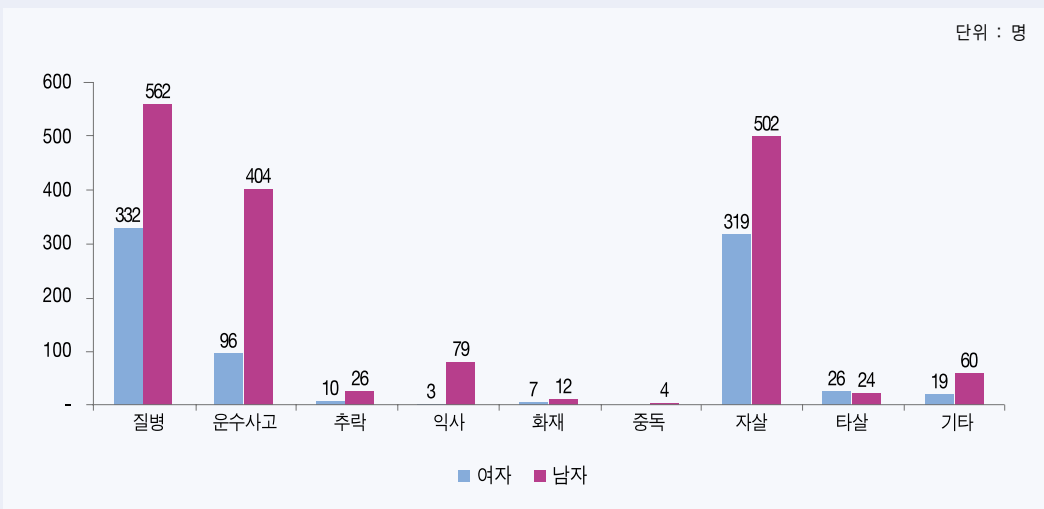
## ▶▶ 2. 국내 지표

### [청소년 인구 추이(200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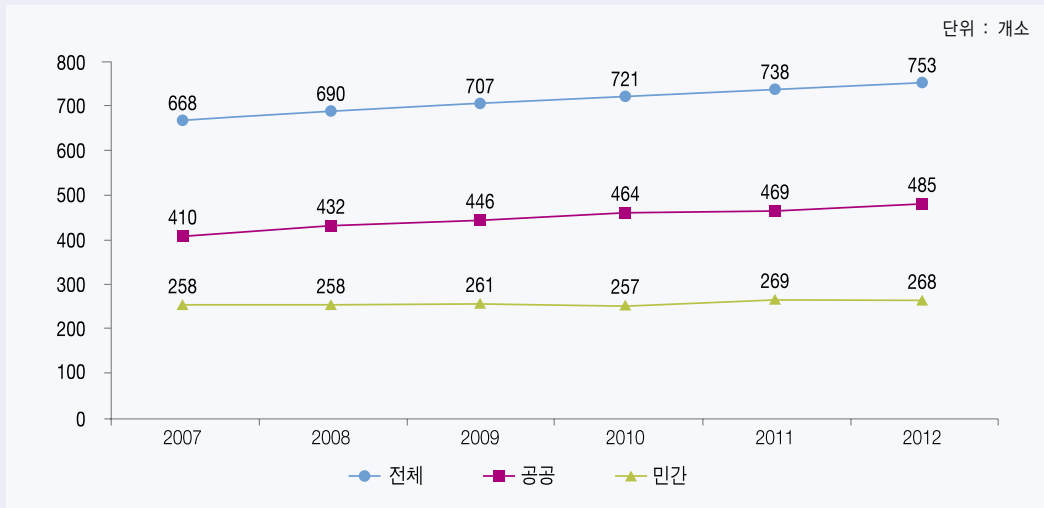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3), 장래인구추계.

### [청소년(10~24세) 사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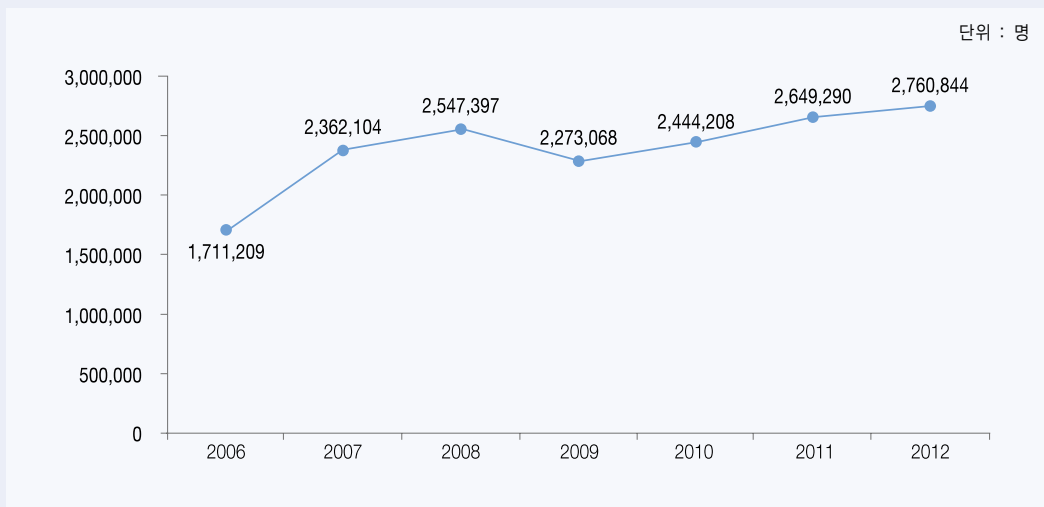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3), 2012년 사망원인통계.

###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포함)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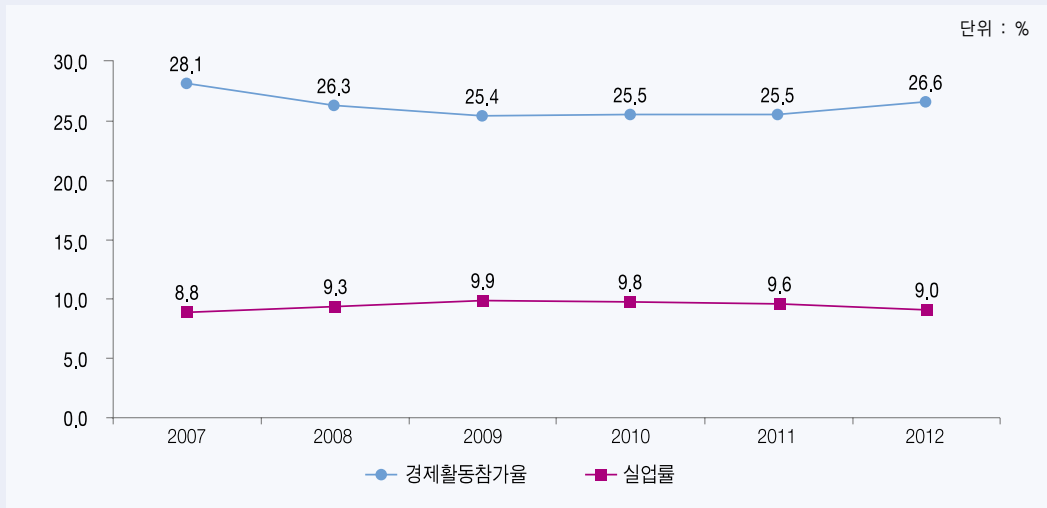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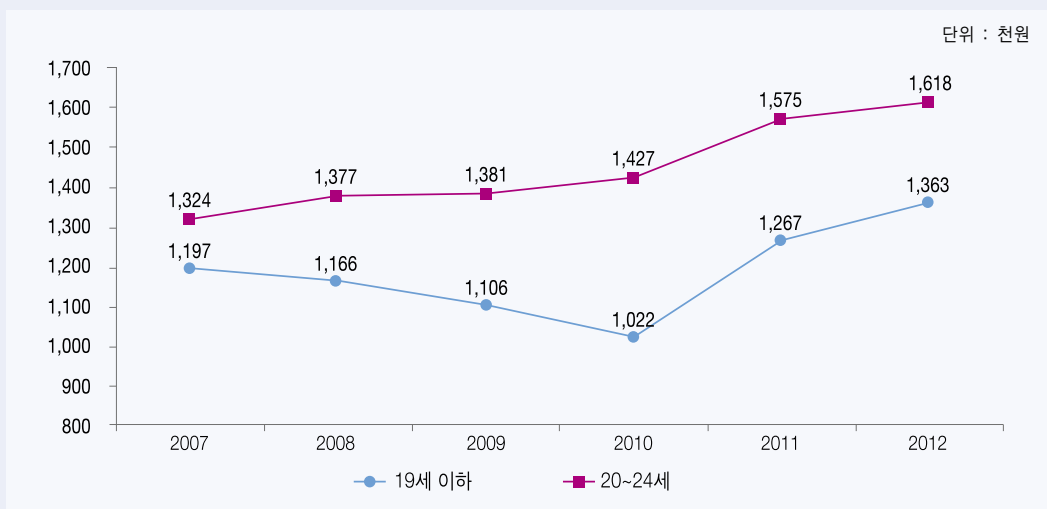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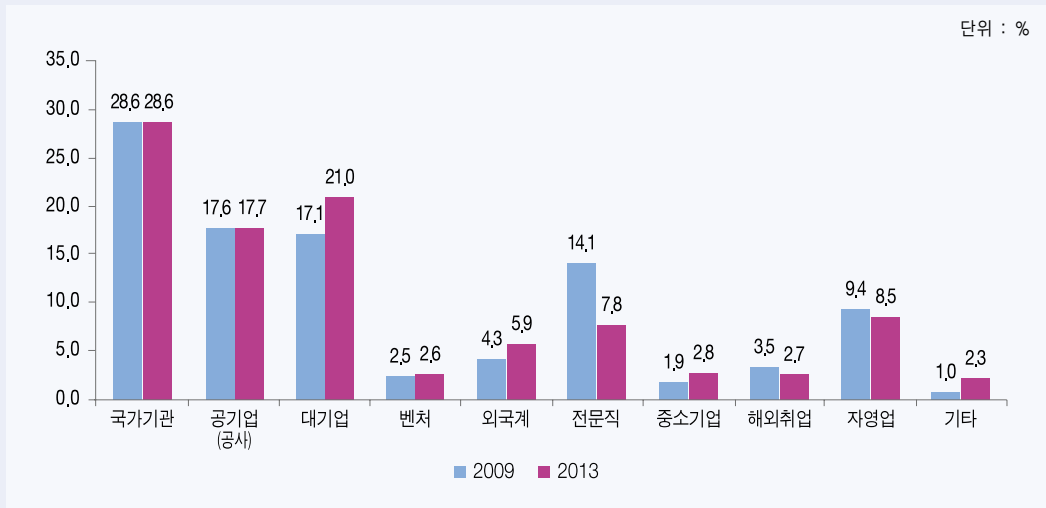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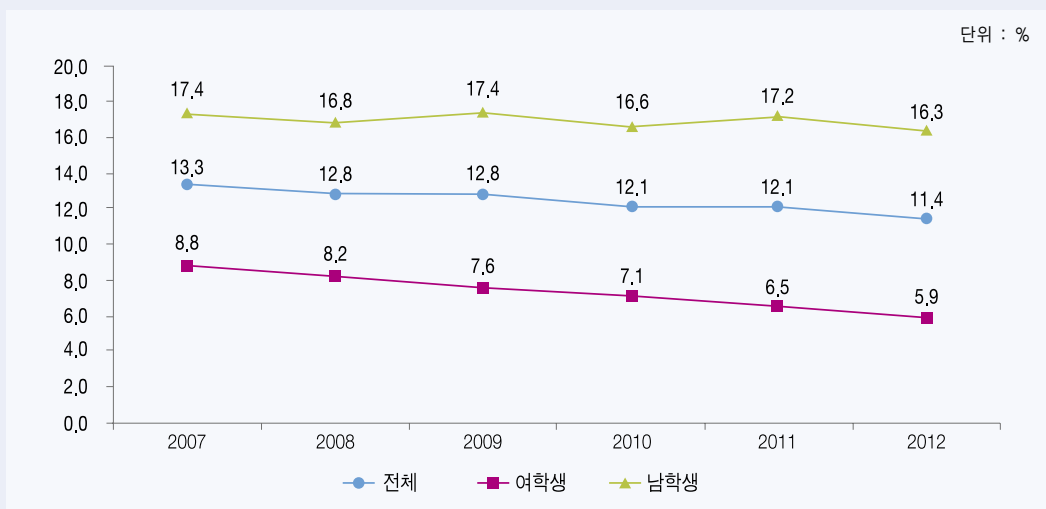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 [청소년(13~29세)이 선호하는 직장]



자료 : 통계청(2013), 사회조사.

### [현재 흡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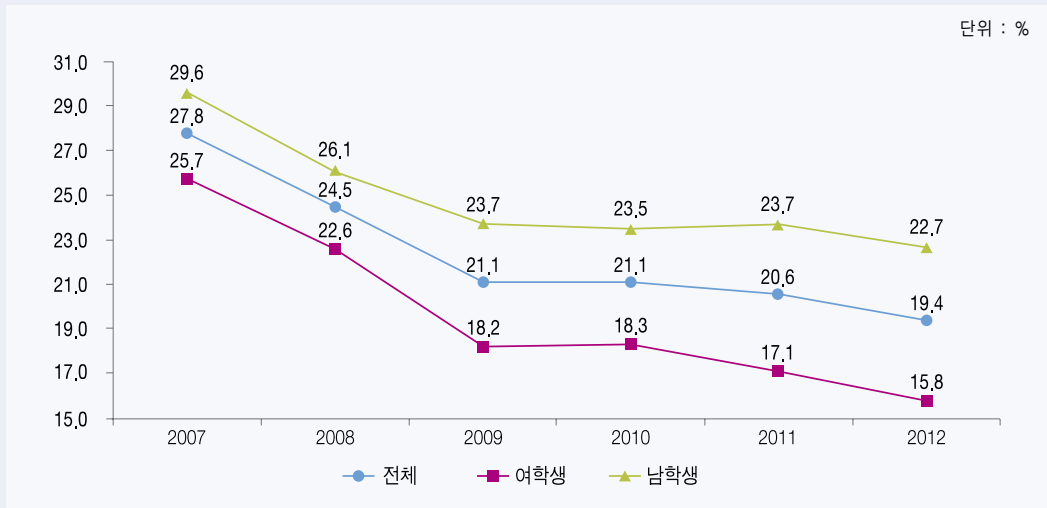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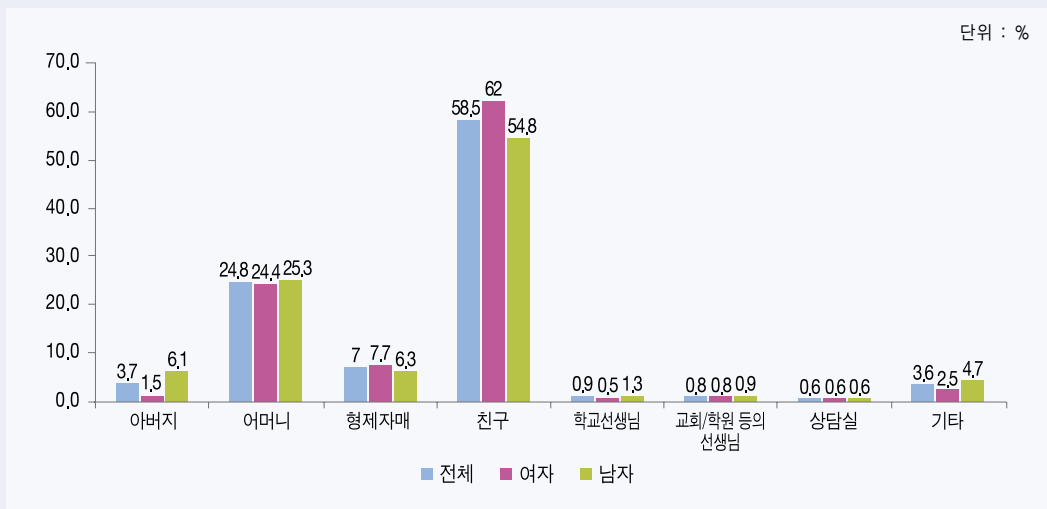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 【현재 음주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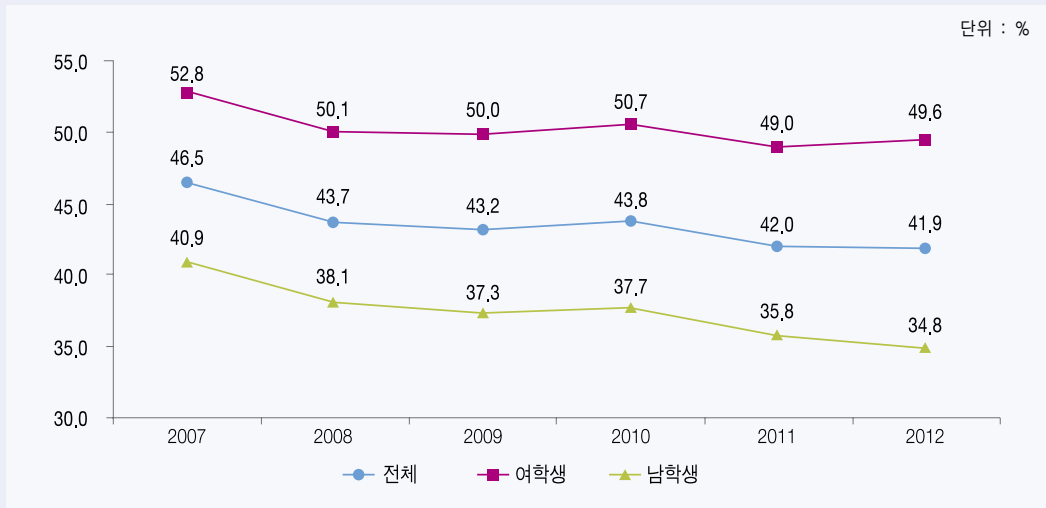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상담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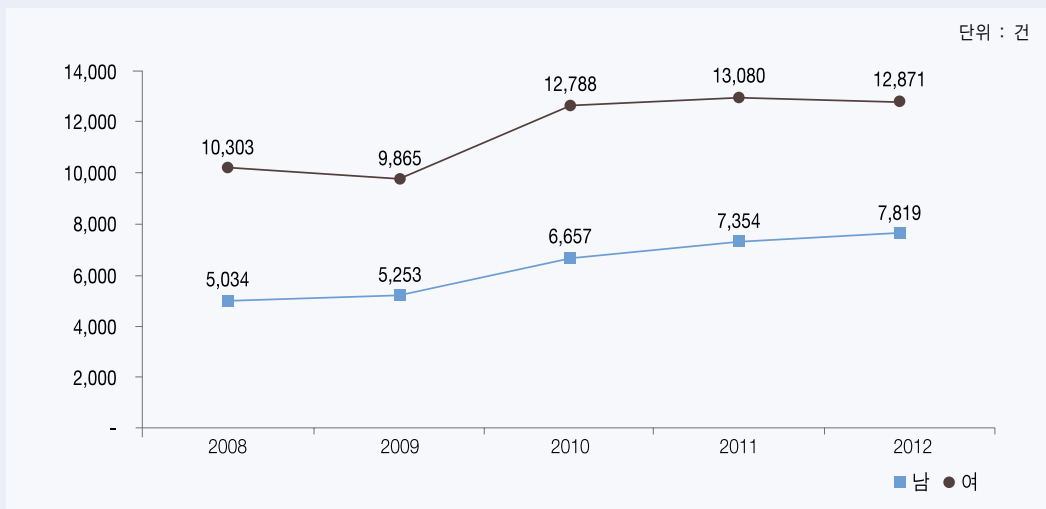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유해환경경적종합실태조사.

###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 [청소년(14~19세) 가출 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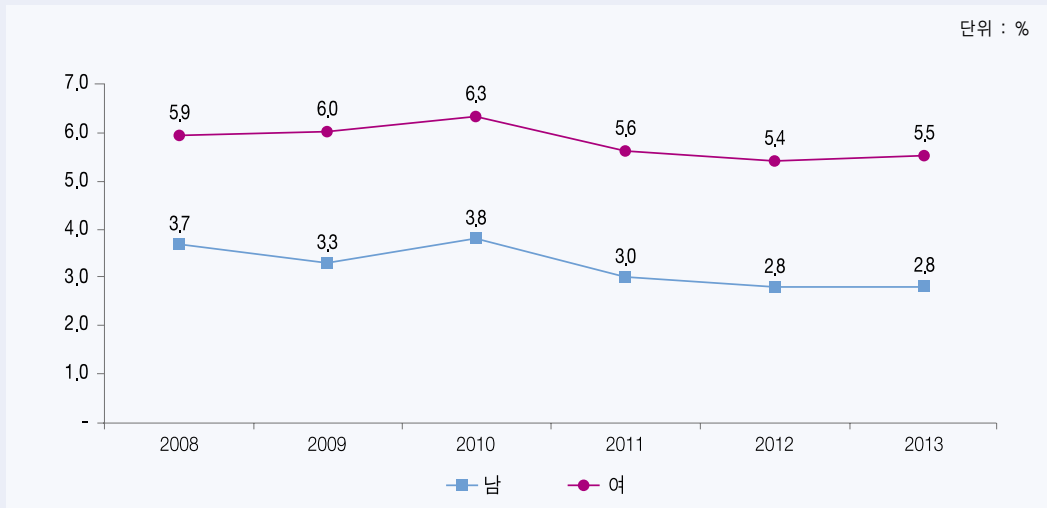


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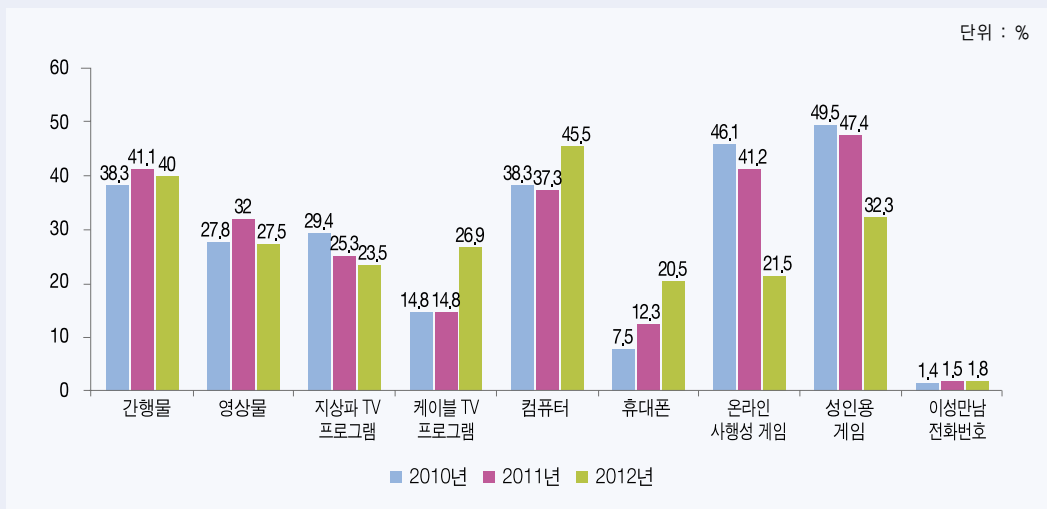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 [청소년 자살시도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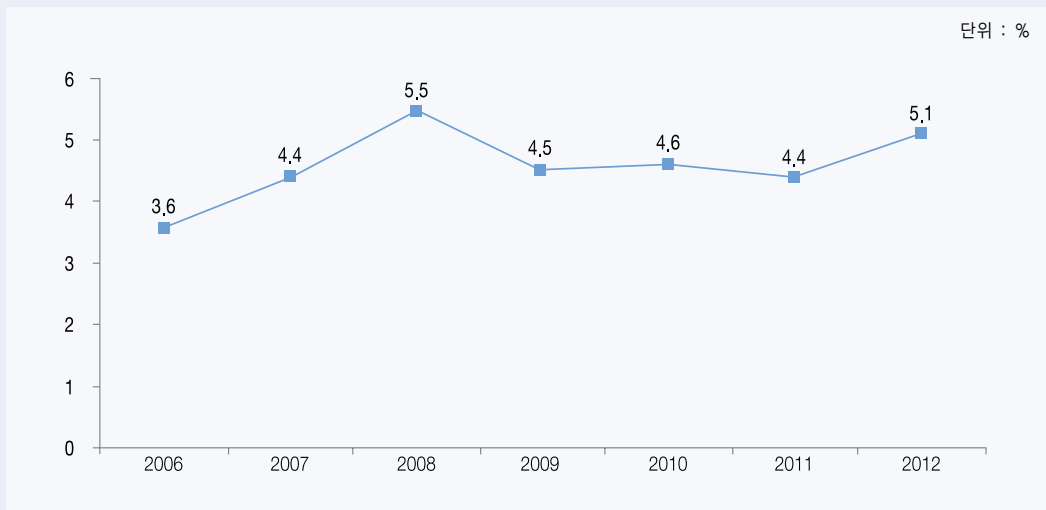
##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



자료 :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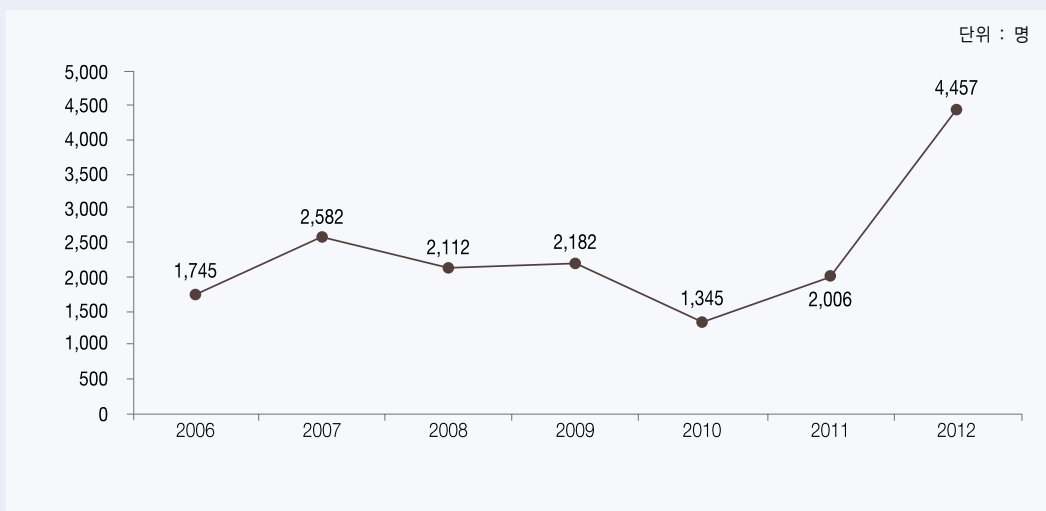


### 【전체범죄대비 소년범죄의 비율 추이】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 【청소년 성매매 검거 인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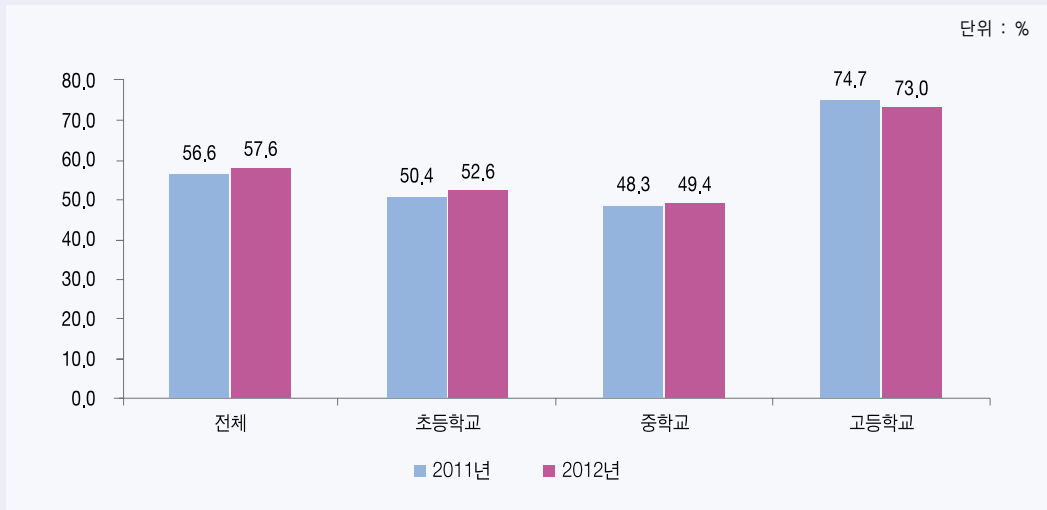


자료 : 경찰청(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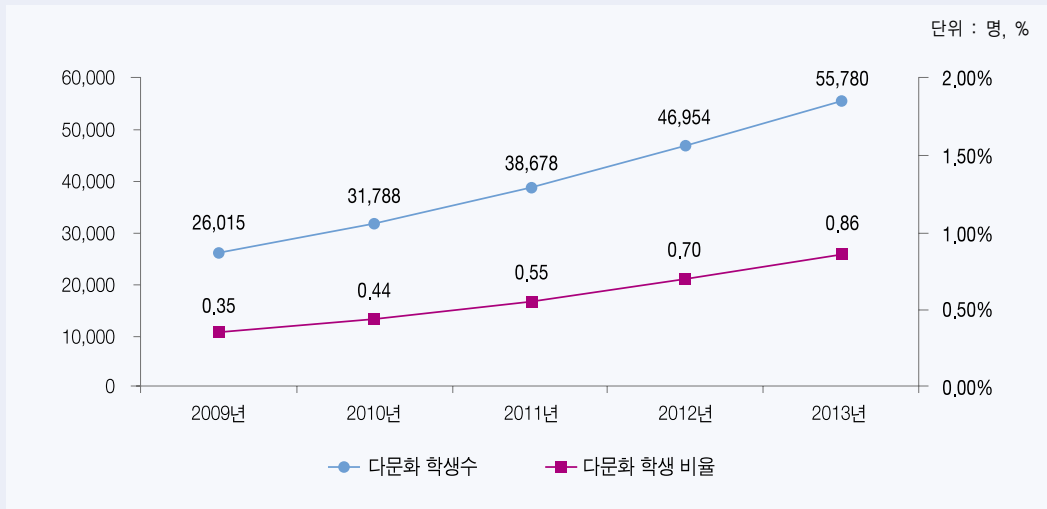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 [방과후학교 참여율]



자료 : 통계청(2013), 2012 사교육비 실태조사.

## [다문화가정 학생 수, 비율]



자료 : 교육부(201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보도자료(2013.10.22).



## 2013 청소년백서\_본문

## 제1부 총론

제1장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	002
제2장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	005
1.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강화 .....	005
2. 청소년활동 활성화 .....	006
3.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	007
4.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009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의 흐름 .....	011
1.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	011
2. 유럽지역의 청소년정책 .....	022
3. 미주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청소년정책 .....	034

##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가족

제1장 청소년 인구 현황과 전망 .....	046
1. 청소년 인구 현황 .....	046
2. 청소년 인구 전망 .....	048
3. 청소년 인구동태 .....	050
제2장 가족구성 및 변동 .....	058
1. 가족구성 현황 .....	058
2. 가구 수 현황 .....	059
3. 가구의 세대구성 .....	061
제3장 가족관계 .....	063
1.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	063
2. 가족과의 대화 .....	066
3. 형제자매와의 관계 .....	069

### 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	074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	074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	075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	075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	078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	086
1. 청소년의 달 행사 .....	086
2. 청소년지도자대회 .....	090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大賞) .....	091

### 제4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	096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	096
2. 청소년문화활동 .....	097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100
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	104
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106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	108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도입 배경 .....	108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	108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	112
1. 청소년 국제교류 .....	112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	116
3.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지원 .....	118

## 제5부 청소년 복지

제1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122
1. 아동빈곤율 현황	122
2. 한부모가구 현황	124
3. 다문화가족 현황	126
4. 요보호아동 현황	128
5.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	130
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32
1.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132
2.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136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38
4. 지역아동센터 운영	141
5. 드림스타트 사업(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144
6.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149
7.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150
8. 아동 급식 지원	157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159
1. 상담서비스	159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168
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171
4.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173
5.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 지원사업 「두드림·해밀」	174
6. 또래상담활동	180
제4장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184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184

2. 청소년의 영양과 비만 .....	189
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	192
4. 청소년의 정신건강 .....	196

###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	202
1. 학교폭력대책 .....	202
2.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	209
3.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	213
4.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	216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222
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	222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	227
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	235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	235
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	241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응 .....	241
2.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 .....	246
3.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	247
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	250
1.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재범방지교육) .....	250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	253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	256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	258

## 제7부 청소년의 교육

제1장 학교교육 현황 .....	264
1. 학령인구 .....	264
2. 학생인구 및 학교 수 .....	265
3. 조기유학 현황 .....	269
4.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	270
5. 진학을 .....	270
6. 학업중단을 .....	272
7. 교육재정 .....	273
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	276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	276
2.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	282
제3장 교육복지정책 .....	284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284
2. 방과후학교 .....	292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	299
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	308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	313

## 제8부 청소년과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	322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	322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	325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	326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	329

5. 임금 및 노동시간 .....	332
6. 청소년 아르바이트 .....	335
<b>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b>	<b>337</b>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	337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	337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	339
4. 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	339
<b>제3장 청소년의 직업·진로정책 .....</b>	<b>342</b>
1. 청소년고용촉진대책 .....	342
2.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	348
 <b>제9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b>	
<b>제1장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b>	<b>354</b>
1. 청소년 비행의 동향 .....	354
2. 청소년 마약류 사범 동향 .....	357
3. 학생범죄의 동향 .....	359
<b>제2장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b>	<b>361</b>
1. 청소년 비행의 예방 .....	361
2. 비행 청소년의 사법 처리 .....	374
3. 비행 청소년의 교정교육 .....	383
 <b>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b>	
<b>제1장 청소년 시설 .....</b>	<b>402</b>
1. 청소년 활동시설 .....	402
2.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	408



제2장 청소년지도자 .....	411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	411
2. 청소년지도사 .....	412
3. 청소년상담사 .....	417
제3장 청소년단체 .....	423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423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425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	426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426
2. 청소년 관련업무 추진기관 .....	432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	435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436
5. 정부 산하기관 .....	437
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	440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40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	443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	445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	448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	448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 현황 .....	449



〈표 1-3-1〉 교육정책위원회의 2011~2012년 주요사업 .....	013
〈표 1-3-2〉 201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팀 주요사업 .....	019
〈표 1-3-3〉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	023
〈표 2-1-1〉 2013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	047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	049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	050
〈표 2-1-4〉 연도별 인구 동태율 추이 .....	051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	052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	053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	054
〈표 2-1-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	055
〈표 2-1-9〉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056
〈표 2-1-10〉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	057
〈표 2-2-1〉 연도별 가구수 및 가구원수 .....	058
〈표 2-2-2〉 가구유형별 가구수 현황 .....	060
〈표 2-2-3〉 가구의 가구원수 현황 .....	061
〈표 2-2-4〉 세대구성유형별 가구수 현황 .....	062
〈표 2-3-1〉 가족과의 친밀도 .....	064
〈표 2-3-2〉 가정 내 분위기에 대한 인식 .....	065
〈표 2-3-3〉 평소 가족과의 대화 정도 .....	067
〈표 2-3-4〉 가족 중 주로 대화하는 상대 .....	068
〈표 2-3-5〉 가족과의 대화 주제 .....	069
〈표 2-3-6〉 형제자매와의 관계 .....	070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	079
〈표 3-2-2〉 20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	079
〈표 3-2-3〉 2013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	081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정책과제 제안 현황 .....	082
〈표 3-2-5〉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084
〈표 3-2-6〉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	085
〈표 3-3-1〉 청소년 유공자 포상 현황 .....	086

〈표 3-3-2〉 2013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	087
〈표 3-3-3〉 2013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	088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현황 .....	089
〈표 3-3-5〉 역대 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	091
〈표 3-3-6〉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역대수상자 현황 .....	092
〈표 4-1-1〉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	096
〈표 4-1-2〉 전국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 .....	098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문화존 지원 현황 .....	099
〈표 4-1-4〉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	101
〈표 4-1-5〉 연도별 인증심사 및 인증건수 .....	102
〈표 4-1-6〉 연도별 인증수련활동 유지건수 .....	102
〈표 4-1-7〉 연도별·운영기관별 인증수련활동 현황 .....	103
〈표 4-1-8〉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	104
〈표 4-1-9〉 포상제 운영 현황 .....	105
〈표 4-1-10〉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	106
〈표 4-1-11〉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내용 .....	107
〈표 4-2-1〉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 회원 수(누적) .....	109
〈표 4-2-2〉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	109
〈표 4-2-3〉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수(누적) .....	109
〈표 4-2-4〉 2012년도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참여 봉사자 수 .....	110
〈표 4-2-5〉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 추진경과 .....	111
〈표 4-3-1〉 청소년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2개국) .....	112
〈표 4-3-2〉 국가 간 청소년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	113
〈표 4-3-3〉 한·중 청소년 특별 교류 현황 .....	115
〈표 4-3-4〉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현황 .....	116
〈표 4-3-5〉 2012년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	117
〈표 4-3-6〉 2012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	117
〈표 4-3-7〉 2012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	118
〈표 5-1-1〉 아동빈곤율 .....	123
〈표 5-1-2〉 한부모가구 비율 .....	125

〈표 5-1-3〉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126
〈표 5-1-4〉 다문화가족 자녀연령별 현황	127
〈표 5-1-5〉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128
〈표 5-1-6〉 요보호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129
〈표 5-1-7〉 요보호아동 보호 현황	130
〈표 5-1-8〉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	131
〈표 5-2-1〉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132
〈표 5-2-2〉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133
〈표 5-2-3〉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134
〈표 5-2-4〉 쉼터의 종류 및 기능	135
〈표 5-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	135
〈표 5-2-6〉 2013년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수	136
〈표 5-2-7〉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137
〈표 5-2-8〉 북한이탈청소년 재학 현황	137
〈표 5-2-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139
〈표 5-2-10〉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140
〈표 5-2-11〉 운영형태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140
〈표 5-2-12〉 지역아동센터 주요 프로그램	141
〈표 5-2-1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단가	144
〈표 5-2-14〉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145
〈표 5-2-15〉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146
〈표 5-2-16〉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148
〈표 5-2-17〉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150
〈표 5-2-18〉 아동복지시설 현황	151
〈표 5-2-19〉 가정위탁 보호 현황	152
〈표 5-2-20〉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154
〈표 5-2-21〉 국내·외 입양 현황	156
〈표 5-2-22〉 국내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156
〈표 5-2-23〉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158
〈표 5-3-1〉 2012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161

〈표 5-3-2〉 2012년 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 .....	162
〈표 5-3-3〉 2012년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	163
〈표 5-3-4〉 2012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	164
〈표 5-3-5〉 2012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별·대상별 상담실적 .....	166
〈표 5-3-6〉 2012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	167
〈표 5-3-7〉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	169
〈표 5-3-8〉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	170
〈표 5-3-9〉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	171
〈표 5-3-10〉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호소문제유형별 이용건수 .....	172
〈표 5-3-11〉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	173
〈표 5-3-12〉 두드림·해밀 사업 연혁 .....	175
〈표 5-3-13〉 두드림·해밀 세부 프로그램 .....	177
〈표 5-3-14〉 두드림·해밀 운영지역 .....	178
〈표 5-3-15〉 두드림·해밀 사업 성과 .....	179
〈표 5-3-16〉 솔리언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내용 .....	181
〈표 5-3-17〉 2012년 또래상담사업 실적 .....	183
〈표 5-3-18〉 또래상담사업 효과성 분석 .....	183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	185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	186
〈표 5-4-3〉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	187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	187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	188
〈표 5-4-6〉 성별·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 .....	188
〈표 5-4-7〉 성별·연령별 앞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	188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	189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비율 .....	190
〈표 5-4-10〉 영양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섭취과잉 대상자 비율 .....	190
〈표 5-4-11〉 끼니별 결식률 .....	191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	193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	195

〈표 6-1-1〉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	203
〈표 6-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4개 직접 대책 및 세부과제 .....	205
〈표 6-1-3〉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3개 근본영역 및 세부과제 .....	207
〈표 6-1-4〉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주요 내용 .....	208
〈표 6-1-5〉 아동학대 사례유형 .....	210
〈표 6-1-6〉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11
〈표 6-1-7〉 실종 아동 및 장애인 발생과 가족복귀 현황 .....	214
〈표 6-1-8〉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	217
〈표 6-1-9〉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 .....	218
〈표 6-1-10〉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국제비교 .....	220
〈표 6-1-11〉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	221
〈표 6-2-1〉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연령 .....	223
〈표 6-2-2〉 청소년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연령 .....	223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	225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	226
〈표 6-2-5〉 청소년유해업소의 수 .....	227
〈표 6-2-6〉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	228
〈표 6-2-7〉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	229
〈표 6-2-8〉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	230
〈표 6-2-9〉 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지역별 현황 .....	232
〈표 6-2-1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	233
〈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	236
〈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	238
〈표 6-3-3〉 청소년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	239
〈표 6-5-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	250
〈표 6-5-2〉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	251
〈표 6-5-3〉 교육프로그램 구성 .....	252
〈표 6-5-4〉 교육 실시 현황 .....	252
〈표 6-5-5〉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	260
〈표 6-5-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 .....	260

〈표 7-1-1〉 학령인구 .....	265
〈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	266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	267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수 .....	268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현황 .....	269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	270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 .....	271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을 .....	272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 부처 예산 .....	273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	274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274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	275
〈표 7-2-1〉 TIMSS 초등학교 4학년 수학·과학 성취도 변화 .....	277
〈표 7-2-2〉 TIMSS 중학교 2학년 수학 성취도 변화 .....	277
〈표 7-2-3〉 TIMSS 중학교 2학년 과학 성취도 변화 .....	278
〈표 7-2-4〉 TIMSS 초등학교 4학년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	279
〈표 7-2-5〉 TIMSS 중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	279
〈표 7-2-6〉 우리나라 학생의 성별 수학 및 과학 성취도의 변화 .....	280
〈표 7-2-7〉 TIMSS 2011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자신감 .....	281
〈표 7-2-8〉 TIMSS 2011 수학 및 과학에 대한 흥미 .....	282
〈표 7-2-9〉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283
〈표 7-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285
〈표 7-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	294
〈표 7-3-3〉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	294
〈표 7-3-4〉 농산어촌, 도시, 전국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	294
〈표 7-3-5〉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295
〈표 7-3-6〉 계층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 .....	295
〈표 7-3-7〉 학년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 .....	295
〈표 7-3-8〉 초등돌봄교실 수강료 부담 현황 .....	296
〈표 7-3-9〉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	296

〈표 7-3-10〉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 현황	296
〈표 7-3-11〉 방과후학교 내용별 강좌 현황	297
〈표 7-3-12〉 방과후학교 강사 구성 현황	297
〈표 7-3-13〉 방과후학교 만족도	298
〈표 7-3-14〉 방과후학교 참여효과에 대한 만족도	298
〈표 7-3-15〉 전원학교 참여 지역 및 학교 수	301
〈표 7-3-16〉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도별 사업비	302
〈표 7-3-17〉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차별 학업성취도 수준	302
〈표 7-3-18〉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정 현황	304
〈표 7-3-19〉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비 규모	304
〈표 7-3-20〉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변화	305
〈표 7-3-21〉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정 현황	306
〈표 7-3-22〉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교부내역(2010~2012)	307
〈표 7-3-23〉 통합운영학교 연차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307
〈표 7-3-24〉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2007~2013)	308
〈표 7-3-25〉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2012~2013)	309
〈표 7-3-26〉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313
〈표 7-3-2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314
〈표 7-3-28〉 탈북청소년 수학 현황	314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322
〈표 8-1-2〉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24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현황 추이	326
〈표 8-1-4〉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327
〈표 8-1-5〉 청소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329
〈표 8-1-6〉 연령계층별·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331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332
〈표 8-1-8〉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333
〈표 8-1-9〉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334
〈표 8-1-1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335
〈표 8-2-1〉 2013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337



〈표 8-2-2〉 2013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	338
〈표 8-2-3〉 2013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	339
〈표 8-2-4〉 2013년 대학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	340
〈표 8-2-5〉 2013년 전문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과 취업률 .....	340
〈표 8-2-6〉 2013년 일반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과 취업률 .....	341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	345
〈표 8-3-2〉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	345
〈표 9-1-1〉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구성비율 .....	354
〈표 9-1-2〉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	355
〈표 9-1-3〉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	356
〈표 9-1-4〉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	356
〈표 9-1-5〉 소년범죄의 성별 현황 .....	357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	358
〈표 9-1-7〉 청소년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 .....	358
〈표 9-1-8〉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	359
〈표 9-1-9〉 학생범죄의 연령별 현황 .....	360
〈표 9-2-1〉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황 .....	362
〈표 9-2-2〉 학교전담경찰관 주요활동성과(2012년) .....	362
〈표 9-2-3〉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	363
〈표 9-2-4〉 사랑의 교실 운영 현황 .....	363
〈표 9-2-5〉 명예경찰소년단 현황 .....	364
〈표 9-2-6〉 명예경찰소년단 활동 현황 .....	365
〈표 9-2-7〉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	366
〈표 9-2-8〉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	366
〈표 9-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	367
〈표 9-2-1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	368
〈표 9-2-1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	368
〈표 9-2-1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369
〈표 9-2-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 임무 .....	370
〈표 9-2-1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실적 현황 .....	371

〈표 9-2-15〉 대안교육 실시 현황 .....	372
〈표 9-2-16〉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	373
〈표 9-2-17〉 보호자교육 실적 .....	374
〈표 9-2-18〉 소년범죄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연도별 운영 현황 .....	375
〈표 9-2-19〉 소년범죄 처리 현황 .....	376
〈표 9-2-20〉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 .....	377
〈표 9-2-21〉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 현황 .....	378
〈표 9-2-22〉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 .....	379
〈표 9-2-23〉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	380
〈표 9-2-24〉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	381
〈표 9-2-25〉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 .....	382
〈표 9-2-26〉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	385
〈표 9-2-27〉 보호소년 수용 현황 .....	386
〈표 9-2-28〉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	386
〈표 9-2-29〉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	387
〈표 9-2-30〉 소년원 학생 진학 현황 .....	387
〈표 9-2-3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	388
〈표 9-2-32〉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 .....	389
〈표 9-2-33〉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	390
〈표 9-2-34〉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	391
〈표 9-2-35〉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	392
〈표 9-2-36〉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	393
〈표 9-2-37〉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	393
〈표 9-2-38〉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395
〈표 9-2-39〉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	395
〈표 9-2-40〉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	397
〈표 9-2-41〉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398
〈표 9-2-42〉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398
〈표 9-2-43〉 청소년대상자 판결(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실적 .....	399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403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404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	412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	413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	415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	416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	418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	419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	420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	421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	421
〈표 10-4-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주요 기능 .....	428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	430
〈표 10-4-3〉 청소년정책의 변천 .....	430
〈표 10-4-4〉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	432
〈표 10-4-5〉 시·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현황 .....	436
〈표 10-4-6〉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	437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체 회원 현황 .....	446
〈표 10-6-1〉 연도별 청소년예산 .....	448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	450

## 2013 청소년백서\_그림

[그림 1-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004
[그림 1-3-1] 2001년~2010년 미국 청소년 수감자수 변화 추이	037
[그림 3-2-1] 의제선정 및 정책과제 발굴 추진체계	081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과정 절차	084
[그림 4-1-1] 연도별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 현황	103
[그림 4-2-1]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포함) 인원	110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124
[그림 5-1-2] 한부모가구 비율	125
[그림 5-2-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142
[그림 5-2-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142
[그림 5-2-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143
[그림 5-2-4]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146
[그림 5-2-5] 드림스타트 만족도 조사결과	147
[그림 5-2-6]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149
[그림 5-3-1] 201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성별 비율	165
[그림 5-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서비스별 이용자 수 통계	165
[그림 5-3-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168
[그림 5-3-4] 2012년 1388 Help Call 청소년전화 월별 이용실적	172
[그림 5-3-5] 두드림·해밀 서비스 흐름도	176
[그림 5-3-6] 2012년 또래상담사업 효과분석	183
[그림 5-4-1] 청소년의 비만율	191
[그림 5-4-2] 학년별 평생 흡연 경험률	192
[그림 5-4-3] 학년별 현재 흡연율	193
[그림 5-4-4] 학년별 평생 음주 경험률	194
[그림 5-4-5] 학년별 현재 음주율	195
[그림 5-4-6]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196
[그림 5-4-7]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197
[그림 5-4-8] 학년별 자살 생각률	198
[그림 6-1-1]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14세 이하)	217
[그림 6-1-2]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14세 이하)	218

[그림 6-1-3]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14세 이하) .....	219
[그림 6-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	237
[그림 6-3-2] 청소년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	240
[그림 6-4-1] 여성가족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	242
[그림 6-5-1]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시설 배치도 .....	259
[그림 7-1-1] 학령인구 .....	264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	268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	271
[그림 7-1-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2012) .....	275
[그림 7-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체제 .....	287
[그림 7-3-2] 교사 효능감 .....	289
[그림 7-3-3]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장의 리더십 .....	289
[그림 7-3-4] 동아리 참여 여부 .....	289
[그림 7-3-5] 진로 프로그램 참여 .....	289
[그림 7-3-6]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	290
[그림 7-3-7] 교사의 지원 .....	290
[그림 7-3-8] 사회성 .....	290
[그림 7-3-9] 자존감 .....	291
[그림 7-3-10] 학교생활적응 .....	291
[그림 7-3-11] 어려움 극복 효능감 .....	291
[그림 7-3-12]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	309
[그림 8-1-1] 2012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	323
[그림 8-1-2] 2012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	325
[그림 8-1-3]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	327
[그림 8-1-4]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	328
[그림 8-1-5]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	328
[그림 8-1-6] 청소년 실업률 국제비교 .....	330
[그림 8-1-7] 2012년 성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	331
[그림 8-1-8] 지금까지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	336
[그림 8-2-1] 전문계 신규 졸업자의 진학자와 취업자 비율 추이 .....	338

## 2013 청소년백서\_그림

[그림 10-1-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	402
[그림 10-2-1] 청소년 지도자의 분류 .....	411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	414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	420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	427

## 2013 청소년백서\_부록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	452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	455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	461
〈부록 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	486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	491

## 제1부 요약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현실문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입각하여 2013년에 추진된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의 동향을 정리하면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강화,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OECD, UN, World Bank, UNESCO 등 국제기구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OECD는 교육 및 고용 부문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UN은 교육, 고용, 기아 및 빈곤, 건강, 환경, 마약, 청소년비행, 여가 활동, 사회생활과 의사결정 부문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를 조망하고, 최근에는 국가 간 이주의 증가와 다문화화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의 국제 이주 문제를 다루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면서 청소년의 교육, 보건, 영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UNESCO는 청소년의 학교 외 교육에 관심을 두면서 청소년이 문제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제1부 총론

---

제1장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제2장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의 흐름

## 제 1 장

#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청소년정책의 개발과 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한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5~1987년)」이 수립된 이후, 1993년부터 5년마다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범정부적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어 왔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그간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정책참여의 기회 확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치료지원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가족구조 및 형태의 다변화,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 및 고용 불안정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수립에 앞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고자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관련 학계, 시설, 단체, 청소년, 학부모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2012년 말에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5대 영역(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15대 중점과제와 75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영역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영역으로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며,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인성·배려·나눔 함양을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및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영역으로서, 정책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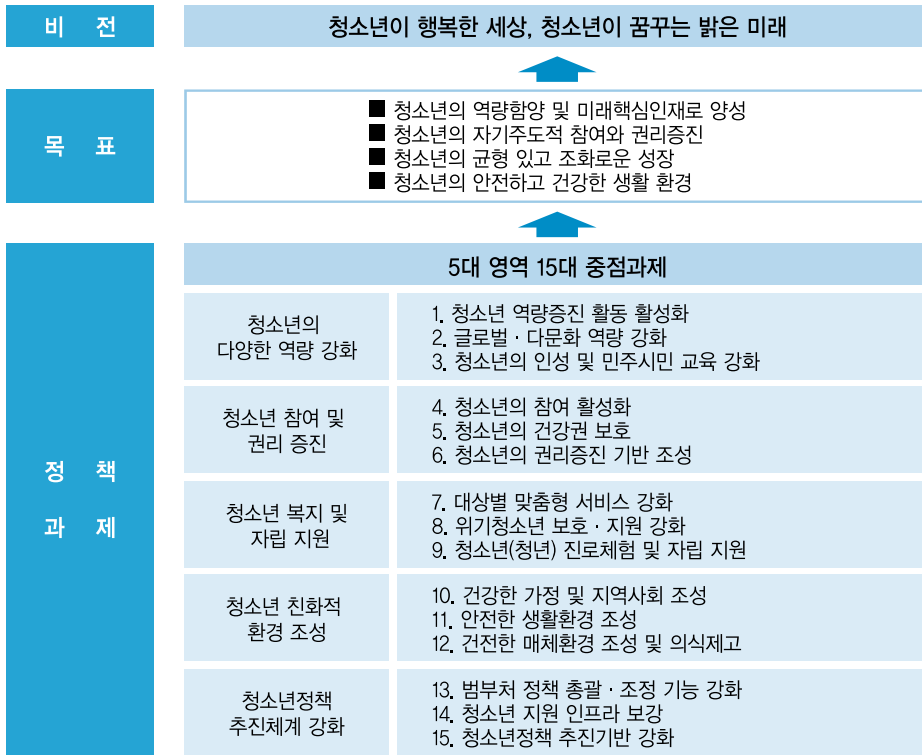
참여하는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여 청소년 권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영역으로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확대·강화하여 학교폭력, 가출,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등 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추진하는 한편,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하여 창업, 취업지원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으로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폭력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 등 생활환경 전반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하며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매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영역으로서, 각 부처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청소년전담과 설치 등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며,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1-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 ~ 2017년)」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제2장

##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 1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강화

2013년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은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강화,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강화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및 관련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 사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참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시·도 연합 워크숍 및 대토론회를 정례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또한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체계 및 의제연구팀 구성을 위해, 청소년들로 추진단을 꾸리고 그 안에 기획홍보팀, 의제연구팀, 모니터링팀을 구성하며, 특별회의 의제연구팀을 시·도 참여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되었다. 아울러 청소년 참여 포털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웹지기(운영진) 구성과 운영,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커뮤니티 활성화, 온라인을 통한 특별회의 의장단 사전 선거 운동 추진 및 정책 의제 토론, 정책제안 코너 활성화 등도 청소년 정책참여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통로로서,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청소년특별회의 사업은 여성가족부 및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대표 및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이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 정치계, 범청소년계 인사 등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기획·홍보, 의제연구,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추진단, 특별회의 행정지원, 청소년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및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참여하는 18개의 지역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는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81개 정책이 수용되었다. 2013년에 개최된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이라는 정책의제로,

을 한 해 동안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를 최종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 시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305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활동 등이 있다. 2013년에는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하계 워크숍이 개최되어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팀과 연수과정개설을 통해 청소년운영위원회 지도자에 대한 전문 지도 능력을 배양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전국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였다.

그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공·농,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청소년 우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증 사업을 시행하여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교부하고 있다.

## 2 청소년활동 활성화

2013년에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대표적인 정책들로는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 교류사업 등이 있다. 청소년문화존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존(zone)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연계하는 것을 요체로 삼는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각 지역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을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와 기성세대 문화가 만나는 장으로 작용하며, 지역문화단체 초청 공연과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공연을 통한 폭넓은 문화마당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홍보를 활성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한다. 동시에 문화존 모니터링 활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운영되는 작은 모둠(모임)인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지역이나 분야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동아리, 전문기관과 연계한 전문가 멘토형 동아리를 활성화

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별로 관내 동아리를 선정하되, 공통기준과 지자체 심사 기준을 준수하여 지원·육성하는 것을 운영방침으로 삼는다. 또한 연 3회 이상 동아리별 활동을 지역 내 청소년문화존에서 발표하여 다른 청소년 및 동아리 간의 정보교환의 기회로 삼도록 하고, 지역별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수동아리 및 지도자를 선정하여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시행되고 있다.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 시·도 단위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역의 특성화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역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사업운영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전달체계의 역할,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청소년기관(시설)의 총괄 및 연계·협력 기능 강화 등이 있다. 한편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을 통해 2013년 기준 청소년수련관 13개소, 문화의집 20개소, 청소년수련원 4개소와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35개소 등 총 72개소를 지원하였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주5일제 수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평일 낮시간 대 학교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담당 역할을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당 각 1명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실시 중이다. 청소년 교류사업은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가간 우의·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아시아 10개국, 유럽 10개국, 중남미 2개국, 중동 아프리카 9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3년 세부사업으로는 한·중 청소년 특별 교류,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해외체험프로그램,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 국제 행사 개최지원 등이 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3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청소년쉼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직영(별도의 법인 설립 포함) 또는 청소년 단체 등을 통한 위탁 운영의 방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가출, 성매매, 가정 및 학교폭력, 약물중독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인 일시보호시설 운영도 담당한다. 또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긴급지원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며,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접수·처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CYS-Net 운영의 기본 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관리·감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CYS-Net, 청소년동반자,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 및 자립지원(두드림·해밀) 사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CYS-Net에 유입되는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 도모하는 데 있다. 또한 학업중단숙려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학교(Wee 센터)와 상담복지센터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CYS-Net 연계지원 및 사례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1388전화 통화 중 수신 또는 일시부재 문제 해소를 위해 착신전환 서비스 및 부재중 응답 서비스를 운영하고, 연 2회에 걸쳐 1388전화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CYS-Net 인력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E-러닝 시스템을 활성화하였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거리상담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위기(가능) 청소년 조기발견 및 개입·지원 등이 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고위기군 청소년에게 일대일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 도와 위기요인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청소년동반자가 연계해 주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 및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이 동반자와 일단 연결되고 나면 CYS-Net의 전체적인 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은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학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



으로, 학업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복귀 동기 강화 과정과 학습역량강화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립준비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립 동기 강화 과정, 자립기술습득 과정 및 사회진출도약 과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진로목표를 고려해 차별화 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 방법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청소년 본인, 보호자, 관계자 등이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CYS-Net 운영기관에서 발굴하여 신청하면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건강검진 및 치료,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교육비용과 취업을 위한 훈련비,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각 활동에 수반하는 청소년 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서비스 확충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4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관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관리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사·학부모, 시민단체(청소년단체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등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단체를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사진·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관계기관에 신고·고발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고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있다. 또한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시정을 건의하고, 워크숍 개최, 캠페인 전개, 유해환경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학교 및 놀이터 주변 아동 안전사고 및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 안전 및 보호 활동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위험 단계에 따라 상담·치료연계 등 맞춤형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중심의 다양한 정책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체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2013년에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총 180만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 및 기타 공존질환 보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 대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차 공존질환 검사를 실시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기속치료프로그램인 “인터넷치유학교(인터넷 RESCUE 스쿨)”과 “가족치유캠프” 등 다양한 인터넷 중독 치유평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제3장

## 세계 청소년정책의 흐름

## 1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회원 각국의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OECD의 목적 및 정책방향은 규약 제1조에 따라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촉진, ▲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 개발도상 국가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 기여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013년 기준 3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를 비롯해, 상주대표이사회, 정책대화기구인 부문별 26개 전문위원회와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청소년정책의 시행과 유관된 위원회는 고용노동사회위원회와 교육정책위원회이다. 고용노동사회위원회는 주요 사업으로 전통적으로 이민정책 분야(국제이주 전망 발간, 이민자 및 자녀의 노동시장 통합 연구, 이민의 재정적 측면 분석 등)와 복지 및 사회통합 분야(인구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의 개선 연구, OECD 사회지표 및 가족 데이터베이스 발간, 소득분배 및 분배에 관한 보고서 발간, 양성평등 연구 등)를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 5월 MCM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사회위원회가 기존 OECD 여성고용정책선언(1980년)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양성평등 및 교육, 창업 등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여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합한 보육 교육 커리큘럼을 검토하며, 성차별 또는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육, 예술·인문학 등 분야에서 남·여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
- 청년, 부모, 교사, 사업주 등이 학업성취, 고용, 창업 등에 있어서 성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 과학, 기술, 수학 등을 전공한 여성이 이 분야에서 전문적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상담, 성인 교육, 인턴, 재정지원 등을 강화한다.

둘째, '고용' 과 관련한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모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정 친화적 정책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고한다.
- 부모가 일에 대한 유사한 재정적 유인책을 갖도록 조세와 급여시스템을 설계하며 양질의 보육 및 가족의 장기 요양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일하는 부모에게 고용이 보장된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아빠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도록 양도가 불가능한 배타적 휴직제를 시행한다.
- 남녀 근로자에게 임시적 시간제 활용을 독려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며, 가사의 남녀 공동분담을 활성화한다.
- 편부모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정책을 방지하며, 가사고용인 등 비공식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사회보장을 강화한다.
-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임금·채용·훈련 및 승진 등 모든 형태의 남녀차별을 폐지하는 입법 및 시행을 강화하며, 동등 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 임금 원칙을 실행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입법 및 모든 적합한 수단을 시행한다.

셋째, '의사결정 지위' 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 민간기업의 이사회, 고위관리직의 경우 자발적 목표제, 공개 등의 수단을 통해 여성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양성 다양성을 촉진시킨다.
- 공공부문의 고위관리직에 양성형평성의 실현을 위해 공개제도, 목표제,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채용 시 투명·공정성을 제고하며 여성의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정치, 정부, 의회, 지방정부, 사법부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증진시킨다.

넷째, '창업' 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 여성창업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며, 훈련 프로그램·상담·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법·재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등을 지원한다.
- 남녀 창업자에게 동등한 금융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여성 창업자에 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섯째, '기타'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취약여성계층, 이주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며, 관련정책·예산의 설계·평가 등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관점을 유지(체계적 양성효과 측정, 적합한 자료 생산 등)한다.
- 교육·고용·창업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입안하거나 시행할 때, 공공·민간 기관, 노조, 사업주 단체,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협력한다.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양성평등 자료, 지표 등을 수집, 생산, 개발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OECD에 적시에 제공한다.

교육정책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당면하는 교육정책 과제들을 공동연구하며, 각 회원국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혁신방안을 권고하여 교육체제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치되었다. 구체적인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 회원국별 교육정책 검토와 고등교육정책, 성인학습 정책 등 주제별 검토를 통하여 평생학습, 고등교육, 사회통합 등 지식기반경제의 교육정책 현안과제 연구 및 정책권고 도출
-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를 통한 미래의 학교교육, 대학의 미래, 학습의 질 등 교육에 관한 장기적인 과제 연구
- PISA, 교육체제지표사업(INES), 성인능력측정사업(PIAAC), 고등교육 성과평가(AHELO) 등을 통해 정책 수립·분석의 기초가 되는 각종 국제통계지표 개발(PISA, INES)

교육정책위원회의 OECD 담당 사무국은 교육국(Directorate of Education: EDU)으로 교육훈련 정책과, 지표분석과, 교육관리 및 기반과, 교육연구혁신센터(Centre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정책위원회의 2011~2012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1-3-1〉 교육정책위원회의 2011~2012년 주요사업

교육체제지표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성과, 자원, 기회, 환경 등 각국의 교육체제를 국제 비교하는 데이터 수집과 지표개발사업</li> <li>- 매년 9월 「Education at a Glance」 발간</li> </ul>
국제학생성취도측정사업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여 회원국의 의무교육체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사업</li> <li>• PISA 2000, 2003, 2006, 2009, 2012 등 3년 주기로 측정</li> </ul>
국제성인역량측정사업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65세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 간 성인능력의 분포 및 수준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2008~2013년까지 진행</li> <li>• 2011년 현장조사, 2013년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인역량의 직접 측정(literacy, numeracy, component skill, ICT환경 하의 문제해결 능력), 직무에서의 역량활용 간접측정, 성인역량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상관분석 등 실시</li> </ul>

고등교육성과측정사업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 AHEL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역량, 경제학, 공학 분야의 역량을 측정하는 사업</li> <li>• 한국은 미국, 필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쿠웨이트 등과 함께 일반역량 분야에 참가</li> </ul>
Skills Strategy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교육국 주관, 노동국과 지역개발국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OECD가 기술관련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수평적 사업</li> <li>• 2013년 「Skills Outlook」 발간 예정</li> </ul>
GPS Project: Leveraging Knowledge for Better Education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 및 데이터를 이용, 개별국가의 교육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li> <li>- 세 가지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는 바, 제1영역은 OECD가 분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체계화하여 활용하는 작업이며, 제2영역은 교육발전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인 국가들에 대한 사례 연구이고, 제3영역은 교육개혁정책의 집행과정 및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임(한국은 제1영역에 파일럿 국가로 참여)</li> </ul>
Skills Beyond School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교육(고등학교) 이후의 직업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1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사업</li> </ul>
교육 측정평가 검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평가, 교원평가, 학교평가, 시스템평가 등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검토사업</li> </ul>
교육연구혁신센터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지향적이고 연구중심적인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진행하는 센터로 사무국 내에 교육국이 생기기 이전부터 교육분야 이슈를 다루어 옴</li> </ul>
고등교육기관 관리프로그램 (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IM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차원의 고등교육 정책보다는 고등교육의 지역발전 기여 등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운영·발전방안 논의</li> </ul>
교육시설프로그램 (Center for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 CE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이 실행되는 공간인 교육시설 정책의 효과성 평가, 학교 안전, 시설지표 개발 등</li> <li>- 교육시설의 수준 측정에 대한 국제 파일럿 스터디 진행</li> </ul>
교수학습에 관한 국제조사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교원(교장 및 교사)의 신념, 태도, 수업방식, 칭찬과 피드백, 학교리더십 등 중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조사</li> </ul>
영유아 교육보육 네트워크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Network: EC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교육의 수준제고를 위한 교사, 교육과정, 재정지원, 각국별 시스템 등 제반분야에 대한 검토사업 진행과 결과분석</li> </ul>

출처 : OECD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http://oecd.mofa.go.kr>).

OECD가 발간하는 교육정책 보고서 중 회원국 교육체제의 다각적인 측면을 수평 비교하는 연례 교육 보고서인 「Education at a Glance」는 매년 9월 발간되는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 OECD가 교육부문과 관련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2011년 1월에는 OECD 국가의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과 그 시사점에서 청년고용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OECD의 정책제언으로 의무교육연령(school-leaving age)의 상향, 일과 학습의 병행, 의무적 인턴십과 견습제도(apprenticeship training), 이원직업교육(dual vocational education) 등을 통해 학교에서 일터로의 원활한 전환, 아웃리치 프로그램, 프로파일링, 상호의무 부과 등 청년층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단으로 구직 지원, 채용 상 차별해소, 고용비용 감소,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 측면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11년 9월에는 2011년 1분기까지 회원국들의 고용현황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인 「OECD Employment Outlook 2011」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1년 이상 실직상태인 장기 실업자와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2012년 1월에는 OECD국가의 학교폭력(school violence) 현황 및 대응방안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 무관용(zero tolerance)원칙을 제안했다. 이것은 퇴학이나 정학 등의 조치가 일시적 안도감을 줄 수 있겠지만, 폭력의 재발 등 후속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더 크다고 가정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OECD국가의 대응방안으로는 학교 안전문제의 다면성 및 예방적·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교사, 학생, 직원), 학부모, 청소년단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주택, 고용, 경찰 등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장기적·종합적 전략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2012년 2월에는 유럽연합국가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OECD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 미국 등의 경험을 참고하여, 직업훈련 통계 및 인력수급전망 내실화, 관련 통계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기술 불일치를 해소하고,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OECD가 발간한 「Education at a Glance, 2013」에 따르면, OECD는 오늘날 교육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인 편익과 비용의 문제,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 성인교육과 유아교육의 실태와 영향, 학교환경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OECD는 2014년 11월부터 2년 주기로 34개 회원국의 교육정책을 한 눈에 비교 분석하여 볼 수 있는 「Education Policy Outlook」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교육정책 프로파일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워크숍을 2013년 6월 개최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공적인 교육개혁에는 ▲ 성과에 대한 관심 ▲ 교사 역량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 ▲ 각 부문의 자율성과 정부지원간의 조화 ▲ 기관의 역량제고 노력 ▲ 평등과 교육의질 제고와 조화 ▲ 정책 집행과 리더십에 초점 등의 공통점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나. 유엔(UN)

유엔(United Nations: UN)은 1985년을 세계청소년의 해로 결의하면서 각 회원국이 청소년 정책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유엔은 청소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청소년을 '어른이 될 세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 만이 아닌 지금 현재 살아 있고 일을 하며,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현 세대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의 청소년관련 정책 방향 및 이념은 1995년 세계청소년의 해 10주년을 기념하여 채택한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와 1998년 8월 세계 150개국 청소년리더, 청소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열린 제3회 UN 세계 청소년 포럼에서 채택된 「Braga Youth Action Plan」, 1998년 8월 158개국 청소년업무담당 장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리스본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 업무 담당 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과 2000년 9월 밀레니엄 서밋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나타나 있다.

유엔에서 지향하는 청소년정책 분야는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고용, 기아 및 빈곤, 건강, 환경, 마약, 청소년 비행, 여가활동, 여성 및 청소년,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소년들의 참여와 같은 10개 분야이다. 여기에 「Braga Youth Action Plan」과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에서 제시된 분야들도 포함된다. 「Braga Youth Action Plan」에서는 청소년정책(청소년 정책분야 간 통합, 국가 내 청소년 업무관련 NGO 간 협력, 빈곤추방 및 청소년 개발), 청소년 참여(모든 청소년들의 참여, 청소년 조직과 UN기구,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사회개발을 위한 청소년 고용, 건강과 청소년 개발), 청소년인권(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청소년 권리 현장과 청소년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이 제시되고 있다.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에서는 국가 청소년정책, 청소년 참여, 청소년 개발, 청소년과 평화, 청소년 교육, 청소년 고용, 청소년 건강, 마약과 약물남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세계 빈곤퇴치 및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2000년 9월에 참여한 191개 회원 국가는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성 ▲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 산모건강의 증진 ▲ 환경 지속성 보장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이 있다.

유엔의 사업 중, 청소년사업으로는 청소년 세계행동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세계청소년보고서 2013(World Youth Report 2013), UN CSD(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및 Cyber Schoolbus 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다양한 유엔 산하 전문



기구 및 보조기구, 유엔사무국 산하기구 등에서 진행되는 청소년관련 사업 등이 있다. 청소년 세계 행동프로그램에서는 15개의 청소년 우선순위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는 활동을 위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세계행동프로그램 채택 이후 대두된 관심사들은 세계화, 정보통신 기술(ICT), HIV/AIDS, 청소년과 분쟁(갈등) 예방, 세대 간 관계가 있다. 「세계청소년보고서 2013」에서는 이주 청소년과 개발(youth migration and development)을 다루었다. 즉, 국제 이주 청소년의 삶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분석하였다. UN CS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 과정에 전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몰두하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형 플랫폼(interactive platform)이다. 2012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Conference of Youth for Rio+20이 개최되었다. Cyber Schoolbus 홈페이지 운영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교수 및 학습 프로젝트 홈페이지로 평화교육, 빈곤, 인권, 기아, 노동에서의 권리, 인종차별 등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 UN관련 자료, 퀴즈와 게임, 커뮤니티, 행사 안내,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은 산하에 다양한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를 두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각 기구별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문명간연대(UNAOC),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사무국 공보실(DPI),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UN DESA),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봉사단(UNV),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노동기구(IL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유엔난민사무국(UNHCR UN Refugee Agency) 등이 있다. 2013년 현재 유엔 각 기구별 청소년관련 사업들은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 특사 사무국(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s envoy on youth)에서 협력 지원을 받고 있다.

#### 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World Bank)은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근거해 1946년 6월에 창설된 유엔 산하 금융기관으로 전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 및 개발자금을 지원해 줄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a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 그 출발이었다. 일반적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을 합쳐 세계은행그룹이라고 하는데 이중 IBRD와 IDA를 합쳐 흔히 세계은행이라 부른다.

오늘날 세계은행은 개발도상 가맹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개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술 지원, 개도국으로의 재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정역할, 경제개발 담당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세계은행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강화 및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건강, 에이즈, 사회적 보호라는 4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사업으로는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 보건, 영양 등 아동과 청소년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투자기회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영아 및 유아기 : 영아 및 아동사망을 줄이기 위한 아동보호
- 학령기 아동 : 기초학습능력향상 및 학교기반시설 개선
- 초기 청소년기 : 직업체험기회 및 통합적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제공
- 후기 청소년기 : 중도탈락청소년들을 위한 치료교육에 투자, 청소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청소년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와 이를 위한 국가청소년정책 전개의 필요성 강조

세계은행에서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 단체를 위한 기금, 대화형 플랫폼(interactive platform) 구축, 청소년 대 청소년 커뮤니티(youth-to-youth community) 형성, 국제 에세이 대회(international essay competition), 청소년 자문 그룹(youth advisory groups),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등이 있다. 특히 세계은행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업 블로그인 「Youthink!」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개발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과 밀접한 사업이슈들로는 장애, 교육, 갈등(해결), 고용, 성, 보건(HIV/AIDS 포함) 등이 있다.

## 라. 유네스코(UNESCO)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곧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전문기구이다. 2011년 12월 기준 195개 정회원국과 8개 준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14일 가입하였다.

유네스코가 청소년문제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2년 제12차 유네스코 총회와 밀접하다. 당시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들이 새로 독립국으로 탄생하였고, 과학기술과 교통, 미디어의 발달은 전례 없는 정보와 개인의 교류를 가져왔다. 1962년 제12차 유네스코총회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과거의 전통과 단절되면서 새로운 사회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문제 해결방안과 청소년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제청소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964년 프랑스 그레노블에서 열린 국제청소년회의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사회발전의 필수요소임을 확인하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동년

10월에 열린 유네스코총회는 이 권고문을 받아들여 청소년의 학교 외 교육(out of school education)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국들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회원국 실정에 맞는 청소년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청소년은 여성, 아프리카 등과 함께 유네스코 주요 활동분야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유네스코는 청소년이 문제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명시하고자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위해(Acting with and for Youth)’ 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청소년사업을 전개하였다.

한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현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시 유네스코의 정책방향에 부응해 1960년대부터 한국의 청소년 및 학생문제에 천착해 왔다. 1960년대 청소년문제연구협의회 및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교수 협의회창설을 주도하였으며, 1967년 유네스코학생협회 출범, 1977년 유네스코청년원(경기도 이천)을 설립하면서 청소년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청소년관련 주요 사업은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청년 등의 분야에서 각각 아동,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청소년사업 및 정책은 청년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 청년 분야의 주요사업은 ▲ 청년과 사회참여 ▲ 청년과 국제교류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등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2) 201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팀 주요사업

<p>유네스코 청년활동 협력 및 참여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학생회 협력 및 활동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전국 대학 내 유네스코학생회(KUSA) 회원</li> <li>•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학생회(KUSA) 자체 활동지원</li> <li>- 유네스코학생회(KUSA) 회원대상 워크숍·간담회 개최</li> <li>-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최 청년행사 참가 우선배려 및 자료 배포</li> </ul> </li> </ul> </li> <li>○ 국내외 청년단체 국제활동협력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청년단체 정보교류,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li> <li>• 국내외 청년관련 주요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자 파견</li> </ul> </li> </ul>
<p>유네스코 대학생 동아리활동 공모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동아리활동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주제 : 교육, 평화, 인권, 환경, 문화다양성, 문화유산보호</li> <li>• 공모대상 : 전국 대학(원) 학생처 및 국제대학원</li> <li>• 선발 : 20팀 선발</li> </ul> </li> </ul>

<p>유네스코 대학생 동아리활동 공모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동아리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워크숍(1박 2일) 실시</li> <li>- 선발 동아리 활동비 지원 : 각 팀당 2,000천원</li> </ul> </li> </ul> </li> <li>○ 우수활동 포상 및 활동보고서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멀티미디어 형태의 활동보고서 발간</li> </ul> </li> </ul>
<p>유네스코 청년국제자원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계 국제워크캠프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견 : 5개국 100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워크숍 3회</li> <li>- 활동보고회 3회</li> <li>- 유네스코관련 주제인식 확산</li> </ul> </li> </ul> </li> <li>○ 하계 국제워크캠프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견 : 40개국 160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워크숍 4회</li> <li>- 파견이후 활동보고회 4회</li> <li>- 에세이집 발간</li> </ul> </li> </ul> </li> <li>○ 국제워크캠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자원활동단체협의회(ALLIANCE) 실무회의</li> <li>- 아시아자원활동개발네트워크(NVDA) 회의</li> </ul> </li> <li>• 기간 : 1월, 3월중</li> <li>• 참가기관 : 40개국 80여 개 해외협력단체</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도 1,500여 개 국제워크캠프 정보공유 및 참가자 자리 확보</li> <li>- 국내 워크캠프 개최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li> </ul> </li> </ul> </li> <li>○ 국제워크캠프 현장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1~2월, 7~8월 중</li> <li>• 참가기관 : 국제워크캠프 관련 NGO 및 관련대학</li> <li>• 내용 : 해외 워크캠프 파견협의 및 관련단체 프로그램 모니터링</li> </ul> </li> </ul>
<p>유네스코 청년워크캠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주 국제워크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7~8월</li> </ul> </li> <li>○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부산 국제워크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7~8월</li> </ul> </li> <li>○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무안 국제워크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7~8월</li> </ul> </li> <li>○ 유네스코 역사와 화해 DMZ 국제워크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7~8월</li> </ul> </li> <li>○ 이상의 국제워크 캠프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청년의 지역사회참여의 장 마련</li> <li>• 지역사회 이슈별 프로젝트 수행, 문화교류 및 노작활동 진행</li> <li>• 한국 참가팀 사전훈련 워크숍 및 사후활동 보고회</li> </ul> </li> </ul>

<p>유네스코 청년 역사대화 국제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주제관련 전문가 강연, 참가자 조별 활동, 사전 오리엔테이션</li> </ul> </li> <li>○ 제2회 유네스코 청년 역사대화 국제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청년의 참여</li> <li>•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강연, 참가자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현장학습 등</li> <li>- 아시아지역 청소년 역사화해 활동 지원</li> </ul> </li> </ul> </li> </ul>
<p>유네스코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기 브릿지 지역활동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연중</li> <li>• 장소 : 아프리카 6개국(남아공, 르완다, 레소토,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li> <li>• 협력기관 : 6개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10개 지역 NGO</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가 선발·교육하여 제1기 활동지역의 사업 인수인계</li> <li>- EFA 지원사업의 직접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교육개발 사업 지속</li> </ul> </li> </ul> </li> <li>○ 코디네이터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연중</li> <li>• 장소 : 아프리카 5개국(남아공, 레소토,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li> <li>• 협력기관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5개국) 및 5개 국내협력 NGO(10곳)</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 2년 이상 경험자를 선발·교육하여 사업현장(해당국가단위)에서 상주하며 국가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파견활동가의 업무를 지원</li> </ul> </li> </ul> </li> <li>○ EFA 현장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연중</li> <li>• 장소 : 제2기 파견지역</li> <li>• 내용 : 각국별 현지 NGO와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해, 생활기술교육 등을 가르치는 지역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re) 구축과 운영</li> </ul> </li> <li>○ 아프리카의 날 기념행사('Bridging Hope in African Villages' 브릿지 사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대국민 아프리카 이미지 제고 및 '유네스코아프리카희망브릿지사업' 홍보</li> </ul> </li> </ul>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esco.or.kr>).

이외에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세계청소년정보망, 모의 유네스코 총회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세계청소년정보망은 청소년분야의 정보화와 청소년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하여 1991년부터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 청소년정보 네트워크 형성' 사업의 일환이다. 여기에서는 세계를 8개 지역으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청소년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지역을 하나로 묶는 세계 청소년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95년부터 아태지역 센터로 지정되어 아태지역의 청소년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지속가능발전 논의와 실천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참여 강화, 국제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및 역량 결집, 전 지구적 문제와 개인적 삶의 연계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증진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 가. 유럽연합(EU)

유럽 내 국가 연합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유럽연합의 정부 형태는 국가연합이며, 유럽의회(EP), 각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회원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EU), 각종 정책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 4개 기관이 유럽연합의 핵심기구를 형성한다. 이 외에도 유럽사법재판소, 유럽 회계감사원,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유럽옴부즈맨, 유럽투자은행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료이사회는 외교, 일반, 경제·재무, 내무·사법, 고용·사회 정책·보건·소비, 경쟁, 교통·에너지, 농업·수산, 환경, 교육·청소년·문화이사회 등 10개의 각료이사회로 구성된다.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청소년관련 정책은 청소년을 비롯해 교육과 문화 등 유관된 분야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유럽연합 회원 각국의 교육 및 문화, 청소년관련 정책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소속 23개 전문국 중 하나인 교육 시청각 문화집행국(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EACEA)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서 교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선정하고 지원하면, EACEA는 ▲ 교육 ▲ 문화 ▲ 청소년 ▲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등의 4가지 영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컨대 2013년 EACEA는 4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7개 지역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고 있다.

-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
-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
- 템푸스(Tempus)
- 문화
- 청소년행동(Youth in Action)
- 시민과 미디어를 위한 유럽(Europe for Citizens and Media)
-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협력 협약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참여, 교육, 고용·직업훈련·사회통합, 복지·개인의 자율성·문화, 유럽의 가치관·이동의 자유·국제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각 회원국마다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 언어, 빈곤층 등의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도 다양한 유럽 내 문화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으로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포럼이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청소년행동 프로그램(2007~2013)과 유럽연합 청소년전략(Youth Strategy: 2010~2018)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행동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에서 유럽 내 청소년을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유럽 시민권, 젊은 유럽인들 간의 연대감 및 관용의식을 장려하고 유럽연합의 미래 형성에 청소년층의 적극 참여를 목표로 삼는다. 또한 청소년행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젊은 층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간의 이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청소년행동 프로그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제출되는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이 중 선정된 프로그램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행동 프로그램은 ▲ 유럽의 청소년(Youth for Europe) ▲ 유럽봉사활동서비스(European Voluntary System: EVS) ▲ 세계의 청소년(Youth in the World) ▲ 청소년지원시스템(Youth support system) ▲ 청소년분야에서 유럽협력을 위한 지원(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youth) 등 5개의 행동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올해가 청소년행동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해이어서 이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보고서가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유럽연합 청소년전략(2010~2018)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 및 평등한 기회제공과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시민이 되고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 내 청년실업률이 점증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고용 및 취업·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시민성 함양은 유럽공동체의 유지와 관련된 전통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유럽연합 청소년전략(2010~2018)에 도달하기 위한 8개 분야의 계획 및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3〉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교육 및 훈련	양질의 교육 및 훈련에 청소년의 동등한 접근 강화. 청소년활동 및 기타 비공식적인 학습의 기회 개발. 정규교육 및 비공식적인 학습 사이에 보다 나은 연계 제공. 교육과 훈련 및 노동 시장 사이의 이해 개선. 초기 학교중도탈락의 감소
취업과 창업	고용전략에 청소년들의 관심사 통합. 노동시장에 대한 필요로 기술준비에 투자. 직업상담 및 상담서비스 개발. 일할 청소년들에게 가능성을 홍보하고 해외훈련을 제공. 양질의 traineeship 홍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조화를 위해 파트너들 간의 책임공유 홍보. 청년들의 창업 지원

건강과 웰빙	청소년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위원회 결의안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피트니스 및 스포츠 장려, 청소년 근로자와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교육기회 증진, 건강과 청소년정책 결정자들 간의 협력 및 보건정책에의 청소년참여 장려,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해 지역수준의 모든 이해당사자 동원,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청소년정보네트워크 동원, 청소년단체와 학교에서 또래 간 건강교육 장려
참 여	위원회의 구조화된 대화에 더하여, 유럽연합 국가 및 위원회는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에 의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참여 권장을 추구, 대화방법,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치 및 금융지원, 정보 및 통신 기술, 어린 연령부터 참여하는 학교의 '참여학습' 프로그램 제공, 공공기관과 청소년들 간의 토론 장려 등
자원봉사활동	유럽연합 전역에서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의 이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주최자간 협력을 강화(2008년 개최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이동에 관한 이사회 권고'),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사회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더 넓은 참여기회를 확보하여 유럽 자원봉사 서비스를 보완하려고 노력
사회적 수용	유럽연합의 유럽 2020전략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유럽공약 중 경제성장 및 개발을 위한 전략이 사회적 응집력과 사회적 수용에 대한 강력한 차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인식
청소년과 세계	기후변화, 유엔 MDGs, 인권 등과 같은 글로벌 문제들에 대한 정책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와 기여를 증진시키는데 목적
창의력과 문화	유럽연합 회원국과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창조적인 능력개발과 문화 경험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문화, 뉴미디어 및 문화 간 역량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 추진, 청소년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혁신을 위한 능력 지원

## 나. 영국

영국 정부의 교육 및 청소년관련 담당부처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이다. 교육부는 2010년 5월 12일 교육과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정부부처로 조직되어 2013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 영국에서 교육 및 아동·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명은 교육 기술부였는데, 2007년 6월 교육기술부가 아동·학교·가족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기존의 교육 기술부에서 다루던 고등(대학)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새로운 부서인 혁신·대학·기술부로 이양함으로써 아동·학교·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아동·학교·가족부는 교육기술부보다 더욱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을 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부처의 개편과 더불어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아동·학교·가족부가 새로 개편되기 전만 해도 영국에서는 청소년정책을 교육기술부의 평생교육관련부서에서 담당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전담부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동·학교·가족부의 출범으로 인하여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책이 '청소년국'으로 이양되어 청소년정책의 전문성과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영국 정부조직이 2010년 5월 12일에 개편되면서 아동·학교·가족부에서 교육부로 관련업무가 다시 이관되었다. 아동·학교·가족부에서 청소년국이 신설되어 청소년정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에 비해, 교육부



에서는 과거 아동가족국과 학교국은 그대로 존치하였지만 청소년국을 폐지하여 상대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위축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성인교육, 기술, 평생학습국이 신설되어 평생교육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다.

현재 영국의 교육부가 지향하는 비전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정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다. 이러한 비전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 주기, 둘째, 부모에게 선택권 주기, 셋째, 극빈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넷째, 전체적인 교육 체계를 향상시키기 등이다.

영국의 청소년(14세~18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영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다양한 청소년관련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함께 주도해 왔지만, 1970년대 초기 지방정부의 행정개혁과 경제침체로 인해 지방수준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큰 책임을 맡아 왔음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대상자인 청소년의 연령이 최근에는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대표적인 청소년정책 중 하나인 커넥션즈(Connexions)에서 13~19세의 청소년(장애나 학습문제가 있는 경우는 24세까지)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영국에서 청소년정책의 대상연령이 과거보다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 2월 출판된 「Positive for Youth; A new approach to cross-government policy for young people aged 13 to 19」를 보면 청소년정책 대상연령이 커넥션즈와 마찬가지로 13~19세의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정책에서 16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영국의 의무교육이 16세에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6세 이전에는 교육이나 기술, 보호의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이 이루어 지는 반면, 16세 이후에는 이보다는 자립, 고용, 직업,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이 전개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 교육부가 추구하는 비전과 더불어 영국정부는 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학비보조금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의무교육기간이 지난 청소년들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9월 16~19세 취약청소년 대상 학비보조금 지원정책인 ‘16~19세 버서리 펀드(16 to 19 bursary fund)’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영국 교육부는 이 학비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즉, 2013년 5월 17일 영국 교육부는 ▲ 학비보조금을 지원받는 학생규모와 특성 ▲ 정책 영향력 평가 ▲ 각 교육기관의 학비보조금 지원결정방식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학비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부지원금은 취약계층 청소년 학비 보조금(Defined Vulnerable Group Bursaries: DVG), 재량적 학비 보조금(Discretionary Bursary)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전달되었다.

평가결과, 2011~2012학년도에 DVG 학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청소년의 수는 총 2만 7,400명, 재량적 학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청소년의 수는 25만 1,800명으로 추산되었다. DVG 및 재량적

학비보조금의 신청자와 수급자들은 서로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제시하고 있어 학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더 큰 특정그룹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이 재량적 학비보조금의 수혜자로 적합한지 판정하기 위해 소득과 관련된 기준(무료학교 급식대상자 여부, 생계지원 여부, 가계소득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학생 개인의 재정 상황, 교통비, 필요장비 구입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량적 학비보조금은 대부분이 교통비 또는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교육기관 중 1/4 이상이 학비보조금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했으며, 전체 지원금 중 현물의 비중은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 중 2/3는 학비보조금 정책이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지원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영국의 대표적인 청소년관련 입법으로는 교육법(Education Act 2011), 교육감사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 아동법(Children Act 2004), 아동·학교·가족법(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ct 2010),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 교육기술법(Education and Skill Act 2008), 도제·기술·아동·학습법(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 등이 있다. 이 중 2011년 1월 발의되어 2011년 11월 15일 개정된 교육법(2011)은 영국정부가 교육 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모든 아동이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법은 2개월 후인 2012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교육법이 2011년에 개정된 것은 「교수의 중요성: 학교백서(The Importance of Teaching: Schools White Paper)」로 인한 것이다. 2011년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훈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와 대학에 대한 자유를 보다 확충하며, 교육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법(2011)은 총 10장 8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의 훈육과 7장의 16세 이후 교육과 훈련에 관한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1988년 교육개혁 이전, 1988년 교육개혁과 국가교육과정, 1988년 교육이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1988년 교육개혁 이전의 청소년정책은 다소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1988년 이전까지의 청소년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은 양성 평등교육, 여자청소년을 위한 교육, 직업에 관한 교육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진보주의 교육관은 영국 청소년교육의 흐름을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것으로 전환하였다.

1988년 영국의 교육개혁과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시기에는 지방정부보다 중앙 정부에 교육과 관련된 힘을 강화시켰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모든 청소년정책은 새롭게 도입된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력강화와 학업성취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강화와 더불어 교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이 학교운영정책에 관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한편, 1988년 교육이후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 청소년

복지에 관한 정책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종합적 복지서비스 성격을 가진 커넥션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커넥션즈’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대신하는 정책으로 2006년 당시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 Skills)가 제시한 아동과 학습자를 위한 5개년 전략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새롭게 개편된 아동·학교·가족국(DfCSF)에서도 그대로 이어 받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이다.

현재 영국 교육부 청소년(young people)관련 정책주제들을 소개하면, ▲ 우리의 미래-종단 연구 ▲ 자격취득과 학습 ▲ 학생지원 ▲ 참여 ▲ 국가시민지원 ▲ (자기 훈육 및 팀워크 같은) 군사 기풍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다. 독일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다. 이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참여를 권고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내외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화,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여러 대책들·노력들과 그에 따르는 협력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원이라는 큰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 작동하는 청소년정책들은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에 근거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명시된 여러 정부조직과 제도들은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주체들로 작동한다.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지원구조와 관련해 우선 연방공화국인 독일의 국가 최고 행정기구로써의 연방정부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여 각 주(州)정부를 총괄하는 청소년지원의 장려와 고무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독일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 청소년자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지원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자문을 받는다.

셋째, 각 주 정부는 임기 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의 청소년지원조직의 기본 골격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한 사항들은 각 주의 관련 법규에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들은 주 자치단체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정책 업무에서 실질적인

실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청(Jugendamt)과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의 과제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 전국에 청소년청이 구성되도록 정하여 자치단체 행정관청의 다른 영역들과 구별되게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보고서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4조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청소년들의 현황과 청소년지원의 노력과 시행들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따로 청소년보고위원회(Jugendberichtsk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고 실질적인 부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하위부서인 청소년부이며, 지역차원에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다. 연방정부에서는 청소년부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며, 지역차원에서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실무기관인 청소년청이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큰 특징은 아동·청소년은 물론 가족 및 노인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독일은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과 연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교육부 혹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독일만이 갖는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크게 세계아동권리, 아동·청소년보호, 통합(integration), 관용과 민주주의, 참여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정책영역은 다시 청소년복지, 범죄·극우주의·외국인 적대행위 예방, 아동·청소년보호와 폭력보호, 사회통합, ‘연방아동·청소년 계획’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활동, 사교(邪交) 집단과 사이코집단 관리, 아동·청소년지원, 아동 보육관리, 중앙과 지방연계 전국 청소년정책 공동사업,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청소년지원, 유럽 청소년정책들과 같은 관련 청소년정책들로 나누어 있다. 이외에도 독일은 1964년 이래 정부와 민간 협력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독일 청소년지원 주간(Deutscher Jugendhilfetag)과 최근까지 범사회적 프로젝트로 기획된 국가행동계획(Nationaler Aktionsplan: NAP, 2005~2010) 등이 수립되어 실행된 바 있다.

독일에서 청소년지원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복지, 보호 등을 모두 묶는 총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젝트는 작게는 사회적·교육적 취약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사회적 배제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복지관련 프로젝트로 볼 수 있고 크게는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조력하고 지원하는 포괄적인 청소년지원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에서는 청소년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전인적·정치적·사회적·보건적·문화적·자연환경적·기술적 교육의 내용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교육

- 스포츠, 오락, 가정과 관련된 청소년 프로젝트
- 국제청소년교류
-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 청소년상담

독일의 청소년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수행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별 자치권이 인정되므로, 각 주 별로 내용들이 상이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청소년 사업으로는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과 바이에른 주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 드레스덴의 청소년사회통합사업 등이 있다.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 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집단들이 마을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지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청의 전문 인력이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돌보는 일과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적 워크숍과 강연, 코스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은 클릭(Klick)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관련 기관에게 워크숍이나 부모강연, 교사 보수교육, 체험교육적 사례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중독이나 폭력, 인종차별, 유해매체 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예방 프로젝트이다. 드레스덴은 베를린, 라이프찌히 등과 함께 과거 동독의 핵심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동서독 성장세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다.

## 라. 프랑스

프랑스 청소년정책은 중앙부처차원에서는 보건·청소년·체육부(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et des Sports)내 청소년대중교육실(la Direction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 DJEP)이고, 지방단위에서는 각 주정부와 함께 국립청소년대중교육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 INJEP)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교육기관이자 동시에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허브센터 역할도 담당한다.

프랑스의 청소년관련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지원, 청소년사업 등에 관하여 특별법으로 제정해 놓지 않고, 일반법률에 청소년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동보호법, 교육법, 사회활동 및 가정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에 청소년을 위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은 크게 청소년정보정책,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

정책(행동하려는 욕구 프로그램), 바캉스·여가센터운영, 사회·문화활동, 국제교류활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정보정책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발달된 각 지역 정보망에 근거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정보들을 청소년 및 가족,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등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정보망과 사이버 청소년 특성의 발전과 프로젝트로 청소년 정보망 속의 멀티미디어 공간(사이버 커뮤니티 등) 축조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과 정부기관 간의 의사소통의 기회이자 매개로써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청소년의회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국가청소년의회(CNJ), 청소년체육단체 생활지방의회(CDJSVA), 지역청소년의회(Les Conseils locaux de la jeunesse) 등으로 구성된다. 행동하려는 욕구(Envie d' Agir) 프로그램은 청소년 참여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정부차원의 최초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 책임감, 참여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재능 표출, 수행능력, 창조적 활동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들의 사회 및 직업사회에 대한 동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바캉스·여가정책은 청소년 여가 시간 내에 물리적·도덕적 안전을 보장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질 높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사회·문화활동으로 프랑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청소년 여가시간 동안 건강한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업 및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교류활동과 관련해, 프랑스는 유럽을 비롯해 그 밖의 지역과 활발한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을 주관하는 담당자, 전문가 혹은 자원봉사자들 및 협회 책임자들을 고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 질 좋은 국제교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초를 세우고,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의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역차원의 청소년정책을 프랑스의 대표적인 도시인 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청소년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우선 취약계층 예방프로그램들은 예상가능한 여러 청소년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취약계층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 교육 프로그램은 21개의 협회에서 64개 팀의 길거리 교육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주기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위기청소년들을 최일선에서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치료프로그램은 특별한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미혼모, 약물중독, 불법체류 외국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쉽거나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이외에 파리는 교육청과 함께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마. 핀란드

핀란드의 청소년정책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교육문화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화부 산하 문화·스포츠·청소년정책국의 청소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문화부는 청소년관련업무의 총괄 조정과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는 청소년관련 다양한 활동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핀란드 청소년의 연령은 대개 15세에서 29세까지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0세부터 29세까지를 청소년정책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청소년사업을 위한 정책적 책임과 시행은 3단계로 나누는데, 전국차원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정부(the Provincial State Office)가, 지역차원에서는 각 지역당국(Local Authorities)이 청소년사업을 실행한다.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시·도와 같은 수준의 주 행정, 지역당국은 우리나라의 시·군·구 단위의 행정을 말한다. 지방조직에서는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과 개발을 위해 지방위원회(Regional Council)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역당국은 12개 주 432개 단위로 지역 내 청소년의 시민활동, 생활조건 개선, 국제적 협력지원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보호에 주력한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으로는 청소년법(Youth Act)이 있다. 이 법은 1972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1986년, 1995년, 2006년 등 거의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된 청소년법에는 청소년 성장과 독립 지원, 청소년들의 활발한 시민권 촉진(시민활동 증진), 사회적 권한 부여, 청소년들의 생활환경 개선(청소년 환경조건 개선) 등의 지원관련 법 조항 및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사업 및 정책에 관한 정부법(2006)에 의해 보완되었다. 여기에는 청소년정책 개발 프로그램 준비 및 이행, 청소년단체 지원계획, 청소년자문회의(Advisory Council for Youth Affairs), 청소년협회 보조위원회(Youth Organization Subsidy Committee)의 임원 구성과 임명업무에 관한 추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핀란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동안 핀란드에서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총체적인 청소년정책이 미비했다. 몇몇 지역당국에서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청소년법이 제정되고 계속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청소년정책수립 및 지방·지역단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중 주요 내용은 청소년자문회의, 방과후 학생클럽, 청소년워크숍(작업장) 활동, 약물남용 예방 청소년 복지사업, 다문화주의 및 이주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청소년문화행사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자문회의를 통해 매년 시행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하였다.

핀란드의 최근 청소년정책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기에 청소년활동과 접목된 근로경험을 증대시켜 이를 진로와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기반을 확충하고 직업역량 강화 및 진로지도 이행 및 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바.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부처가 아동 및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는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이다. 교육연구부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방과후 학교, 초등교육 특수학교 및 국가의 감독을 받는 자립학교 등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며, 교사훈련, 학교행정 프로그램, 교재개발과 장애아동 교육 등도 담당하고 있다. 교육연구부 산하 행정기구 중 교육정책과 관련된 기구로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국립학교개선위원회(Swedish 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 스웨덴 특수학교 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pecial Needs Educ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보육기관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가치들과 기본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시설관리, 관련 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한다.

보건사회부의 사회보험 분과에서는 가족수당, 아동수당, 연금, 산재보험 등의 현금급여 및 아동이나 가족관련 수당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분과에서는 일부 업무로 청소년보호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보건사회부 산하 중앙행정기구 중 아동옴부즈맨(Children's Ombudsman)이 있다. 아동옴부즈맨은 아동 및 청소년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아동정책 이행을 평가하는 정부기구이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약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스웨덴 국제 입양국(Swedish Intercountry Adoptions Authority)도 보건사회부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기구로서 입양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시설보호국(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은 업무의 일부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시설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직접적인 정책 및 사업서비스 제공자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에는 아동보육 및 청소년위원회(Child Care and Youth Committee), 사회복지이사회(Social Welfare Board) 혹은 지역위원회(District Committee) 등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및 청소년관련 서비스에 대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이양형태를 갖고 있다. 단,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의 경우,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

스웨덴 정부의 청소년정책에는 모든 공공서비스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주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네 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다. 네 가지의 원칙은 자원(resource), 권리(right), 독립과 자립(independence and self reliance) 그리고 다양성(diversity)이다.

첫째, '청소년들이 자원'이라는 원칙은 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동인이란 점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 자신들의 독특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가치관이



현재와 미래사회생산의 주요한 원천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런 자원의 관점은 비단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양성평등의 관점에 서서 청소년 자신의 경제적인 활동과 대중운동 등을 통해 다양한 민주적 과정과 공공분야 등에서 발달을 경험하고 참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들도 사회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계획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인 안전은 물론이고 건강과 역량개발의 기회를 적극 보장받아야 하며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제공의 권리를 갖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독립과 자립’이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청소년기가 보다 큰 독립과 자립으로 가는 발전적 단계라는 점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독립과 자립의 의미는 부모로부터의 분리과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삶의 의존성을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에 대한 강압과 억압, 구속,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은 청소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제거되어야 할 요소들로 꼽고 있다.

넷째, ‘청소년들은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는 원칙은 그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은 매우 소중한 것이며 민주주의 속에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인이 만들어낸 틀 안에 맞추어지는 존재가 아니며, 그들의 상황과 여건은 각자의 삶의 배경과 맥락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모든 공공수준의 서비스는 이런 청소년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고, 그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네 가지의 원칙 속에서 국가수준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삶의 안녕에 대한 진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및 사업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영향력 포럼(influence forum), 방과후 여가 및 보육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여가시간센터, 보육가정, 개방 여가활동), 여가 및 문화 활동,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정책 프로그램(소외된 지역 내 학교 강화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학생 학대에 대한 보호 강화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주택제공 관련 정책 프로그램(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 주택을 확보하거나 세를 얻는 환경개선 프로젝트),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계획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향상 프로젝트, 알코올 및 약물사용 예방 프로젝트) 등이 있다.

## 가. 미국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들 수 있다. 교육부는 법제상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 및 서비스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집행은 시나 카운티 등과 같은 지방정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속 차관보 조직인 아동가족실(ACF)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아동가족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간 서비스(human service)를 제공하며, 특히 그들 스스로를 돕기 위한 미국의 주요한 정부기관으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대표적인 부서이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외의 부처에서도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노동부는 청소년고용 및 실업대책, 미성년자 고용의 안전 대책,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제공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고, 농림부는 농촌청소년활동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교정국, 청소년사법과 비행예방사무국 등을 두어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치유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미성년 재판 및 미성년 비행예방활동 등을 주 활동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무부는 청소년단체 등의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도시청소년 프로그램인 Youth Build 프로그램을 주무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각 단위별로 독자적인 청소년정책과 다양한 제도들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행정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주정부 산하에 청소년서비스국 및 복지국을 두어 아동 및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고, 카운티에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규모가 거대하고 다양한 단체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영예산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National Collaboration for Youth와 US Student Association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소년관련 법은 각 부처의 청소년사업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관련 법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청소년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하원에 소개되고 2006년 법률로써 서명된 연방청소년정책조정예관한법률(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FYCA)은 Federal Youth Department Council에 의해 제정되었다. FYCA는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2001년 의회에서 통과된 No Child Left Behind(NCLB)는 미국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과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NCLB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된 연방초중등교육법이다. NCLB의 담당국은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국이다. 그러나 NCLB는 교육부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본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NCLB는 보편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으면서 낮은 교육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소외계층의 학생, 소수민족 학생,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각 주에서 정한 학업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빈부격차에 의한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즉, NCLB 프로그램을 통한 소외계층의 학력수준 향상은 미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의 전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NCLB는 책무성(accountability), 자율성(freedom), 방법론(methods), 선택권(choice)의 4대 원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바로 직결되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교원들의 자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NCLB가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2012년 3월 초중등교육법에 다시 그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복지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앞으로도 집중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밖에 2003년 개정된 가출·노숙청소년법은 집이 없는 청소년(homeless young people)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력투자법은 광범위한 청년취업 및 고용과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동부에 의해 제안된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은 청소년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급과 추가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증진법’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 유지와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he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은 아동학대방지 및 관리법이 2003년에 개정된 것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문화상호교류법은 미국 국제청소년교류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과 치료, 교정중심의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진단에 기초하여 최근 긍정적인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긍정적 기회와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지원 등에 정책적인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소외 청소년에 대한 보다 나은 관리, 확실한 책임, 청소년과 가족의 연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이는 향후 연방정부 청소년정책의 기본 틀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은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조력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청소년발달은 오늘날 미국 청소년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발달은 청소년보호처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청소년육성이나 지도처럼 성인을 청소년이 이끈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 스스로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발달은 청소년들이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직업적, 도덕적, 정서적으로 유능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긍정적인 활동과 경험들을 통해서 당면할 생애주기를 청소년 스스로가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청소년관련 사항 중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변화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청소년 멘토링에 관한 사회적 주목, 그리고 청소년 수감자 수의 감소이다.

먼저, 사이버폭력의 경우, 청소년들 사이의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이것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주정부에서는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의 주에서는 이미 2008년 이전에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고, 사이버폭력을 법으로 규정한 주 정부는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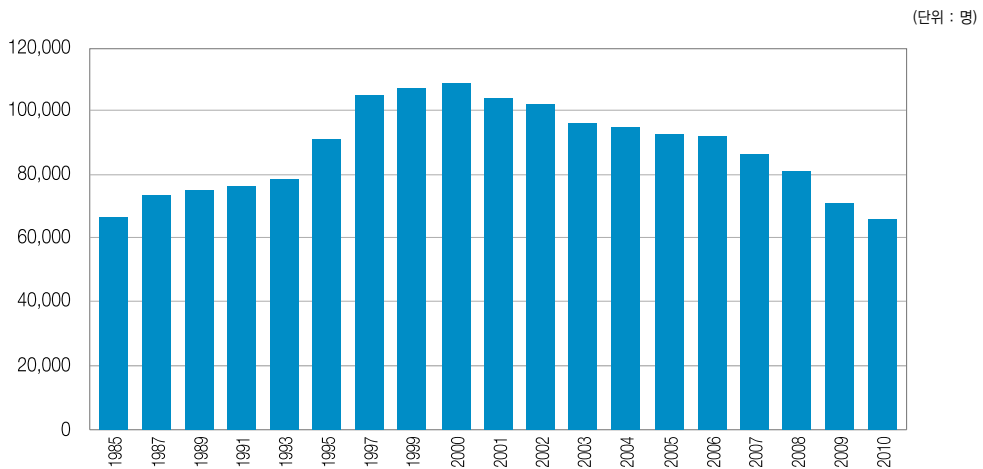
관심을 가질만한 또 다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멘토링이다. 청소년 멘토링은 청소년의 학업을 도와주는 멘토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시설청소년, 소수청소년 등 취약계층 전반의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 대상 청소년 집단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미국의 전국청소년사법네트워크(National Juvenile Justice Network)와 텍사스 공공정책 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이 2001년~2010년 사이 청소년 수감자 수 변화추이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새로운 보고서 「The Comeback States: Reducing Youth Incarceration in the United States」에 담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 수감시설의 청소년 수는 2000년 10만 8,802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10년 하반기에 6만 6,322명으로 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커뮤니티 기반의 다른 징벌 또는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사소한 범죄로 시설에 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수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미시시피,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등

9개 주에서는 2001년 대비 2010년 청소년 수감자 수가 38%나 감소해 전국 평균인 32%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이들 9개 주를 컴백주(Comeback States)라 명명하고 공통된 특성 등을 검토하면서 수감자 수 감소에 기여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정책특성이 보고되었다. 첫째, 증거기반의 저렴한 치료 대안(수감형 대체 목적)의 공식화 및 재정지원 제공, 둘째, 청소년 범법자들이 불필요하게 보호소로 보내지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위험 평가,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등) 도입, 셋째, 수감시설을 폐쇄하거나 또는 규모를 축소하여 처벌 시 다른 대안을 고려하도록 유도, 넷째 청소년 훈육과 관련하여 학교가 사법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 다섯째, 작은 범법행위에 대한 수감형 처벌 금지, 여섯째, 청소년 수감자와 관련한 예산체계 재정비, 수감시설 보다는 대안 프로그램들에 더 많은 예산 편성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의 발간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의 청소년 범법자수 데이터와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수감자와 관련한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1-3-1] 2001년~2010년 미국 청소년 수감자수 변화 추이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해외청소년정책동향 모니터링 보고서(제33호).

## 나. 일본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의 정비와 중장기계획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일본정부는 2003년 6월,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내각 부(副) 총리 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청소년육성추진본부 산하에는 부(副) 본부장(관방장관, 문부과학성대신, 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등)으로 구성된 회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의 과장급회의, 청소년국제교류관련 연락회의, 청소년 비행대책을 위한 과장급회의, 커리어교육추진회의 등을 설치하여 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정책의 체계성, 구체성을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 계획마련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책정한 바 있다. 2006년 6월에는 청소년들을 비행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안전 및 안심 추진계획-비행,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마련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청소년들의 커리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리어교육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둘째,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유아기에서 성인기 이전 단계까지 매우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을 보호, 지원, 육성, 개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영유아기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의 확충, 식생활 개선을 통한 모-자 보건 증진, 육아서비스 확충, 탁아시설 및 유치원 서비스 개선 및 제3자에 의한 서비스 평가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기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체제 정비,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 기초학력 배양,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사춘기 청소년연령대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취업능력 및 취업의식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주요정책으로는 대학교육의 충실,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시스템의 구축,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셋째, 청소년정책을 문제 상황별로 설정함으로써 정책과제 및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상황의 내용으로는 먼저, 학습장애(LD)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장학금 제도의 확충, 생활보호,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행소년들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원조교제, 집단따돌림(이지메)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장애, 비행 및 학교중도탈락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있다.

넷째, 청소년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 정비에 관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인력의 배치(의료, 복지, 심리상담, 진로상담분야 전문가 등), 청소년지원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학교 내 상담체제의 구축,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 학교재량권의 확대, 선택제 수업의 확충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의 조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정보사회, 소비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회 및 제도적 장치로 Town Meeting, 모니터링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회 계몽 활동, 사회성 함양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청소년정책 특징에 기초하여 최근 일본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일본 내각부는 심각한 비행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고, 2010년 5월 27일에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에 대한 블로킹(blocking : 열람방지조치)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포르노 근절 종합대책안을 공포했다. 또한 내각부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인터넷환경 정비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는 자녀용과 보호자용 2가지 팸플릿을 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각부에서는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11년 1월 7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고교생에게도 진로(career) 교육을 도입하여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육성하도록 하고, 2012년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시범학교를 선정하였다. 3월 8일에는 일본 내각부에서 필터링 보급에 관한 관계각료 간담회를 열고, 국가 공안위원회,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휴대전화에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필터링 기능)을 보급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월 22일에는 일본 문부성에서 지진피해 학생 지원책을 발표했고, 지진피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업료를 감면해 주었다. 6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 자살원인조사 지침을 문부성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8월 20일에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켜 비행과 등교거부, 은둔형 외톨이 등 문제청소년들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였다. 9월 28일에는 일본 시즈오카(靜岡)현에서 고등학생 대인관계 지원사업을 개시하여 2011년 10월부터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인간관계 구축 및 감정 컨트롤 훈련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개시했다.

일본의 고질적인 청소년문제 중 하나는 은둔형 외톨이다. 은둔형 외톨이라 함은 학교나 직장 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타인과의 교류를 피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06년도 자료에 따르면 20~49세 국민 중 과거에 은둔형 외톨이였던 사람은 1.14%, 현재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가정은 0.56%(약 26만 가구)로 집계되었다. 2010년 내각부 조사(조사대상 15~39세)에 따르면, 연령별 비율은 15~19세 15%, 20~24세 20%, 25~29세 19%, 30~34세 22%, 35~39세 24%로 집계되었다. 은둔형 외톨이 해소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9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와 정령지정도시(우리나라 광역시와 유사)에 은둔형 외톨이 상담창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였으나 인력과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어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지원할 서포터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모집대상은 은둔형 외톨이 경험자와 가족, 자원봉사 경험자, 대학생 등이며 서포터는 의무적으로 47개 광역자치단체 및 20개 정령지정도시 산하 '은둔형 외톨이지역지원센터'에서 양성연수를 수강하도록 하였다. 1,742개 기초자치단체(시·정·촌)는 본인 또는 가족의 방문 요청을 받아 서포터 등록자들 중 인근 거주자를 선택하여 매달 1~2차례 해당가정에 파견하도록 하였고 서포터는 ▲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은둔형 외톨이 발견(해당 기초자치단체 보고), ▲ 방문지원, ▲ 은둔형외톨이지역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은둔형 외톨이 연계, ▲ 지역사회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모임 개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의뢰한 활동에 일당과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3년 2월 기준으로 은둔형외톨이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한 광역자치단체와 정령지정도시가 67곳 중 36곳에 불과하여 서포터 양성기관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정비 등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이외에도 일본 총무성은 2013년 4월 청소년의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청소년의 스마트 폰 사용 동향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여야 하며, 관련사업자 즉, 이동통신 사업자와 SNS사업자, 사이트 감시 사업자 등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기업과 대학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의식 향상이 도모되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98년 11월 1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04년 지역사회개발·스포츠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Sports: MCDS)가 지역개발·청소년·스포츠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MCYS)로 개편되면서 MCYS가 청소년 주무부서가 되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로



바뀌면서 아동·청소년정책 주무부처가 되었다.

MSF는 싱가포르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방안 모색 및 관련정책 수립·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지역사회 및 국가와 관계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역동성과 역량개발 역시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임무로 삼고 있다. 2013년 현재 MSF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정책은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의 가정 및 지역사회 등에서의 재활과 지원 보장
- 아동청소년보호법(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CYPA)에 근거한 16세 이하 청소년의 돌봄, 보호, 재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준수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HCCAICA)에 관한 의무 준수
- 16세 이하 부모 통제 밖의 청소년 지원
- 범죄소년의 재활과 갱생
- 위기청소년의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응과 지원

## 라. 호주

호주에서는 교육·고용·노동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가 연방정부차원에서 호주 전역의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호주의 청소년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반면, 6개 주와 2개의 특별행정지역에는 독립적인 교육부서가 존재한다. 특히 교육·고용·노동관계부에는 2008년 청소년과를 설립해서 호주의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주요 원칙은 청소년들이 호주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삶을 둘러싼 환경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현재의 청소년세대에게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호주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법은 2004년 개정된 교육법(Education Act 2004)이다. 이 교육법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무교육연령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학과 학제, 학령, 전학, 자격시험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조직과 운영, 교과내용, 학교 운용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호주에는 연방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도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각 주의 청소년관련 법들을 살펴보면, 법의 내용이 크게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그리고 교육에 관한 법으로 나누어진다. 호주의 지형적 조건상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 환경과 문화 환경을 수렴하여 각 주의 법이 처벌기준과 보호 기준 등에서 연령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는 비슷하고, 또

주마다 청소년 범죄자의 이송에 관한 법을 됴으로써 청소년과 아동 범죄자의 권리와 교정 교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청소년정책은 고용, 교육, 훈련 등의 분야, 노숙자 청소년, 정신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 조기 학교중퇴 및 장기실업 청소년과 같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좀 더 세분화되어서, 이민자 청소년과 토착원주민 청소년까지 포섭하도록 정책의 분야가 확대되었고,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호주 사회내의 인구감소와 맞물려 이민자를 환영하고 호주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이 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2009~2010년 제1차 Reconciliation Action Plan과 2011~2014년 제2차 Reconciliation Action Plan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들은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호주의 선거권이 18세 이상 시민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모든 정당은 유권자로서의 청소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교육·고용·노동관계부의 청소년국에서 여성, 아동, 토착원주민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중요한 정책대상이라고 밝힌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호주의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사회정의계획(Youth Social Justice Strategy)과 사회정의계획(Social Justice Strategy)인데 이는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에 주안점을 둔 계획이다.

호주정부는 고용·교육·훈련·청소년부 시절 「국가청소년정책: 원칙과 목표(A National Youth Policy: A Statement of Principles and Objectives)」의 발표를 통해 청소년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 부서에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경쟁적인 지구촌 경제의 변화에 호주가 탄력적이고도 역동적으로 적응하는 데 청소년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의 활성화와 극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이 학교의 교육과정안에 머무르는 동안,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기술을 습득하고, 성인의 삶을 계획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더십, 청소년 건강과 안전, 작업장에서의 의사소통, 영업수완과 고객과의 관계, 주식관리, 보안과 금융관리 등의 내용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중에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과 관련된 교육은 반드시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시부터 직업의 현장과 연관되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호주정부는 새로운 교육개혁에 임하고 있다. 2010년 4월 15일 발표된 「호주청소년을 위한 국가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Young Australians)」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호주정부의 비전은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연하게 자라는 것과 청소년들이 배우고 일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기회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최근 2010년 12월 7일에 호주브로드밴드 통신 디지털경제부(The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는 8~17세 청소년 위원들로 구성된 호주의 청소년 자문단(Youth Advisory Group) 및 사이버안전 실무협의회(Consultative Working Group on Cybersafety)의 자문을 통해 개발된 사이버안전 버튼(Cybersafety Button)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2011년 2월 17일에는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육 혁명(DER)의 일환으로 9~12학년 학생 전원에 컴퓨터 보급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컴퓨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2011년 7월 5일에는 정부에서 놓여준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진학 지원금을 제공했다.

2013년 6월 1일에는 교육·고용·노동관계부를 중심으로 학교교육부, 예술부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 및 단체들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크리에이티브 영스타(Creative Young Star: CYS)」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창조·공연예술 등의 분야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향후 800만 호주달러가 이를 위해 투자될 예정이다. CYS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 2013년 3월 13일에 국가적인 문화정책이자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문화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돈이 없어 기회를 얻지 못하는 25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개인 및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총 두차례 개인 23명, 단체 4곳을 지원할 예정이며 개인에게는 500호주달러, 단체에는 3,000호주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고용·노동관계부가 이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예술부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금은 관련 활동에 필요한 각종 요금, 여행비, 숙박비, 의류비, 장비구입비 등에 사용될 전망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화·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호주 정부는 향후 잠재적인 청소년의 역량 및 재능 개발과 각종 행사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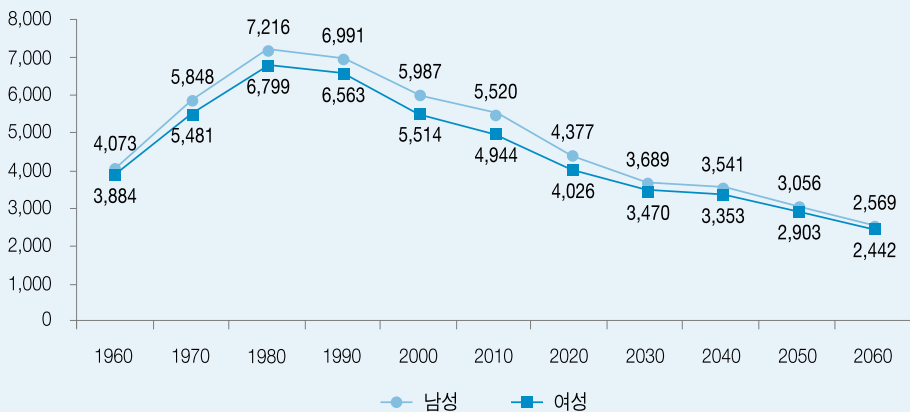


## 제2부 요약

2013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004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천만명중 20.0%를 차지해, 1980년 1,40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 2015년까지 약 85만명, 2015~2020년까지 5년간 120만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청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따라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도 1980년에 36.8%로 최고점을 나타낸 이후 2015년에는 19.0%, 2020년에는 16.3%, 2030년에는 13.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 2.77%로 총인구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80~1985년에는 연평균 -0.06%씩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5~2025년까지 10년 동안 -2%대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청소년 인구 전망(1960 ~ 2060)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2013), 장래인구추계 : 2010 ~ 2060.

##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가족

제1장 청소년 인구 현황과 전망

제2장 가족구성 및 변동

제3장 가족관계

## 제 1 장

# 청소년 인구 현황과 전망

### 1

## 청소년 인구 현황

2013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004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천만 명 중 20.0%를 차지하고 있다. 9~24세 인구 중 20세가 7.1%로 가장 많았고, 9세 인구와 10세 인구가 각각 4.7%로 청소년 인구 중 가장 적었다.

여자 1백 명당 남자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는 2012년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100.2명인 데 반해, 9~24세 청소년 인구는 111.7명으로 청소년의 남녀 간 인구규모 불균형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2세 인구의 성비는 116.5명으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비가 개선되고 있으나 9세의 성비도 107.8명으로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0~24세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1,4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742만 명, 여자 673만 명으로, 성비는 110.2명을 보이고 있다.

〈표 2-1-1〉 2013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단위 : 천명, %)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자	여자	성비
0세	456	-	3.2	236	220	107.0
1세	454	-	3.2	234	220	106.6
2세	482	-	3.4	249	233	106.7
3세	445	-	3.1	229	216	106.1
4세	451	-	3.2	232	219	106.0
5세	485	-	3.4	250	236	106.0
6세	456	-	3.2	235	221	106.3
7세	434	-	3.1	225	210	107.2
8세	442	-	3.1	229	213	107.1
9세	476	4.7	3.4	247	229	107.8
10세	473	4.7	3.3	246	227	108.2
11세	506	5.0	3.6	264	243	108.5
12세	586	5.8	4.1	305	281	108.4
13세	604	6.0	4.3	317	287	110.4
14세	618	6.2	4.4	324	294	110.0
15세	635	6.3	4.5	332	303	109.5
16세	654	6.5	4.6	343	311	110.2
17세	673	6.7	4.8	355	318	111.5
18세	687	6.8	4.9	365	323	113.1
19세	701	7.0	5.0	373	328	113.6
20세	710	7.1	5.0	378	332	113.9
21세	706	7.0	5.0	377	329	114.7
22세	690	6.9	4.9	371	319	116.5
23세	669	6.7	4.7	360	310	116.2
24세	649	6.5	4.6	342	307	111.6
계(9~24세)	10,039	100.0	-	5,297	4,741	111.7
계(0~24세)	14,145	-	100.0	7,416	6,729	110.2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2010 ~ 2060.

우리나라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960년 796만 명에서 증가하여 1980년에는 1,40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출산을 감소로 청소년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2010년에는 1,046만 명까지 감소했다. 2015년까지 약 85만 명의 청소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15~2020년까지 5년간 120만 명이 더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청소년 인구는 2035년에 709만 명, 2060년에는 50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에 전체 인구의 31.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0년에 36.8%까지 증가하였는데,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서서 1990년 31.6%, 2010년 21.2%까지 낮아졌다. 향후에도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19.0%, 2020년에는 16.3%, 2030년에는 13.7%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1960~1965년에 연평균 2.79%씩 증가하는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90~1995년 1.02%를 기록한 이후, 1%대 이하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0~2015년 사이 총인구는 연평균 0.48%씩 증가할 전망이며, 2031년부터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 2055~2060년에는 연평균 -0.96%씩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청소년 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 2.77%로 총인구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75~1980년 1.69%, 1980~1985년에는 연평균 -0.06%씩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5~2025년까지 10년간은 -2%대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감소폭은 줄어들 전망이나, 2055~2060년에도 연평균 -1.50%씩 감소할 전망이다.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	연평균 성장률	청소년인구			구성비	연평균 성장률
			전체	남성	여성		
1960	25,012,374	-	7,956,903	4,072,726	3,884,177	31.8	-
1965	28,704,674	2.79	9,120,576	4,699,931	4,420,645	31.8	2.77
1970	32,240,827	2.35	11,329,714	5,848,491	5,481,223	35.1	4.43
1975	35,280,725	1.82	12,885,563	6,651,771	6,233,792	36.5	2.61
1980	38,123,775	1.56	14,014,932	7,216,195	6,798,737	36.8	1.69
1985	40,805,744	1.37	13,974,697	7,187,699	6,786,998	34.2	-0.06
1990	42,869,283	0.99	13,553,357	6,990,839	6,562,518	31.6	-0.61
1995	45,092,991	1.02	12,751,383	6,581,311	6,170,072	28.3	-1.21
2000	47,008,111	0.84	11,501,436	5,987,274	5,514,162	24.5	-2.04
2005	48,138,077	0.48	11,027,943	5,782,388	5,245,555	22.9	-0.84
2010	49,410,366	0.52	10,464,647	5,520,262	4,944,385	21.2	-1.04
2015	50,617,045	0.48	9,609,808	5,060,151	4,549,657	19.0	-1.69
2020	51,435,495	0.32	8,403,212	4,377,332	4,025,880	16.3	-2.65
2025	51,972,363	0.21	7,425,882	3,839,964	3,585,918	14.3	-2.44
2030	52,160,065	0.07	7,158,631	3,689,035	3,469,596	13.7	-0.73
2035	51,888,486	-0.10	7,094,276	3,651,840	3,442,436	13.7	-0.18
2040	51,091,352	-0.31	6,893,525	3,540,529	3,352,996	13.5	-0.57
2045	49,810,211	-0.51	6,516,214	3,343,402	3,172,812	13.1	-1.12
2050	48,121,275	-0.69	5,958,537	3,055,842	2,902,695	12.4	-1.77
2055	46,124,771	-0.84	5,403,999	2,771,454	2,632,545	11.7	-1.93
2060	43,959,375	-0.96	5,010,838	2,569,329	2,441,509	11.4	-1.50

주 : 연평균인구성장률 =  $((P_t/P_0)^{\frac{1}{t}} - 1) \times 100$ .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2010 ~ 2060.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본적인 인구변동 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통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등 다양한 인구동태 지표가 작성되고 있다.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단위 : 명, 간수)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혼인	이혼
1970	1,006,645	258,589	748,056	295,137	11,615
1975	874,030	270,657	603,373	283,226	16,453
1980	862,835	277,284	585,551	403,031	23,662
1985	655,489	240,418	415,071	384,686	38,187
1990	649,738	241,616	408,122	399,312	45,694
1995	715,020	242,838	472,182	398,484	68,279
1996	691,226	241,149	450,077	434,911	79,895
1997	668,344	241,943	426,401	388,960	91,160
1998	634,790	243,193	391,597	373,500	116,294
1999	614,233	245,364	368,869	360,407	117,449
2000	634,501	246,163	388,338	332,090	119,455
2001	554,895	241,521	313,374	318,407	134,608
2002	492,111	245,317	246,794	304,877	144,910
2003	490,543	244,506	246,037	302,503	166,617
2004	472,761	244,217	228,544	308,598	138,932
2005	435,031	243,883	191,148	314,304	128,035
2006	448,153	242,266	205,887	330,634	128,035
2007	493,189	244,874	248,315	343,559	124,072
2008	466,000	246,000	220,000	327,715	116,535
2009	444,849	246,942	197,907	309,759	123,999
2010	470,171	255,403	214,768	326,104	116,858
2011	471,265	257,396	213,869	329,087	114,284
2012	484,550	267,221	217,329	327,073	114,31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12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48만 5천 명, 사망자 수는 26만 7천 명이었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자연증가로 인해 2012년 한 해 동안 약 21만 7천 명의 인구가 증가한 셈이다.

출생아 수 추이는 1970년 1백만 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절반 이하의 수준인 43만 5천 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 수 추이는 1970년 25만 9천 명에서 증가한 후 1980년대 후반 부터는 24만 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25만 명을 넘어섰다.

2012년의 혼인과 이혼 수준은 전년과 유사했다. 2012년 연간 혼인 건수는 32만 7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2천 건 감소했다. 2012년의 이혼은 11만 4천 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혼인은 1996년 43만 5천 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 30만 3천 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2007년에는 34만 건까지 늘어났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다시 31만 건까지 감소한 후 2010년 이후부터는 32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혼은 1970년에 1만 2천 건에서 1998년에는 11만 6천 건으로 약 열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16만 6천 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에 다시 12만 4천 건으로 증가한 후 현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2년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9.6명, 조사망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5.3명이었다. 2012년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차감한 자연증가율은 2012년 4.3명이었다.

2012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6.5건으로 2011년보다 0.1건 감소했고,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2.3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표 2-1-4〉 연도별 인구 동태율 추이

(단위 : 건(명)/1천명당)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출생률	31.2	24.8	22.6	16.1	15.2	15.7	13.3	11.6	10.2	10.2	9.8	8.9	9.2	10.0	9.4	9.0	9.4	9.4	9.6
조사망률	8.0	7.7	7.3	5.9	5.6	5.3	5.2	5.0	5.1	5.1	5.0	5.0	5.0	5.0	5.0	5.0	5.1	5.1	5.3
자연증가율	23.2	17.1	15.4	10.2	9.5	10.3	8.2	6.5	5.1	5.1	4.7	3.9	4.2	5.1	4.4	4.0	4.3	4.3	4.3
조혼인율	9.2	8.0	10.6	9.4	9.3	8.7	7.0	6.7	6.3	6.3	6.4	6.5	6.8	7.0	6.6	6.2	6.5	6.6	6.5
조이혼율	0.4	0.5	0.6	0.9	1.1	1.5	2.5	2.8	3.0	3.4	2.9	2.6	2.5	2.5	2.4	2.5	2.3	2.3	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 가. 출생

2012년의 출생아 수는 48만 5천 명으로 하루 평균 1,324명이 태어난 셈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서 20~30대의 미혼자 비중이 늘고, 초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출생은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2007년의 출생은 49만 명까지 증가했다. 2008년과 2009년은 출생아 수가 감소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단위 : 명, %, 인구 1천명당 명)

연도	출생아수	증 감		1일평균	조출생률
		증 감	증감률(%)		
1995	715,020			1,959	15.7
1996	691,226	-23,794	-3.3	1,889	15.0
1997	668,344	-22,882	-3.3	1,831	14.4
1998	634,790	-33,554	-5.0	1,739	13.6
1999	614,233	-20,557	-3.2	1,683	13.0
2000	634,501	20,268	3.3	1,734	13.3
2001	554,895	-79,606	-12.5	1,520	11.6
2002	492,111	-62,784	-11.3	1,348	10.2
2003	490,543	-1,568	-0.3	1,344	10.2
2004	472,761	-17,782	-3.6	1,292	9.8
2005	435,031	-37,730	-8.0	1,192	8.9
2006	448,153	13,122	3.0	1,228	9.2
2007	493,189	45,036	10.0	1,351	10.0
2008	465,892	-27,189	-5.5	1,273	9.4
2009	444,849	-21,043	-4.5	1,219	9.0
2010	470,171	25,322	5.7	1,288	9.4
2011	471,265	1,094	0.2	1,291	9.4
2012	484,550	13,285	2.8	1,324	9.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12년 출생아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출생아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이 121.9명으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25~29세)이 77.4명, 30대 후반(35~39세)이 39.0명 순으로 높았다. 미혼과 만혼이 늘면서 주요 출산연령층이 높아져, 2007년에 처음으로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더 높아졌다.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1997년 159.7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에는 절반 이하 수준인 77.4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30대 초반 출산율은 1997년 71.5명에서 2012년 121.9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5~19세	3.0	2.8	2.6	2.5	2.2	2.6	2.5	2.3	2.1	2.2	2.2	1.7	1.7	1.8	1.8	1.8
20~24세	54.2	48.3	43.3	38.8	31.4	26.5	23.6	20.6	17.8	17.6	19.5	18.2	16.5	16.5	16.4	16.0
25~29세	159.7	152.1	147.2	149.6	129.2	110.9	111.7	104.5	91.7	89.4	95.5	85.6	80.4	79.7	78.4	77.4
30~34세	71.5	71.2	72.3	83.5	77.5	74.5	79.1	83.2	81.5	89.4	101.3	101.5	100.8	112.4	114.4	121.9
35~39세	15.4	15.2	15.3	17.2	17.0	16.6	17.1	18.2	18.7	21.2	25.6	26.5	27.3	32.6	35.4	39.0
40~44세	2.3	2.3	2.4	2.5	2.4	2.4	2.4	2.4	2.4	2.6	3.1	3.2	3.4	4.1	4.6	4.9
45~49세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합계출산율 <sup>2)</sup>	1.52	1.45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23	1.24	1.30

주 : 1) 15~49세 여자인구 1천명당 명.

2)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 여자 1명당 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2012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7명으로 2011년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생성비는 105명을 기준으로  $\pm 2$ 명(103~107명) 수준을 의미한다. 출생성비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1994년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강화되면서 출생성비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정상성비 범위인 107.8명까지 감소했다.

자녀의 출생순위별로는 성비 차이가 있었다. 2012년 첫째 아와 둘째 아의 성비는 105.3명과 104.9명으로 정상성비를 보이나, 셋째 아 이상인 경우는 109.2로 남아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셋째 아 이상의 성비도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2011년 이후에는 셋째 아 이상의 성비가 110명 이하로 떨어졌다.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 여아 1백명당 남아수)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출생성비	108.3	110.2	109.6	110.2	109.1	110.0	108.7	108.2	107.8	107.5	106.2	106.4	106.4	106.9	105.7	105.7
첫째아	105.2	106.0	105.6	106.3	105.5	106.5	104.9	105.1	104.8	105.7	104.5	104.9	105.1	106.4	105.0	105.3
둘째아	106.3	108.1	107.5	107.4	106.4	107.3	107.0	106.2	106.5	106.0	106.0	105.6	105.8	105.8	105.3	104.9
셋째아 이상	136.1	146.0	143.3	144.2	141.5	141.4	136.9	133.0	128.5	121.9	115.7	116.7	114.3	110.9	109.5	109.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 나. 사 망

2012년 총 사망자 26만 7천 명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2,4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9%를 차지한다. 청소년 사망자 중 10~14세는 13.1%(325명), 15~19세는 36.4%(905명), 20~24세는 50.5%(1,255명)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전체 사망자에 비해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운수 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높다. 청소년 사망의 64.0%는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었고,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14.2%,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6.0%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체 연령의 사망원인은 신생물이 28.1%,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22.1%,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단위 : 명, %)

사망 원인	총 사망		청소년 사망						
	계	구성비	계	구성비	성별		연령별 구성비		
					남	여	10~14세	15~19세	20~24세
전 체	267,221	100.0	2,485	100.0	1,673	812	100.0	100.0	100.0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7,106	2.7	24	1.0	13	11	1.2	1.0	0.9
신 생 물	74,990	28.1	353	14.2	226	127	23.7	15.0	11.2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과 면역 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626	0.2	16	0.6	14	2	1.2	0.6	0.6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2,543	4.7	18	0.7	9	9	2.2	0.3	0.6
정신 및 행동장애	5,574	2.1	5	0.2	4	1	0.6	0.1	0.2
신경계통의 질환	8,138	3.0	149	6.0	95	54	11.7	6.7	4.0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1	0.0	0	0.0	0	0	0.0	0.0	0.0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2	0.0	1	0.0	1	0	0.0	0.1	0.0
순환기계통의 질환	58,960	22.1	123	4.9	82	41	5.8	4.4	5.1
호흡기계통의 질환	22,770	8.5	40	1.6	21	19	1.5	2.3	1.1
소화기계통의 질환	11,276	4.2	18	0.7	9	9	0.6	0.6	0.9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443	0.2	0	0.0	0	0	0.0	0.0	0.0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 조직의 질환	1,767	0.7	18	0.7	7	11	0.3	0.7	0.9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5,438	2.0	7	0.3	6	1	0.3	0.0	0.5
임신, 출산 및 산후기	56	0.0	3	0.1	0	3	0.0	0.0	0.2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764	0.3	0	0.0	0	0	0.0	0.0	0.0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499	0.2	44	1.8	26	18	4.9	1.8	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25,115	9.4	75	3.0	49	26	1.8	2.4	3.7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31,153	11.7	1,591	64.0	1,111	480	44.0	64.0	69.2

자료 : 통계청, 2012년 사망원인통계.

## 다. 혼인

2012년 한 해 동안 총 혼인건수는 32만 7천 건(쌍)으로, 하루 평균 896건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2012년의 혼인은 전년도에 비해 0.6%(2,014건) 감소했다. 최근 혼인 추이는 2004년 이후 4년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연속해서 감소하였으며, 201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6.5건으로 전년보다 0.1건 감소했다.

〈표 2-1-9〉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 건)

연도	혼인건수	증감		1일평균	조혼인율 (천명당)
		증감	증감률(%)		
1995	398,484	-	-	1,092	8.7
1996	434,911	36,427	8.4	1,188	9.4
1997	388,960	-45,951	-11.8	1,066	8.4
1998	373,500	-15,460	-4.1	1,023	8.0
1999	360,407	-13,093	-3.6	987	7.6
2000	332,090	-28,317	-8.5	907	7.0
2001	318,407	-13,683	-4.3	872	6.7
2002	304,877	-13,530	-4.4	835	6.3
2003	302,503	-2,374	-0.8	829	6.3
2004	308,598	6,095	2.0	843	6.4
2005	314,304	5,706	1.8	861	6.5
2006	330,634	16,330	4.9	906	6.8
2007	343,559	12,925	3.8	941	7.0
2008	327,715	-15,844	-4.8	895	6.6
2009	309,759	-17,956	-5.5	849	6.2
2010	326,104	16,345	5.3	893	6.5
2011	329,087	2,983	0.9	902	6.6
2012	327,073	-2,014	-0.6	896	6.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혼인편), 각 년도.



## 라. 이혼

2012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1만 4천 건(쌍)으로 1일 평균 313건(쌍)이 이혼했다. 2012년의 이혼건수는 전년과 거의 유사했다. 이혼은 1995년 6만 8천 건에서 증가하여 IMF 이후인 1998년에 11만 건을 넘어섰고, 2003년에는 16만 6천 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이혼건수는 2011년과 2012년에 들어서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이혼건수는 이혼숙려제의 도입으로 둔화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2012년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도 2.3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표 2-1-10〉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단위 : 건)

연도	이혼건수			1일평균	조이혼율 (천명당)
		증감	증감률(%)		
1995	68,279	-	-	187	1.5
1996	79,895	11,616	14.5	218	1.7
1997	91,160	11,265	12.4	250	2.0
1998	116,294	25,134	21.6	319	2.5
1999	117,449	1,155	1.0	322	2.5
2000	119,455	2,006	1.7	326	2.5
2001	134,608	15,153	11.3	369	2.8
2002	144,910	10,302	7.1	397	3.0
2003	166,617	21,707	13.0	456	3.4
2004	138,932	-27,685	-19.9	380	2.9
2005	128,035	-10,897	-8.5	351	2.6
2006	124,524	-3,511	-2.8	341	2.5
2007	124,072	-452	-0.4	340	2.5
2008	116,535	-7,537	-6.5	318	2.4
2009	123,999	7,464	6.4	340	2.5
2010	116,858	-7,141	-5.8	320	2.3
2011	114,284	-2,574	-2.3	313	2.3
2012	114,316	32	0.0	313	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이혼편), 각 연도.

## 제 2 장

# 가족구성 및 변동

### 1 가족구성 현황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가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단위이다.

〈표 2-2-1〉 연도별 가구수 및 가구원수

(단위 : 가구, 명)

연도	총가구수	일반가구수	집단가구수	평균가구원수(명)
1970	5,856,901	5,792,983	63,918	5.25
1975	6,754,257	6,647,778	106,479	5.04
1980	7,992,968	7,969,201	23,767	4.54
1985	9,598,796	9,571,361	27,435	4.09
1990	11,370,160	11,354,540	15,620	3.71
1995	12,974,194	12,958,181	16,013	3.34
2000	14,326,224	14,311,807	14,417	3.12
2005	15,903,679	15,887,128	16,551	2.88
2010	17,360,149	17,339,422	20,727	2.69

주 : 1) 외국인 가구 제외.

2) 1970년대에는 1인 단독가구를 추정(216,706)하여 일반가구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가구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해체, 친족가구의 비율 감소, 핵가족 비율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가구 수는 증가한 반면, 가구당 평균가구원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0년 총 가구 수는 1,736만 가구로, 2005년에 비해 146만 가구가 증가했고, 1970년에 비해서는 가구 수가 약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평균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2005년 2.88명에서 0.19명 감소했다. 평균가구원 수는 1970년대 5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3명 이하로 줄었다.

## 2 가구 수 현황

가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0년 총 1,757만 가구 중 일반가구가 98.7%(1,734만 가구), 외국인 가구가 1.2%(21만 가구), 기숙사나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가 0.1%(2만 가구)를 차지한다. 일반가구는 혈연가구와 1인 가구, 남남끼리 사는 비혈연가구로 구성되는데, 2010년에는 혈연가구 73.9%, 1인 가구 23.6%, 남남끼리 사는 비혈연가구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일반가구는 9.1% 증가했는데, 혈연가구는 4% 증가한 반면 1인 가구는 30.6% 증가하여 최근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구구성은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혈연가구는 동지역이 74.7%로 읍면지역 70.6%보다 높았다. 반면 1인 가구는 동지역이 22.8%로 읍면지역 26.8%보다 낮았다. 읍면지역에 1인 가구 비율이 동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중이 동지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2-2〉 가구유형별 가구수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감률 (%)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전국							
총가구	14,391,374	100	15,988,274	100	17,574,067	100.0	9.9
일반가구	14,311,807	99	15,887,128	99	17,339,422	98.7	9.1
(혈연가구)	(11,928,143)	(83)	(12,490,507)	(79)	12,994,994	73.9	4.0
(1인가구)	(2,224,433)	(16)	(3,170,675)	(20)	4,142,165	23.6	30.6
(비혈연가구)	(159,231)	(1)	(225,946)	(1)	202,263	1.2	-10.5
집단가구	14,417	0	16,551	0	20,727	0.1	25.2
외국인가구	65,150	1	84,595	1	213,918	1.2	152.9
동지역							
총가구	11,290,609	100	12,826,173	100	14,224,508	100.0	10.9
일반가구	11,229,476	99	12,744,940	99	14,031,069	98.6	10.1
(혈연가구)	(9,459,798)	(84)	(10,127,839)	(80)	10,630,848	74.7	5.0
(1인가구)	(1,642,618)	(15)	(2,439,761)	(19)	3,244,064	22.8	33.0
(비혈연가구)	(127,060)	(1)	(177,340)	(1)	156,157	1.1	-11.9
집단가구	9,116	0	10,413	1	12,420	0.1	19.3
외국인가구	52,017	1	70,820	1	181,019	1.3	155.6
읍면지역							
총가구	3,100,765	100	3,162,101	100	3,349,559	100.0	5.9
일반가구	3,082,331	99	3,142,188	99	3,308,353	98.8	5.3
(혈연가구)	(2,468,345)	(80)	(2,284,064)	(79)	2,364,146	70.6	3.5
(1인가구)	(581,815)	(19)	(730,914)	(19)	898,101	26.8	22.9
(비혈연가구)	(32,171)	(1)	(127,210)	(2)	46,106	1.4	-63.8
집단가구	5,301	0	6,138	0	8,307	0.2	35.3
외국인가구	13,133	0	13,775	0	32,899	1.0	138.8

자료 :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4인 가구(31.1%)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24.3%)가 4인 가구(22.5%)나 3인 가구(21.3%)보다 더 많았다.

가구원수 분포에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를 보였다. 동지역은 4인 가구가 24.0%로 가장 많았으나, 읍면지역은 2인 가구의 비중이 31.8%로 가장 높았다.

〈표 2-2-3〉 가구의 가구원수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전국								
2010 (비율)	17,339 (100.0)	4,142 (23.9)	4,205 (24.3)	3,696 (21.3)	3,898 (22.5)	1,078 (6.2)	241 (1.4)	79 (0.5)
2005 (비율)	15,887 (100.0)	3,171 (20.0)	3,521 (22.2)	3,325 (20.9)	4,289 (27.0)	1,222 (7.7)	267 (1.7)	93 (0.6)
2000 (비율)	14,312 (100.0)	2,225 (15.5)	2,731 (19.1)	2,988 (20.9)	4,447 (31.1)	1,443 (10.1)	345 (2.4)	135 (0.9)
동지역								
2010 (비율)	14,031 (100.0)	3,244 (23.1)	3,154 (22.5)	3,120 (22.2)	3,373 (24.0)	892 (6.4)	190 (1.4)	58 (0.4)
2005 (비율)	12,744 (100.0)	2,440 (19.1)	2,558 (20.1)	2,771 (21.7)	3,703 (29.1)	1,006 (7.9)	203 (1.6)	65 (0.5)
2000 (비율)	11,229 (100.0)	1,643 (14.6)	1,890 (16.8)	2,420 (21.5)	3,778 (33.7)	1,159 (10.3)	252 (2.3)	89 (0.8)
읍면지역								
2010 (비율)	3,308 (100.0)	898 (27.1)	1,051 (31.8)	576 (17.4)	525 (15.9)	186 (5.6)	51 (1.6)	21 (0.6)
2005 (비율)	3,142 (100.0)	731 (23.3)	962 (30.6)	554 (17.6)	586 (18.7)	217 (6.9)	64 (2.0)	28 (0.9)
2000 (비율)	3,082 (100.0)	582 (18.9)	841 (27.3)	568 (18.4)	669 (21.7)	284 (9.2)	93 (3.0)	46 (1.5)

주 : 각 통계표의 가구는 일반가구임.

자료 :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3 가구의 세대구성

2010년의 세대구성유형별 가구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가구(일반가구 기준)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51.3%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3.9%, 1세대 가구 17.5%, 3세대 가구 6.1%, 비혈연가구 1.2%, 4세대 이상 가구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2세대 가구 비율은 4.1%p 감소한 반면,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는 각각 3.9%p, 1.3%p 증가했다.

2세대 가구의 비중은 동지역이 54.2%, 읍면지역은 39.1%로 농촌지역의 2세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1세대 가구 비중은 동지역이 15.5%, 읍면지역이 25.6%로 읍면지역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읍면지역에서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부 및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2-4〉 세대구성유형별 가구수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전 국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세대 가구	2,034	14.2	2,575	16.2	3,027	17.5
2세대 가구	8,696	60.8	8,807	55.4	8,892	51.3
3세대 가구	1,177	8.2	1,093	6.9	1,063	6.1
4세대 이상 가구	22	0.2	16	0.1	13	0.1
1인 가구	2,225	15.5	3,171	20.0	4,142	23.9
비혈연 가구	159	1.1	226	1.4	202	1.2
동지역	11,230	100.0	12,744	100.0	14,031	100.0
1세대 가구	1,352	12.0	1,793	14.1	2,182	15.5
2세대 가구	7,237	64.5	7,482	58.7	7,599	54.2
3세대 가구	858	7.6	842	6.6	842	6.0
4세대 이상 가구	13	0.1	10	0.1	9	0.1
1인 가구	1,643	14.6	2,440	19.1	3,244	23.1
비혈연 가구	127	1.1	177	1.4	156	1.1
읍면지역	3,083	100.0	3,142	100.0	3,308	100.0
1세대 가구	682	22.1	781	24.9	846	25.6
2세대 가구	1,459	47.3	1,325	42.2	1,294	39.1
3세대 가구	319	10.4	250	8.0	221	6.7
4세대 이상 가구	9	0.3	6	0.2	4	0.1
1인 가구	582	18.9	731	23.3	898	27.1
비혈연 가구	32	1.0	49	1.5	46	1.4

자료 :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042-481-2251



## 제 3 장 가족관계

가정은 일차적인 사회화 기관으로,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관계로 대변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인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인성·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청소년의 가족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에 법적 기반을 두고 실시되는 「청소년가치관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sup>1)</sup>

### 1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가족관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족과의 친밀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과 친밀하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2010년에는 남학생 91.7%(매우 그렇다 50.8%, 다소 그렇다 40.9%), 여학생 91.8%(매우 그렇다 56.1%, 다소 그렇다 35.7%)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2012년에는 남학생 92.1%(매우 그렇다 58.4%, 다소 그렇다 33.7%), 여학생 92.4%(매우 그렇다 61.5%, 다소 그렇다 30.9%)로 2010년에 비해 미세하게 증가했으나 큰 차이는 없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 2010년 및 2012년 모두 90%를 상회하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친밀하다는 반응을 보여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데 비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좀 더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가족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응답(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0년의 경우, 가족과 친밀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경제적 수준이 상층인 경우에는 5.1%에 불과한 데 비해,

1) 「청소년가치관조사」는 전국(제주도 제외)의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조사는 2,2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12년 조사는 5,0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층 7.3%, 중하층 10.5%, 하층 18.8%로 파악되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는 2012년 자료에서 좀 더 확대되어, 상층은 부정적 응답 비율이 3.2%에 불과한 데 비해, 중상층 3.9%, 중층 7.2%, 중하층 17.2%, 하층 22.4%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가족간의 관계나 친밀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실을 방증한다.

〈표 2-3-1〉 가족과의 친밀도

(단위 : 명, %)

연도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2010	성별	남	581(50.8)	467(40.9)	86(7.5)	9(0.8)	1,143
		여	623(56.1)	396(35.7)	82(7.4)	9(0.8)	1,110
	경제적 수준	상	53(67.9)	21(26.9)	4(5.1)	0(0.0)	78
		중상	272(60.6)	152(33.9)	23(5.1)	2(0.4)	449
		중	630(55.1)	429(37.5)	79(6.9)	5(0.4)	1,143
		중하	203(44.2)	208(45.3)	43(9.4)	5(1.1)	459
		하	48(41.0)	47(40.2)	17(14.5)	5(4.3)	117
2012	성별	남	1,560(58.4)	900(33.7)	181(6.8)	28(1.0)	2,669
		여	1,484(61.5)	745(30.9)	163(6.8)	19(0.8)	2,412
	경제적 수준	상	291(83.4)	47(13.5)	8(2.3)	3(0.9)	349
		중상	902(67.7)	379(28.5)	48(3.6)	4(0.3)	1,332
		중	1,491(57.2)	928(35.6)	170(6.5)	17(0.7)	2,606
		중하	310(45.5)	254(37.2)	100(14.7)	17(2.5)	682
		하	48(44.9)	36(33.6)	18(16.8)	6(5.6)	107

주 : 무응답은 제외하고 산출한 비율임.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치관조사」, 각 년도.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2-3-2〉에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가정 내 분위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정 내 분위기가 권위적이지 않고 민주적이라고 느낄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가족관계가 밀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별의 경우, 가정 내 분위기가 권위적이지 않고 민주적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2010년에는 남학생 75.8%(매우 그렇다 32.5%, 다소 그렇다 43.3%), 여학생 75.9%(매우 그렇다 32.5%, 다소 그렇다 43.4%)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남학생 78.9%(매우 그렇다 39.1%, 다소 그렇다 39.8%), 여학생 80.8%(매우 그렇다 38.7%, 다소 그렇다 42.1%)로 파악되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응답 비율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가정 내 분위기가 민주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가정 내 분위기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010년의 경우, 가정 내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상층은 17.9%(별로 그렇지 않다 11.5%, 전혀 그렇지 않다 6.4%)에 불과한 반면, 중층은 22.3%, 중하층 30.6%, 하층 39.7%로 나타나, 하층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40% 가량이 가정 내 분위기에 대해 비민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경향성은 2012년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어, 상층은 부정적 응답 비율이 11.2%에 불과한 반면, 중층 20.3%, 중하층 29.2%, 하층 38.5%로 나타나, 상층과 하층 간에 3배를 상회하는 격차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모-자녀 간 관계에 차이가 존재함을 반영한다.

〈표 2-3-2〉 가정 내 분위기(권위적이지 않고 민주적인 분위기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연도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2010	성별	남	374(32.5)	499(43.3)	212(18.4)	67(5.8)	1,152
		여	358(32.5)	477(43.4)	208(18.9)	57(5.2)	1,100
	경제적 수준	상	45(57.7)	19(24.4)	9(11.5)	5(6.4)	78
		중상	179(40.0)	183(40.9)	63(14.1)	22(4.9)	447
		중	373(32.8)	512(45.0)	192(16.9)	61(5.4)	1,138
		중하	106(23.3)	210(46.2)	111(24.4)	28(6.2)	455
		하	27(23.3)	43(37.1)	40(34.5)	6(5.2)	116
2012	성별	남	1,042(39.1)	1,062(39.8)	430(16.1)	133(5.0)	2,666
		여	932(38.7)	1,014(42.1)	344(14.3)	117(4.9)	2,406
	경제적 수준	상	225(64.7)	84(24.1)	26(7.5)	13(3.7)	348
		중상	616(46.4)	495(37.3)	169(12.7)	47(3.5)	1,328
		중	926(35.6)	1,145(44.0)	418(16.1)	110(4.2)	2,600
		중하	174(25.6)	307(45.2)	139(20.5)	59(8.7)	679
		하	28(25.7)	39(35.8)	22(20.2)	20(18.3)	109

주 : 무응답은 제외하고 산출한 비율임.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치관조사」, 각 년도.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가족과의 대화는 가족 간 관계를 밀착시킬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소 가족과 얼마나 대화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2010년의 경우,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남학생 61.4%, 여학생 69.2%로 나타난 데 비해, 2012년에는 남학생 66.8%, 여학생 75.9%로 나타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과 자주 대화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 및 2012년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가족과 자주 대화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들과 좀 더 자주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가족과의 대화 빈도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가족 간 대화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2010년의 경우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한다는 응답 비율이 하층은 53.8%에 불과한 반면 중상층 74.7%, 상층 71.8%로 나타나 약 20%p 가량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계층 간 격차는 2012년에 눈에 띄게 벌어져, 하층은 49.5%에 불과한 반면, 중하층 59.6%, 중층 70.2%, 중상층 77.5%, 상층 82.8%로 나타나, 하층과 상층 간에 약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었다. 반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반응(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은 2012년 기준 상층 3.7%, 중상층 2.7%에 불과한 반면, 하층은 15.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배경에 따라 가족과의 대화 빈도에도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표 2-3-3〉 평소 가족과의 대화 정도

(단위 : 명, %)

연도	구 분		자주 한다	가끔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전체
2010	성별	남	709(61.4)	378(32.7)	61(5.3)	6(0.5)	1,154
		여	770(69.2)	294(26.4)	42(3.8)	6(0.5)	1,112
	경제적 수준	상	56(71.8)	18(23.1)	4(5.1)	0(0.0)	78
		중상	336(74.7)	101(22.4)	11(2.4)	2(0.4)	450
		중	743(64.9)	352(30.8)	46(4.0)	3(0.3)	1,144
		중하	272(59.1)	155(33.7)	27(5.9)	4(0.9)	458
		하	63(53.8)	39(33.3)	13(11.1)	2(1.7)	117
2012	성별	남	1,784(66.8)	732(27.4)	146(5.5)	8(0.3)	2,670
		여	1,833(75.9)	495(20.5)	82(3.4)	5(0.2)	2,415
	경제적 수준	상	289(82.8)	46(13.2)	9(2.6)	4(1.1)	348
		중상	1,032(77.5)	265(19.9)	33(2.5)	3(0.2)	1,333
		중	1,831(70.2)	663(25.4)	111(4.3)	2(0.1)	2,607
		중하	408(59.6)	214(31.3)	61(8.9)	0(0.0)	683
		하	53(49.5)	37(34.6)	13(12.1)	4(3.7)	107

주 : 무응답은 제외하고 산출한 비율임.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치관조사」, 각 년도.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주로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살펴보았다. 가족 중 주로 대화하는 상대는 어머니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아버지와 주로 대화한다는 응답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약 2배 높게 나타났으며(남학생 10.5%, 여학생 5.2%), 형제자매 중에서는 남학생은 남동생과, 여학생은 여동생과 좀 더 대화를 자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부모 중에서는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 좀 더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이성 형제자매 보다는 동성 형제자매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3-4〉 가족 중 주로 대화하는 상대

(단위 : 명, %)

연도	구분	아버지	어머니	남자형제	여자형제	조부모	기타	전체	
2010	성별	남	112(10.8)	654(62.8)	161(15.5)	82(7.9)	16(1.5)	16(1.5)	1,041
		여	55(5.8)	623(66.1)	66(7.0)	164(17.4)	13(1.4)	22(2.3)	943
	학교급	중	77(8.6)	583(64.9)	109(12.1)	94(10.5)	19(2.1)	16(1.8)	898
		고(일반계)	46(6.5)	484(68.0)	64(9.0)	101(14.2)	3(0.4)	14(2.0)	712
		고(전문계)	44(11.8)	210(56.1)	54(14.4)	51(13.6)	7(1.9)	8(2.1)	374
2012	성별	남	274(10.5)	1,779(68.4)	289(11.1)	154(5.9)	42(1.6)	60(2.3)	2,599
		여	123(5.2)	1,772(75.0)	101(4.3)	306(12.9)	36(1.5)	25(1.1)	2,364
	학교급	초	90(7.6)	872(73.8)	93(7.9)	69(5.8)	34(2.9)	23(1.9)	1,181
		중	155(8.3)	1,331(71.0)	165(8.8)	169(9.0)	29(1.5)	26(1.4)	1,875
		고(일반계)	107(7.3)	1,063(72.2)	95(6.4)	172(11.7)	8(0.5)	27(1.8)	1,473
		고(전문계)	44(10.1)	285(65.7)	37(8.5)	50(11.5)	8(1.8)	9(2.1)	434

주 : 1) 무응답은 제외하고 산출한 비율임.

2) 2010년에 초등학생은 구분되지 않았음.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치관조사」, 각 년도.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2-3-5〉에는 가족과 주로 대화를 나누는 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조사 시점, 성별, 학교급을 막론하고 청소년들이 가족과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주제는 공부나 성적에 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러한 응답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대체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대학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계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2012년 기준 공부, 성적이 주된 대화 주제라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28.6%, 중학생 30.9%, 일반계고 32.8%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전문계고에서는 12.7%만이 공부/성적이 주된 관심사라는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계고 학생들은 진학보다는 취업 등 노동시장 진출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문계고에서는 진로가 주된 대화 주제라는 응답 비율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별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동성 친구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2012년 기준, 남학생 4.7%, 여학생 13.6%).

〈표 2-3-5〉 가족과의 대화 주제

(단위: 명, %)

연도	구분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공부/ 성적	진로	취미	방송/ 연예인	선생님	사회문제	기타	전체	
2010	전체	남	27 (2.6)	15 (1.5)	355 (34.4)	184 (17.8)	158 (15.3)	49 (4.8)	3 (0.3)	79 (7.7)	161 (15.6)	1,031
		여	92 (10.1)	25 (2.7)	258 (28.2)	138 (15.1)	86 (9.4)	59 (6.5)	10 (1.1)	33 (3.6)	213 (23.3)	914
	피내 친구	전체	48 (5.4)	17 (1.9)	287 (32.2)	114 (12.8)	118 (13.3)	58 (6.5)	7 (0.8)	57 (6.4)	184 (20.7)	890
		일반계고	43 (6.2)	12 (1.7)	255 (37.0)	132 (19.2)	71 (10.3)	21 (3.0)	4 (0.6)	41 (6.0)	110 (16.0)	689
		전문계고	28 (7.7)	11 (3.0)	71 (19.4)	76 (20.8)	55 (15.0)	29 (7.9)	2 (0.5)	14 (3.8)	80 (21.9)	366
2012	전체	남	124 (4.7)	43 (1.6)	861 (32.3)	424 (15.9)	495 (18.6)	91 (3.4)	14 (0.5)	177 (6.6)	436 (16.4)	2,665
		여	327 (13.6)	58 (2.4)	625 (26.0)	354 (14.7)	222 (9.2)	178 (7.4)	28 (1.2)	111 (4.6)	502 (20.9)	2,406
	피내 친구	전체	147 (12.2)	27 (2.2)	344 (28.6)	90 (7.5)	220 (18.3)	74 (6.2)	20 (1.7)	77 (6.4)	203 (16.9)	1,203
		전체	165 (8.6)	33 (1.7)	592 (30.9)	244 (12.7)	299 (15.6)	110 (5.7)	10 (0.5)	110 (5.7)	353 (18.4)	1,917
		일반계고	108 (7.2)	23 (1.5)	492 (32.8)	319 (21.2)	130 (8.7)	56 (3.7)	8 (0.5)	65 (4.3)	300 (20.0)	1,502
		전문계고	31 (6.9)	17 (3.8)	57 (12.7)	125 (27.8)	68 (15.1)	28 (6.2)	4 (0.9)	36 (8.0)	82 (18.3)	449

주: 1) 무응답은 제외하고 산출한 비율임.

2) 2010년에 초등학생은 구분되지 않았음.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치관조사」, 각 년도.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3 형제자매와의 관계

〈표 2-3-6〉에는 가족관계 가운데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 제시된 것처럼, 2010년 및 2012년 모두 형제자매와 사이 좋게 지낸다는 긍정적 응답(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이 부정적 응답(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보다 우세하게 나타나, 청소년들은 대체로 형제자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응답 비율은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가정환경이 양호할수록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더 돈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면, 2012년 자료의 경우, 형제자매와 매우 사이좋게 지낸다는 응답 비율이 하층에는 21.1%에 그친 반면 중상층 32.8%, 상층 49.6%로 나타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부정적 반응(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은 하층에는 33.0%에 달한 반면, 상층은 15.2%에 불과해 두 집단 간에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부모-자녀 관계를 비롯해 형제자매 관계 등 가족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좀 더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임으로써, 가정환경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2-3-6〉 형제자매와의 관계(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낸다)

(단위 : 명, %)

연도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사항 없음	전체	
2010	경제적 수준	상	41(52.6)	23(29.5)	10(12.8)	2(2.6)	2(2.6)	78
		중상	167(37.4)	178(39.8)	54(12.1)	17(3.8)	31(6.9)	447
		중	330(29.0)	522(46.0)	178(15.7)	23(2.0)	83(7.3)	1136
		중하	130(28.4)	191(41.8)	79(17.3)	24(5.3)	33(7.2)	457
		하	26(22.2)	51(43.6)	18(15.4)	9(7.7)	13(11.1)	117
2012	경제적 수준	상	173(49.6)	75(21.5)	42(12.0)	11(3.2)	48(13.8)	349
		중상	437(32.8)	483(36.3)	183(13.7)	48(3.6)	181(13.6)	1332
		중	742(28.5)	1,019(39.1)	414(15.9)	105(4.0)	326(12.5)	2,605
		중하	164(23.9)	263(38.4)	130(19.0)	41(6.0)	86(12.6)	685
		하	23(21.1)	36(33.0)	22(20.2)	14(12.8)	14(12.8)	109

주 : 무응답은 제외하고 산출한 비율임.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치관조사, 각 년도.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제3부 요약

정부는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권리침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5월 중앙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를 개소하였다.

청소년을 우수한 역량을 지닌 사회구성원이자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UN이나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여성가족부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 189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305개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3년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을 정책의제로 선정하여 과제 발굴 및 활동을 추진하였다.



## 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 제 1 장

#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요보호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정책이 권리보장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협약에 명시된 차별금지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확대, 아동정책조정 위원회의 도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운영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년)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기본계획(2003~2007년)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가 주요 정책이념으로 되는 획기적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가 만들어 지고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의 정비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기본 생활보장은 물론 권리·참여, 안전·보호, 교육 및 여가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2장

##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 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1989년 11월 20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에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협약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사회, 가정 모두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주며 아동의 인격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는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과 2000년에 1차와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996년과 2003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 받았다. 이후 3차 국가보고서는 2004년에 제출되어야 했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자체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형태로 2008년 12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2008년 12월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에 실시된 2차 보고서 심의에서 가정폭력처벌특별법 제정(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200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2001년) 등 아동권리의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1차 보고서 심의(1996년)에서 지적된 권고사항의 이행 미흡, 상설 아동권리조정기구의 미설립,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노력 부족,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아동권리협약의 교육홍보 미흡 등에 대해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정부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수준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실질적 조사와 아동권리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를 두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전문가, 법조, 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브즈퍼슨 21명과 옴브즈키드 10명을 위촉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교육교재 개발, 교육커리큘럼 신설, 교육인력 풀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특별회의 및 아동 총회 개최, 아동권리주간 운영 등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문제에 대응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44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혼인 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였고, 협약 비준 당시 유효하였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철회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2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2개의 선택의정서인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그리고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2007년 3월 9일에 제출하고, 2008년 5월 23일 심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 현역병 지원 입대 연령을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병역법 개정(2004년)과 18세 미만의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한 공군규정을 개정(2005년)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해외 평화유지 인력과 망명·난민아동 관련 집단에 대한 협약 홍보 및 교육, 소형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등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혼인가능 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 개정,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추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립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선택 의정서의 조항과 국내 법률의 조화를 위한 조치, 경찰·검사·판사·의료진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리교육 교재 및 과정 개발, 입양허가제 유보조항 철회 및 헤이그협약 비준, 아동상담전화 통합 등을 권고하였다.

2008년 12월에 제출한 이번 보고서에는 관계부처와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아동관련 학계 및 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통해 내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있을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및 협약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상황과 그간의 노력을 평가 받고,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국가보고서는 다양한 매체에 공개하여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나.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 (1)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권리 수준은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주로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정, 학교 및 근로 현장 등에서 권리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지원기관이 미흡한 실정이고,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08년 7월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였으며, 2011년 5월 중앙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로서 청소년 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권리교육,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주요기능

청소년 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사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의 권리상황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청소년 권리모니터링 활동,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권리증진 교육, UN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관련한 기획과제 발굴 및 토론회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청소년권리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권리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 희망센터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 위원회는 청소년 권리 관련 학계, 기관·단체, 실무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과제에 대한 정기적 논의, 운영 계획 검토 등 정기적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체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 매체 활용 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의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애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에 관한 UN총회 특별세션」과 「UN 세계청소년포럼」 그리고 「UN 세계청소년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선언 등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2년 6월 뉴욕에서 각 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격려하고자 UN에서 시상하고 있는 ‘공공행정상(UN PSA: Public Service Awards)’ 정책결정 참여부문에서 한국의 청소년참여기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정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획기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 점 등의 정책적 우수성을 UN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체계화·활성화 되는 가운데, 기관·단체·학계 등 현장의 지지와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청소년정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2012년 2월 ‘청소년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법령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이관하였다. 청소년기본법으로의 이관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이 복지의 차원이 아닌, 모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써의 청소년자치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청소년기본법’의 법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 회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은 개인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잠재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 으로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 (2) 운영 및 활동 현황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189개(2013년 6월 30일 현재)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구정평가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이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 4,080명의 청소년이 2013년 현재 활동 중에 있다.

2013년 현재 운영예산으로 17개 시·도에는 매년 10백만원(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시·군·구에는 3백 5십만원(국비 1백 75만원, 지방비 1백 7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개)

설치대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개소수	163	175	175	175	186	189

자료: 여성가족부(2013).

〈표 3-2-2〉 20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개)

계	여성 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9	1	6	3	3	10	2	2	6	1	32	19	5	16	15	23	24	20	1

자료: 여성가족부(2013).

##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 (1) 목적 및 기능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8년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 서울시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위원회’, 중랑청소년수련관의 ‘21세기 청소년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후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설치가 확대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의 직접 기획·운영,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행사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 현황 및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조). 201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400개 생활권 수련시설 중 305개의 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약 4,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 차원의 전담 지도자 배치, 전용공간 확보, 수련시설 평가지표 포함, 제안의견 반영 등의 노력과 참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 의욕과 시설모니터 및 홍보 등 다양한 활성화 제안을 통하여 수련시설별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8월중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운영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참여 대표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13부터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발하여 그 결과와 성과를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운영예산은 운영위원회별 매년 2백 50만원(국비 1백 25만원, 지방비 1백 25만원)을 기준으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지원하고 있다.



〈표 3-2-3〉 2013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5	44	14	9	12	6	10	7	62	32	15	14	16	14	13	15	22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다. 청소년특별회의

### (1) 목적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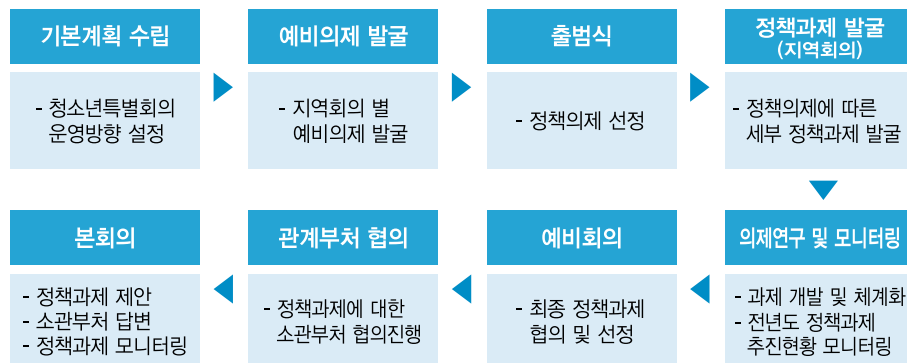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및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자치단체 또는 청소년 시설 중심의 지역 규모의 참여기구인데 반해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동일한 정책의제로 함께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참여기구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 대표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활동, 복지, 보호를 위해 선정한 지역 예비의제를 바탕으로 출범식 및 의제선정 워크숍을 통해 당해 연도 최종 정책의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지역별로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의제연구를 통해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제안한다.

[그림 3-2-1] 의제선정 및 정책과제 발굴 추진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2) 현황 및 운영

2013년에는 청소년 374명 및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하여 5~10월까지 여성가족부 및 17개 지역회의별 논의 활동을 거쳐 선정된 3개 영역 7개 정책과제, 31개의 세부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다. 제안된 정책과제들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8년간 제안된 328건의 정책과제를 모니터링한 결과 87.8%인 288건의 정책과제가 정부 청소년정책에 수용, 반영 중에 있다.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정책과제 제안 현황

연도	의제 및 과제	비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제안)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회 개최 정례화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5과제 제안	31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5개 영역 37개 과제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청소년자원봉사·체험활동의 다양화 등 18개 과제 제안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3개영역 53개 과제 제안	49개 수용 92.4%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특히, 청소년특별회의는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SNS 청소년특별회의 페이지([www.facebook.com/withyouth](http://www.facebook.com/withyouth))를 개설·운영, 온라인 토론방(daum 카페) 개설 등을 통하여 청소년정책의 수요자이자 중심인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10~2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라.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주로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 보전, 기초 질서 지키기, 청소년 권익 개선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제안받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0년 공모를 통해 청소년관련 기관을 지원하던 ‘참여공모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20개 내외 팀을 지원하던 규모를 확대하여 2011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74개팀, 2012년에는 60개팀의 활동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65개 팀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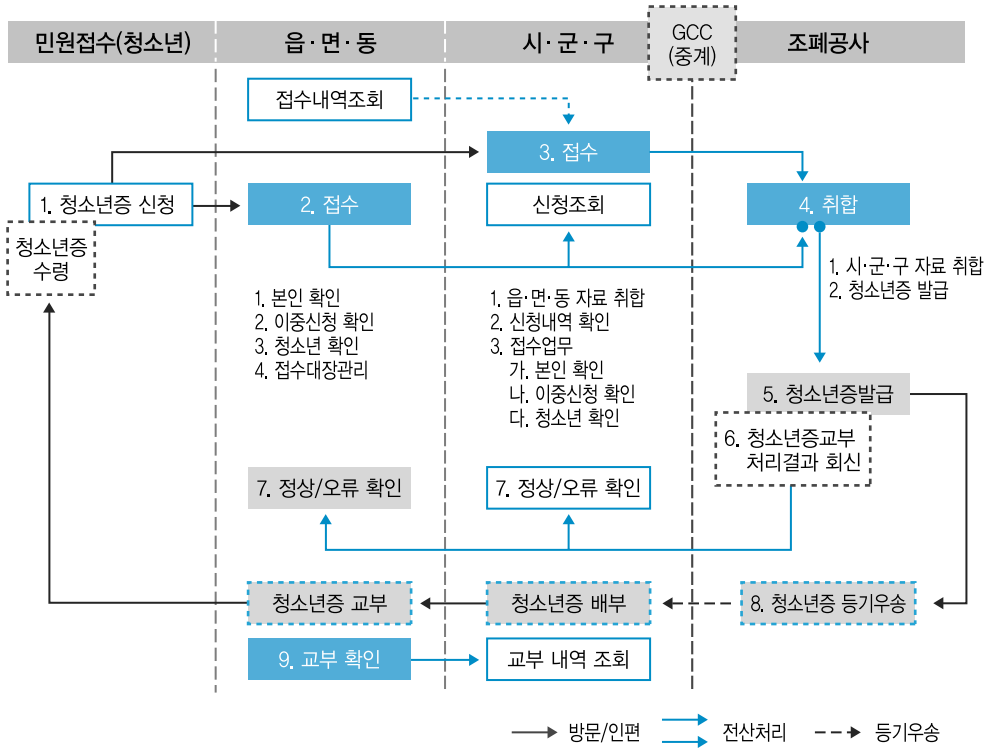
## 마. 청소년증 발급 현황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학생, 비학생간 차별없이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2004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에게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청소년증 발급 희망 청소년이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유)와 함께 사진 1매(반명함판)를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기간은 14일이다. 2008년에는 이용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수 및 배송 직후에 발급 진행 상황을 SMS로 안내해 주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재발급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청소년증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신청기관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또는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증은 위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예금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기획재정부 협조),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에서 신분증으로 활용(교육부 협조)이 가능하다.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과정 절차



<표 3-2-5>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 지하철 20%, 여객선 10%
  - 공 · 능 : 50%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500 ~ 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공 원 : 면제~50% 내외
  - 유원지 : 30~50%내외
- \* 상기할인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증의 연도별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6〉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단위: 건)

구분	2003년 (시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15	11,848	14,120	12,478	24,455	30,265	33,656	36,263	40,908	43,875
서울	436	1,515	1,781	4,355	6,975	8,251	8,480	8,954	9,969	10,644
부산	-	381	672	971	1,724	2,198	2,492	2,401	2,866	2,952
대구	-	181	214	580	1,754	1,905	2,212	2,072	2,298	2,235
인천	-	751	353	640	1,676	2,464	2,216	2,527	2,650	2,940
광주	-	282	61	110	318	416	509	576	811	1,034
대전	66	103	287	304	607	853	917	945	884	1,042
울산	-	86	105	220	640	844	897	952	1,060	1,197
세종	-	-	-	-	-	-	-	-	-	36
경기	-	4,381	1,966	2,894	6,243	7,477	8,863	9,897	11,023	11,347
강원	13	148	85	341	428	566	835	908	1,071	1,180
충북	-	648	995	350	479	614	845	913	1,131	1,220
충남	-	311	4,275	368	855	720	765	889	1,204	1,264
전북	-	1,266	450	164	498	1,027	1,066	1,226	1,436	1,524
전남	-	244	175	141	390	499	616	625	721	910
경북	-	521	1,597	486	810	1,048	1,229	1,369	1,447	1,682
경남	-	983	677	418	893	1,165	1,440	1,738	2,014	2,356
제주	-	47	427	136	165	218	274	271	323	312

주 : 한국조폐공사 개인정보보호에 의거 성별 표시 불가.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제 3 장

# 청소년 주요 행사

### 1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며(청소년기본법 제16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달 주제와 관련된 행사를 5월중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월 한달 동안 전국 일원에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의 달 기념식,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행사 및 성년의 날 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에 기여한 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표 3-3-1〉 청소년 유공자 포상 현황

(단위 : 명)

행 사 별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청소년·가정의달 기념식	185	2	3	7	16	157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가. 청소년·가정의 달 기념식

2013년 청소년·가정의 달은 5월 한달 간 「청소년은 희망! 가족은 힘이다」라는 주제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3년 청소년·가정의 달 기념식은 청소년의 달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정부의 청소년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청소년, 청소년 단체·기관, 유공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7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청소년 정책을 소개하는 식전 행사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담은 주제영상 상영,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이바지한 유공자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청소년·가정의 달을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청소년·가족정책이 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념식을 기념하여 청소년 관계자와 함께 청소년정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청소년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의 협력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3-3-2〉 2013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행 사 명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청소년·가족정책 관련 기관장 간담회	5. 2(목), 백범김구 기념관	- 청소년 정책 현안 설명 및 공유 -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등 논의(45여 명 참석)
청소년·가정의 달 기념식		- 식전 행사 * 드림자판기, 희망의 벽, 약속나무 - 대통령 축하메시지 영상 - 주제영상 - 청소년 육성 및 보호유공자 시상 - '청소년 찬가' 퍼포먼스(클론댄스 청소년 & 울진군 청소년) - 청소년 희망특강(다시 꾸는 나의 꿈/강원래)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미래 청소년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나.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대상 박람회로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경향과 방향을 모색하는 국내 유일의 범 청소년 축제의 장이다. 2013년에 개최한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후 두 번째로 진행된 박람회로 청소년을 위한 체험·참여문화 정착의 기반이 되었다.

「건강한 청소년, 함께 하는 열린 세상」이라는 주제로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박람회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숨은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나라 사랑 토크콘서트, 청소년공연동아리 오디션, 나눔 바자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청소년

및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주제별 부스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체험, 소통을 위한 공간(250개 부스)을 마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공유, 창출,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관람객인 15만 6천명을 기록하고, 부스참여단체가 144개 단체로 늘었으며, 중앙부처 후원에서도 10개 기관이 동참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 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한 나눔바자회의 수익금을 불우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전달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하는 등 청소년들과의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눔바자회의 의미를 더했다.

2005년부터 개최된 박람회는 2008년부터 행사 장소를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단위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광주, 2009년에는 대구, 2010년에는 부산, 2011년에는 대전, 2012년에는 서울, 2013년에는 인천에서 개최하였다.

〈표 3-3-3〉 2013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일시	2013년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3일간			
장소	송도컨벤시아 1, 2관 및 세미나실, 야외광장			
인원	156,000여 명			
주최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주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에너지관리공단			
행사 구 성	전시관	명칭	규모	세부내용
	실내 전시관	주제관	91부스	주최, 주관 기관 및 유관기관
		창조마당	65부스	청소년기관·단체·시설, 해외참여기관, 청소년기획단 등
		진로마당	55부스	전국청소년학과연합, 대학동아리, 진로체험 등
		환경마당	39부스	에너지 관련 체험, 학교폭력 예방 홍보
	문화마당	메인무대 300석	개·폐막식, 멘토강연, 청소년스타킹, 토크콘서트	
	야외	건강마당	야외	청소년동아리공연, 뉴스포츠, 열기구체험, 청소년미니올림픽
세미나실	-	300석	멘토강연, 세미나 및 토론회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기간	2005.5.21 ~ 5.22	2006.5.19 ~ 5.21	2007.6.1 ~ 6.3	2008.5.29 ~ 6.1	2009.5.28 ~ 5.31	2010.5.27 ~ 5.31	2011.5.26 ~ 5.28	2012.5.24 ~ 5.26	2013.5.23 ~ 5.25
장소	서울무역 전시장 (서울)	서울무역 전시장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서울)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EXCO 전시 컨벤션센터 (대구)	부산 BEXCO (부산)	대전 컨벤션센터 (대전)	SETEC (서울)	송도컨벤시아 (인천)
주제	청소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청소년 미래비전	희망/기회/ 성취의 빛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디자인하다	청소년의 꿈을찾아! 대한민국의 희망을찾아!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건강한 청소년, 함께 하는 열린 세상
주최	청소년 위원회	국가청소년 위원회	국가청소년 위원회	보건복지 가족부, 광주광역시	보건복지 가족부, 대구광역시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주관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후원	한국 청소년단체 협의회, 한국청소년 개발원 등	교육인적 자원부, 한국청소년 수련원, 한국청소년 개발원 등	산업자원부, 노동부, KTF, LG전자, 내셔널지오 그래픽, 알파	교육과학 기술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교육과학 기술부, 노동부	교육과학 기술부, 문화체육 관광부, 부산교육청	교육과학 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 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특허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미래창조 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 관광부, 산업통상 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경찰청, 에너지관리 공단	
인원	12,000여명	40,000여명	40,000여명	80,000여명	100,000여명	150,000여명	146,000여명	152,000여명	156,000여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다. 성년의 날

성년식은 만 19세와 20세를 맞는 청소년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행사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관례(冠禮)란 성인식으로, 특히 양반사회에서 남자는 상투를 틀어 올리고 여자는 계례(笄禮)라 하여 쪽을 지어 비녀를 꽂는 의식을 말한다. 하지만 현대의 성인식은 관례라는 전통의식이 없어지고 대신 1973년에 제정되어 만 20세가 되는 해에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400호)로 정하여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년을 맞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3년에는 5월 20일 성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은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1993년생) 및 학부모들이 참석하였으며, 성년다짐 공모전 우수자 시상식과 성년에게 주는 메시지 낭독, 성년다짐 발표 그리고 저명인사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금년 성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참가한 후 갖게 된 성년다짐 내용을 뮤지컬로 공연함으로써, 일부 참가자들만 참여하는 행사에서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2

## 청소년지도자대회

'청소년지도자대회'는 청소년정책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교류와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 처음 실시 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기관 통합으로 행사명을 "청소년지도자대회"에서 아동지도자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지도자대회"로 통합 개최하였으나, 201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면서 다시 '청소년지도자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다. 2011년 9월에는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청소년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토론회,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특히, 공모를 통하여 청소년지도자대회 CI를 제작·선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13년에는 '청소년의 꿈과 행복! 청소년지도자와 함께!'를 주제로 9월말에 개최하였다.

〈표 3-3-5〉 역대 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기간	2005.9.26 ~ 27	2006.12.8 ~ 9	2007.9.16 ~ 17	2008.12.19 ~ 20	2009.8.28 ~ 29	2010.10.19	2011.9.27	2012.9.21 ~ 22	2013.9.27 ~ 28
장소	올림픽 파크텔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올림픽 파크텔	서울교육 문화회관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주관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등 4개 협의 기구 공동주관)	아동단체 협의회, 아동복지협회, 청소년단체 협의회, 청소년수련 시설협회 공동주관	아동단체 협의회, 아동복지협회, 청소년단체 협의회, 청소년수련 시설협회 공동주관	청소년단체 협의회,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 상담원	청소년단체 협의회,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 상담원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참여 인원	1,000여 명	729명	1,500명	1,000여 명	745명	2,000여 명	1,000명	700명	700명
주제	청소년 지도자의 삶과 도전 그리고 희망	청소년 지도자! 희망을 이끄는 사람들	꿈과 희망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청소년 지도자!	아동·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꿈 + 미래, "행복 공감 지도자대회"	만남 + 소통 + 공감 = 청소년 지도자의 행복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	꿈의 날개! 열정의 비상! 함께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	청소년의 꿈과 행복!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주요 프로 그램	기념식, 위원장과 대화, 콜로키움, 청소년 지도자의 밤 등	개회식, 배워봅시다, 청소년 지도자의 밤 및 교류회, 한마음 체육대회	청소년 지도자의 날 전야제 (축하공연, 기념식, 지도자 경연대회), 교류회, 청소년지도자 체육대회 (대동제)	소통의 장 (단합, 민속공연, 만남의 장 (지도자 비전 공유), 화합의 장 (지도자 친선 교류), 도약의 장 (명랑 운동회 등)	주제발표 및 토론, 아동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발전방안, 기념식, 우수 운영사례 경진 대회, 단합대회	창의적체험 활동 발표, 분야별 우수 사례 발표, 제4차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소개 기념식, 올해의 지도자상 수상, 결의문 낭독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주제강연, 기념식 (주제영상, 비전선언, 지도자의 다짐, C1 선포), 열린토론회, 상호교류의 밤 등	우수사례 발표, 주제강연, 기념식 (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축하영상, 지도자 상호 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 마당 등	힐링페스티벌 정책강연 기념식(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축하영상, 축하공연, 화합 및 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 마당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大賞)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 혹은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격려함으로써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3년 제9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의 주제는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 지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장기간 공헌한 후보자 발굴을 위해 개인 및 단체의 경우 5년, 청소년 및 동아리의 경우 2년의 수공

기간을 제한하였다.

추천 대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저한 업적 또는 공적을 5년 이상 쌓은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청소년 부문 역시 추천 주제에 대한 2년 이상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청소년 개인 및 동아리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개인 수상자는 10백만원, 단체 수상자는 10백만원을 수여받게 되고, 청소년 부문의 개인 수상자는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동아리 수상자는 1백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 추천기회를 확대하여 숨은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청소년 분야의 활동이 있는 기관 및 단체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표 3-3-6〉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역대수상자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주최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주관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청소년푸른성장 대상위원회	
시상 부문	4개 부문 (활동, 복지, 보호, 참여·인권)	5개 부문 (활동, 복지, 정책, 학술, 미디어)	4개 부문 (활동, 복지, 보호, 청소년)	-	-	-	
상금	개인 2명 각 10백만원, 2개 단체 각 20백만원	4개 부문 각 10백만원	개인 1명 10백만원, 2개 단체 각 15백만원, 7개 동아리 각 1백만원, 청소년 1명 (20만원)상품권	개인 10백만원, 단체 15백만원, 청소년 상품권 (50만원), 동아리 - 1백만원	개인 10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상품권 (50만원), 동아리 - 1백만원	개인 10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상품권 (50만원), 동아리 - 1백만원	
위원장	이한동 (대한민국 약속재단총재)	박완서 (서울대 명예문학박사)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유인촌 (극단 유 시어터 대표)	최불암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 회장)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시 상 식	일자	12.26(금) 16:00	11.30(월) 16:00	12.3(금) 15:00	11.25(금) 15:00	11.16(금) 14:00	12.6(금) 14: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MBC 여의도 공개홀	MBC 여의도 공개홀	MBC 여의도 공개홀	일산 MBC 드림센터 공개홀
	참석수	250여 명	250여 명	250여 명	250여 명	250여 명	250여 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075-8616/8621





## 제4부 요약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여유시간 활용과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시행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통해 2012년 최우수기관 10개 및 우수기관 10개를 선정하였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함으로써 입시위주 환경에 처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문화존 운영 등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를 통해 2012년 말 기준 총 1,314건의 인증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성함양과 공동체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2012년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총 2,760,844명으로 2011년도에 비해 4.2%(111,554명)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청소년 교류활동의 경우, 2012년 기준 21개국에 파견 303명, 초청 317명 등 총 620명의 교류를 시행하였고, 그 밖에도 다양한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제 청소년단체와 국내 청소년단체의 교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 제4부 청소년활동

---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 제 1 장 청소년활동 지원

##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는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자원의 경제적인 활용 방향을 확립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직업준비,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평가 및 환류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 사업 컨설팅 및 평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 최우수 기관으로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광명시립오름청소년문화의집 등 1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표 4-1-1〉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활동영역	지원(수)	지원금액(천원)
① 문화·예술	19	304,000
② 과학·환경	10	155,200
③ 봉사·진로	20	287,660
④ 가족·인성	15	205,640
⑤ 인증수련활동	5	70,500
합 계	69	1,023,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2

##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 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입시위주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과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들 수 있다.

## 가.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및 각급 학교(초·중·고·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 시설과 연계하여 우수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2,00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지원하였다.

〈표 4-1-2〉 전국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동아리 지원수(개수)	동아리지원금액(천원)	
		국 고	지 방 비
서 울	412	164,800	247,200
부 산	152	60,800	91,200
대 구	110	44,000	66,000
인 천	112	44,800	67,200
광 주	68	27,200	40,800
대 전	68	27,200	40,800
울 산	46	18,400	27,600
세 종	9	3,600	5,400
경 기	440	176,000	264,000
강 원	60	24,000	36,000
충 북	62	24,800	37,200
충 남	69	27,600	41,400
전 북	74	29,600	44,400
전 남	68	27,200	40,800
경 북	104	41,600	62,400
경 남	124	49,600	74,400
제 주	22	8,800	13,200
합 계	2,000	800,000	1,200,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나.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문화존은 주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에 따라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문화존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존은 중앙과 지방에서 40:60 매칭펀드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며, 2004년 및 2005년에는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었고, 2006년부터 11개 시·도로 확대되어 시범사업으로 5개 시·도를 지정, 총사업비 36억원 규모(2007년)로 운영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청소년문화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로 특성화된 대한민국 10대 청소년 문화축제를 운영하였다.

2009, 2010년도에는 16개 대표 문화존과 90개 시·군·구 문화존이 운영·지원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16개 대표 문화존과 110개 시·군·구 문화존이 운영·지원되었다.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문화존 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액)	대표문화존		시·군·구 문화존	
		개수	금액(천원)	개수	금액(천원)
계	2,400,000	16	640,000	110	1,760,000
서울	216,000	1	40,000	11	176,000
부산	136,000	1	40,000	6	96,000
대구	152,000	1	40,000	7	112,000
인천	104,000	1	40,000	4	64,000
광주	120,000	1	40,000	5	80,000
대전	104,000	1	40,000	4	64,000
울산	72,000	1	40,000	2	32,000
세종	16,000	-	-	1	16,000
경기	360,000	1	40,000	20	320,000
강원	136,000	1	40,000	6	96,000
충북	136,000	1	40,000	6	96,000
충남	136,000	1	40,000	6	96,000
전북	136,000	1	40,000	6	96,000
전남	136,000	1	40,000	6	96,000
경북	168,000	1	40,000	8	128,000
경남	216,000	1	40,000	11	176,000
제주	56,000	1	40,000	1	16,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가. 추진 배경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인증 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청소년의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주5일제 수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과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기반 확립과 학교 교육과 연계한 활동 지원 확대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4년 2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특징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증으로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용성, 공공성, 안정성을 강조하며, 인증받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나. 인증제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2006년 3월에 시작하였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 15인을 위촉하고 인증심사원 192명을 선발·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5월 인증접수를 시작으로 79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다.

2007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증제도 운영에 반영하여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증기준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의 효율적 연계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354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으며, 인증받은 활동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기획과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283명의 인증심사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증심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인증제도 홍보와 인증수련활동 사후 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단 32명을 시범·운영하였다.

〈표 4-1-4〉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영역	영역별 활동 예시(안)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악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악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 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 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모험개척활동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 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등
자기(인성) 계발활동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 활동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2).

2009년에는 제2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등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 교육정책과 인증제도와의 연계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소년관련학과를 설치한 9개 대학과 대입 시 가산점 반영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학부모참관단(107명) 운영과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활동영역별 효과성 측정 연구를 통해 인증수련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에는 참여청소년 확대를 위한 중·단기 제도개선을 수립하고,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6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입학 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MOU 체결 대학 : 15개교). 인증심의 317건 중 250건이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70건의 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인증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증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제도개선 연구와 함께 정부부처 주관 활동프로그램 인증이 추진되었으며 인증심사원 연수와 인증제 담당자 직무연수를 연계 운영하여 인증제 담당자의 역량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연구 지표 추가 개발(건강보건활동, 자기계발

활동 영역)을 통한 각 영역별 역량 강화와 2개 지방자치단체(도청, 교육청) 및 11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인증제 내실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1년에는 인증수련활동 활동기록을 이용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있었다.

2012년에는 인증심사원 41명을 추가 선발하여 전문심사원을 활용한 지역별 프로그램개발 워크숍을 운영하고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에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인증프로그램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직접 참여하고 홍보하는 청소년·학부모 모니터단(216명)을 구성·운영하고 인증제 홍보동영상 제작, SNS 개설, 웹메일 발송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행여부 자체점검을 시범 운영하였다.

## 다. 인증수련활동 및 활동기록 현황

수련활동 인증신청은 매월 상시적으로 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된 청소년 수련활동은 1개 프로그램 당 2명의 인증심사원에 의한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하게 된다. 2012년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335개 기관 1,781건이며, 이 중 4건은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취소되고, 24건은 인증 받은 운영기관의 요청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203건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12년 12월까지 총 1,314건의 인증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표 4-1-5〉 연도별 인증심사 및 인증건수

(단위 : 건)

구 분	총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증신청건수	2,285	132	352	508	348	340	329	276
인증건수	1,781	79	284	443	255	266	242	212
이행심의운영건수	621	12	65	86	89	66	132	171

자료 : 여성가족부(2012).

〈표 4-1-6〉 연도별 인증수련활동 유지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지건수	79	359	802	1,057	1,297	1,382	1,314
만료·철회	-	-	-	-	26	157	280
취소	4	-	-	-	-	-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표 4-1-7〉 연도별·운영기관별 인증수련활동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가지방자치단체	36	-	4	6	4	6	9	7
청소년수련관	977	20	174	268	140	172	119	84
청소년수련원	215	25	33	35	30	18	54	20
청소년문화의집	312	9	45	79	38	39	33	69
청소년수련시설 기타	36	-	1	3	10	4	6	12
청소년단체	59	14	4	14	12	8	5	2
청소년기관	96	5	20	35	16	12	3	5
청소년이용시설	12	1	1	1	1	3	4	1
청소년보호복지시설	4	-	-	-	1	-	3	-
초·중·고교 및 대학	7	-	-	-	2	1	1	3
일반 및 기타	27	5	2	2	1	3	5	9
소계	1,781	79	284	443	255	266	242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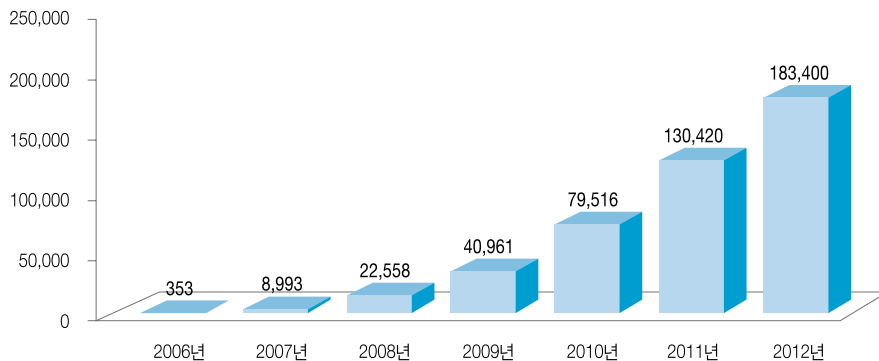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2).

국가가 인증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해 누계 관리되며, 주무부처 장관 명의를 인증서를 실시간 발급 받을 수 있다.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은 2012년에 183,400명이었으며, 인증수련활동기록서에는 청소년의 활동 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이 자기계발과 상급학교 진학 시 및 대입 시, 취업 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의 개요와 활동 시간, 지도자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1-1] 연도별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가. 제도 현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이하 '포상제')는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14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80만 세계 청소년들이 이 포상제에 참여하고 있다. 포상제를 총괄하는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에는 국가운영기관(National Award Authorities, 61개국)과 독립운영기관(Independent Operators, 70개국)이 속해 있으며, 유럽·지중해·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지역의 사무국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포상제는 비경쟁성, 평등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과정 중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5세까지로, 만 25세 생일 전까지 포상활동을 마칠 수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금장 활동일 경우 4가지 활동에 더불어 추가로 합숙활동을 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6개월), 은장(6~18개월), 금장(12~18개월)으로 4가지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표 4-1-8〉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구 분	봉 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 험	합 속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3박 4일	4박 5일 ※ 금장 단계에 한함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박 3일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박 2일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나. 포상제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로부터 2008년 독립 운영기관 자격을 취득(2008년 5월)하였고, 2009년 10월 다음 단계인 임시회원국가(Provisional Membership)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포상제의 한국사무국으로서 2012년 정회원국가 자격 취득을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자격 요건들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0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10월 24~30일)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국제성취포상제 신규 제도에 의하여 세계 최초 정회원으로 승격되었으며 2014년 국제금장총회를 유치하여 동 제도의 국내 참가자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포상제는 2008년과 2009년 2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은 한국사무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은 지역사회 중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사무국과 중앙운영기관 체제를 적용하였다. 2010년부터는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정보시스템(www.koraward.or.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시스템 개발로 인해 포상활동 기록의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청소년 활동 기록의 포트폴리오 변환 기능 및 인증 시스템으로 관련 기록이 진학 및 취업 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상제는 포상 자체보다는 포상활동의 과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상 활동에서 도전에 대한 실패는 없다. 다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여 도전한다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참여 청소년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도전의 지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표 4-1-9〉 포상제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 분	참가 청소년	포상 청소년	포상 담당관	운영기관
2008년	352명	-	162명	15개
2009년	2,139명	398명	1,198명	194개
2010년	4,169명	457명	1,830명	309개
2011년	3,692명	663명	1,569명	220개
2012년	4,398명	587명	1,787명	214개
누적계	14,750명	2,105명	6,546명	952개

주 : 2008년 시범사업 시행으로 7월부터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포상을 받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 동장은 평균 7~8개월 소요되어 2008년에는 포상 청소년이 없음.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가. 운영 현황

국가는 청소년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5년 5월 교육부의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인성교육과제로 포함시키고, 이를 계기로 당시 문화체육부 정책의 하나인 “바른청소년육성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자원봉사은행을 설치하고 1996년 2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계획을 시·도로 통보하였다. 이에 1996년 4월부터 1999년 3월 까지 중앙 및 16개 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봉사활동을 지원하였다.

2006년 7월에는 청소년활동 지원과 청소년봉사활동 활성화의 2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로 개편하여 조직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4-1-10〉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지 역	센 터 명 칭	센 터 주 소
서 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부 산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1
대 구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인 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광 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길 13-1
대 전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2층
울 산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경 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강 원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충 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제3별관
충 남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전 북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31 3층
전 남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 무안군 삼향면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경 북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 남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301호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7길 4 1022-13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상의 정책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과제·사업의 지역 현장 전달 및 지원 등이다.

〈표 4-1-11〉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내용

핵심기능	①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제공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청소년 시설·단체 등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
	②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전문인력 역량강화	청소년 지도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교육 실시
	④ 청소년활동 홍보·지원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운영, 보도자료 배포, 소식지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등
	⑤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청소년활동 정보 통신원(청소년·유관 기관 지도자, 대학생) 및 기자단(중·고등 학생) 운영 및 청소년종합정보사이트(www.youth.go.kr)를 통한 정보 제공
	⑥ 학교 등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창의적체험활동과의 연계 중점 지원)	청소년분야 및 관련분야(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 시설, 체육 시설, 학교, 언론 기관 등)의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정책과제	①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터전 관리, 전문인력 pool 확보 및 교육 실시, 청소년 자원봉사 정보시스템(dovol.youth.go.kr) 운영 등
	②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지원	지역별 인증 수련활동 활성화를 컨설팅, 교육·설명회 운영, 인증 신청 접수 및 심사지원, 실사 및 사후관리 등
	③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지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광역 사무국으로서 해당 지역의 국제 성취포상제 운영과 관련된 제반 지원 업무 수행 및 청소년·기관의 참여 활성화
특성화 사업	① 지역 특성화 사업	지역 내 청소년활동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시·도 센터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 밀착형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제 2 장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도입 배경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 가치관과 부모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기 보다는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에 물들게 되었다. 게다가 치열한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은 청소년기에 길러주어야 할 인성을 빼앗아 버렸다.

이에 입시 위주에 매몰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과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학교 수업 외의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 가.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http://dovol.youth.go.kr>) 개발·운영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CS버전)을 구축하여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 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적 등을 보다 쉽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봉사활동 신청 및 경력관리,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등을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갖추게 되었다.

2008년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기능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역별로 운영·관리되었던 시스템(CS버전)에서 통합 시스템(WEB버전)으로 개편, 기존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에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로 발전시켜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의 안정성, 편리성, 정보 제공 확대 등을 꾀하였다.

2012년도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작업을 추진하여 기존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를 개편(dovol.youth.go.kr)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본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1,722,301명이고, 운영 프로그램수는 1,078,654건에 이른다. 또한 등록된 봉사활동 운영 기관(터전)은 2012년 9,014개소로 2011년에 비해 394개소가 증가했으며, 2012년 신규로 가입한 회원수는 268,836명이다.

〈표 4-2-1〉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 회원 수(누적)

(단위: 명)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보유 회원수	294,158	490,737	687,912	876,025	1,161,356	1,453,465	1,722,301

자료: 여성가족부(2013).

〈표 4-2-2〉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단위: 개소)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입 터전수	2,752	3,657	4,635	6,802	8,053	8,620	9,014

자료: 여성가족부(2013).

〈표 4-2-3〉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수(누적)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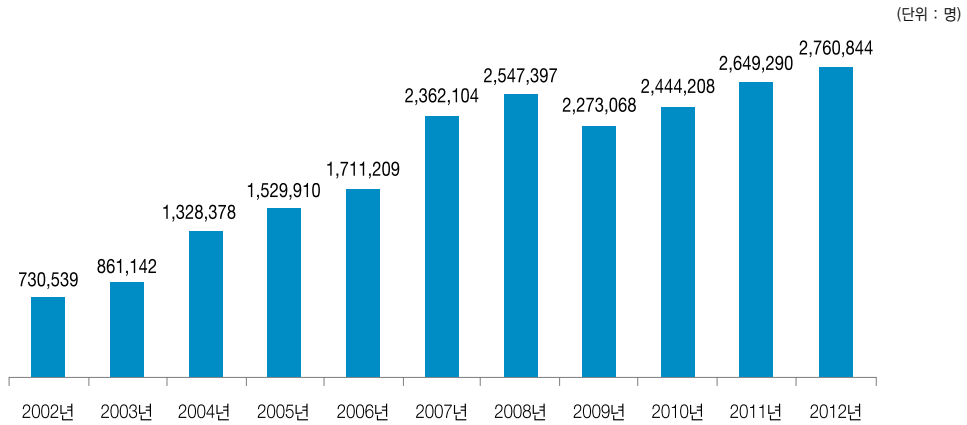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프로그램 수	250,799	367,924	475,974	629,565	747,754	905,881	1,078,654

자료: 여성가족부(2013).

## 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현황

2012년 12월 말까지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총 2,760,844명이다.

[그림 4-2-1]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포함) 인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다.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Global Youth Service Day)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Global Youth Service Day)은 매년 4월 셋째 주 주말에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1998년에 시작되었고,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2001년부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국제적 행사에 동참하기 위한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Global Youth Service Day) 행사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소외 청소년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7,876명(412건)이 참여하였다.

<표 4-2-4> 2012년도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참여 봉사자 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봉사자	2,213	243	538	567	261	273	458	1,494	360	286	77	431	249	1	360	65	7,876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라.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orea Youth Volunteer Programme)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가 함께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파견사업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은 2002년 첫 발을 내딛으며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세계시민의식 배양에 힘써왔고,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협력기관들과 함께 매년 아세안(ASEAN) 국가로 청소년들을 파견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은 국외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현장을 해외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 빈곤, 평화 등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중 최빈국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우선 활동국으로 선정하여 봉사단을 파견한 이래 2012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5개국, 20개 지역에 총 374명을 파견하였다.

〈표 4-2-5〉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 추진경과

연도	파견국	파견센터/인원	주요내용
2002	7개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홍콩, 대만, 호주)	14개 센터/130명	월드컵 청소년홍보단
2003	6개국 (몽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15개 센터/269명	청소년해외봉사단으로 개칭
2004	3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16개 센터/162명	고려인 돕기 봉사활동
2005	1개국(스리랑카)	16개 센터/176명	쓰나미 피해복구 봉사단
2006	1개국(러시아 연해주)	16개 센터/174명	고려인 돕기 봉사활동
2007	2개국 7개 지역(캄보디아, 라오스)	16개 센터/182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원
2008	2개국 8개 지역(캄보디아, 라오스)	16개 센터/183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09	4개국 12개 지역(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16개 센터/240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0	4개국 12개 지역(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16개 센터/266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1	5개국 16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16개 센터/304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2	5개국 20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20개 센터/374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제 3 장 청소년 교류활동

### 1 청소년 국제교류

#### 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상대국 청소년 담당 부처와의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간 토론, 가정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2년에는 21개국과 파견 303명, 초청 317명 등 총 620명의 교류를 시행하였다.

〈표 4-3-1〉 청소년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2개국)

아시아(10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유럽(10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중남미(3개국)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중동·아프리카(9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니지, 카메룬

자료 : 여성가족부(2013).



〈표 4-3-2〉 국가 간 청소년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2013. 02 기준)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 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12까지 교류인원		
				초 청	파 견	총인원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문화협정('65) 한·말 청 교류 약정('92. 4) 지도자 15명 추가 - 공공행정처	'79	30명, 10일간 (15명씩 2회, 각 10일간)	619명	624명	1,243명
사우디 (청소년복지처)	양국정부합동위원회 합의('81)	'81	10명, 10일간	284명	284명	568명
일 본 (내각부)	정상회담공동선언('84)	'87	30명, 15일간	746명	845명	1,591명
중 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98)	'93	40명, 10일간	675명	714명	1,389명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92)	'93	10명, 10일간	25명	57명	82명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계획서('95)	'94	20명, 10일간	179명	184명	363명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협력계획서('95)	'96	10명, 10일간	121명	151명	272명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94)	'96	16명, 10일간	117명	150명	267명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 협의각서('96) ('05 갱신)	'96	3명, 6일간	53명	71명	124명
칠 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약정서('96)	'98	20명, 10일간	35명	57명	92명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약정서('99) 재약정 체결('04)	'99	파견 20명, 10일간 초청 30명, 10일간	424명	276명	700명
몽 골 (사회복지노동부)	사전합의 의거 교류시행('00) 청소년분야협력 약정서('01)	'00	10명, 10일간	134명	124명	258명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약정서('00) 재약정 체결('08)	'01	12명, 10일간	116명	126명	242명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약정서('02)	'02	10명, 10일간	98명	107명	205명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2)	-	10명, 10일간	2명	-	2명
체 코 (교육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3)	'03	10명, 10일간	40명	40명	80명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 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12까지 교류인원		
				초 청	파 견	총인원
수 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협력약정서('04.5)	'05	10명, 10일간	68명	77명	145명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 양해각서('04.12)	'05	10명, 10일간	80명	80명	160명
인 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05.4)	'06	20명, 10일간	109명	108명	217명
파키스탄 (청소년부)	문화교류계획서('05.9)	'06	10명 10일간	39명	9명	48명
이집트 (청소년부)	청소년교류 양해각서('05.12.14)	'06	10명 10일간	40명	70명	110명
그리스 (교육종교부)	청소년분야 양해각서('06.12.13)	'06	3명, 6일간	10명	8명	18명
터 키 (청소년체육부)	2005~2008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계획서('05.9.23)	'07	20명, 10일간	102명	99명	201명
스페인 (청소년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7.3.26)	'07	3명, 10~15일간	3명	3명	6명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양해각서('07.4.23)	'07	10명, 10일간	49명	49명	98명
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7.12.10)	'07	6명, 7일간	21명	28명	49명
튀니지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9.6) 정부간문화협정근거('69.7)	'10	10명, 10일간	16명	20명	36명
싱가폴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분야 양해각서('09.6)	'09	10명, 7일간(격년제)	20명	20명	40명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9.6) 문화협정근거('00.11)	'10	35명 10일간	43명	43명	86명
브루나이 (문화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0.2)	'11	10명 10일간	20명	20명	40명
카메룬 (외교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1.11)	0	10명 10일간	0명	0명	0명
콜롬비아 (교육부)	청소년분야 협력 양해각서('13.2)	0	10명 10일간	0명	0명	0명
32개국				4,288	4,444	8,732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청소년 500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중국 측은 2012년 4월 약정갱신 체결을 통해 매년 한국 청소년 500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5,840명이 상호 교류하였다.

〈표 4-3-3〉 한·중 청소년 특별 교류 현황

(단위 : 명)

구분	초 청				파 견			총 계
	1 차	2 차	3 차	계	1 차	2 차	계	
2004	198명 (7.21 ~ 7.30)	189명 (11.1 ~ 11.10)	100명 (11.17~11.26)	487	-	-	-	487
2005	192명 (7.6 ~ 7.15)	100명 (9.7 ~ 9.16)	191명 (11.15 ~ 11.24)	483	-	-	-	483
2006	96명 (5.24 ~ 6.2)	193명 (7.5 ~ 7.14)	200명 (11.1 ~ 11.10)	489	98명 (4.12 ~ 4.21)		98	587
2007	200명 (4.7 ~ 4.16)	100명 (6.13 ~ 6.22)	191명 (11.1 ~ 11.10)	491	97명 (7.3 ~ 7.12)		97	588
2008	154명 (8.18 ~ 8.27)	100명 (10.29 ~ 11.7)	150명 (11.5 ~ 11.14)	404	95명 (7.22 ~ 7.31)		95	499
2009	196명 (7.8 ~ 7.17)	99명 (9.16 ~ 9.25)	185명 (11.11 ~ 11.20)	480	96명 (5.13 ~ 5.22)	99명 (8.3 ~ 8.12)	195	675
2010	192명 (6.2 ~ 6.11)	100명 (10.13 ~ 10.22)	187명 (11.11 ~ 11.20)	479	192명 (5.11 ~ 5.20)	190명 (9.7 ~ 9.16)	382	861
2011	191명 (6.15 ~ 6.24)	98명 (9.21 ~ 9.30)	193명 (10.26 ~ 11.4)	487	197명 (5.17 ~ 5.26)		197	679
2012	94명 (5.9 ~ 5.16)	200명 (6.13 ~ 6.20)	190명 (10.21 ~ 10.28)	484	199명 (4.13 ~ 4.20)	293명 (8.8 ~ 8.15)	492	976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다.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한·중·일 3국 정상은 2007년을 “한·중·일 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3자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98명을 파견하고, 399명을 초청하였으며, 3국이 순회하여 개최하였다.

〈표 4-3-4〉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현황

연 도 (회차)	일 시	개최장소	인 원
2007년 (1회)	8. 16. ~ 22.	중국 베이징	100명 파견 (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08년 (2회)	9. 17. ~ 23.	일본 동경	100명 파견 (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09년 (3회)	7. 21. ~ 27.	한국 서울	총 300명 파견 (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10년 (4회)	7. 21. ~ 27.	중국 베이징	100명 파견 (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11년 (5회)	3. 11. ~ 17.	일본 동경	98명 파견 (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12년 우호의만남(6회) 미래포럼(1회)	7. 25. ~ 31.	한국 서울	총 297명 - 우호의 만남 237명(한 78명, 중 79명, 일 80명) - 미래포럼 60명(한·중·일 각국 20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과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의 2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 전체비용의 일부를 참여청소년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표 4-3-5〉 2012년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연 번	프로그램명	내 용
1	국제회의·행사참가단 (2008~)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다양한 국제회의·행사 등에 청소년들을 파견 * UN 사회개발위원회 파견 등 18명(2012)
2	해외자원봉사단 (2002~)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 5개국 8개팀 160명(2012)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가.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참가단

청소년들이 국제회의 및 행사 등 다양한 해외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파견대상자를 선발한다. 2012년에는 UN 총회 등에 18명의 청소년을 파견하였다.

### 나. “꿈과 사람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2년에는 아시아 5개국에 8개팀 160명의 봉사단을 10일 내외로 파견하였다.

〈표 4-3-6〉 2012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단위 : 팀, 명)

구 분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계
파견팀수	3	1	1	2	1	8
파견자수	60	20	20	40	20	160

자료 : 여성가족부(2012).

국제청소년 행사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개최하는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와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포럼 등이 있다. 2012년에는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 국제청소년포럼,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아시아청소년지도자초청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4-3-7〉 2012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단위 : 개국, 명)

행 사 명	일 시	참 가 현 황	
		참가국	인 원
2012년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	8. 6. ~ 8. 20.(15일)	24	249
제23회 국제청소년포럼	8. 22. ~ 8.28.(7일)	29	70
2012년 아시아청소년지도자초청연수	10. 14. ~ 10. 23.(10일)	10	30
제13회 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8. 2. ~ 8. 8.(7일)	40	10,000
여수국제청소년축제	7. 24. ~ 7. 29. (6일)	40	38,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제5부 요약

아동빈곤율은 절대빈곤율 기준으로 2003년 5.4%에서 2011년 4.4%로 감소하였으나, 한부모가족은 1995년 7.4%에서 2012년 9.3%로 증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3년 191,32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재학생수도 증가하였다. 요보호아동은 2004년 20,357명에서 2012년 8,003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세대도 1997년 9,544가구에서 2012년 483가구로 크게 감소하였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무지개청소년센터 운영,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지원 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지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과 디딤씨앗 통장사업, 아동시설에 대한 보강과 가정 내 위탁보호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17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3년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과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인 「해밀」을 「두드림·해밀」로 통합하여, 수혜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 제5부 청소년 복지

제1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제4장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 제 1 장

#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 1

## 아동빈곤율 현황

아동빈곤율은 일반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절대빈곤율의 측정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에 속한 가족의 비율을 절대빈곤율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아동에 대입하면 아동빈곤율이란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아동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가구에 사는 아동수를 백분율화 한 것이다.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체 아동 수 대비 중위소득의 40%, 50%, 60% 미만의 소득을 버는 가족의 아동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절대아동빈곤율은 2003년 5.4%에서 2005년 5.7%, 2010년 4.7%, 2011년 4.4%의 분포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60여만 명의 아동이 절대빈곤층이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43만 명의 아동이 절대빈곤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상대아동빈곤율은 2001년 10.3%에서, 2005년 11.8%, 2010년 10.1%, 2011년 10.3%의 분포로 약간의 상승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숫자상으로 보면 2003년 118만 명의 아동이었는데, 2005년에는 131만 명으로 약간 늘다가, 2011년 현재 101만 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1인 가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그 추이는 거의 비슷하나, 최근에는 상대아동빈곤율이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5-1-1〉 아동빈곤율

(단위 : %, 명)

구분	절대아동빈곤율	상대아동빈곤율	절대아동빈곤수	상대아동빈곤수
1인가구 제외				
2003	5.4	10.3	642,798	1,182,289
2004	6.4	11.1	610,066	1,254,024
2005	5.7	11.8	632,989	1,310,398
2006	5.7	11.0	621,665	1,199,704
2007	5.2	11.4	632,164	1,221,469
2008	7.8	10.6	558,849	1,117,698
2009	4.8	10.9	505,817	1,125,185
2010	4.7	10.1	473,056	1,016,567
2011	4.4	10.3	432,740	1,013,005
1인가구 포함				
2006	5.7	10.6	621,665	1,156,079
2007	5.7	11.1	632,164	1,189,325
2008	5.2	10.1	558,849	1,064,976
2009	4.8	10.2	505,817	1,052,925
2010	4.7	9.5	473,056	956,177
2011	4.4	9.9	432,740	973,665

주 : 빈곤아동수는 아동빈곤율을 이용하여 추계함.

자료 : 김문길 외(2012).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13).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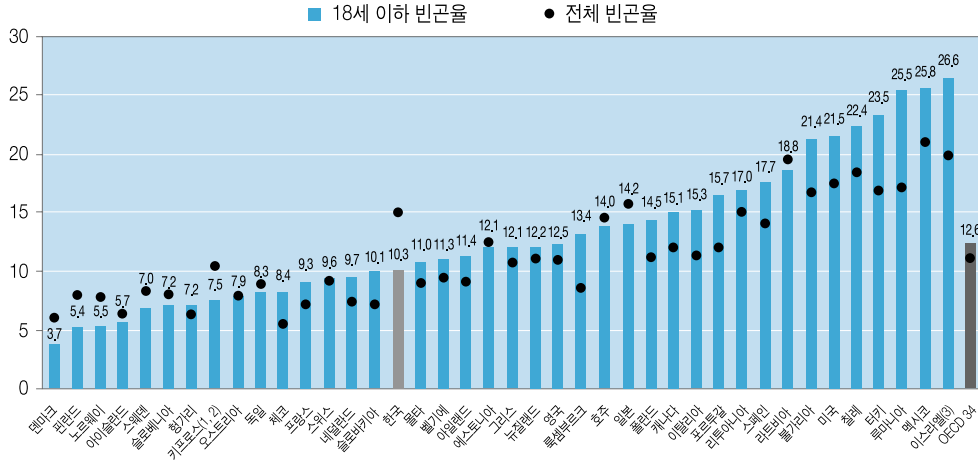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아동빈곤율 국제비교결과는 다음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빈곤율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가장 낮았고,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뒤를 잇는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나라와 같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는 국가는 아동빈곤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2008년 10.3%로 낮은 편이다. 이는 OECD 평균 12.6%보다 2.3%p 낮은 수치이다. 한국보다는 약간 빈곤율이 높으나 전체 평균보다 낮은 국가로는 슬로바키아 10.1%, 벨기에 11.3%, 아일랜드 11.4%, 에스토니아 12.1%, 그리스 12.1%, 뉴질랜드 12.2%, 영국 12.5% 등이 있다. 반면 호주 14.0%, 일본 14.2%, 캐나다 15.1% 등은 전체 평균 이상이고, 아동빈곤율이 20% 이상인 고빈곤율 국가로는 미국 21.6%, 칠레 22.4%, 터키 23.5%, 멕시코 25.8%, 이스라엘 26.6% 등이 있다.

이러한 아동빈곤율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아동(또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때 아동빈곤율이 낮아지고, 미국이나 남유럽국가들과 같이 아동의 문제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돌렸을 때, 아동빈곤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08년, 중위소득 50%)

(단위 :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http://www.oecd.org/els/socialpoliciesanddata/oecdfamilydatabase.htm#child\\_outcomes](http://www.oecd.org/els/socialpoliciesanddata/oecdfamilydatabase.htm#child_outcomes).

## 2 한부모가구 현황

자녀가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하고만 사는 가족형태인 한부모가구는 최근 들어 이혼 증가 등의 원인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는 8.8%, 1백 4십만가구, 2010년에는 9.2%, 160만가구에 이르렀으며, 2012년에는 9.3%인 170만가구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대부분은 모자가구이고, 그중 소수만이 부자가구이다. 현재는 모자가구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부자가구는 약간 증가추세이다.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2006년 9.8% 14만가구가었고,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서 2010년 11.6%, 18만5천가구, 2012년 13.0% 21만8천가구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미혼모의 증가, 가족 해체의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1-2〉 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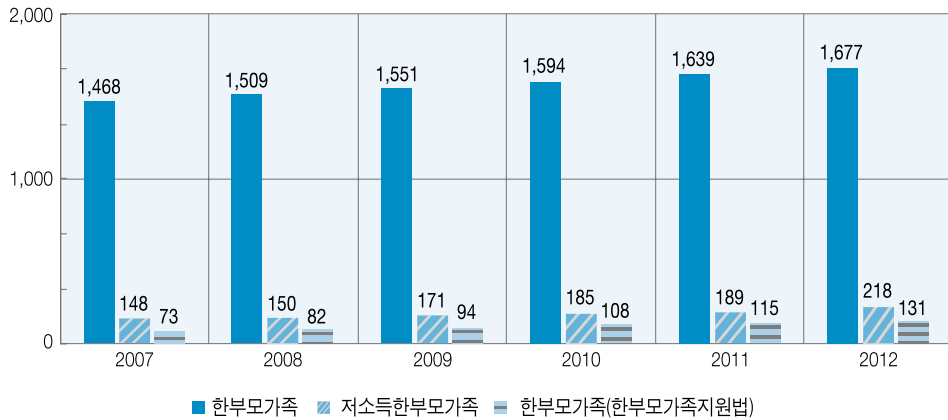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가구(A)	16,289	16,543	16,791	17,052	17,339	17,687	17,951	
한부모 가구	가구수(B)	1,426	1,468	1,509	1,551	1,594	1,639	1,677
	비율(B/A×100)	8.8	8.9	9.0	9.1	9.2	9.3	9.3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수(C)	140	148	150	171	185	189	218
	비율(C/B×100)	9.8	10.1	9.9	11.0	11.6	11.5	13.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대상)	가구수(D)	66	73	82	94	108	115	131
	비율(D/B×100)	3.3	3.6	4.1	4.7	5.4	5.7	6.5

주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국가보훈법대상.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78&bbs=INDX\\_001&clas\\_div=A](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78&bbs=INDX_001&clas_div=A).

[그림 5-1-2] 한부모가구 비율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78&bbs=INDX\\_001&clas\\_div=A](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78&bbs=INDX_001&clas_div=A)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74.5%가 모자가구이고, 다음으로 부자가구 22.5%, 미혼모가구 1.7%, 조손가구 0.9%, 미혼부가구 0.3%의 순으로 분포한다. 즉, 조손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의 형태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원 대상 한부모가구수가 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구는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고,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가족해체 전에 개입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표 5-1-3〉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4	109,039	294,648	88,179	238,341	20,860	56,307	-	-	-	-	-	-
2005	123,666	334,066	99,671	268,975	23,995	65,091	-	-	-	-	-	-
2006	140,188	374,094	112,347	299,430	27,841	74,664	-	-	-	-	-	-
2007	147,947	395,335	118,074	315,220	29,873	80,115	-	-	-	-	-	-
2008	152,853	400,646	118,116	312,718	30,534	82,456	-	-	-	-	2,203	5,472
2009	170,767	454,742	129,935	347,889	36,847	97,872	1,888	3,926	360	814	1,737	4,241
2010	184,749	480,999	138,071	361,066	40,759	106,738	2,392	5,033	379	839	3,148	7,323
2011	188,969	495,703	140,825	370,938	42,519	112,198	3,252	6,823	636	1,404	1,737	4,340
비율	100.0	100.0	74.5	74.8	22.5	22.6	1.7	1.4	0.3	0.3	0.9	0.9

주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국가보훈법대상.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1). 「2011보건복지통계연보」 p291.  
 보건복지부(2012). 「2012보건복지통계연보」 제58호. p307.

### 3 다문화가족 현황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급변하고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족유형이 바로 다문화가족이다. 광의의 개념으로 다문화가족이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의 형태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 등이 있다. 한편, 협의의 개념으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만으로 국한한다.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7년에는 44,258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07,689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배 증가한 121,935명으로 파악되었다. 2013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91,32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13년 현재 만 6세 이하는 116,696명으로 비중으로는 과반수를 넘은 6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만 7~12세 이하는 45,156명(23.6%)이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이하 다문화아동 수는 18,395명(9.6%)이며,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6~18세 이하 아동은 11,081명(5.8%)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5-1-4〉 다문화가족 자녀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자녀 연령대											
				만 6세 이하			만 7세 ~ 12세 이하			만 13세 ~ 15세 이하			만 16세 ~ 18세 이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07	44,258			26,445			14,392			2,080			1,341		
2008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9	107,689	54,890	52,799	64,040	32,557	31,483	28,922	14,736	14,186	8,082	4,187	3,895	6,645	3,410	3,235
2010	121,935	61,734	60,201	75,776	38,341	37,435	30,587	15,451	15,136	8,688	4,393	4,295	6,884	3,549	3,335
2011	151,154	76,985	74,169	93,537	47,639	45,898	37,590	19,172	18,418	12,392	6,337	6,051	7,635	3,833	3,802
2012	168,593	86,169	82,414	104,694	53,439	51,255	40,235	20,607	19,628	15,038	7,751	7,287	8,616	4,372	4,244
2013	191,328	97,724	93,604	116,696	59,628	57,068	45,156	23,060	22,096	18,395	9,400	8,995	11,081	5,636	5,445

자료 : 안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각 년도(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에서 재인용).

다문화가족의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은 25.8%이고, 그 다음은 중국(한국계)계로 22.1%이다. 중국은 3번째로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이 3국이 전체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필리핀 9.4%, 일본 9.3%, 캄보디아 3.1% 등의 순이다.

〈표 5-1-5〉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단위 : 명, %)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100.0
중국(한국계)	14,201	16,681	18,669	31,404	33,186	39,278	42,294	22.1
중 국	7,716	10,889	35,932	29,800	34,852	33,231	37,084	19.4
베트남	5,062	8,194	22,491	27,517	34,256	41,238	49,458	25.8
필리핀	6,013	6,378	10,687	11,926	13,937	15,820	18,020	9.4
일 본	6,016	6,508	6,838	5,734	14,510	16,237	17,806	9.3
캄보디아	-	-	-	2,554	3,565	4,690	5,961	3.1
몽 골	405	816	1,681	1,807	2,250	2,468	2,802	1.5
태 국	799	870	1,563	1,711	2,082	2,427	2,663	1.4
미 국	852	2,406	683	821	1,207	1,422	1,697	0.9
러시아	263	303	736	766	1,090	1,139	1,289	0.7
대 만	878	1,515	770	1,129	1,191	1,615	1,758	0.9
기 타	2,053	3,447	7,639	6,766	9,028	9,018	10,496	5.5

주 : 캄보디아의 경우 '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

자료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에서 재인용).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생수는 2012년 46,954명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학생수가 매년 2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학생수는 '14년도에는 전체의 1%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4 요보호아동 현황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요보호아동 수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에 의해서 1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경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몇 년 전부터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요보호아동은 총 6,92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은 미혼모 아동으로 1,98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이혼으로 1,675명이다. 부모의 학대로 인한 발생아동도 1,122명이나 되어서 가족의 해체 및 학대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5-1-6〉 요보호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단위 : 명)

연도	총아동 발생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계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1997	12,209	3,941	8,268	1,376	3,137	342							3,413
1998	15,499	4,699	10,800	1,654	5,451	286							3,409
1999	16,247	7,247	9,000	1,432	4,284	216							3,068
2000	15,936	6,851	9,085	1,270	4,190	152	1,757						1,716
2001	21,816	11,230	10,586	717	4,897	98	728						4,146
2002	22,341	12,284	10,057	634	4,337	74	749						4,263
2003	21,882	11,660	10,222	628	4,457	79	595						4,463
2004	20,357	10,964	9,393	481	4,004	62	581						4,265
2005	18,468	9,048	9,420	429	2,638	63	1,413						4,877
2006	16,008	6,974	9,034	230	3,022	55	802						4,925
2007	11,394	2,533	8,861	305	2,417	37	748						5,354
2008	11,672	2,388	9,284	202	2,349	151	706	891	1,036	732	274	2,943	
2009	10,500	1,472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2010	9,960	1,370	8,59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2011	8,436	953	7,483	218	2,515	81	741	1,125	418	536	154	1,695	
2012	8,003	1,077	6,926	235	1,989	50	708	1,122	448	533	166	1,675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012). 2012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요보호아동의 보호형태는 크게 시설보호와 가정보호로 나뉜다. 시설보호에는 양육시설, 일시보호 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있고, 가정보호는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보호가 있다. 전반적으로 시설보호가 가정보호보다 약간 더 많은 상황이다. 시설보호 중에서는 양육시설 입소가 가장 많고, 공동생활가정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보호는 가정위탁이 가장 많고, 소년·소녀가정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입양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5-1-7〉 요보호아동 보호 현황

(단위 : 명)

연도	조치내용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1997	8,268	3,928	3,664		125	139	4,340	673	2,269	1,398
1998	10,800	5,141	4,948		132	61	5,659	518	1,741	3,400
1999	9,000	4,702	4,579		78	45	4,298	572	1,776	1,950
2000	9,085	4,481	4,332		64	85	4,604	564	1,755	2,285
2001	10,586	4,774	4,671		41	62	5,812	874	1,848	3,090
2002	10,057	4,663	4,547		57	59	5,394	673	2,544	2,177
2003	10,222	4,824	4,747		42	35	5,398	500	2,506	2,392
2004	9,393	4,782	4,680		38	64	4,611	299	2,100	2,212
2005	9,420	4,818	4,769		48	1	4,602	407	1,873	2,322
2006	9,034	4,366	4,313		53	-	4,668	308	1,259	3,101
2007	8,861	3,245	3,189		39	17	5,616	247	1,991	3,378
2008	9,284	4,964	2,997	1,261	39	667	4,320	178	1,304	2,838
2009	9,028	4,767	2,406	1,640	35	686	4,261	213	1,314	2,734
2010	8,590	4,842	2,445	1,751	23	623	3,748	231	1,393	2,124
2011	7,483	3,752	2,246	862	32	612	3,731	128	1,253	2,350
2012	6,926	3,748	2,272	676	25	775	3,178	117	772	2,289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각 년도.

5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정 세대는 1997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97년(9,544세대) IMF를 정점으로 1999년 7,924세대, 2001년 5,248세대, 2003년 3,994세대, 2005년 2,755세대, 2007년 1,630세대, 2009년 1,054세대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소년·소녀가정의 세대수는 905세대이고, 세대원 수는 1,327명이고, 2012년에는 483세대, 796명이다.

2012년 소년소녀가정의 재학상태별로는 미취학 0명, 초등학교 43명, 중학교 138명, 고등학교

370명, 기타 245명이다. 즉, 소년·소녀가정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학생이고 초등학생 순이다. 2012년도의 경우 전년도인 2011년(699세대)에 비해 세대가 216세대 감소하였고,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가장 많았던 1997년(9,544세대)에 비해서는 무려 1/20로 감소하였다. 이는 아동이 보호자 아래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1-8〉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

(단위 : 명, 세대)

연 도	세대수	전 세 대 원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 타
1990	6,696	13,778	142	3,593	4,009	2,998	3,036
1991	6,902	13,985	121	3,650	4,093	3,194	2,927
1992	7,089	14,081	136	3,521	4,404	3,374	2,646
1993	7,322	14,293	119	3,331	4,710	3,622	2,511
1994	7,540	14,372	124	3,026	4,940	3,892	2,390
1995	8,107	15,118	124	2,914	5,261	4,392	2,427
1996	8,849	16,001	149	2,854	5,447	4,833	2,718
1997	9,544	16,547	174	2,830	5,382	5,516	2,645
1998	8,407	13,627	150	2,428	4,515	5,141	1,393
1999	7,924	12,427	150	2,356	4,046	4,992	883
2000	6,229	9,579	121	1,862	3,217	4,041	338
2001	5,248	8,060	133	1,640	2,611	3,414	262
2002	4,531	6,947	115	1,478	2,232	2,936	186
2003	3,994	6,184	99	1,309	1,966	2,668	142
2004	3,504	5,444	87	1,244	1,681	2,331	101
2005	2,755	4,332	85	901	1,343	1,923	80
2006	2,086	3,271	39	572	1,031	1,570	59
2007	1,630	2,501	25	401	789	1,226	60
2008	1,337	2,058	12	292	621	1,080	53
2009	1,054	1,596	10	196	440	904	46
2010	905	1,327	9	149	375	753	41
2011	699	1,020	8	103	264	601	44
2012	483	796	0	43	138	370	245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010).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011, 2012),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

## 제 2 장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 1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 가. 학업중단 청소년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은 2012년 기준 연간 7만 4천명 수준이며, 재학생 대비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교 0.6%, 중학교 0.9%이나, 고등학교는 1.9%로 학제별 학업중단 비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부적응에 따른 학업 중단 비율(43.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전국 16개 광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기초사회생활교육,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복귀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9박 10일 과정의 기숙형 대안캠프 ‘성장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태도 개선 및 학업 복귀 동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에게 2주간의 숙려 기간을 제공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확대·시행하여 청소년기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8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표 5-2-1〉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만 9 ~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인 자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사업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월 10만원 ~ 연 350만원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0).

## 나. 가출 청소년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폭행·성매매 등 범죄 및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 가출과 반복적인 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은 신속하게 보호, 상담,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1) 정책의 변화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가출청소년쉼터 확대」가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영되다가 가출 청소년의 상황 및 욕구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표 5-2-2〉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① 도입기	- 1992년 최초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 1998년 5개 광역시별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② 확대기	- 200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법적근거 마련 - 2004년 일시쉼터(드롭인센터) 설치·운영 - 2005년 중장기쉼터 설치·운영
③ 성숙기	- 2006년부터 정체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중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2) 사업내용 및 규모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활동 프로그램 기회제공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로서 쉼터의 활동범위에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등이 포함된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청소년쉼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형태(Matching Fund, 정책정률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2013년 현재 청소년쉼터는 10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운영주체는 대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지역실정 및 여건 등에 따라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표 5-2-3〉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일시쉼터	7	7	9	10	10	10	13	21
단기쉼터	43	43	42	47	49	48	49	50
중장기쉼터	21	22	25	24	24	25	30	32
계	71	72	76	81	83	83	92	103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3) 청소년쉼터 종류 및 유형별 기능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지원하는 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이며 그 유형별 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청소년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1992년 설립된 서울 YMCA 쉼터이고, 2004년에 가출청소년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하였으며, 2013년 현재 일시쉼터 21개소, 단기쉼터는 50개소, 중장기 쉼터는 3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5-2-4〉 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 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최장 7일까지 연장 가능)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2년 이내 중장기보호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기 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 쉼터와 연결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4)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청소년쉼터 이용현황은 〈표 5-2-5〉와 같으며, 쉼터이용 청소년 실적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전산망인 ‘행정지원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시쉼터 21개소를 제외한 단기·중장기쉼터 82개소의 수용 가능한 총 정원은 913명이다.

〈표 5-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백만원)	4,639	4,651	5,874	6,262	7,287	8,137
쉼터수(개소수)	76	81	83	83	92	103
이용인원(연인원)	235,209	245,653	267,117	400,533	405,204	-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5)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내실화

청소년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시-단기-중장기로 유형화하고, 쉼터유형별로 운영모형 및 운영목표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 운영역량 강화 및 가출 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평가사업, 이행실태 점검, 종사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 연수, “청소년쉼터 주간”(최초 쉼터 설치일인 10월 28일이 속해 있는 주)을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접근·개입을 위해 거리상담 전담 인력을 전국 일시쉼터에 배치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일시쉼터 야간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특화 이동형 쉼터를 설치 운영하였다.

## 2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다문화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우리사회에 이주 배경청소년(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5-2-6〉 2013년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수

(단위 : 명)

총 계	북한이탈	중도입국*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191,942명	6,220명	7,088명	12,301명	166,333명
근 거	'12. 12. 31 기준 통일부 (9~24세)	'13. 6. 31 기준 법무부	'13. 1. 1 기준, 안행부**	

주 : \* 중도입국청소년 : 외국인입국자 중 미성년 자녀(F-2-2, F-5-3), 만 20세 미만 귀화 허가자 및 귀화신청자 수(법무부 이민통합과 통계).

\*\* '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13.7, 안전행정부 정책자료 승인통계).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상흔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하나원 교육생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앓는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 학습 공백 기간,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은 문제, 교육시스템 부적응 등으로 학교생활 및 적응이 어려워 중도 탈락률이 일반청소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입국초기 교육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통일부 하나원과 협약을 체결(2009년)하여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5-2-7〉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명)

구분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세 ~ 24세	3,517	357	467	562	594	706	569	654	395

자료: 통일부 정착지원과(2013).

〈표 5-2-8〉 북한이탈청소년 재학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정규학교 재학현황 (교육부)						대안 교육시설 <sup>2)</sup>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 현황 <sup>1)</sup>	600	559	231	247	192	193	232	2,254
	1,159		478		385			
	2,022							

주: 1) 2013년 4월 기준.

2)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

자료: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013).


최근 외국인 부모의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하는 동반·중도입국청소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현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모, 언어능력 등에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의식으로 한국사회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은 신분상의 불안정(미등록)으로 정규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문화 청소년의 입국초기 적응을 위한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지원 사업(Rainbow School)을 개발하여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 한국어, 기초학과 교육, 점성고시 지도, 편·입학 지도, 정체성 및 교우관계, 문화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2개 지역 시범실시과정에서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2011년에는 10개소, 2012년에는 17개소, 2013년에는 20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2012년 8월 시행)으로, 탈북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었다. 지원방안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 운영으로 잡(job)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중등교 각 2개교 및 청소년 수련관 2개 기관에서 운영 매뉴얼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075-8668/8663 

###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및 특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을 받는 청소년(초4~중2)은 2005년 2,350명(연인원: 225,600명), 2006년 4,200명(연인원: 1,260,000명), 2007년 6,300명(연인원: 1,890,600명), 2008년 7,680명(연인원: 2,165,760명), 2009년 7,245명(연인원: 2,064,825명), 2010년 6,645명(연인원: 1,727,700명), 2011년 8,200명(연인원: 2,148,400), 2012년 8,200명(연인원: 2,148,400명)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시행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아카데미 실시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다. 2008년 185개소가 운영되다가, 2009년 178개소, 2010년 161개소로 잠시 축소 운영 되었으나, 2011년부터 200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다문화 청소년 대상 아카데미 2개소, 장애청소년 대상 아카데미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2005년 시범실시(46개소) 이후 2006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국비 50%)되어 지자체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09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 2012년 현재 국고 1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30%, 다른 지역의 경우 50%가 국비에서 지원되었다.

<표 5-2-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
사업대상	저소득·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홀로 지내는 청소년(초4~중2) - 2005년 : 2,350명(연인원 : 225,600명)      - 2006년 : 4,200명(연인원 : 1,260,000명) - 2007년 : 6,300명(연인원 : 1,890,600명)      - 2008년 : 7,680명(연인원 : 2,165,760명) - 2009년 : 7,245명(연인원 : 2,064,825명)      - 2010년 : 6,645명(연인원 : 1,727,700명) - 2011년 : 8,200명(연인원 : 2,148,400명)      - 2012년 : 8,200명(연인원 : 2,148,400명)
시행주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운영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단체시설 등
사업기간	2013.1 ~ 12월 연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중에도 운영)
사 업	200개소(기본형 : 1개소 총 40명, 1개반 20명, 2개반) 운영
사업예산	154억원(국비지원율 : 서울 30%, 지방 50%)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 (1) 지역별 운영현황

지역별 운영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전국적으로 200개소가 운영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총 5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전체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10〉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지 역	참 여 현 황								
	계	지 원 형				혼 합 형			
		소계	초등	중등	혼합	소계	초등	중등	혼합
서울	20	20	18	0	2	-	-	-	-
부산	11	11	8	3	-	-	-	-	-
대구	9	9	9	-	-	-	-	-	-
인천	6	6	3	3	-	-	-	-	-
광주	5	5	4	1	-	-	-	-	-
대전	5	5	5	-	-	-	-	-	-
울산	5	5	2	3	-	-	-	-	-
세종	2	2	1	1	-	-	-	-	-
경기	36	35	24	6	5	1	1	-	-
강원	10	10	6	2	2	-	-	-	-
충북	10	10	10	-	-	-	-	-	-
충남	11	11	9	4	-	-	-	-	-
전북	17	17	10	6	1	-	-	-	-
전남	17	17	10	6	1	-	-	-	-
경북	11	11	7	2	2	-	-	-	-
경남	17	17	11	0	4	-	-	-	-
제주	8	8	6	1	1	-	-	-	-
계	200	199	143	38	18	1	1	-	-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2) 운영형태별 운영현황

전체 200개소 중 지원형은 199개소로 가장 많은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합형 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5-2-11〉 운영형태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시 설 수	비 율
지 원 형	199	99.5
혼 합 형	1	0.5
합 계	200	100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075-8640/8643



## 4 지역아동센터 운영

### 가. 지역아동센터

####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정부에서는 방임될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전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아동이용시설로서, 만 18세 미만의 방과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인지·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안전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프로그램은 아동에게 기초학습지도, 학교생활관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에는 공연관람, 견학, 캠프 등이 포함되며, 복지프로그램으로는 아동과 부모상담 등을 통해 아동정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으로는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지역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기능 등이 포함된다.

〈표 5-2-12〉 지역아동센터 주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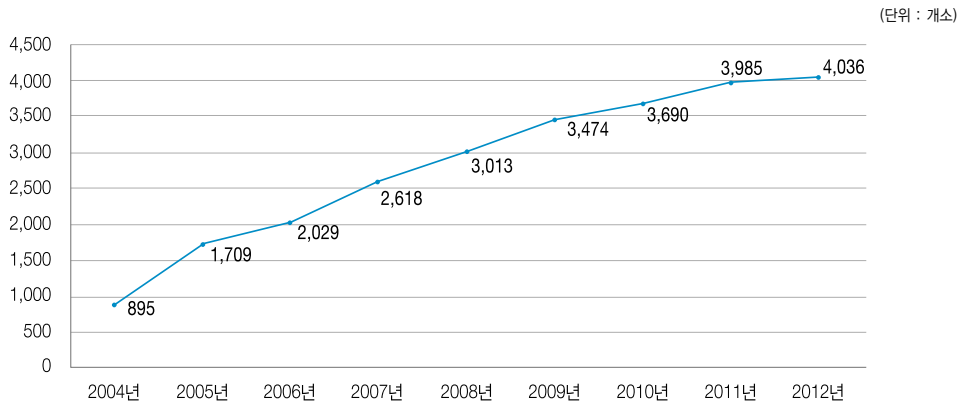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내 용
보호프로그램	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정서지원, 안전지도 등
교육프로그램	숙제지도, 기초학습지도, 학교생활관리, 예체능교육, 독서지도 등
문화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특기적성, 예술치료 등
복지프로그램 (아동정서지원)	아동상담, 정서적지지, 부모·가족 상담, 신체발달 지원 등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원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3),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 (3)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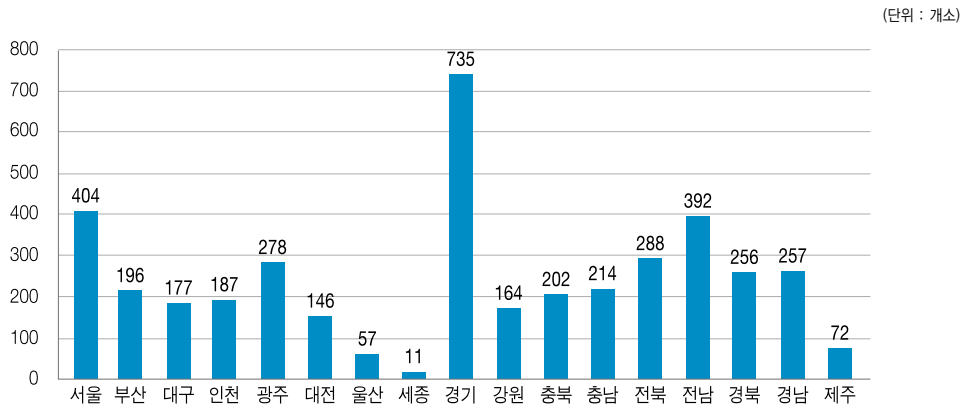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보호, 학습지도,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08년 3,013개소, 2012년 4,036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 전남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5-2-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3).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그림 5-2-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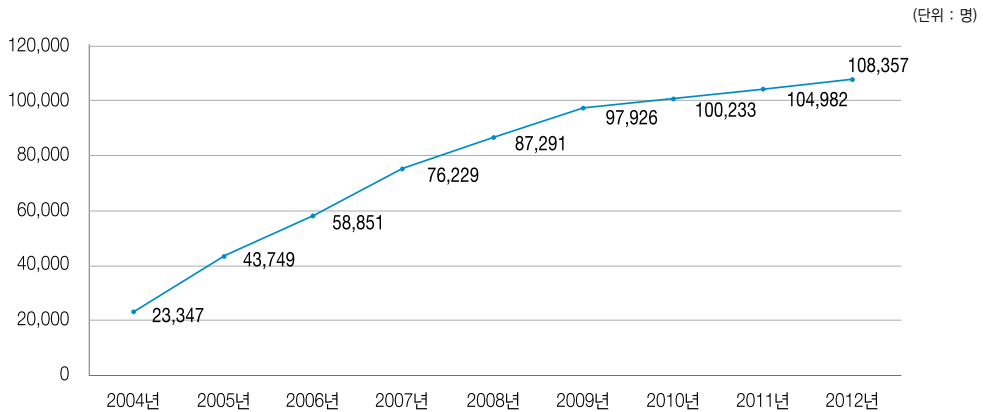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3).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 (4)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증가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아동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에 23,347명의 아동이 이용한데 비해, 2012년에는 108,357명으로 증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학년별 현황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42,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38,030명, 중학생 20,0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다문화·새터민 등 특별관리아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 장애아동 2,869명, 다문화 가정 아동 6,992명, 새터민 407명이 이용하고 있다. 경제상황별로는 기초생활수급권과 차상위계층 아동이 다수(2012년 기준,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승인아동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2-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3).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 (5) 지역아동센터 지원강화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시설 증가에 따라 정부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원대상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운영비 지원에 대한 단계적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에는 3,742개 시설에 대해 월평균 4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5-2-1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단가

(단위 : 개소,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개소 (개소)	500	800	902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3,742
지원단가 (만원/월)	67	200	200	200	220	상반기 : 220 하반기 : 320	320	370	395	420
예산 (억원)	12	73	98	206	282	457	543	695	767	905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2007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운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총 3,500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청소년지도, 학습지도, 예체능지도, 독서지도, 지역사회복지사 분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 5 드림스타트 사업(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양육 지도,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기능 회복, 양육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4년 민간단체에 의해서 추진하였던 ‘위스타트(Welfare + Education: WE)’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다.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던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8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지원대상은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복지욕구조사 및 위기도 검사를 통해서 대상아동을 선정한다. 단, 만 12세 이상의 아동이라도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위기도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기 또는 중위기로 판정된 아동과 저위기로 판정된 아동 중 특정 영역에서 고위기 또는 중위기가 나타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 드림스타트 수행체계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전반적 삶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별·가구별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생활 전반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5-2-14〉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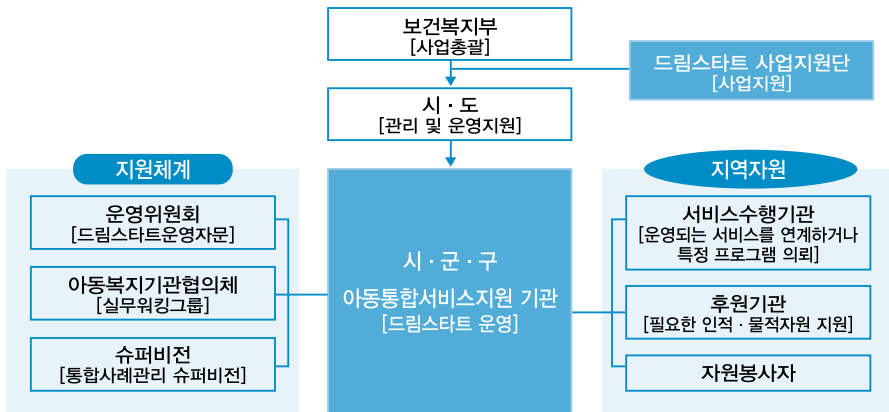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서비스	건강검진 및 예방(신체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검진 및 관련교육, 건강교육, 클리닉, 응급처치 및 영양 관련 교육 등) 건강관리(질병관련 치료지원 등)
인지/언어 서비스	기초학습(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독서지도, 경제교육 등) 학습지원(교구재활용학습, 공부방, 도서관운영, 보충학습, 예체능, 학습지 지원 등)
정서/행동 서비스	사회정서(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교육, 진로지도 등) 심리행동(심리상담 및 치료, 인터넷중독 상담 및 치료) 보호(돌봄기관 연계, 야간 보호 및 교육 등), 문화체험
부모 및 가족, 입산부 서비스	부모교육(상담 및 교육, 자녀발달, 양육, 자조모임 등) 양육지원(다문화가정지원, 취미, 여가, 안전 및 건강지원 등) 산전산후관리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이러한 제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 재정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드림스타트를 만들어 3인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3인 이상의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이나 서비스는 기존 지역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지원, 전담인력 교육, 운영모델 연구·개발, 사업평가, 후원 개발

및 홍보 등의 아동통합서비스 실무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5-2-4]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나.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2008년부터 본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2007년 16개 시·군·구에서 2008년에는 32개 시·군·구, 2009년에는 43개가 늘어난 75개 시·군·구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1개 시·군·구, 2011년에는 131개 시·군·구, 그리고 2012년에는 50개가 늘어난 181개 시·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도 2008년 98억원에서 2012년 46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5-2-15>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단위 : 개소, 억원,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설치지역	16	32	75	101	131	181
증가 수	-	16	43	26	30	50
사업예산	50	98	225	301	372	462
아동수	3,769	9,901	26,208	32,641	44,651	65,724
가구수	2,465	6,516	17,141	21,699	29,332	42,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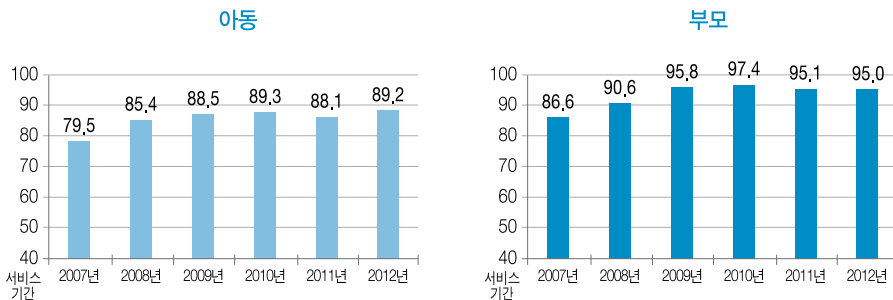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증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사업초기에는 시·군·구 내 일부지역 아동(2~3개 동,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시·군·구에 따라서 시·군·구 내 전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거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현재 100여 개 시·군·구가 자체예산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사업지역을 확대하였고, 이 중 남양주시 등 35개 시·군·구는 전 읍면동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2007년 3,700여 명에서 2012년에는 약 18배가 증가한 65,7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 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화

이러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기능인 사례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기본적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는 통합형·맞춤형 사례관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문제의 조기발견 및 개입이라는 예방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5-2-5] 드림스타트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통합형 사례관리란, 서비스의 통합과 전달체계의 통합을 뜻한다. 먼저 서비스의 통합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의 총 3개 영역에 대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달체계의 통합이란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민간 전문인력(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건강, 복지, 보육 전문가)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적인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개별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 및 전문성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맞춤형 사례 관리란, 단순히 서비스를 모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수혜적 복지 개념을 지양하고, 아동 및 가정의 상태에 따라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대상 아동과 가정을 선정할 때, 우선 위기도 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시점에서부터 위기수준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대상(고위기 또는 중위기)과 일반사례관리 대상(특정 영역 고위기 또는 중위기)으로 구분하여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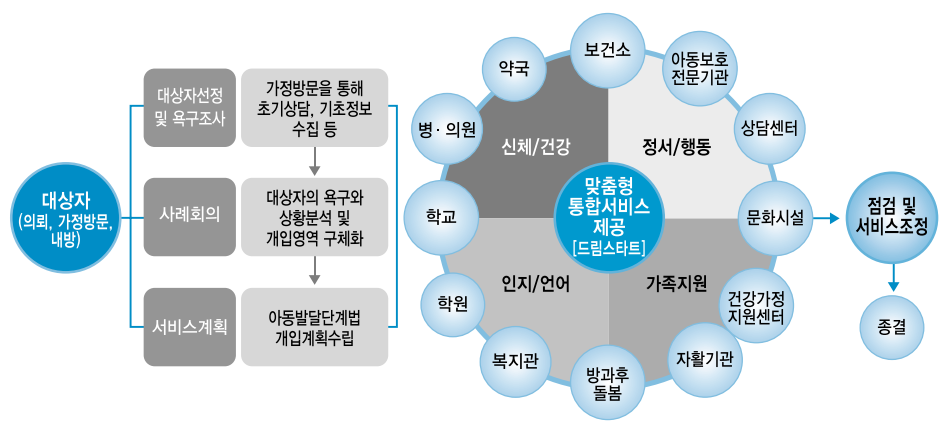
〈표 5-2-16〉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특 징	내 용
예방적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가 심각해진 뒤의 사후치료와 개입보다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예방과 보호의 사례관리를 지향</li> </ul>
통합적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의 통합 : 신체·건강 / 인지·언어 / 정서·행동서비스</li> <li>• 방법론의 통합 : 개별실천, 집단실천, 가족실천, 지역사회실천</li> <li>• 민간과 공공의 전달체계의 통합</li> </ul>
맞춤형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아동 및 가족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li> </ul>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드림스타트 사업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되었다. 시·군·구에 드림스타트가 설치되면,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육구와 인프라조사, 가정방문 인테이크(가정방문 인테이크는 통합서비스 제공 전 단계로서 개별아동과 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조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육·복지 등 세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 치과치료 등을 제공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방과후 교실을 연계하거나 지역 학원들과 연계하여 학력 보충 기회 등을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 드림스타트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 복지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학원 등을 자원기관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 자원 연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2-6]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2-2023-8741

## 6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최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에게까지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저소득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 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갖도록 2009년 1월부터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대국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디딤씨앗 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일부)에게 전달이 된다.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 혼자서 살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0~18세 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이 저축한 만큼 국가가 추가로 적립(월 3만원 한도)하여 저축액이 두배가 되게한다. 또한, 디딤씨앗 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디딤씨앗 통장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것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국가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의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30,000원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30,000원을 적립하여 총 60,000원이 아이들의 디딤씨앗 통장에 적립되게 된다. 즉, 기부한

후원금이 두 배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디딤씨앗 통장은 단순히 자립을 위해 저축액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모으게 하는 경제교육 효과도 있으며, 아이들 나름대로 디딤씨앗 통장으로 사회 진출 시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하여 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장점도 있다.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일부(2011년 1999년생, 2012년 2000년생, 2013년 2001년생)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아동이 매월 6만원(아동 3만원, 국가 3만원)을 0~18세까지 적립시 1,930만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6월말 현재 아동이 월 평균 3만 4천원을 저축하고 있다.

〈표 5-2-17〉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연도별	가입대상 (명)	가입자 (명)	가입률 (%)	월평균 적립액(원)	적립금 누계(억원)		
					아동	정부	계
2009	43,143	36,469	84.5	28,184	258	223	481
2010	42,030	40,829	97.1	29,129	377	308	685
2011	45,088	42,985	95.3	31,826	510	409	919
2012	48,788	43,292	88.7	32,435	670	527	1,197
2013	49,481	43,397	87.7	34,594	759	591	1,350

주 :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3).

## 7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정부는 부모의 빈곤·실직·실종 등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 시설보호, 입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 내 보호하는 것으로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주택형 숙소에서 소규모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선 선정해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요보호 아동이 가정과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후된 아동시설부터 기능보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시설의 다기능화와 함께 가정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여 가정 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령 전면 개정(2012.8.5)을 통해 보육사 배치기준을 아동의 연령에 따른 기준으로 강화하여 보육사 배치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양육을 위해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의 배치 기준도 강화하였고, 자격증 기준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동 1인당 공간을 넓히고(3.3㎡ → 6.6㎡), 침실 1개의 정원도 현행 6인에서 3인 이하로 축소하였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사회부적응이나 정서불안 장애가 있는 아동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6억원, 약 600명)하였으며, 2013년 확대(8억원, 약 700명) 시행하였다.

〈표 5-2-18〉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계(현원)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2008	285	17,992	242	16,706	2	69	10	477	12	257	14	341	5	142
2009	280	17,586	239	16,239	2	65	11	514	12	262	13	368	3	138
2010	280	17,119	238	15,787	2	69	11	495	12	235	14	402	3	131
2011	280	16,523	242	15,313	1	32	10	455	12	249	12	113	3	113
2012	281	15,916	243	14,700	-	-	11	497	12	256	12	335	3	128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시설아동을 중심으로 요보호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의지·자립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퇴소 후 실제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2008~2010년 3년간 전국 13개 시설(양육시설 11개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개소)에서 4세 이상~24세 자립연장아동까지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전체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그 대상을 그룹홈, 가정 위탁아동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2012년 8월 5일 시행)에 자립지원 및 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전담기구설치, 자립지원추진협의회구성의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생활(퇴소) 아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서비스에는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전세자금 우선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분양, 자립지원시설 거주, 폴리텍대학 입학 우선기회

부여, 뉴스타트 프로젝트/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 나. 가정위탁 지원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200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2012년 8월 5일 시행)하여 가정위탁 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시·군·구에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위탁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2년말 11,030세대, 14,502명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표 5-2-19〉 가정위탁 보호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06	10,253	14,465	6,152	9,062	3,097	4,160	1,004	1,243
2007	11,622	16,200	6,975	10,112	3,651	4,850	996	1,238
2008	11,914	16,454	7,488	10,709	3,436	4,519	990	1,226
2009	12,170	16,608	7,809	10,947	3,438	4,503	923	1,158
2010	12,120	16,359	7,849	10,865	3,365	4,371	906	1,123
2011	11,630	15,486	7,463	10,205	3,351	4,260	816	1,021
2012	11,030	14,502	7,230	9,732	3,037	3,831	763	939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월 12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부터 위탁이 종결될 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준하여 자립지원정착금, 대학진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 및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을 위해서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위탁아동 1인당 150만원의 과세공제 혜택을 위탁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의 책임을 경감하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을 위해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6,454명의 아동으로 시작해, 2012년 14,502명의 가정위탁 아동 전수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가입으로 사고나 질병에 의한 치료비 및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 받아 위탁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위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1인당 기준 10만원의 상해보장비가 2011년에는 7만원으로 단가가 낮아졌지만, 담보내용은 확대되어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서 심리정서 검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은 2010년 월 16만원 이내(심리검사비 10만원)에서 2012년 현재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20만원)로 증액하였으며, 치료기관 선정 시 상담사 요건 기준에서 한국미술치료학회를 추가하여 심리치료의 범위를 넓혔다. 진료비 청구 부분에서 심리치료지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월 2만원 이내, 택시 이용 시 월 4만원 이내)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가정을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전국에 483세대, 796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보조금(월 12만원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후견인, 결연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추진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 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 5~7인으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형태로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2년 말 기준 정부지원 공동생활가정은 416개소로서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홈 생활 아동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퇴소 시 양육시설 퇴소아동과 같은 액수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체계가 요보호 아동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인식하에 시설보호 비중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종류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추가되었다.

〈표 5-2-20〉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 도	시 설		보호인원
	신고시설	지원시설	
2008	348	248	1,664
2009	397	290	1,993
2010	416	348	2,127
2011	460	416	2,241
2012	489	416	2,438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마. 입양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입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2011년 8월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 「입양특례법」으로 법령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여, 미혼모 등이 출산 후 일주일이나 지나야 입양동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와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가족 찾기 등을 위해 본인의 입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양정보공개청구권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2012년 8월부터 「입양특례법」이 시행되었다.

### (1) 입양제도의 개선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된다. 이에 따라 입양 성립요건이 입양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이주허가)에서 법원의 입양허가로 강화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는 양부모 자격을 제한하고, 양부모가 될 자는 입양 성립 전 입양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부모 자격심사가 강화된다.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 이 지나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려기간을 두고, 입양 동의 전 입양기관은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 시 양육정보 및 정부지원 내용, 입양의 효력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해 온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의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다.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아동이 입양 의뢰 된 때부터 5개월 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6개월 → 1년)하였으며 입양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 관찰, 아동양육 정보 제공, 입양가정에 수시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3개월마다 가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회 이상은 현장방문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입양된 사람은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은 중앙입양원의 입양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입양원에 입양아동 및 그 친생부모, 양부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 (2) 국내입양 활성화

요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 우선 국내입양을 추진하고 국내입양이 어려울 경우 국외입양조치 되도록 2007년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앞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입양 중 장애아동 입양비율이 매우 낮으며, 아동 양육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6년

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2003년 2월 9일)을 통해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입양절차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13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표 5-2-21〉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	1,641 (42.1%)	1,461 (41.0%)	1,332 (41.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국외	2,258 (57.9%)	2,101 (59.0%)	1,899 (58.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계	3,899 (100.0%)	3,562 (100.0%)	3,231 (100.0%)	2,652 (100.0%)	2,556 (100.0%)	2,439 (100.0%)	2,475 (100.0%)	2,464 (100.0%)	1,88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http://stat.mw.go.kr>).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은 기존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 1인당 월 55만 1천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2010년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 57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 중증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월 62만 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를 기존 연 252만원에서 2011년 2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012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지원액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심리치료 지원한도를 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였다. 13세 미만 입양아동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2014년 부터는 14세 미만 까지 확대 지원한다.

〈표 5-2-22〉 국내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지 원 내 용		지 원 액
입양비용 지원(2007년 ~)		100 ~ 270만원
양육수당(2007년 ~)		(만 13세 전까지) 월 15만원/월
의료급여(2005년 ~)		(만 18세 전까지) 의료급여 1종
심리치료지원(2010년 ~)		(만 18세 전까지) 월 20만원 한도/월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양육보조금(1996년 ~)	월 627천원, 월 551천원
	의료비(1996년 ~)	연간 260만원 한도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공개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1월부터 입양한 공무원에 대해 20일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 근로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서부터 국내보호 인프라 확충 등 국내가정 보호, 입양 후 사후관리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등 국내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2-2023-8786

## 8 아동 급식 지원

정부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여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급식은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2001년 11월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급식지원 확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취학아동에 대해 조·석식,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사업 시작 이후 1만 5천여 명의 결식 또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방학 중, 토·공휴일 중식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여름방학에는 3만 9천명에 대하여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였다. 겨울방학에는 급식 지원대상을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대하는 적극적 급식지원으로 추진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학기 중 급식을 받는 학생 중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7만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지원되었다.

결식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에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2009년에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조사 및 선정 주체를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2005년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비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여 왔으나, 2009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자 증가(47만 여명)로 인해 2009년 및 2010년에 한해 국비가 지원되었다.

급식지원 대상자는 연중 조사하되,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실시하고 급식지원대상자 조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하고 있다. 아동급식전달 방법은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소 급식과 인근지역의 일반음식점 급식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였고 지역의 도시락업체를 통한 도시락배달과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식지원과 식품만 교환이 가능한 식품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급식전달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지원대상의 확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인적 자원과 종교·시민단체 등의 급식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물적 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표 5-2-23〉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여름방학 (8월)	겨울방학 (12월)	여름방학 (7월)	겨울방학 (12월)	여름방학 (8월)	겨울방학 (12월)	여름방학 (7월 말)	겨울방학 (12월)	여름방학 (7월 말)	겨울방학 (12월)
294,599	415,519	545,836	476,444	483,917	485,811	471,515	471,961	435,753	438,042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제 3 장

##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 1

## 상담서비스

## 가. 청소년상담서비스 배경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빈번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과 문제를 방지할 경우 성인기에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어려움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및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당시 체육부)가 청소년상담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청소년종합상담실(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현재 17개 시·도와 173개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설치된 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은 1993년에 청소년대화의 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법인화됨으로써 중앙지도 차원의 상담시설과 지역 중심의 상담지원을 위한 기관설치 및 운영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과 학부모 및 지도자 대상의 제반 상담 서비스 제공과 각종 교육 및 연수, 학술 및 연구 활동, 각종 매체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이러한 서비스의 직·간접 제공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의 보호 업무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 육성 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청소년 정책환경의 일대 변혁이 단행되면서, 기존 청소년상담기관의 위상과 역할 및 조직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종합상담실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2일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 22조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원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업중단·취약계층·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급속한 문화적 변동,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기능의 붕괴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심화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가출,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상담 활동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 활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 기존 활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해결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교육 연수 및 상담 실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상담 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영역별 보수교육을 통해 실제 청소년 상담업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선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 밖에 지속적인 또래상담지도자 양성 교육과 우수사례 보고 대회를 개최하여 또래상담자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였으며, 품성 계발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직무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동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업은 전문상담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체계 활성화사업에서는 청소년상담 중추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상담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상담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상담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5-3-1〉 2012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단위 : 명)

구 분		수 료 인 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1,292
또래상담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9,036
품성개발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1,924
부모교육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1,155
센터직원 직무연수		267
사업별 직무 연수	인터넷중독상담 전문가 교육	417
	두드림 전문인력 양성과정	489
	해밀 전문인력 양성과정	70
	자살예방교육 지도자	110
	자살위기개입상담전문가 교육	45
	학교폭력예방 '알콩달콩' 지도자	650
총 계		15,455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2).

2012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상담 이용건수는 105,098건으로 나타났다. 대면상담(개인, 집단)의 총 건수는 5,921건이었으며, 매체상담(전화, 사이버)은 총 99,177건이었다(표 5-3-2).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문제를 제외하고 대인관계 문제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 및 진로문제 13.6%와 정신건강 10.9% 순으로 나타났다(표 5-3-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상담은 정신건강(25.2%)과 대인관계(24.9%)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가족문제(14.2%), 학업 및 진로(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화상담은 기타를 제외하고 대인관계가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탈 및 비행이 9.8%, 가족문제와 성문제가 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사이버상담의 게시판상담에서는 대인관계문제가 37.7%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업 및 진로문제 17.0%, 가족문제 9.2% 순이었다. 채팅상담에서도 대인관계문제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상담 제외시 정신건강이 12.4%, 학업 및 진로가 12.0%로 뒤를 이었다.

〈표 5-3-2〉 2012년 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 명)

구 분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계		
대 면 상 담	개인상담	남	1,229	449	2	5	1,685	
		여	1,407	385	14	9	1,815	
		합계	2,636	834	16	14	3,500	
	집단상담	남	555	5	50	2	612	
		여	678	202	30	2	912	
		합계	1,233	207	80	4	1,524	
	심리검사	남	383	49	4	3	439	
		여	380	46	0	32	458	
		합계	763	95	4	35	897	
매 체 상 담	전화상담	남	448	593	62	411	1,514	
		여	258	1,529	278	666	2,731	
		합계	706	2,122	340	1,077	4,245	
	사이버 상담	게시판 상담	남	2,129	100	0	75	2,304
			여	6,769	319	0	236	7,324
			합계	8,898	419	0	311	9,628
		채팅 상담	남	14,689	108	11	1,057	15,865
			여	33,972	250	27	2,443	36,692
			합계	48,661	358	38	3,500	52,557
	웹심리검사	남	1,252	0	0	0	1,252	
		여	6,046	0	0	0	6,046	
		합계	7,298	0	0	0	7,298	
	총 합 계			20,685	1,304	129	1,553	23,671
				49,510	2,731	349	3,388	55,978
				70,195	4,035	478	4,941	79,649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2).

〈표 5-3-3〉 2012년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가 족	비 행	학업 및 진로	성	대인 관계	성 격	정신 건강	생활 습관 태도	기타 상담	계
개인 상담	남	223	143	266	1	175	91	496	9	281	1,685
	여	273	88	135	54	698	107	386	11	63	1,815
	합계	496	231	401	55	873	198	882	20	344	3,500
전화 상담	남	111	136	108	285	131	26	112	20	585	1,514
	여	272	280	209	96	325	63	190	52	1,244	2,731
	합계	383	416	317	381	456	89	302	72	1,829	4,245
게시 상담	남	318	76	393	113	857	108	279	36	124	2,304
	여	1,012	243	1,248	358	2,723	344	888	115	393	7,324
	합계	1,330	319	1,641	471	3,580	452	1,167	151	517	9,628
채팅 상담	남	1,312	327	1,898	454	4,625	583	1,967	245	4,454	15,865
	여	3,038	755	4,392	1,049	10,697	1,347	4,548	566	10,300	36,692
	합계	4,350	1,082	6,290	1,503	15,322	1,930	6,515	811	14,754	52,557
총합계	남	1,964	682	2,665	853	5,788	808	2,854	310	5,444	21,368
	여	4,595	1,366	5,984	1,557	14,443	1,861	6,012	744	12,000	48,562
	합계	6,559	2,048	8,649	2,410	20,231	2,669	8,866	1,054	17,444	69,930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2).

## 다. 시·도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과 실적

###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8월 2일 전부개정 시행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존, 인터넷중독청소년 치료를 위한 레스큐스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심리상담 및 놀이치료, 포레상담사업, 학부모상담자원봉사회 운영, 청소년상담 관련 심리교육, 지도자 양성,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0년에 대구, 광주에 최초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도에 부산, 대전, 충북(청주), 1992년도에 인천, 전북(전주), 1993년도에

경기(수원), 강원(춘천), 경남(창원), 1994년도에 충남(천안), 전남(순천, 현재 무안), 경북(안동), 1995년도에는 제주(제주), 1997년도에 서울(중구), 1999년 울산에 설치되었다. 이후 2006년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8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되었다. 또한 2012년 7월에는 충남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되어 시·도 센터가 17개 센터로 늘어났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충북(청주) 1개소이며, 시·도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대구, 충남(천안), 전남(무안), 경북(안동), 경남(창원) 등 5개소이고, 청소년유관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등 11개소이다.

##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173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로 운영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173개소 중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78개소(46%)이며, 시·군·구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7개소(4%)이며, 나머지 88개소(51%)는 청소년유관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초자치단체수 대비 설치비율은 전국 74%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 활용 등의 통합적이고 문제영역별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5-3-4〉 2012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개),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군·구	수	21 (25)	5 (16)	1 (8)	7 (10)	3 (5)	1 (5)	3 (5)	- (18)	9 (31)	31 (12)	10 (15)	15 (14)	14 (22)	19 (23)	13 (20)	20 (0)	1 (0)
	%	84	31	13	70	60	20	60	-	50	100	83	100	100	86	57	100	-

주 : ( )는 기초자치단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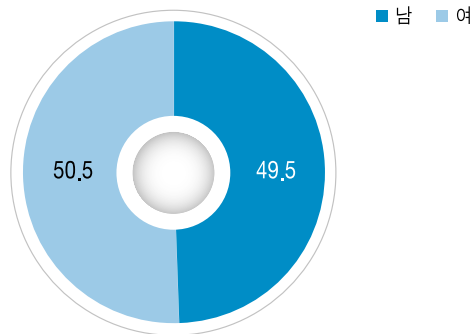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활동

2012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연간상담건수는 4,606,739건으로 지난해 이용건수(4,590,935건)보다 0.34%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2,280,788건(49.5%), 여자 2,325,951건(50.5%)으로 남자이용자보다 여자이용자가 많았다.

[그림 5-3-1] 201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성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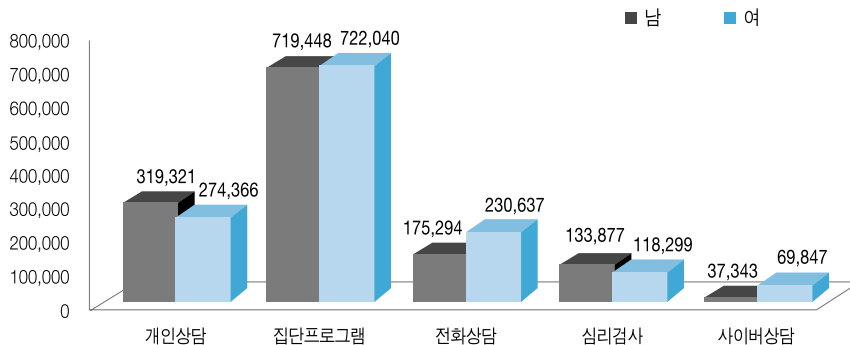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2).

또한 2012년 상담서비스 유형별 이용추세를 살펴보면, 집단상담이 31.3%(1,441,448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개인상담 12.9%(593,687명), 전화상담 8.8%(405,931명), 심리검사 5.5%(252,176명), 사이버상담 2.3%(107,19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은 집단상담의 특성상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여러 회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서비스별 이용자 수 통계

(단위 : 명)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2).

청소년과 성인이용자를 비교하면 청소년이 79.0%(3,637,716명), 성인이 21.0%(969,023명)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 중 초등학교생이 20.1%(927,513명), 중학생 28.1%(1,293,211), 고등학교생 22.4%(1,032,836명), 대학생 1.5%(68,953명), 근로청소년 0.7%(32,635명), 무직청소년 5.5%(282,568명)로 중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성인 이용자는 학부모가 11.1%(510,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자가 7.0%(320,512명), 일반 성인이 3.0%(137,669명)이었다.

〈표 5-3-5〉 2012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별·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 명)

구 분	성 별			대 상 별										
	남자	여자	소계	초	중	고	대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일반인	소 계	
개인상담	319,330	274,357	593,687	137,337	192,328	126,070	7,266	5,208	36,458	72,315	13,788	2,917	593,687	
집단상담	719,448	722,040	1,441,488	406,052	427,432	357,435	13,765	8,162	84,103	62,878	72,367	9,294	1,441,488	
전화상담	175,294	230,637	405,931	17,109	40,022	52,694	6,875	1,955	18,251	113,395	81,921	73,709	405,931	
심리 검사	개별	42,657	35,633	78,290	17,698	28,189	19,268	1,503	437	2,907	7,182	450	656	78,290
	집단	91,219	82,666	173,885	39,891	67,381	52,342	4,753	219	1,022	4,491	1,724	2,062	173,885
사이버 상담	메일	20,640	32,218	52,858	10,450	20,806	13,525	2,461	221	865	1,438	238	2,854	52,858
	채팅	16,703	37,629	54,332	4,655	16,020	18,537	6,288	358	4,293	635	97	3,449	54,332
사업수행 프로그램	10,546	10,325	20,871	3,963	5,067	5,506	780	151	2,572	477	1,954	401	20,871	
지원 서비스	개별	519,247	490,284	1,009,531	110,189	263,171	215,147	11,909	14,261	113,035	191,909	80,654	9,256	1,009,531
	그룹	361,133	405,172	766,305	179,196	230,744	170,364	13,293	1,539	18,363	54,815	65,598	32,393	766,305
기타상담	4,571	4,990	9,561	973	2,051	1,948	60	124	699	1,307	1,721	678	9,561	
합 계	2,280,788	2,325,951	4,606,739	927,513	1,293,211	1,032,836	68,953	32,635	282,568	510,842	320,512	137,669	4,606,739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2).

201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학업 및 진로 문제가 25.4%(973,772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격 19.4%(745,780명), 일탈 및 비행 13.4%(514,258명), 대인관계 9.2%(354,045명), 가족 7.4%(283,93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해 일탈 및 비행 문제, 정신건강, 가족 문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다소 증가하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겪는 학업 및 진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진로정보탐색 45.7%, 학업흥미/학업 동기 부족 17.4%, 학교생활부적응 10.3%, 진로의식 부족 8.6%, 학습능력 부족 5.3%, 등교거부 3.2%,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1.9% 순이었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74.1%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왕따 13.9%, 이성교제 1.9%, 교사와의 관계 1.6%, 어른과의 관계 0.9% 순이었다. 일탈 및 비행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45.3%, 가출 15.5%, 금품갈취/절도/도박 14.9%, 비행 친구와 어울림 6.5%, 음주/흡연/약물오남용 5.1%, 학교외의 폭력 3.0% 낮은 귀가/잠은 외박 2.4% 순이었다. 그밖에 정신건강 문제에서는 우울/위축 문제가 32.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5-3-6〉 2012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 명)

호소 문제 유형	개인상담		사업수행 프로그램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게시판)		사이버상담 (채팅)		심리검사		지원서비스		기타		집단 프로그램	집단 심리 검사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족	30,949	38,390	121	350	8,232	16,245	1,455	3,247	978	3,536	2,911	3,808	52,244	69,151	363	512	49,135	2,307	283,934
일탈 및 비행	55,846	30,553	1,451	760	17,731	18,793	1,006	807	686	719	6,139	2,932	114,325	74,662	724	502	183,111	3,511	514,258
학업/진로	64,531	55,228	4,232	3,429	19,763	23,708	4,530	5,227	1,910	4,706	12,357	11,354	125,047	109,930	1,056	751	447,657	78,357	973,773
성	3,862	3,904	110	112	11,594	4,855	1,570	2,734	720	829	353	274	4,433	7,087	22	213	37,478	19	80,169
성격	39,137	27,171	514	446	5,615	6,713	852	1,321	651	1,370	6,109	5,213	43,376	32,628	346	241	59,046	45,206	275,955
대인 관계	49,199	68,264	868	983	10,731	22,564	7,366	13,433	3,183	12,387	4,377	5,843	61,253	93,071	412	757	375,949	15,140	745,780
정신 건강	43,451	40,114	646	779	10,471	17,516	1,290	2,419	2,494	4,177	5,153	4,767	61,292	68,729	465	425	79,398	10,459	354,045
생활 습관/외모	3,580	3,087	15	29	1,145	1,271	1,045	1,364	313	534	273	220	6,701	5,423	39	30	1,525	114	26,708
컴퓨터/인터넷 사용	27,068	5,197	1,060	567	10,470	5,912	187	154	156	166	4,685	925	38,302	7,068	325	101	157,646	17,988	277,977
정보 제공	1,067	1,458	668	1,300	37,914	91,865	1,195	1,352	2,147	4,115	186	165	7,969	15,696	672	1,260	14,924	753	184,706
법률 정보	47	35	2	3	485	490	48	60	52	60	4	1	108	50	13	10	580	8	2,056
활동	549	927	859	1,567	2,265	5,549	79	74	220	182	92	98	4,154	6,751	108	167	35,039	23	58,703
기타	35	38	0	0	38,878	15,156	17	26	3,193	4,848	19	33	42	39	26	21	0	0	62,371
합계	319,321	274,366	10,546	10,325	175,294	230,637	20,640	32,218	16,703	37,629	42,658	35,633	519,246	490,285	4,571	4,990	1,441,488	173,885	3,840,435

주 : 집단지원서비스의 경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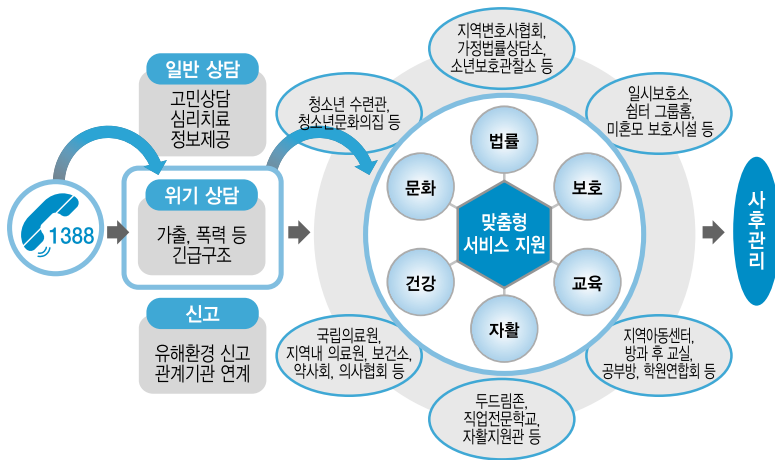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2).

##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있거나 상호협력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조기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5-3-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자료 : 여성가족부(2010).

CYS-Net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CYS-Net 사업은 2012년 전국 17개 시·도 및 173개 시·군·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49,307명의 위기청소년에게 1,775,836회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2013년까지 전국 244개 지역(시·도 17개, 시·군·구 227개)에 확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 CYS-Net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하여 가출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해왔고, 점차적으로 의료, 법률, 자활 등의 전문분야에서도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위기 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CYS-Net의 민·관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YS-Net 서비스 이용 실인원은 전년도 대비 2.7% 상승한 149,307명이고 남자가 52.8% (78,900명)이며, 여자가 47.2%(70,407명)로 여자 보다 남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 명)

연 도	남 자	여 자	합 계
2007	27,845	29,054	56,899
2008	40,977	40,025	81,002
2009	47,825	50,195	98,020
2010	67,035	61,391	128,426
2011	77,836	67,540	145,376
2012	78,900	70,407	149,307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2).

CYS-Net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원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체 1,775,836건으로 전년도 대비 1.1% 상승하였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61.6%로 가장 많이 지원된 서비스로 나타났고,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12.9%,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이 10.7%, 교육 및 학업지원이 9.7%, 사회적 보호지원이 3.8%, 자활지원이 0.9%, 의료지원이 0.4%, 법률자문 및 권리 구제지원이 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8〉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 건)

구 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합 계
2008	합계	286,069	30,497	80,857	10,740	2,754	5,759	1,362	16,243	434,281
2009	합계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715,589
2010	남	435,441	29,549	109,692	44,005	5,203	2,841	931	61,676	689,338
	여	446,560	32,907	116,029	40,530	6,341	3,413	797	67,579	714,156
	합계	882,001	62,456	225,721	84,535	11,544	6,254	1,728	129,255	1,403,494
2011	남	557,386	31,717	119,117	75,314	9,844	3,399	2,105	91,343	890,225
	여	545,472	32,430	117,955	71,307	8,721	5,114	2,876	99,792	883,667
	합계	1,102,858	64,147	237,072	146,621	18,565	8,513	4,981	191,135	1,773,892
2012	남	544,445	31,851	114,985	85,921	7,270	3,613	722	91,572	880,379
	여	549,582	35,449	113,548	86,581	8,216	3,259	687	98,135	895,457
	합계	1,094,027	67,300	228,533	172,502	15,486	6,872	1,409	189,707	1,775,836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2).

### 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2005년 4월 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가출청소년 상담전화 1588-0924,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전화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전화 등을 1388로 통합(2005년 9월 1일)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CYS-Net)의 관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화로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388 전화 일평균 이용 수는 2005년 9월 통합 이후 하루 17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 270건, 2007년도 666건, 2008년 969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8건, 2011년 1,185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청소년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사이버 및 모바일 상담 선호, 유관 상담기관들의 운영이 증가하면서 2012년에는 1,112건으로 실적이 다소 감소하였다. 실제로 1388 전화 실적은 감소하였으나, 청소년 사이버상담(11년 57,149건 → '12년 94,932건)과 모바일(#1388) 문자상담(11년 195,466건 → '12년 198,732건) 실적은 증가하였다. 2012년 기준 17개 시·도 및 174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190개 센터에서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였다.

〈표 5-3-9〉 2012년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단위 : 건)

주요사업 내용		실 적		증 (△) 감	
		2011년(A)	2012년(B)	B-A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이용실적	통화횟수	432,616	405,931	△26,685	△6.2
	일평균	1,185	1,112	△76	△6.4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2).

한편,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1388 상담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제작('13.6월)하여 지하철 역사(서울역 등 10개역사), 경기도 버스(1,500개 노선) PDP를 통해 송출하였으며,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 페이스북 이벤트 마케팅, EBS 라디오 '경청' 등 방송 매체 홍보와 월간 웹진 홍보, 전국 반상회보를 통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였다.

〈표 5-3-10〉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호소문제유형별 이용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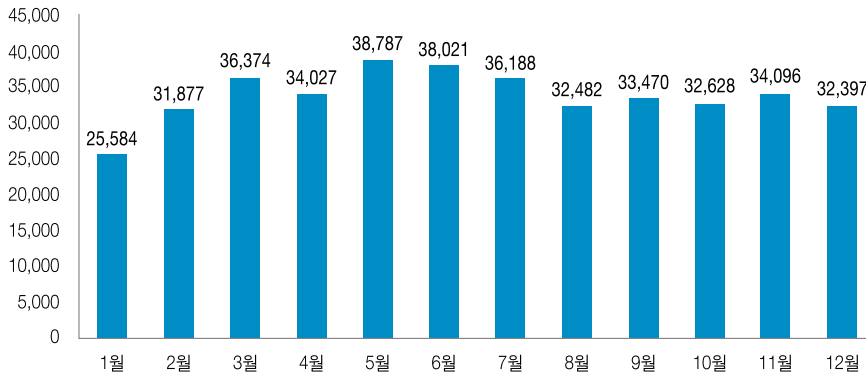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가족	일탈 / 비행	학업 /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 외모	컴퓨터 /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계	
2006	합계	11,902	12,053	16,412	12,790	3,115	7,820	3,925	1,503	2,213	26,686	17	86	0	98,522
2007	합계	25,707	37,039	32,722	17,529	6,574	18,437	10,862	3,515	5,586	70,307	450	2,243	12,089	243,060
2008	합계	25,990	48,786	36,118	21,950	9,098	22,218	13,605	2,787	9,289	121,172	1,353	5,175	36,037	353,578
2009	합계	25,937	40,669	35,118	21,473	9,901	25,532	16,419	2,522	12,101	181,906	976	7,649	44,539	424,742
2010	남	7,274	18,848	14,205	15,719	3,802	7,478	7,156	910	5,810	46,914	411	1,750	51,675	181,952
	여	15,565	22,842	20,520	5,983	5,973	16,768	9,732	1,526	8,091	110,630	446	3,942	18,673	240,691
	합계	22,839	41,690	34,725	21,702	9,775	24,246	16,888	2,436	13,901	157,544	857	5,692	70,348	422,643
2011	남	8,970	22,733	21,153	12,282	5,378	9,936	8,901	1,163	10,010	44,987	410	2,380	44,153	192,456
	여	16,717	21,778	27,495	5,653	6,589	20,513	12,330	1,454	9,037	96,477	470	4,129	17,518	240,160
	합계	25,687	44,511	48,648	17,935	11,967	30,449	21,231	2,617	19,047	141,464	880	6,509	61,671	432,616
2012	남	8,232	17,731	19,763	11,594	5,615	10,731	10,471	1,145	10,470	37,914	485	2,265	38,878	175,294
	여	16,245	18,793	23,708	4,855	6,713	22,564	17,516	1,271	5,912	91,865	490	5,549	15,156	230,637
	합계	24,477	36,524	43,471	16,449	12,328	33,295	27,987	2,416	16,382	129,779	975	7,814	54,034	405,931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2).

[그림 5-3-4] 2012년 1388 Help Call 청소년전화 월별 이용실적

(단위 : 건)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2).

## 4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은 자신감의 약화와 사회적 도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상담 전문가가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후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중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에 힘쓰고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동반자(Youth Companion)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위기 청소년에게 각종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진로 지도,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 4개 시·도(서울·경기·광주·경남)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동반자 223명이 활동하였고,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로 확대 운영되면서 청소년동반자도 470명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800명의 동반자가 추가 선발되어 시·도 및 시·군·구 센터에서 약 1,270명의 청소년동반자가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880명의 동반자가 활동하였고, 2012년도에는 100명 증원된 980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활동함에 따라 수혜 청소년 수도 31,226명으로 2011년(26,324명) 대비 15.7%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확대에 의해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개인특성과 필요에 따른 수준 높은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방문 상담을 통한 은둔형 외톨이 등 서비스 소외 청소년의 발굴과 위기개입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표 5-3-11〉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청소년동반자 수	223	301	446	470	1,270 (추경 800명)	880	880	980
수혜 청소년 수	1,595	3,576	8,434	14,510	24,515	25,675	26,324	31,226

자료: 여성가족부(2012).

한편,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771명 중 청소년동반자서비스를 지원받은 281명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동반자서비스를 받은 여자청소년은 재범으로 인한 입건건수가 서비스를 받지 않은 청소년의 절반이하(수혜청소년 0.42회, 비수혜

청소년 1.09회)로 감소하였고, 청소년동반자서비스를 받은 고위험군 청소년 집단의 재범률이 크게 감소(수혜청소년 0.79회, 비수혜청소년 1.26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청소년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할 경우, 경고, 출석요구, 구인의 순으로 조치를 받게 되는데,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구인 횟수는 0.11회로, 비수혜청소년의 1.93회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

그밖에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지원받은 청소년 526명의 위기수준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동반자 서비스(3개월)를 받은 직후 뿐 아니라, 종료 6개월 이후에도 위기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등 청소년동반자서비스는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 지원사업 「두드림·해밀」

두드림·해밀은 기존의 “꿈을 가져라(Do Dream), 미래의 문을 두드려라(두드림)”는 의미와 “비온 후 맑게 개인 하늘(해밀)”의 의미를 조합하여 “미래의 문을 두드려 맑게 개인 하늘을 열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면 희망적인 미래가 열린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가. 추진배경 및 연혁

학업중단, 가출, 비행, 시설입·퇴소 등의 취약청소년 중에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매년 1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취약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 사회적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청년실업 및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와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력이 단절된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립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는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취약청소년 자립지원프로그램 「두드림」이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매년 발생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 「해밀」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수혜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드림·해밀」이 통합되었으며,

5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표 5-3-12〉 두드림·해밀 사업 연혁

연 도	추진내용
2007	• 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프로젝트’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범운영 (총 12개소 : 상설 두드림존 2개소, 시범 두드림존 10개소)
2009	• 두드림존 운영기관 확대(총 20개소 : 상설 두드림존 3개소, 시범 두드림존 17개소)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해밀’ 3개소 시범운영(대전, 광주, 제주)
2010	• 두드림존 운영기관 확대(총 30개소 : 상설 두드림존 10개소, 시범 두드림존 20개소) • 학업중단 및 학습부진청소년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클리닉’ 개발
2011	• 두드림존 운영기관 확대(총 36개소 : 상설 두드림존 16개소, 시범 두드림존 20개소) • ‘해밀’ 사업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 업중단 청소년 학업등기 강화 프로그램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나내매)’ 개발
2012	• 두드림존 확대 및 모든 시범운영지역 정규 사업화(총 49개소 : 광역 16개소, 기초 33개소) • 학업중단숙려제 연계 숙려제 상담 및 자퇴 후 학업복귀 서비스 지원
2013	• 두드림·해밀 통합 운영(총 50개소 : 광역 16개소, 기초 34개소) • 두드림·해밀 통합 홈페이지 구축(www.dodreamhaemil.kr)

## 나. 두드림·해밀 사업 개요

### (1) 사업목표 및 대상

두드림·해밀 사업의 목표는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구체적인 하위목표는 첫째, 가정의 돌봄이 취약한 청소년의 자립동기를 강화하고, 자립준비 수준<sup>1)</sup>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돕는 것이며, 둘째,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동기를 강화하여 학업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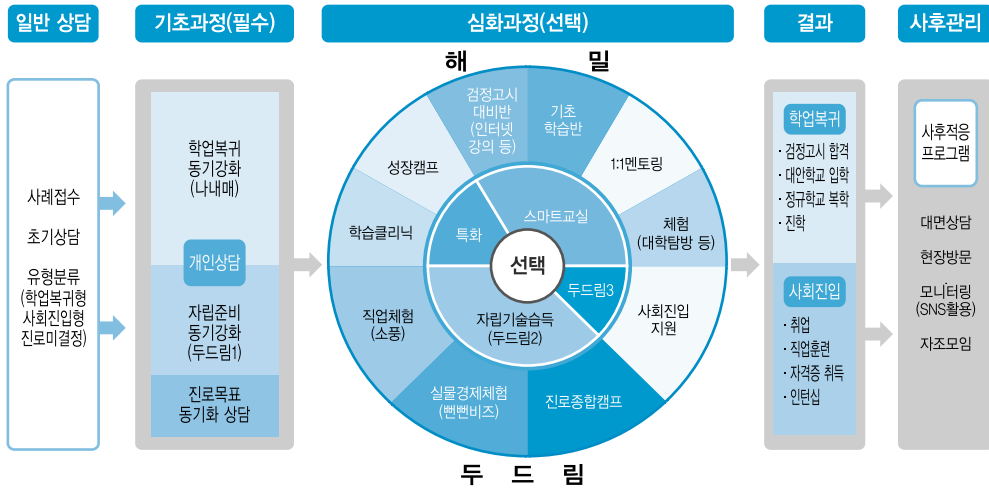
서비스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과 지원대상으로 구분된다. 우선지원대상은 만 13~20세 사이 학업 중단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 보호·복지·교정시설 보호 및 퇴소 청소년(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아동복지시설, 자립생활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기타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다. 지원대상은 만 13~24세 사이 CYS-Net 체계를 통해 연계된 청소년 중 경제적·가정적·환경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다.

1) 필수적인 자립준비 영역은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주거 및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학업관리, 자기보호이다.

## (2) 서비스 절차 및 내용

두드림·해밀 서비스는 5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사전과정은 사례접수 및 초기면접을 통해 수혜자의 목표에 따른 유형(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진로미결정형)을 분류한다. 둘째, 기초과정은 필수과정으로 대상 유형에 따라 학업복귀 동기강화 프로그램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 나내매」, 자립준비 동기강화 프로그램 「두드림(1단계)」, 학업중단 유형별 전문상담 개입 프로그램 「이루다」를 제공한다. 셋째, 심화과정은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크게 학업복귀 희망자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스마트교실」, 「맞춤형 학습클리닉」, 「성장여행 캠프」 등의 해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진입 희망자는 직업체험, 실물경제체험 등의 자립기술 습득 과정인 「두드림(2단계)」,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사회진입 지원과정인 「두드림(3단계)」의 개별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 넷째, 결과단계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성과로서 검정고시 합격이나 복학 등의 학업복귀, 또는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의 사회진입을 이룬 단계이다. 다섯째, 사후관리 단계는 개인 목표를 성취한 청소년이 6개월 이상 적응상태를 유지하도록 대면상담이나 SNS 모니터링, 사후적용 프로그램 「꿈다짐」 등을 제공한다. 이때 참여 청소년 개별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때 까지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흐름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5] 두드림·해밀 서비스 흐름도



다음은 두드림·해밀 사업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이다.



〈표 5-3-13〉 두드림·해밀 세부 프로그램

과정	목표	프로그램명	구 조	내 용	
기초 과정	학업 복귀 (해밀)	이루다 (개인상담)	• 8영역(4~5회기씩) • 회기당 50분	• 8영역 : 목표, 학업동기, 생활관리, 지지환경, 대인관계, 비행, 정신건강, 학업능력 • 상담전문가와 1:1로 만나 학업중단 유형별 상담	
		나내매 (학업동기 강화 프로그램)	• 전체 12회기 (회기당 90분)	•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조망을 통해 공부에 대한 동기를 강화(소풍, 졸업식 체험 포함)	
	사회 진입 (두드림)	두드림 1단계	드림빌딩 (1회기)	• 4시간	• 미래의 꿈과 비전,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
			경제야 놀자 (2회기)	• 5시간	• 게임을 통한 기본 경제원리 이해, 합리적 선택 및 돈 관리 등
			직업의 바다로 (3회기)	• 2시간 30분	• 직업세계 탐구 및 직업유형 이해 •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직업성공전략
			일자리구하기 대작전 (4회기)	• 2시간 30분	• 구직기술, 모의 면접, 직장예절, 근로권 교육
			독립만세 (5회기)	• 2시간	• 자립준비상태 점검, 일상생활기술
			이 세상 최고의 밥상 (6회기)	• 2시간 30분	• 성공목표 설정, 성공계획 수립, 실천 결의 다지기
			두드림 특성화	• 9영역 38회기	• 대상 : 학업중단 / 시설보호 청소년 • 9가지 자립준비 영역 : 목표·가치관, 직업준비, 경제 관리, 주거생활, 사회성 기술, 학업교육, 건강, 자원 활용기술, 심리·정서
	심화 과정	특화	맞춤형 학습클리닉 (공부방법 배우기)	• 8가지 학습전략 • 전체 35회기 (회기당 90분) (전체 : 52시간 30분)	• 8가지 학습전략 : 학습동기, 학습유능감, 기초기억, 심화기억, 주의집중, 시험전략, 시험불안조절, 자기 관리
성장여행 (기숙형 대안캠프)			• 9박 10일 기숙형 • 참여 : 20명 내외	• 생활밀착형 캠프활동을 통한 긍정적 생활습관 형성 및 학업복귀 동기 강화	
학업 복귀 (해밀)		스 마 트 교 실	검정고시 준비반	• 10명 내외/ 3~6개월	• 연 2회(4월, 8월) 검정고시 대비 시험과목 집중지도 • 검정고시 학원비 및 교재비 무료지원
			기초학습 대비반	• 10명 내외/ 3~6개월	•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집중지도
			인터넷 강의 교실	• 10명 내외/ 3~6개월	• 검정고시 과목, 모의고사 인터넷 무료 수강(고시일 협약 지원) • 교재 무료제공 • 검정고시 준비관련 전화 컨설팅
			학습 멘토링	• 6~12개월	• 필요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도 • 학습관련 고민 나눔
			기타 체험활동	• 체험활동 : 10명 내외 (1~2일 과정)	• 대학탐방, 문화체험 등 • 장학금 연계, 공부방 연계

과정	목표	프로그램명		구조	내용
기초과정	사회진입(두드림)	두드림 2단계	소·풍(직업체험)	• 1일(직업별)	• 개인/단체 희망 직업체험(소/중/대규모) (개인별 다수 참여 가능)
			뽀뽀비즈(실물경제체험)	• 2일(1일 이론, 1일 체험)	• 모의창업을 통한 실물 경제생활 이해 (창업 아이템 선정 및 창업절차, 홍보, 마케팅 등)
			진로종합캠프	• 2~3일(숙박형) • 20명 내외	• 자립준비 관련 기숙형 특별 체험과정 (성공인 특강, 직업체험 실습, 단체생활 협력 등)
		두드림 3단계	사회진입 지원	• 1대1 개별지원 • 1~3년(연장 가능)	• 취업,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연계)
사후과정	사후관리		• 1대1 개별지원 • 6개월	• 학업복귀(검정고시 합격, 대학학교, 상급학교 진학) 후 적응 지원 : 교사면담, 학교적응 상담 등 • 사회진입(취업,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후 적응 지원 : 퇴직기술, 고용주 면담, SNS 모니터링 등	
	꿈다짐(사후적응 프로그램)		• 3회기(90분씩) • 미션수행(1일) • 선택형 체험활동(1일)	• 대상 : 학업복귀/사회진입 성취 청소년 • 개인목표 성취에 대한 격려와 장애물 극복 방법(자율적 미션 활동 포함), 추가 체험활동	

### (3) 운영지역 및 인력

2013년 두드림·해밀 사업은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도 지역은 16개소, 시·군·구 지역은 3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담인력은 시·도 센터 5명씩, 시·군·구 센터 2명씩 배치되어 전체 150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5-3-14〉 두드림·해밀 운영지역

시·도 두드림·해밀	시·군·구 두드림·해밀	계
서울	강남, 종랑, 강북, 도봉, 강서, 용산	7
부산(종합)	부산(상담)	2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5
경기	성남, 안양, 광명, 안산, 용인, 광주	7
강원	강릉, 원주, 홍천	4
충북	청주, 충주, 제천	4
충남	서산, 아산, 천안	4
전북	군산, 김제	3
전남	광양, 영광	3
경북	포항, 구미, 문경, 울진	5
경남	창원, 양산, 거창	4
제주	서귀포	2
16개소	34개소	50

#### (4) 사업성과 및 특징

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2007~2012년 사이 28,387명이었으며, 이 중 5,893명이 취업,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사회진입 성과를 냈다. 해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2011~2012년 사이 3,78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1,413명이 검정고시 합격 및 진학 등 학업에 복귀하는 성과를 냈다. 나머지는 두드림·해밀 대상 대부분이 학업중단, 가출, 비행 등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자체가 어려운 취약청소년으로서, 아직 저연령이거나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진입 또는 학업복귀 지원대상이 될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5-3-15〉 두드림·해밀 사업 성과

(단위 :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두드림	서비스인원(A)	1,361	1,436	3,005	6,110	8,179	8,296	28,387
	사회진입(B)	167	382	668	1,155	1,678	1,843	5,893
해밀*	서비스인원(C)	-	-	-	-	1,472	2,314	3,786
	학업복귀(D)	-	-	-	-	528	885	1,413
두드림·해밀	전체 서비스인원(A+C)	-	-	-	-	9,651	10,610	20,261
	사회진입+학업복귀(B+D)	-	-	-	-	2,206	2,728	4,934

\* 주 : 해밀 서비스는 2011년 부터 시작됨.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교육-체험-실전 과정의 입체적 프로그램 운영방식이다. 즉, 6종의 프로그램 매뉴얼과 수십종의 시청각 교구재 및 놀이도구를 활용하여 놀이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목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향한다. 즉, 초기 사정을 통해 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진로미결정형을 구분하여 해당 진로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목표 변경시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단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내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학업지원 및 사회진입 서비스 외에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운영하고 있다. 넷째, 16개 시·도에는 두드림·해밀 교육체험장이 설치되어 상시 청소년이 드나들며 학업 및 자립 정보를 검색하거나 고민상담을 나눌 수 있는 자유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94년 학급에서 동료를 돕기 위한 준전문가인 또래상담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출발한 또래상담은 청소년 교육 및 상담 관련 현장의 소리에 부응하면서 학교 내의 조직, 지역 내의 조직, 전국적인 조직의 형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2.6, 관계부처 합동) 발표 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되었다.

### 가. 또래상담 내용

또래상담은 일정기간 상담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조력하는 상담활동이다. 또래상담자는 같은 학교와 학급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활동이 가능하도록 훈련받는다. 또한 다양한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친구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청소년 자치활동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으로서, 솔리언이라는 특성로고와 솔리언 또래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작 보급하고 있다. '솔리언'이란 solve(해결하다) + 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의 합성어로 '친구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며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솔리언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은 12시간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친구되기', '대화하는 친구되기', '도움주는 친구되기'라는 주제의 집단토의와 역할연습, 모델링 등의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좋은 친구되기(Friendship)에서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된 훈련 내용으로서, 친구의 의미, 친구관계 살펴보기, 친구관계 걸림돌,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 우정곡선 그리기 등의 활동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화하는 친구되기(Counselorship)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관련된 훈련 내용으로서, 솔리언또래상담 대화의 자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기, 공감연습하기, 대화 잘 이끌어 나가기(어기역차 전략 이해하기, 어기역차 연습하기), 잠하들셋 기법 이해하기 및 연습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도움주는 친구되기(Leadership)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 돕기와 관련된 훈련 내용으로서, 도움주는 대화 배우기(원무지계 전략 이해하기 및 연습하기), 대화 종합 연습, 역할극꾸미기, 도움되는 활동찾기(어떤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도움줄 수 있는 활동 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3-16〉 솔리언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내용

회기	프로그램명	프 로 그 램 내 용
1	들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상담 프로그램 소개, 또래상담의 의미, 또래상담자의 역할 인식</li> <li>• 자기소개 및 프로그램 참여 동기 나누기</li> <li>• 함께 지킬 약속 정하기</li> <li>•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하기</li> </ul>
2	친한 친구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기</li> <li>•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 표현하기</li> </ul>
3	나의 친구관계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벽 뚫기' 게임을 통한 따돌리는 혹은 따돌림 당하는 간접 경험하기</li> <li>• 친구관계 유형 살펴보기 및 자신의 친구관계 나누기</li> </ul>
4	친구에게 다가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관계에서의 걸림돌 알아보기</li> <li>• 우정곡선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걸림돌 해결방법 및 친구에게 다가가는 방법 나누기</li> </ul>
5	대화하는 친구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상담자의 기본 자세인 '적극적 경청' 연습하기</li> <li>• 감정카드 및 역할극을 통한 '공감하기' 연습하기</li> </ul>
6	대화 잘 이끌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를 이끌어가는 전략 알아보기</li> <li>• '어기역차 전략' 이해하기, 연습하기, 실습하기</li> </ul>
7	감정조절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대처방법 탐색 및 감정 조절방법 배우기</li> <li>• '잠하듯 전략' 이해하기, 연습하기, 실습하기</li> <li>• I-message 이해하기, 연습하기</li> </ul>
8	도움 주는 대화방법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 알아보기</li> <li>• '원무지계 전략' 이해하기, 연습하기, 실습하기</li> </ul>
9	대화 종합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청하기, 공감하기, 어기역차 전략, 잠하듯 전략, 원무지계 전략을 활용한 역할극 준비 및 발표하기</li> </ul>
10	도움 되는 활동들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 찾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찾기</li> <li>•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전문가 연계 상황 알아보기</li> </ul>
11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상담 프로그램 복습하기</li> <li>• 또래상담자의 자세 및 마음가짐 낭독하기</li> <li>• 롤링페이퍼 작성 및 소감 나누기, 프로그램 평가, 수료식</li> </ul>
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 역할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의 유형, 피해학생 징후, 돕는 방법 배우기</li> <li>•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 역할 및 활동 계획</li> </ul>

## 나.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199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또래상담 사업은, 각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오다, 2012년 학교폭력 대책 사업으로 전국 중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협력 하에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각 시·도 교육청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또래상담은 교사나 부모가 보지 못하는 아이들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래상담사업의 도입은 학교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공간인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상담자의 상담 및 지원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규모 또래상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또래상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EBS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방영, 서울 및 전국 지하철, 서울 지역 버스를 통한 홍보, 포스터·리플렛 제작 및 보급, 또래상담 UCC 공모전, 또래상담 슬로건 공모전, 홍보 CD 제작 및 배부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대상 홍보를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아역 탤런트 김소연을 또래상담 홍보대사로 선정하였다.

둘째,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과의 소통의 기회 마련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전국에서 3개교의 또래상담 중점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씩)를 운영하여, 학교 단위 또래상담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16개 시도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 방문 컨설팅, 또래상담 운영학교 방문, 관계자 간담회, 사업평가회 등을 통해 또래상담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현장의 애로점과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였다.

셋째, 또래상담사업의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 및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부, 언론 보도 등의 사업 등을 통해 또래상담 활동의 본모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도별 또래상담 연합회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래상담자 보수 교육 및 캠프 등을 운영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지도자 및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해, 또래상담 전문지도자 양성, 또래상담자 교육 및 상담활동에 대한 슈퍼비전 실시, 지도자 지침서·학교운영 지침서·또래상담자 수첩·뺏지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과 웹교재 동영상 제작, 또래상담 홈페이지 제작 등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또래상담 운영학교의 지역·대상·운영형태별 관리, 전국 또래상담 전문지도자·지도자·또래상담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한해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을 통해 전국 4,638개교에서 또래상담사업이 운영되었으며, 6,233명의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양성되었고, 60,681명의 또래상담자가 훈련을 받았다.

〈표 5-3-17〉 2012년 또래상담사업 실적

사업 구분	목 표	실 적	달 성 률
또래상담 운영학교 운영	3,320개교	4,638개교	139.7%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	6,000명	6,233명	103.9%
또래상담자 양성	15,000명	60,681명	4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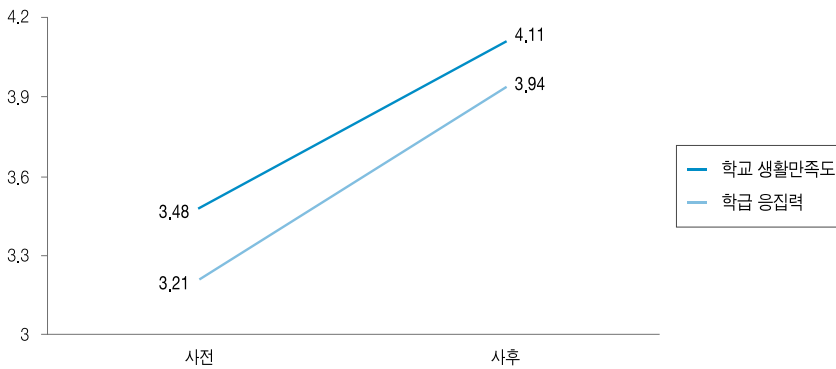
2012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래상담사업 결과보고에 따르면, 또래상담 운영학교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급응집력이 사업 후에 증가함으로써 실제로 또래상담이 학교폭력을 예방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또래상담사업이 실시되기 전과 후에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급응집력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또래상담자 활동 학급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학교 내 따돌림 감소 및 교우관계 향상을 통해 학급응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18〉 또래상담사업 효과성 분석

구 분	사전 M(SD)	사후 M(SD)	t
학교생활 만족도	3.48(0.65)	4.11(0.67)	-38.92***
학급 응집력	3.21(0.67)	3.94(0.78)	-42.04***
전 체	3.30(0.59)	4.00(0.69)	-44.82***

\*\*\*p<0.001

[그림 5-3-6] 2012년 또래상담사업 효과분석(학교생활 만족도, 학급 응집력)



2012년의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은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즉, 전국 5,000개교로 또래상담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래상담자 65,000명과 또래상담 지도교사 6,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제 4 장

#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 1

####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012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 6~17세)의 체격검사 결과, 17세의 평균 신장은 남학생이 173.6cm, 여학생이 160.9cm로 2010년 남학생 173.7cm, 여학생 160.9cm와 비교할 때 남학생은 0.1cm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은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17세의 평균 신장을 10년 전인 2002년과 비교하면 남학생은 0.3cm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차이가 없다.

2012년 연령별 체격의 성차를 살펴보면, 6~8세까지는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장이 1cm이상 크지만, 9세에는 1cm미만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다가 10~11세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신장이 커지고, 12세가 되면서부터 다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신장이 2cm이상 커지기 시작하여 17세가 되면 12cm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단위 : cm)

측정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7	119.8	118.3	125.5	124.3	130.9	129.9	135.9	135.5	141.0	142.0	146.8	148.4
1998	119.8	118.5	125.7	124.0	130.9	129.5	136.2	135.6	141.2	142.0	147.3	148.8
1999	120.1	118.6	125.7	124.3	131.0	129.8	136.2	135.5	141.6	142.4	147.5	149.1
2000	120.1	118.9	125.8	124.9	131.3	130.1	136.6	136.0	141.9	142.3	148.1	149.2
2001	120.3	118.8	126.2	124.8	131.4	130.3	136.8	136.2	142.2	142.5	148.2	149.1
2002	120.3	119.1	126.4	125.0	131.9	130.6	136.9	136.5	142.4	143.1	148.6	149.6
2003	120.8	119.4	126.7	125.4	132.2	130.9	137.1	137.0	142.9	143.5	148.7	149.8
2004	120.6	119.6	126.7	125.2	132.1	131.1	137.6	137.0	142.9	143.7	149.1	150.3
2005	120.6	119.3	126.5	125.3	132.0	131.0	137.3	137.1	143.0	143.7	149.1	150.3
2006	121.7	120.2	127.1	125.8	132.6	131.5	138.7	138.3	143.5	144.4	150.0	150.9
2007	121.6	120.4	127.4	126.1	132.9	131.8	138.6	138.4	143.7	144.7	150.4	151.1
2008	122.0	120.7	127.4	126.2	133.1	131.7	138.7	138.5	143.5	144.6	150.2	151.0
2009	121.9	120.6	127.7	126.2	133.0	132.0	138.3	138.0	143.9	144.7	150.5	151.0
2010	121.8	120.6	127.7	126.4	133.1	132.0	138.4	138.1	144.0	144.6	150.2	151.2
2011	121.7	120.5	127.8	126.4	133.5	132.3	138.7	138.4	143.9	144.8	150.4	151.1
2012	121.6	120.2	127.8	126.5	133.4	132.3	139.1	138.5	144.1	144.9	150.6	151.1

측정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7	153.7	153.5	153.5	156.7	156.7	158.6	169.6	159.2	171.6	160.0	172.2	160.3
1998	153.6	153.7	153.7	156.8	156.8	158.7	169.8	159.3	172.0	159.9	172.6	160.5
1999	154.3	153.9	153.9	157.0	157.0	158.7	170.3	159.6	171.9	159.9	172.7	160.6
2000	154.9	154.4	154.4	157.3	157.3	158.9	170.4	159.5	172.2	160.2	173.0	160.5
2001	155.2	154.3	154.3	157.5	157.5	159.0	170.9	159.7	172.2	160.2	173.1	160.7
2002	155.5	154.3	154.3	157.5	157.5	159.3	170.7	160.0	172.5	160.3	173.3	160.9
2003	155.9	154.8	154.8	157.6	157.6	159.3	171.1	160.1	172.6	160.6	173.6	161.0
2004	156.2	154.8	154.8	157.7	157.7	159.4	171.4	160.3	172.7	160.6	173.6	161.6
2005	156.4	154.9	154.9	157.9	157.9	159.3	171.6	160.2	172.8	160.7	173.6	161.0
2006	158.1	156.1	156.1	158.2	158.2	159.5	171.8	160.4	173.0	160.7	173.9	161.1
2007	158.3	156.1	156.1	158.3	158.3	159.7	172.0	160.4	173.1	160.7	173.9	160.9
2008	158.1	155.9	155.9	158.4	158.4	159.7	172.0	160.5	173.3	160.8	173.9	161.2
2009	157.8	155.7	155.7	158.0	158.0	159.6	171.9	160.4	173.2	160.7	173.8	161.1
2010	157.9	155.5	155.5	158.2	158.2	159.6	171.8	160.6	173.0	160.7	173.7	160.9
2011	158.2	155.8	155.8	158.1	158.1	159.5	171.8	160.3	173.1	160.7	173.7	161.1
2012	158.2	155.7	155.7	158.0	158.0	159.3	171.8	160.2	172.9	160.6	173.6	160.9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체중은 17세 남학생 평균 68.4kg, 여학생은 56.2kg이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평균 12.2kg 차이가 있었고, 10년 전인 2002년에 남학생은 66.9kg, 여학생은 55.2kg으로 평균 11.7kg차이가 있었다.

2002년에 비해 2012년에 남학생은 1.5kg, 여학생은 1.0kg 증가하였으며, 남녀 간 평균체중의 차이도 0.5kg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단위 : kg)

측정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7	23.1	21.9	25.9	24.6	29.2	27.9	32.6	31.5	36.4	36.0	40.5	40.8
1998	23.1	22.1	26.0	24.9	29.3	27.8	32.8	31.5	36.4	35.9	40.6	40.9
1999	23.2	21.9	26.1	24.9	29.3	28.0	32.8	31.4	36.5	36.1	41.0	41.2
2000	23.3	22.4	26.4	25.4	29.9	28.5	33.6	32.2	37.8	36.3	42.0	41.8
2001	23.5	22.4	26.9	25.5	30.3	28.7	34.1	32.5	38.1	36.8	42.7	41.8
2002	23.8	22.7	27.1	25.8	30.7	29.4	34.6	32.9	38.8	37.6	43.9	42.8
2003	23.8	22.8	27.2	25.9	30.8	29.3	34.7	33.3	39.2	37.8	43.8	43.1
2004	24.0	22.8	27.1	25.9	30.7	29.4	34.9	33.1	39.3	37.2	44.4	43.2
2005	24.0	22.9	27.3	26.0	31.0	29.4	34.8	33.4	39.4	38.1	44.5	43.6
2006	24.5	23.2	27.7	26.4	31.6	29.7	35.8	34.0	39.8	38.6	44.7	43.7
2007	24.4	23.3	27.9	26.4	31.7	29.9	35.9	34.2	40.2	38.9	45.1	44.0
2008	24.7	23.5	27.9	26.4	31.9	29.9	36.0	34.3	40.1	38.6	45.5	44.0
2009	24.7	23.5	28.2	26.6	31.7	30.0	35.9	33.9	40.6	38.8	45.9	44.0
2010	24.9	23.7	28.4	26.9	32.1	30.3	35.9	34.2	41.1	39.2	46.1	44.4
2011	24.8	23.6	28.5	26.8	32.4	30.5	36.3	34.3	40.6	39.4	46.0	44.4
2012	24.7	23.5	28.4	26.8	32.4	30.4	37.0	34.9	41.0	39.6	46.2	44.2

측정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7	45.7	45.7	51.1	49.6	55.7	52.4	60.1	53.2	62.2	54.4	64.1	54.8
1998	45.9	45.8	51.5	49.6	56.0	52.2	60.0	53.4	62.3	54.1	64.1	54.8
1999	46.5	45.7	51.7	49.6	56.6	52.0	60.1	53.4	62.5	54.1	64.6	54.5
2000	47.4	46.7	52.9	49.9	57.7	52.5	60.8	53.3	63.2	54.2	65.3	54.9
2001	48.3	46.7	53.7	50.6	58.3	52.4	61.8	53.8	63.4	54.3	66.1	54.9
2002	49.2	47.0	54.7	51.1	59.4	53.3	62.5	53.9	64.7	54.8	66.9	55.2
2003	49.4	47.5	55.0	51.1	60.2	53.3	63.6	54.1	65.6	54.9	67.6	55.4
2004	49.7	47.5	55.7	51.1	60.2	53.4	63.4	54.0	66.3	55.2	68.1	55.8
2005	50.2	47.8	55.7	51.0	61.0	53.1	64.1	54.4	66.1	55.2	68.1	56.1
2006	50.7	48.0	56.6	51.2	60.5	52.9	64.3	54.2	66.5	54.8	68.2	55.4
2007	50.9	48.1	56.7	51.4	61.1	53.2	64.0	54.0	66.3	54.8	68.3	55.4
2008	50.8	48.1	56.7	51.5	61.4	53.3	63.8	53.8	65.8	54.4	67.7	55.1
2009	51.9	48.0	57.0	51.2	61.5	53.3	64.2	54.3	66.5	55.2	68.1	56.0
2010	51.7	48.2	57.2	51.5	61.5	53.2	64.7	54.9	66.6	55.5	68.1	55.6
2011	52.0	48.6	57.7	51.8	61.6	53.6	64.5	54.8	66.5	55.7	68.3	56.2
2012	51.7	48.7	57.6	51.7	61.6	53.7	64.9	55.1	66.6	55.9	68.4	56.2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교육부의 신체능력검사를 살펴보면, 10년 전인 2002년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50m 달리기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오래달리기 및 걷기,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기록이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기본 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 2002년에 비해 2012년의 윗몸일으키기 기록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1년에 윗몸일으키기가 윗몸말아올리기로 개정되면서 그 난이도가 낮아져 기록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4-3〉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단위: 초)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9.8	10.3	9.4	10.2	8.8	10.0	8.4	10.0	8.0	10.0	7.8	9.9	7.7	9.9	7.7	10.1
2007	9.9	10.5	9.5	10.3	8.8	10.1	8.4	10.2	8.1	10.3	7.9	10.1	7.8	10.1	8.1	10.4
2008	9.9	10.4	9.5	10.4	8.9	9.9	8.4	10.1	8.1	10.1	7.9	10.2	8.0	10.1	8.0	10.3
2009	10.0	10.5	9.6	10.4	8.7	9.9	8.4	9.9	8.1	9.9	7.8	9.9	7.7	9.9	7.7	10.1
2010	10.1	10.5	9.7	10.4	8.9	10.0	8.5	10.1	8.2	10.1	7.8	9.9	7.7	9.9	7.9	10.1
2011	9.9	10.3	9.5	10.2	8.9	10.0	8.4	10.0	8.1	10.0	7.9	10.0	7.9	10.1	7.9	10.2
2012	9.7	10.2	9.3	10.0	8.8	9.9	8.4	9.9	8.0	9.9	7.9	9.9	7.8	10.0	7.9	10.1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단위: 분, 초)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6.2	6.4	5.5	6.3	9.3	7.5	8.5	7.5	8.3	7.5	8.0	7.5	7.5	7.5	7.6	8.1
2007	6.27	7.06	6.15	6.57	9.49	8.26	9.20	8.36	9.07	8.36	8.29	8.14	8.20	8.19	8.37	8.36
2008	6.26	6.55	6.14	7.00	9.43	8.30	9.17	8.22	8.54	8.26	8.28	8.07	8.20	8.17	8.40	8.42
2009	6.29	6.56	6.15	7.00	9.34	8.20	9.20	8.36	8.44	8.22	8.23	8.03	8.15	8.08	8.19	8.23
2010	6.31	6.59	6.15	6.57	9.57	8.44	9.31	8.44	9.06	8.41	8.07	8.01	7.97	7.91	8.21	8.24
2011	6.10	6.40	5.54	6.39	9.36	8.33	9.13	8.35	8.46	8.26	8.26	8.08	8.18	8.11	8.20	8.21
2012	5.54	6.24	5.37	6.19	9.13	8.15	8.53	8.17	8.29	8.11	8.18	8.08	8.10	8.08	8.10	8.14

주: 초등학교 1,000m, 중·고 여자 1,200m, 중·고 남자 1,600m.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머리뛰기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153.4	138.3	165.2	144.6	186.8	153.6	203.0	157.1	214.7	158.6	226.9	165.2	231.4	164.8	236.7	164.8
2007	151.8	136.0	163.9	139.8	180.8	149.9	195.8	151.7	207.5	153.9	216.9	156.9	223.4	159.4	222.8	155.4
2008	155.0	140.4	163.7	141.3	183.2	148.3	196.9	151.5	209.2	155.3	219.3	156.4	224.4	156.6	226.2	157.2
2009	151.2	134.5	161.6	137.9	185.8	151.1	199.3	153.9	210.1	155.3	217.8	156.5	222.9	158.5	226.6	158.4
2010	148.5	132.6	157.8	135.9	173.8	140.7	186.6	142.4	197.5	144.6	219.5	155.6	223.4	156.8	226.0	156.6
2011	150.3	134.6	159.7	138.8	173.4	140.8	186.8	142.2	196.7	143.7	205.0	147.6	209.5	147.8	211.8	147.5
2012	152.9	136.7	162.7	140.9	177.0	143.6	188.9	144.3	199.1	146.1	205.9	148.4	211.1	149.2	215.0	149.6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6〉 성별·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

(단위 : 회)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32.2	24.5	34.9	26.3	37.2	26.4	40.5	27.7	43.2	29.2	45.6	30.1	47.0	31.0	49.4	32.2
2007	31.9	24.1	35.7	26.1	38.4	26.4	40.1	26.2	42.9	27.0	44.6	28.0	46.0	29.1	44.5	28.6
2008	31.9	25.3	35.8	25.8	38.0	26.4	40.8	27.6	43.0	28.3	45.6	29.2	47.1	29.9	44.4	29.3
2009	48.4	-	56.3	-	38.3	27.1	41.0	28.4	43.6	28.9	45.5	29.9	47.1	30.8	46.6	29.9
2010	49.7	39.0	55.9	38.9	53.9	32.6	58.2	33.0	59.2	33.0	45.6	30.9	47.0	31.2	45.6	30.3
2011	56.1	43.8	62.3	43.8	59.8	37.0	63.9	35.3	63.5	35.6	57.6	31.3	58.1	32.1	52.5	31.3
2012	62.2	49.0	69.8	50.1	62.8	40.2	65.2	38.6	67.4	38.0	61.4	32.6	60.1	33.0	56.4	32.8

주 : 2011년부터 윗몸말아올리기로 개정.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7〉 성별·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8.4	11.6	8.1	12.1	9.2	14.0	10.7	14.8	12.6	16.1	14.7	17.2	16.1	17.6	17.5	17.4
2007	8.2	12.0	8.2	12.8	9.0	14.4	9.9	14.9	11.2	15.6	12.4	16.5	13.4	16.7	13.8	16.1
2008	8.8	12.5	7.9	12.3	8.8	14.2	9.7	14.9	11.1	16.0	12.5	16.3	12.8	16.7	13.1	16.0
2009	7.7	12.0	7.5	12.8	9.0	14.7	10.2	15.6	11.4	16.3	12.4	17.3	14.5	17.2	13.4	16.7
2010	7.5	11.9	7.0	12.6	7.6	13.7	8.6	14.4	9.8	15.1	12.8	17.3	13.0	17.7	13.7	16.9
2011	7.8	12.4	7.3	13.1	7.5	13.7	8.5	14.4	9.6	15.1	11.0	15.8	11.7	16.1	11.9	15.9
2012	8.1	12.5	7.7	13.3	7.8	14.0	8.7	14.7	9.8	15.4	10.9	15.9	11.6	16.1	12.0	16.1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2 청소년의 영양과 비만

아동청소년의 연령층별로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평균 섭취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영양소에 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권장섭취량에 근접한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슘은 모든 연령대에서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2~18세 청소년의 칼슘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50% 정도였다. 반면에 나트륨은 모든 연령층에서 기준보다 섭취량이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충분섭취량의 2배, 3배로 섭취량이 증가해 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단위 : %)

영양소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105.0	92.4	106.7	95.7	92.5
단백질	244.5	217.4	207.8	165.8	156.0
칼슘	94.2	75.8	64.9	56.2	68.4
인	144.3	159.4	128.7	131.1	173.0
나트륨	189.9	216.2	248.4	290.5	318.5
칼륨	85.0	75.1	75.2	78.6	81.5
철	104.9	110.6	118.1	91.4	120.6
비타민 A	129.3	156.8	143.7	116.4	109.8
티아민	128.7	158.7	147.8	131.9	136.0
리보플라빈	165.3	146.9	138.2	99.5	103.9
나이아신	112.0	121.7	128.9	113.5	124.3
비타민 C	167.4	182.0	126.9	91.8	89.7

주 : 영양섭취기준(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 한국영양학회, 2010); 에너지, 필요추정량; 나트륨, 칼륨, 충분섭취량; 그 외 영양소, 권장섭취량.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다음은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을 섭취한 대상자 비율을 연령층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영양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칼슘 섭취량은 1~2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상이 평균 필요량에 미치지 못 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섭취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12~18세 연령층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비율

(단위 : %)

영양소	연령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비율 (%)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20.0	32.2	19.3	31.6	39.8
단백질		7.0	1.3	5.5	13.4	15.9
지방		36.0	20.3	19.2	18.1	13.8
칼슘		49.2	60.6	77.3	83.6	70.6
인		9.7	8.3	15.3	15.9	11.5
철		42.0	39.2	32.4	50.1	36.7
비타민 A		25.6	28.6	31.1	44.9	46.7
티아민		21.9	11.5	17.8	27.5	28.4
리보플라빈		18.4	25.0	22.6	43.1	46.0
나이아신		38.5	17.2	21.6	27.7	24.7
비타민 C		37.0	32.4	46.8	61.4	53.8

주 : 영양섭취기준(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 한국영양학회, 2010);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 지방,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하한선; 그 외 영양소, 평균필요량.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영양섭취부족 대상자 비율은 12~18세에 17.0%, 19~29세에 17.1%로 이들 연령층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지방 섭취과잉은 19~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0〉 영양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섭취과잉 대상자 비율

(단위 : %)

연령	구분	영양섭취부족 <sup>1)</sup>			에너지/지방섭취과잉 <sup>2)</sup>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2세		9.3	9.8	6.7	0.7	0.7	0.4
3~5세		7.6	6.6	6.1	2.9	3.4	2.0
6~11세		7.3	4.6	8.8	8.4	11.1	1.7
12~18세		17.0	15.2	20.3	7.4	7.4	3.2
19~29세		17.1	9.9	25.1	12.5	16.7	3.7

주 : 1) 영양섭취부족 : 에너지 섭취 수준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비율.

2) 에너지/지방섭취과잉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인면서 지방 섭취량이 적정 에너지 섭취비율을 초과한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조사 직전 2일간의 끼니별 결식률을 살펴보면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2~18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27.6%로 높았다.

〈표 5-4-11〉 끼니별 결식률

(단위 : %)

연령	구분	아침 <sup>1)</sup>	점심 <sup>2)</sup>	저녁 <sup>3)</sup>
1~2세		4.8	2.7	0.3
3~5세		14.1	1.4	1.9
6~11세		12.3	2.6	1.5
12~18세		27.6	7.8	6.2
19~29세		42.7	9.4	6.3

주 : 1) 아침식사 결식률 : ((1일전 아침식사여부에 '아니오'로 응답한 대상자 수) + (2일전 아침식사여부에 '아니오'로 응답한 대상자 수))의 ((1일전 아침식사여부 응답자 수) + (2일전 아침식사여부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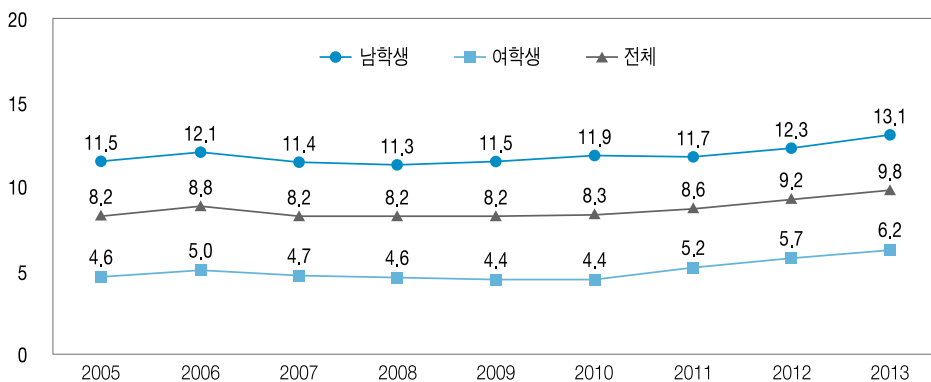
2) 점심식사 결식률 : ((1일전 점심식사여부에 '아니오'로 응답한 대상자 수) + (2일전 점심식사여부에 '아니오'로 응답한 대상자 수))의 ((1일전 점심식사여부 응답자 수) + (2일전 점심식사여부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

3) 저녁식사 결식률 : ((1일전 저녁식사여부에 '아니오'로 응답한 대상자 수) + (2일전 저녁식사여부에 '아니오'로 응답한 대상자 수))의 ((1일전 저녁식사여부 응답자 수) + (2일전 저녁식사여부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청소년의 비만율은 2013년에 남학생은 13.1%로 여학생 6.2%보다 높았으며, 연도별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5-4-1] 청소년의 비만율(중1~고3)



주 : 1) 자기기입 신장, 체중으로 산출.

2) 2005년은 중1~고2, 2006년 이후는 중1~고3 대상으로 조사.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연도.

2013년 청소년의 평생 흡연 경험률은 남학생 29.7%, 여학생 12.3%이며,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14.4%, 여학생 4.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연도별로는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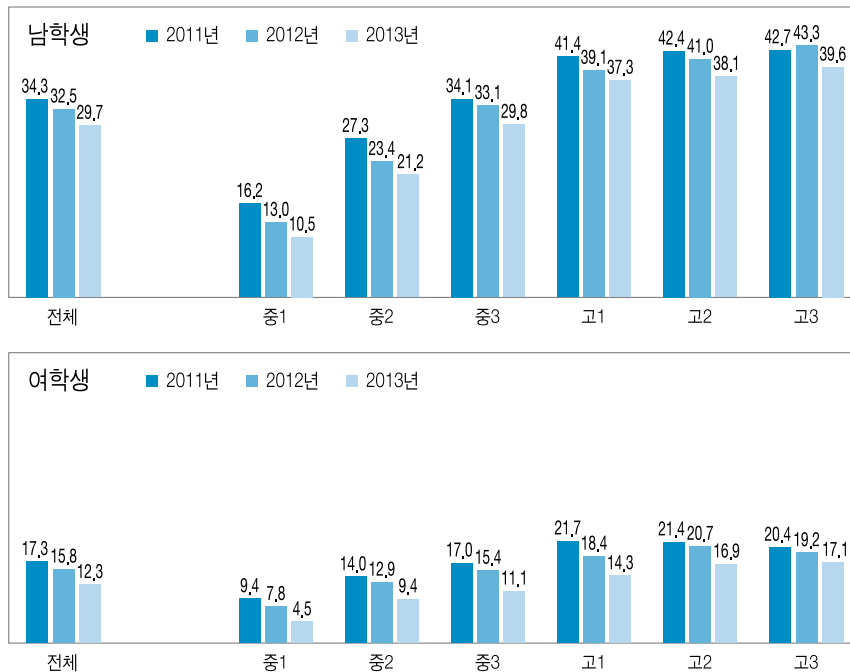
2013년 청소년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남학생 12.6세, 여학생 12.6세이며,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남학생 13.5세, 여학생 13.6세로 남녀 학생의 차이는 없으며, 연도별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간접 흡연 노출률은 2013년에 30.7%이며, 연도별로는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2013년 청소년의 평생 음주 경험률은 남학생 48.0%, 여학생 38.5%이며,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9.4%, 여학생 12.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연도별로는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처음 음주 경험 연령은 2013년에 남학생 12.8세, 여학생 13.0세로, 남녀 학생의 차이는 없으며, 연도별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현재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은 남학생이 44.9%로, 여학생 49.9%보다 낮으며, 연도별로는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그림 5-4-2] 학년별 평생 흡연 경험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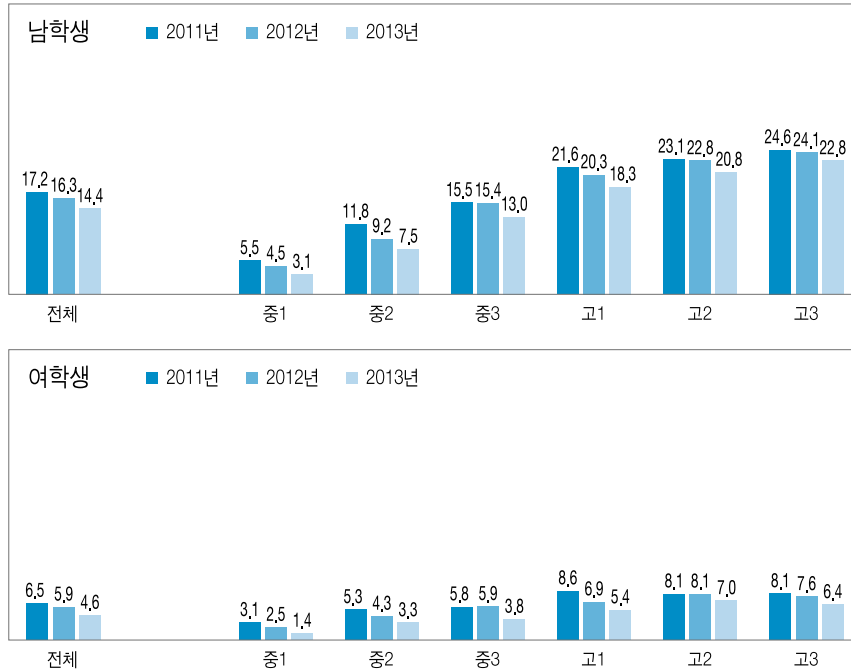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3] 학년별 현재 흡연율

(단위 : %)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흡연 경험 연령(세) <sup>1)</sup>	12.8	12.8	12.8	12.6	12.6	12.6	12.6	12.6	12.6
매일 흡연 시작 연령(세) <sup>2)</sup>	13.8	13.8	13.9	13.6	13.6	13.4	13.5	13.5	13.6
주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sup>3)</sup>	39.6	38.5	40.8	32.9	31.1	34.8	30.7	29.5	32.0

주 : 1) 평생 흡연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 피워본 연령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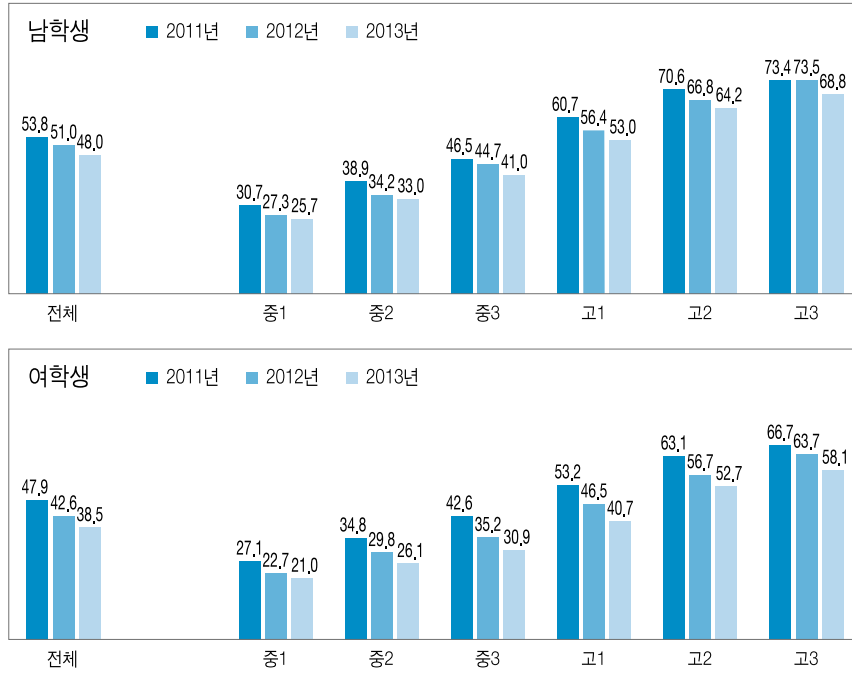
2) 최근 30일 동안 매일 흡연자 중에서 담배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의 평균.

3)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는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4] 학년별 평생 음주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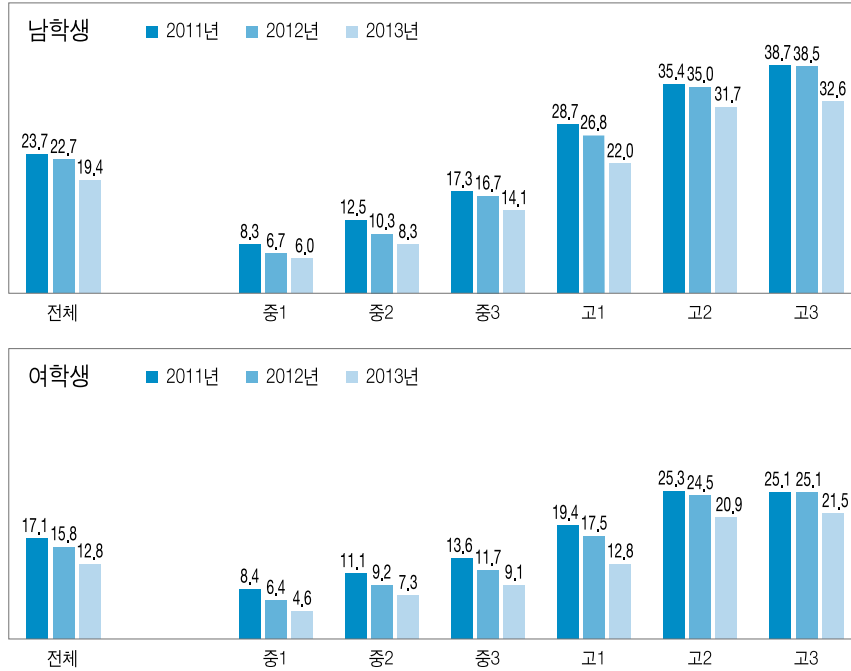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5] 학년별 현재 음주율

(단위 : %)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음주 경험 연령(세) <sup>1)</sup>	13.0	12.9	13.1	12.8	12.7	12.9	12.9	12.8	13.0
현재 음주자의 위험음주율 <sup>2)</sup>	48.8	46.3	52.5	47.6	45.6	50.8	46.8	44.9	49.9

주 : 1) 평생 음주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1잔 이상 술을 마신 연령의 평균.

2)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 소주 5잔 이상, 여자 :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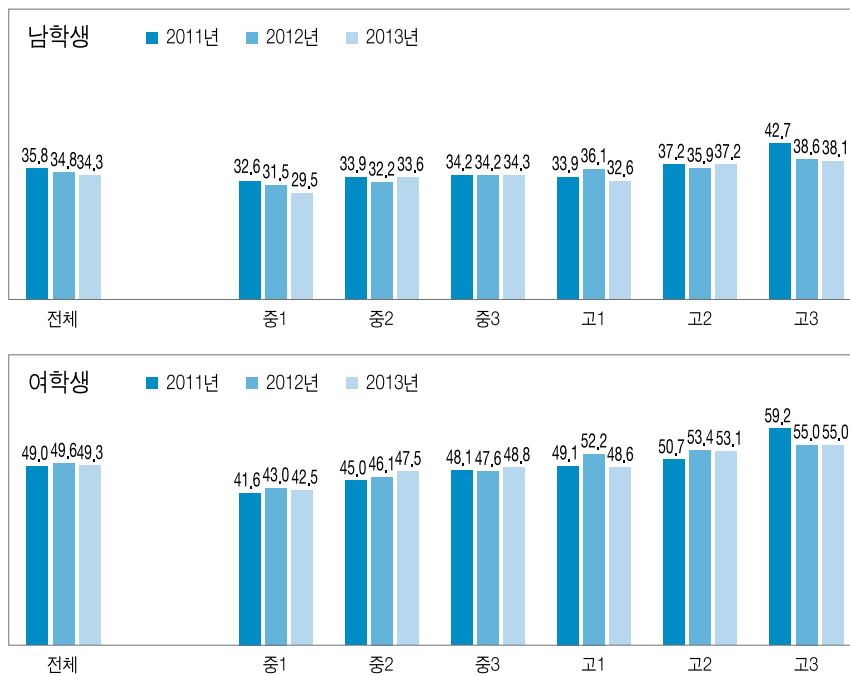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 34.3%, 여학생 49.3%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연도별로는 남학생은 감소경향, 여학생은 큰 변화가 없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5.2%, 여학생 37.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 갈수록 증가하여 고3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40.3%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률은 남학생 13.1%, 여학생 20.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연도별로는 남녀 학생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그림 5-4-6]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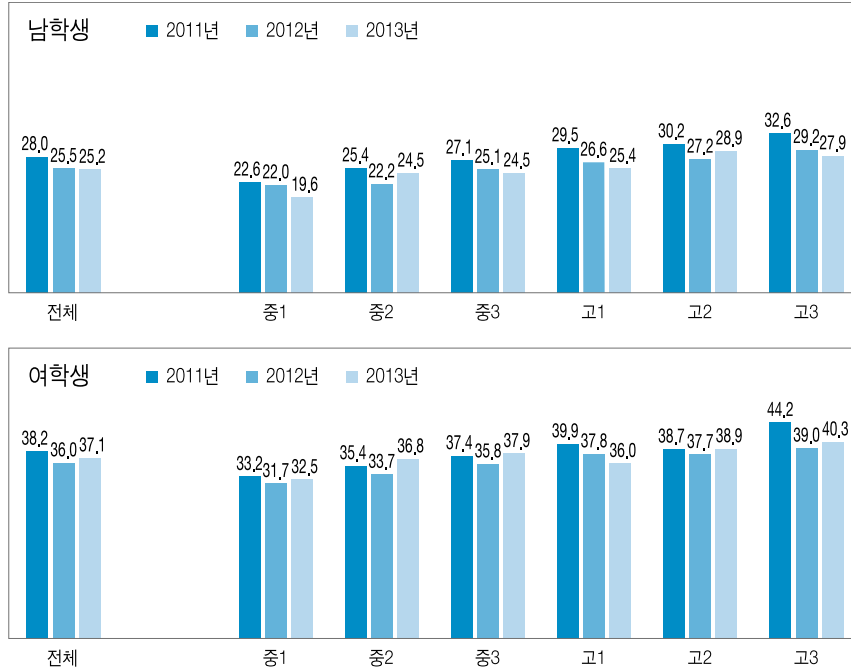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7]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자료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8] 학년별 자살 생각률

(단위 : %)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제6부 요약

2012년 아동학대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박학대(47.1%)였으며, 중박학대 미분류를 기준으로 하면 정서학대가 3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임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실종에 대한 대처를 법제화시키는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등의 사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의 성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3년 1,016명에서 2011년 322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결정 및 고시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최근 빠른 속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역기능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2013년 기준 전국 19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상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의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 치료 매뉴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중이다.



##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 제 1 장 청소년 안전

## 1 학교폭력대책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였고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은 2004년에 시작되었다. 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2005년에는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이어 2007년 2월에 정부는 「5대폭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2년간 추진해 왔던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저해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중점 과제 15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는 2차 학교폭력예방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15개 중점 추진 과제(2007~)

2007년 2월 정부는 「5대폭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2년간 추진해 왔던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저해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학생의 비행 정도, 학교에 대한 위험도별 대책과 법률 보완,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 중점 과제 15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표 6-1-1〉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영역	과제	내용
비행 학생별 대책	• 보호관찰과 교사와의 1:1 멘토링 사업(신규)	• 범법 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 보호 관찰 대상자와 학생지도에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교사와의 1:1 멘토링 실시
	• 가해학생 「대안교육센터」 위탁 교육(신규)	• 부산·창원·광주·청주·안산 지역의 폐지되는 소년원 시설을 활용, 「대안교육센터」 설치 예정('07. 7 법무부) •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전공자 등 전문인력 배치 •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체험 및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적응 지원
	• 대안교육 기관 및 「친한 친구 교실」 운영	• 시·도 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 지정 운영 • 가해학생 부모를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신규) • 학교 내 「친한 친구 교실」 운영(신규)
학교 위험도별 대책	•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비상주)(신규)	• 학교폭력이 빈발한 학교,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 중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시범 배치 (비상주)
	• 배움터지킴이 배치	• 학교주변 취약 및 위험 예상 지역에 배움터지킴이 배치 • '07년 100개 학교, 200명을 배치하여 학교 내·외 순시·순찰 활동 강화
	• 전문상담교사, 상담자원봉사자 활용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상담 활성화 • 전문상담교사 배치(기존+신규)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배치 • 대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 지원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피해자 보호 대책	• 피해 학생에 대한 경호 지원(신규)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폭력 위협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 등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 강화
	•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상담, 법률, 치료비 지원 • 향후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지원
	•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신규)	• 시·도 교육청에 위탁, 위임한 민간 또는 공공의 학교폭력 전문기관에 「SOS 지원단」 구성 • 전국 시·도 교육청마다 1개 이상의 지원단 운영
관련 법령 개정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이수를 위한 법령 개정(신규)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보완
	•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 우대 방안 마련	•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 수당 지급(신규) •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에 대한 선택 가산점 부여 방안 모색(신규)
학생·교원· 학부모 교육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기본생활습관 강화	• 초·중등학생용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신규)

영역	과제	내용
학생·교원· 학부모 교육 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기본생활습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에서 개발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법교육 실시(신규)</li> <li>•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 2회 이상 반드시 실시</li> <li>• 시·도 교육청별로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는 캠페인」 전개(신규)</li> <li>• 학생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지키는 학교 환경 조성(신규)</li> </ul>
	• 교원연수 및 다각적인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연수 자료 개발·보급 및 집중 연수(기존 + 신규)</li> <li>•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신규)</li> <li>•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부모 동참 프로그램」 확대 운영</li> </ul>
	• 학교폭력 예방 모니터 강화를 위한 또래상담자 양성(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학교폭력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li> <li>• 또래상담자 양성을 통해 교실 내·외 학교폭력 현장 모니터를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환경 조성</li> <li>•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이 상담훈련을 받은 후에 친구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 프로그램</li> </ul>
	• 학교폭력 자신 신고 기간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총리·법무부·행정부장관,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장의 명의로 된 공동담화문 발표 : '07.3.12(월)</li> <li>• 사이버경찰청에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 운영,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경찰로 전송·신고하는 「폰투웹 시스템」 구축(신규)</li> <li>•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문자 선도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애플레터 보내기」 운동(신규)</li> <li>• 피해학생, 보호자 희망시 담당 경찰관 서포터 지정, 면담 및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통한 상담과 보호로 2차 피해 방지(신규)</li> </ul>

## 나. 2.6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1) 수립 배경

2012년 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제정된(2004.7)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기존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 및 제도가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였고 특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학생들의 배려·공감·협동심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 (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크게 7대 실천 정책으로서 4개의 직접 대책과 3개의 근원적 대책으로 구성되었다. 직접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둘째, 신고-조사 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셋째,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넷째,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의 4개 대책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으로는 3개 대책이 마련되었다.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및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6-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4개 직접 대책 및 세부과제

영역	과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li> <li>-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li> <li>- 은폐 사실 발각 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징계</li> </ul> </li> <li>• 담임교사의 역할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 면담 실시, 복수담임제도 도입,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li> <li>-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li> <li>- 학교별 생활지도 전담팀 운영 행정업무 경감, 법률상담지원</li> </ul> </li> <li>•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필수이수</li> <li>-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 실시</li> <li>- 각종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대폭 반영</li> </ul> </li> </ul>
신고 - 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확대·설치</li> <li>-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 이송·처리</li> </ul> </li> <li>•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초 4~고3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실시</li> </ul> </li> <li>•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동행 보호,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동일학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li> <li>- 피해학생들의 신속한 치료 위한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마련</li> </ul> </li> <li>•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학생의 보복행위,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 경우 엄정한 징계조치</li> <li>- 시·도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 운영, 특별 진로(직업)교육도 포함</li> </ul> </li> <li>•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대응</li> </ul>

주 요	과 제
<p>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에는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 운영계획</li> <li>- 학생 모니터단 확대를 온라인을 통해 학생과 밀접한 교육정책 제시 기회 마련</li> </ul> </li> <li>•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학교폭력 예방·조기발견 계획' 반드시 반영</li> <li>- 모든 학생 대상 연 1회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후 조치</li> <li>-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예방 학생 교육자료, 학부모·교사용·관리자용 매뉴얼 개발</li> </ul> </li> <li>•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전문 사이버 상담 및 학교폭력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li> <li>- Wee 포털사이트(<a href="http://www.wee.go.kr">www.wee.go.kr</a>) 사이버상담센터</li> <li>-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a href="http://www.cyber1388.kr">www.cyber1388.kr</a>)</li> <li>-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 강화</li> <li>- 인터넷포털 사이트 및 SNS 서비스 활용, 손쉬운 학교폭력 상담 접근 유도</li> <li>- 전문상담교사, 또래상담자격 학생 등에서 사이버상담사 선발·활용</li> </ul> </li> </ul>
<p>학부모 교육확대 및 학부모 책무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교육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li> <li>- 학부모교육포털(<a href="http://www.parents.go.kr">www.parents.go.kr</a>)을 통해 온라인 교육 활성화</li> <li>-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분야 선정, 교육자료 제작·배포</li> </ul> </li> <li>• 교사-학부모간 소통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 후에 개최</li> <li>- 학기당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 간 개인·그룹 상담 기회 제공</li> <li>-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제공</li> </ul> </li> <li>•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심으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li> <li>-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부모 교육기부형 인력풀'을 운영</li> <li>- 전문인력과 부적응 학생 1:1 결연하여 상담 자원봉사 실시 방안 추진</li> <li>- 등하교 시간에 학생생활지도 위한 학부모 자원봉사 등 연계 협력 강화</li> </ul> </li> </ul>

〈표 6-1-3〉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3개 근본영역 및 세부과제

영역	과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른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 경로효친, 갈등해결 등 실천행동 교육</li> <li>'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선정하여 3년간 재정지원 실시</li> </ul> </li> <li>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 도덕, 사회 교과와 '인성 핵심 역량(공감, 소통, 갈등해결, 관용, 정의 등)' 요소 강화</li> <li>도덕·사회수업에서 학교폭력 관련 발생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하도록 운영</li> <li>인성교육 관련 교과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li> <li>정서안정, 자존감 향상, 사회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 지원</li> </ul> </li> <li>실시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50% 증대</li> <li>스포츠와 인성교육을 접목하여 학교축제로 발전</li> </ul> </li> <li>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학생생활규칙 결정·준수</li> <li>학생과 학부모의 학생생활규칙 동의서 제출 의무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과 책무성 확보</li> </ul> </li> <li>인성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생활기록부에 핵심 인성별 구체적 기록 후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반영</li> <li>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 신설하여 자기평가 기능 강화</li> <li>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인성분야 신설</li> </ul> </li> <li>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에게 연구비 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시 우대</li> <li>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역량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 병행</li> <li>각종 재정지원 대상 학교 선발 시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 우선 선정 지원</li> </ul> </li> <li>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의 비중 확대로 학교의 책무성 강화</li> <li>평가지표(안)-인성교육실천, 학교폭력 예방 근절</li> </ul> </li> </ul>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 본격 추진 : '가족사랑의 날'(수요일) 및 주말 활용</li> <li>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대폭 확대</li> </ul> </li> <li>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 실시</li> </ul> </li> </ul>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효성 있는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 운영 : 쿨링 오프제(Cooling off), 일정시간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 떨어지는 시스템 도입</li> <li>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li> <li>게임산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민간자금 출연 확대 및 의무화</li> <li>청소년 PC방 이용시간(오후 10시까지)에 관한 법령 위반 업주의 벌칙규정 강화</li> </ul> </li> <li>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li> <li>게임 및 인터넷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관리하여 단계적으로 치유</li> <li>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li> <li>전국 초·중·고교생 대상 종합실태조사 실시</li> </ul> </li> </ul>

## 다.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 (1) 수립 배경

2012년 2월 수립하여 시행해 온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2년 8.5%에서 2013년 2.2%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신고 전화 117 통합,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등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장의 낮은 자발성, 형식적 예방교육, 학생상담인력 부족, 피해학생 보호 미흡 등 일부 대책이 개선·보완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9개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의 근원적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13년 7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다.

### (2) 방향과 주요 내용

〈표 6-1-4〉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주요 내용

영역	과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예방교육 내실화</li> <li>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li> <li>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적극 지원 및 유도</li> <li>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및 대안교육 활성화</li> </ul>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li> <li>사이버폭력 신고 및 예방교육 활성화</li> <li>처벌보다는 관계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 집단 따돌림 해소</li> <li>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li> <li>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li> <li>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li> </ul>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진단 및 관리 강화</li> <li>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li> <li>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강화</li> <li>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등 조성</li> </ul>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li> <li>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li> </ul>
안전한 학교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li> <li>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li> <li>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li> <li>학교폭력대책 추진체계 재정비</li> </ul>



최근 2012년 2.6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부터 학교폭력근절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 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5월에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5천명, 2012. 5. 9 ~ 5. 16),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43.0%, 학부모 63.0%, 교원 62.0% 였다. 또한 학교폭력 대책 발표 후 학교폭력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에는 43.0%, 학부모 63.0%, 그리고 교원은 62.0%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의 학교폭력 안전도 조사(1차, 12천명, 2012. 2월 / 2차, 25천명, 2012. 5월)에서는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 정도가 1차 조사 때 20.3%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9.5%로서 학교폭력이 심각성 정도가 낮아졌다. 학교폭력 발생에 있어서도 2012년 초반까지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2년 2월 2.6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다양한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율도 1차 조사에서는 17.2% 였으나 2차 조사에서 8.9%, 2013년 1차 조사에서는 2.2%로 나타나 피해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 02-3460-0205



## 2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이후 부터이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20년 동안 특별한 수정 없이 존속되어오다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는 UN의 권고를 받았다. 또 1996년 OECD가입 시에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11개의 아동학대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신고의무,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 가. 아동학대 실태

### (1) 아동학대 사례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유형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학대피해로 인한 아동의 보호건수는 6,403건으로 2011년보다 345건이나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학대가 중복된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63건(14.6%), 신체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정서학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신체학대와 방임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방임과 중복학대(30~40%)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방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30%를 유지하고 있고 중복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대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1-5〉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 건, %)

연도 유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중복학대 분류	중복학대 미분류
신체학대	439(8.4)	473(8.5)	422(7.6)	338(5.9)	348(6.1)	466 (7.7)	461 (7.2)	2,858 (28.8)
정서학대	604(11.6)	589(10.6)	683(12.2)	778(13.7)	773(13.7)	909 (15.0)	963 (14.6)	3,785 (38.1)
성 학 대	249(4.8)	266(4.8)	284( 5.1)	274( 4.8)	258(4.6)	226 (3.7)	278 (4.3)	446 (4.5)
방 임	2,035(39.1)	2,107(37.7)	2,237(40.1)	2,025(35.6)	1,870(33.1)	1,783 (29.4)	1,713 (26.8)	2,849 (28.7)
유 기	76(1.5)	59(1.0)	57(1.0)	32(0.6)	14(0.2)	53 (0.9)	-	-
중복학대	1,799(34.6)	2,087(37.4)	1,895(34.0)	2,238(39.4)	2,394(42.3)	2,621 (43.3)	3,015(47.1)	-
계	5,202(100)	5,581(100)	5,578(100)	5,685(100)	5,657(100)	6,058(100)	6,403(100)	9,938(100)

주 : 2012년에는 유기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음.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년도.

##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친인척, 타인 행위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8,39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보인 타인에 의한 학대는 7.3%로 파악되었고, 조부모 및 친인척 등에 의한 학대는 6.9%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6〉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 계	2010년 (중복학대 분류)	2011년 (중복학대 분류)	2012년 (중복학대 미분류)
부 모	4,709(83.2)	5,039(83.1)	} 8,394(84.5)
조부모	182(3.3)	194(3.2)	
친인척	144(2.5)	131(2.2)	
형제/자매	11(0.2)	24(0.4)	
타 인	534(9.4)	574(9.5)	
파악 안 됨	7(0.2)	1(0.0)	25(0.3)
기 타	70(1.2)	95(1.6)	109(1.1)
계	5,685(100.0)	6,058(100.0)	9,938(100.0)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년도.

## 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 (1) 아동방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정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 '보건소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방문간호서비스에 아동보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은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이 방문건수 대비 16.5%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고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고가 바탕이 되어 2007년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실시 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스타트 사업은 '드림 스타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2007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2013년 기준 181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아동 수 역시 2007년 4천명에서 2012년 말 기준 약 6만 6천 여명으로 17배 이상 증가하였다.

##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총 3,316건으로 약 36.9%에 해당한다. 이에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가 자격 취득 시 필수적으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2007년에는 유치원 및 학원종사자, 구급대원 등을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2011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정신보건센터,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STOP&LOVE 광고가 제작되어 케이블TV로 송출된 바 있으며, 2011년 전면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상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 (3)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지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지원과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8년 '아동학대행위자 특성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총 45,073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제공한 서비스 항목은 상담으로 2012년 이전 신고사례 학대행위자의 79.6%, 2012년 신고사례 학대행위자의 78.2%에게 실시되었다. 상담 중 개별상담이 7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상담은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846,383명에게 15,038회의 교육이 제공되었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한 교육은 747,712명에게 13,309회 실시된 것으로 집계되어 신고의무자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약간 더 많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고의무자 대상교육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두드러져서, 총 52,515명을 대상으로 776회의 교육이 제공되었다. 한편, 교원 517회(26,992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47회(8,003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4회(2,86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정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 10월에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체계를 갖추었다. 2004년부터는 지역 기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2004년에는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을 부과하여 시·도별 1개소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실, 놀이실 등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아동보호를 위한 전체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2013 5월 기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48개소).

현재, 보건복지콜센터(129), 119,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인터넷, 내방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서는 12시간 이내에,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서는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48시간 연장 가능)에 응급의료조치 및 긴급격리조치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후 사례관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임상심리 전문치료인력 증원으로 학대피해아동 상담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기준 표준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예방을 효율화하기 위해 보호처분제도, 친권제한제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상담원 신변안전 확보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실시하였다.

### 3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며, 부모 또한 아동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아동을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아동의 실종은 부모로 하여금 실종아동에 대한 죄책감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여 최악의 경우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실종아동 문제를 개인의 문제 또는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2004년 개구리소년들(1991년 실종)의 유골 발견, 2004년 부천초등생, 포천여중생 실종사건 등으로 인해 실종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구축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3년 이전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는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보호시설의 아동카드 송부누락 및 지연, 미신고시설 관리부실, 관련 법률의 부재,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5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5년 12월 시행된 실종아동법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실종아동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06년에는 13,989명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8,25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대부분인 90% 이상은 보호자에게 인계되었고 소수만이 미발견상태에 있다. 단 최근들어 미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2012년 376명).

〈표 6-1-7〉 실종 아동 및 장애인 발생과 가족복귀 현황(2012년 12월 기준)

(단위 : 명)

연 도	합 계			일반아동			장 애 인		
	발생 건수	발견 현황		발생 건수	발견 현황		발생 건수	발견 현황	
		보호자인계	미발견		보호자인계	미발견		보호자인계	미발견
2006년	13,989	13,943	46	7,084	7,071	13	6,905	6,872	33
2007년	15,896	15,854	42	8,627	8,615	12	7,269	7,239	30
2008년	14,373	14,349	24	9,500	9,485	15	4,873	4,864	9
2009년	14,864	14,821	43	9,273	9,257	16	5,591	5,564	27
2010년	17,643	17,571	72	10,914	10,872	42	6,729	6,699	30
2011년	18,894	18,802	92	11,472	11,425	47	7,422	7,377	45
2012년	18,259	17,883	376	10,825	10,655	170	7,434	7,228	206
합계	113,918	113,223	695	67,695	67,380	315	46,223	45,843	380

주 : 1) 2005년까지 일반아동 연령기준은 8세 이하이나 2006년부터 실종아동법의 시행(2005.12.1)에 의거 14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2013). 홈페이지 통계자료.

([http://mw.go.kr/front\\_policy/jc/sjc0111mn.jsp?PAR\\_MENU\\_ID=06&MENU\\_ID=06180402](http://mw.go.kr/front_policy/jc/sjc0111mn.jsp?PAR_MENU_ID=06&MENU_ID=06180402))

달라진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종아동 등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8세 이하 아동에서 14세 미만 아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종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실종 아동·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가족 지원 등 실종예방 및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장애인시절 등 보호시설장의 신상카드 송부를 의무화하고 시설보호 대상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실종아동찾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경찰의 수색·수사를 의무화하여 경찰의 초동수사 및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시설 등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일곱째, 보호시설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권한을 명시화하여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였으며 동 대책에 따라 신고의무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 및 불법양육자의 처벌규정에 관한 홍보도 병행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2008년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의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가족부도 실종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 및 아동범죄 다발지역 등 아동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지원하였다. 둘째,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지정(2010년 6월 8일, 60개소)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 발생시 우선적으로 일시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종 아동 등에 대한 보호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가족 또는 경찰서에서 이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자료 간 전산연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08년 12월 14일 시행)하고, 실종예방 인형극 순회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다섯째, 유괴예방 3단계 구호 100만인에게 알리기, 실종예방 공익광고 송출, 어린이안전 특별생방송 방영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날·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여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였다. 여섯째, 실종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

활동비·전단지제작지원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종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실종아동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신상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때에는 실종아동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전정보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한 명의 아동 및 장애인이라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종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4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 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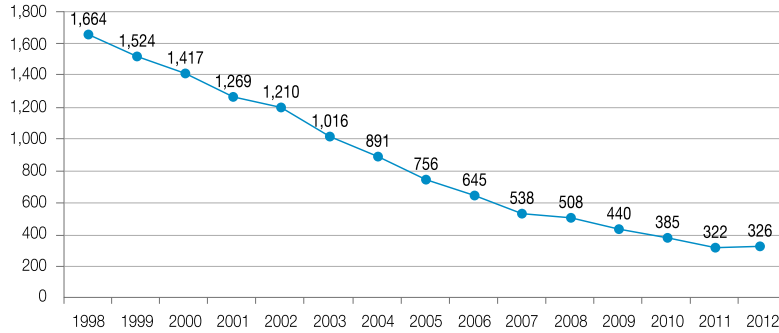
청와대는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2003년 5월 5일)하고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1/2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어린이 사고사망 2001년 1,269명 → 2007년 538명). 그리고 O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상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를 조정해 나갔다.

이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3년 1,016명에서 2012년 326명으로 67.9%나 감소하여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는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이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6-1-1]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14세 이하)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e나라지표.

각 연도별 사망원인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기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익사 53건, 추락 37건, 화상 14건, 중독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8〉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교통	익사	추락	질식	화상	중독	기타
1998년	1,664	805	326	115	161	64	21	172
1999년	1,524	726	306	152	131	88	21	100
2000년	1,417	728	306	155	78	41	13	96
2001년	1,269	616	236	138	102	76	7	94
2002년	1,210	594	198	134	114	55	6	109
2003년	1,016	497	156	108	96	70	4	85
2004년	891	374	183	88	90	46	7	103
2005년	756	337	156	67	72	25	4	95
2006년	645	318	78	58	69	42	5	75
2007년	538	259	78	58	70	7	4	62
2008년	508	214	78	50	67	19	2	78
2009년	440	201	62	39	47	10	5	76
2010년	386	194	44	41	-	15	3	89
2011년	322	137	50	37	-	15	1	82
2012년	326	131	53	37	-	14	1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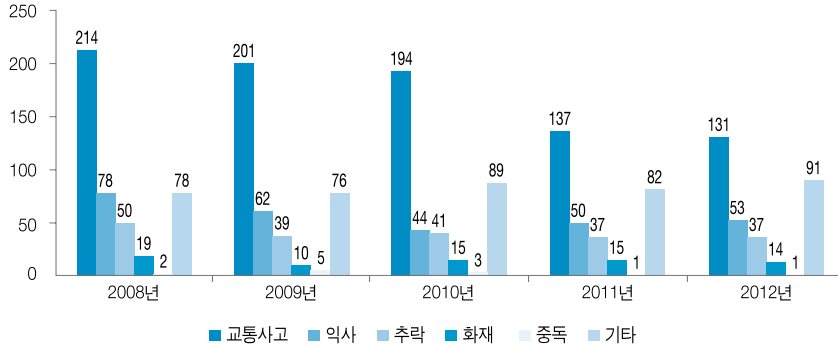
주 : 1)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자살·타살·질병 제외.

2) 2010년부터 질식사고는 기타로 집계.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그림 6-1-2]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14세 이하)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아동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교육시설, 여가 및 문화놀이 시설, 교통시설의 순이다. 따라서 가정내 아동안전사고에 대비한 각종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6-1-9>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발생건수	2,342	3,345	4,040	4,541	5,431	9,421	11,427	15,006	20,737
가정내 발생건수	1,380	2,011	2,502	2,762	2,794	5,576	7,299	8,534	12,236
비 율(%)	58.9	60.1	61.9	60.8	51.4	59.2	63.3	56.9	59.0

주 : 1) 어린이 연령 14세 이하.

2) 가정 다음으로 많은 장소는 교육시설,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교통시설 등임(기타 제외).

자료 :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2.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 나. 아동 안전대책의 성과

아동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결정짓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안전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30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을 안전하게 키워내는 일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책무가 되었다.

특히 아동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중상의 비율이 높고 인격발달과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사고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아동안전문제는 단지 피할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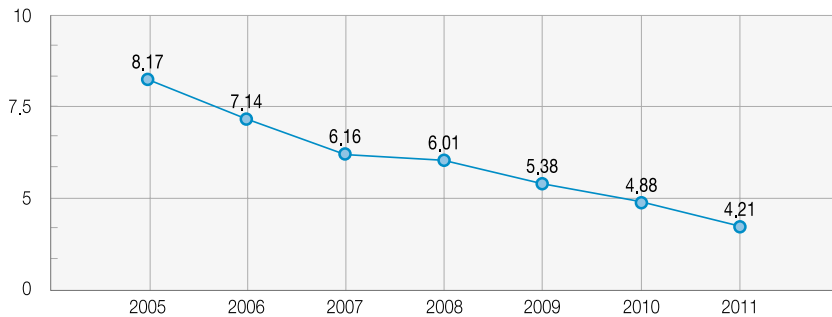
일로 간주되거나, 부모들이 알아서 예방하여야 할 일로 여겨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아동안전관련 정책 또한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적,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였다.

분야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많은 예산과 과제가 수행된 교통사고의 경우 2002년 594명에서 2011년 137명으로 괄목할만한 감소를 보여 교통안전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놀이사고 사망자는 2002년 198명에서 2011년 5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추락사고의 경우에도 2002년 134명에서 2011년 37명으로 큰 감소를 가져와 추락사고 대책의 효과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마련된 제2차 「아동안전종합 5개년계획」의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아동의 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 증진, 아동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 및 시스템, 제품의 설계와 개발, 부처별 부문별 협력과 조정을 통한 사고 예방활동 통합, 아동 사고예방 지식과 정보 향상,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대처, 응급치료, 재활서비스 극대화, 주요 부분별·아동연령별 사고예방 전략 제고, 민간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리더십 육성 등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11년에는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4.21명으로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가 평균수준 5.6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정부는 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스쿨존 만들기, 지역사회 중심 교통 예방 체험관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체제 정비, 학교 내 안전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6-1-3]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14세 이하)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표 6-1-10〉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국제비교(아동 10만명당)

(단위 : 명)

국 가	한국	OECD 평균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연 도	2011	2005	2005	2005	2005	2005
사망률	4.21	5.6	2.7	3.3	3.7	4.6

자료 : WHO Mortality Database.

향후에는 아동연령별 발달수준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개발하고 교육해나가며, 새로운 안전 위험요소들에 대응하여 특히 취약계층 고위험군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 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10만명 당)는 2002년 12.4명에 비해 2007년 6.3명, 2010년에는 4.9명, 2011년 4.2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제2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 2011년~2015년)에서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추락, 익사사고 등 주요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한 정책이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등 아동안전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체계 강화,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아동 안전체험 행사개최 등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안전통계의 주요지표인 통계청 사망통계와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관리정보,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시스템 협력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각 부처별, 기관별 어린이 안전관련 통계를 통계청 통계자료에 반영하도록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는 아동·청소년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만 5세 이하)와 사고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모교육 실시, 가정안전 꾸러미를 배포하는 등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등·하교길을 동행하고, 등·하교 상황, 학교 결석여부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확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 보호장구 개발지원 및 표준화, 저소득층 무상대여 등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정책은 표에 제시하였다.

〈표 6-1-11〉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부처명(소관과)	사업명	사업개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li> <li>안전수첩 및 안전꾸러미 제작·배포</li> <li>안전사고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으로 종사자, 교사의 교육활성화로 아동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아동안전문화 조성</li> </ul>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경찰청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li> <li>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 지속 추진</li> <li>*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도로부속물(도로안내판,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 설치</li> </ul> </li> <li>학교급별 안전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li> <li>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대책 마련</li> <li>시·도별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 조치</li> <li>기관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워킹스쿨버스 시범운영 확대</li> <li>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활동 지원 계속</li> <li>연령대에 맞춘 아동·청소년 교통안전교육기준, 교통안전교육 교수자료 개발 및 보급</li> <li>어린이 보호장구 개발지원 및 표준화, 저소득층 무상대여 등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 제고대책 지속 추진</li> </ul>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 실시</li> <li>배움터 지킴이 확대하고 활동시간 연장</li> <li>아동안전지킴이 배치</li> <li>보행안전지도 추진</li> </ul>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 새로마지 플랜 2015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아동청소년 보호 분야), 여성가족부(2013), 제5차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사업내용,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사업내용,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학대보호 정책사업내용, 경찰청, KID 사이트 실시 사업 내용.

## 제 2 장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청소년 유해약물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등이 포함된 접착제, 부탄가스 등) 그리고 그 밖에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약물중독은 약성 약물에서 강성 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여 중단하기 힘든데, 특히 청소년의 약물 사용은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폭력, 가출 등 청소년의 일탈행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예방 대책은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주류나 담배의 유통규제 제도의 한계 등으로 청소년의 흡연·음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 제도 및 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음주 및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 불법 판매행위를 관리하고, 음주나 흡연 시작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조기 유해약물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의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가.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실태

여성가족부의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2012년도 청소년 흡연경험률이 24.6%로 2011년 26.3%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남자 청소년의 경우 32.5%, 여자 청소년은 15.8%로 나타났으며,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평균 만 12.6세로 나타났다.

〈표 6-2-1〉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연령

(단위 : %, 세)

구 분		흡연 경험률	처음 흡연 연령
2010년		26.0	12.7
2011년		26.3	12.8
2012년		24.6	12.6
성 별	남 성	32.5	12.6
	여 성	15.8	12.6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교육부, 보건복지부(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 음주의 경우, 2012년도 청소년의 생애 음주경험률은 47.0%로 2010년 54.8%, 2011년 51.0% 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청소년의 최초 음주 시작연령은 2012년 12.8세로 2011년도 13.0세보다 0.2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2〉 청소년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연령

(단위 : %, 세)

구 분		음주 경험률	처음 음주 연령
2010년		54.8	12.8
2011년		51.0	13.0
2012년		47.0	12.8
성 별	남 성	51.0	12.7
	여 성	42.6	12.9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교육부, 보건복지부(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나.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 (1)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2005년 WHO는 회원국에 음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회원국에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은 2006년 12월 연방의회에서 “청소년음주예방법” 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흡연·음주 환경 규제내용이 각 개별법에 분산적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청소년 흡연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 증진법에, 음주는 주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주류소매(면허)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달리 면허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류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을 위한 기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류·담배의 청소년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시행(2012년 9월 16일)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유통업체와 연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약물(주류·담배)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을 공동 전개하는 등 지역, 판매업자들의 자율적 정화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유통업체 종사자를 위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동영상)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 대상 담배·주류 판매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모니터링과 종사자 교육을 재 실시하여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 (2) 청소년 흡연예방 대책 추진

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도 청소년 흡연율이 26.3%에서 2012년 24.6%로 1.7%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중독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흡연을 자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흡연은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라디오, SNS,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흡연을 시작하여 이에 중독된 이후에는 금연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이를 끊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육 시설 등 유아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놀이형 교육교구를 배포하고 조기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 부처	대책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방의료기관을 통한 청소년 건강상담 및 무료금연침 시술 사업 지원</li> <li>• 상습 음주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흡연예방 교육</li> <li>• 청소년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및 유통업자 종사자 교육</li> <li>• 유통업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캠페인 전개</li> <li>• 조기 흡연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li> <li>•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홍보</li> <li>•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2013~2015)</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운영</li> <li>• 보건소 금연상담 및 금연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연교실, 금연지도자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등</li> </ul> </li> <li>• 매스미디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매체, 인터넷, 금연월간지, 스티커 등</li> </ul> </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 실태에 대한 주기적 파악</li> <li>•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흡연·음주예방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연학교 운영</li> </ul> </li> <li>•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유해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 보완</li> </ul> </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사업법 제정 운영</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li> </ul>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판매 업소 특별계도 및 단속</li> </ul>

자료 : 여성가족부(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3) 청소년 음주예방 대책 추진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한국 특유의 관대한 음주문화의 영향 등으로 사회전반에서 음주로 인한 수조원 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건강한 성장 발달권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명절을 전후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등의 잘못된 전통적 음주문화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홍보대사인 최불암씨와 청소년 음주예방 ‘긴전한 명절문화 만들기’ 캠페인(2013.2.1~2.12)을 라디오 광고를 통하여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수능 백일주 근절

캠페인', '하계 해수욕장 음주예방 캠페인', '청소년 음주예방 웹툰 제작', '청소년 음주예방 신문 광고' 등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연중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의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음주경험률은 2010년 54.8%, 2011년 51.0%, 2012년 47.0%로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 부처	대책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 음주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음주예방 교육</li> <li>• 청소년대상 음주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및 유통업자 종사자 교육</li> <li>• 유통업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캠페인 전개</li> <li>• 조기 음주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li> <li>• 청소년대상 음주예방 홍보</li> <li>•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2013~2015)</li> <li>• 공공장소 음주행위 계도</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폐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민의식 제고</li> <li>• 생애집단별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과 비행 청소년, 또래 지도자와 교사, 주류 판매업자 대상 교육</li> </ul> </li> <li>•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조기발견과 음주 폐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중학생과 초등학교까지 적용</li> </ul> </li> <li>• 주류 판매자의 자정노력 강화(클린판매점 선정 및 운영)</li> <li>• 절주 상담실 운영</li> <li>•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음주율 증가 및 저연령화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학생의 체계적 음주 예방교육(정규수업, 학교장 재량시간 활용)</li> <li>- 학생 음주예방 교육을 위한 지도능력 배양과 인식제고</li> <li>-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li> </ul> </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소년원)들의 음주율 증가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갱생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음주예방 교육 반영</li> </ul> </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관람가 영화속의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 보완</li> </ul> </li> </ul>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관련 범죄 수사 시 "피의자 원표"에 음주여부 조사항목 신설</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li> </ul>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판매 업소 특별계도 단속</li> </ul>

자료 : 여성가족부(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2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다양한 유흥문화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2-5〉 청소년유해업소의 수

(단위 : 개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60,386	789,468	796,113	803,114	810,816	849,723

자료 : 안전행정부(2013).

더구나 도시지역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생애 이용률은 노래방 90.2%, PC방 85.8%, 전자오락실 60.0%, 만화방 29.9%, 멀티방/룸카페 24.4%, 주점 13.8%에 달한다.

특히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되고 있고, 주거지역 인근에도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유해환경격리 구획화 등을 통해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있다.

즉, 기존 시가지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주거지, 학교, 학원 등이 혼재되어 입지하면서 청소년에게 교육적·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인 '레드 존(RED ZONE)'을 설정하였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37곳, 통행제한구역 21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 시 청소년유해환경격리·구획화 추진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08~2012년)에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사업의 시범도입(국토해양부)을 적극 추진하여 2010년 화성·동탄 2신도시 실시계획에 중심상업용지 등과 같이 위락시설, 숙박시설, 청소년유해업소 건축을 허용하는 4개 구역에는 RED ZONE을 지정, 격리·구획화하도록 반영하고 시범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를 통하여 추후 신도시 개발 시에도

청소년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사업을 적극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6-2-6〉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무도 학원	무도 장	이 용 업	숙 박 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 제공업계				기타
											게임 제공업	청소년 게임장	일반 게임장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849,723	29,925	14,551	596,544	86,880	1,127	80	27,631	29,459	35,579	1,077	22,180	2,731	1,293	587	79

주 : 1)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기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2) 고용금지업소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 숙박업, 게임제공업을 지칭(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숙박업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자료 : 안전행정부(2013.6).

## 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 (1) 청소년보호법 점검·단속 실적

학교보건법상 절대·상대 정화구역의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거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들이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을 퇴폐향락으로 이끌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0년 8,154건이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2012년에는 72.6% 증가한 14,06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중 46명을 구속하고, 10,699명을 행정처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 11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의 불건전서비스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2011년 7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한관람가비디오물 소극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업소’로,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었다.

〈표 6-2-7〉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연 도	총 계	위 반 내 용				조 치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약물 등 판매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유해 매체물	구 속	불구속	행정처분
2010	8,154	1,351	5,882	479	442	10	8,144	7,281
2011	9,575	1,690	6,337	509	1,039	6	9,569	7,891
2012	14,067	1,414	11,158	625	870	46	14,021	10,699

자료 : 경찰청(2012).

## 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최근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화상채팅방, 키스방, 마사지 업소 등 신·변종 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단속 및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신도시 개발계획 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 업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보호의식을 제고하고 기존 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270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각종 유해한 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2년 12월말 기준 총 58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표 6-2-8〉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구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계	58	38	20
	서울	10	6	4
	부산	4	2	2
	대구	1	1	-
	인천	2	1	1
	광주	2	1	1
	대전	2	2	-
	울산	-	-	-
	경기	9	7	2
	강원	7	7	-
	충북	1	1	-
	충남	2	2	-
	전북	9	4	5
	전남	1	-	1
	경북	5	3	2
	경남	3	1	2
	제주	-	-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2) 청소년유해업소 격리 구획화

여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하여, 신도시 계획 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주거지 및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청소년유해업소를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특정용도 제한구역을 설치하며, 도시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모델을 제시하고, 주거지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구획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10년 6월 29일 화성·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에 청소년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되었다.

### (3) 학교주변의 환경개선

교육부는 각급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흥업소·숙박업소(일명 러브호텔)·각종게임장·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 등 각종 유해업소가 청소년비행과 학교주변 폭력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교육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질서의 확립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운영 현황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는 학교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이며, 이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 절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 정화구역 안에서는 유해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 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에 의한 이전·폐쇄 대상 업소는 정화구역을 현행과 같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구분한 제3차 개정(1981년 10월 8일)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이다. 이후 동시행령의 제4차(1990년 12월), 제6차(1993년 9월), 제12차(1998년 1월) 및 제14차(1999년 5월) 개정 시 새로이 추가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폐쇄토록 규정한 바 있다. 2007년 8월 3일 학교보건법이 법률 제8578호로 개정되어 정화구역안에서 게임물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2008년 8월 이후부터 학교 앞에 설치된 미니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6-2-9〉 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계	유흥 단란 주점	숙박 업소	당구장	멀티 게임장 (pc방)	게임 제공업	만화 가게	무도 학원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전 화 방	성기구 취급소	미니 게임기	담배 자판기	복합 유통 시설
서울	8,573	1,995	1,389	1,738	949	58	37	37	2,223	88	11	9	6	4	29
부산	4,024	1,828	807	439	84	28	18	22	767	13	3	2	3	0	10
대구	1,784	402	324	208	123	44	5	42	622	13	0	0	0	0	1
인천	2,123	595	375	472	109	17	3	13	523	6	3	2	3	0	2
광주	988	131	89	210	148	18	0	1	382	3	0	3	0	0	3
대전	988	99	159	189	126	20	0	5	376	6	0	0	0	0	8
울산	1,037	414	171	193	4	15	18	25	194	2	0	0	0	0	1
경기	6,930	1,784	753	1,551	571	175	112	54	1,863	33	9	3	3	4	15
강원	1,531	539	422	162	91	31	10	2	270	4	0	0	0	0	0
충북	1,290	338	301	230	67	8	11	8	316	6	0	3	0	0	2
충남	1,630	407	401	267	139	29	3	9	362	7	0	0	3	0	3
전북	1,604	418	192	294	203	74	68	12	331	8	0	0	0	0	4
전남	2,197	812	347	367	225	59	6	11	364	4	0	0	0	0	2
경북	2,236	734	501	318	108	45	7	15	468	37	0	0	1	1	1
경남	3,151	1,114	527	366	245	160	43	20	662	8	0	0	0	0	6
제주	940	557	174	66	22	2	2	23	91	3	0	0	0	0	0
계	41,026	12,167	6,932	7,070	3,214	783	343	299	9,814	241	26	22	19	9	87

주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업소와 불법업소를 합한 현황임.

자료 : 교육부(2012).

### ③ 문제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장이 설정하지만 건축허가·영업허와 유해시설의 방지 및 철거 명령은 시·군·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 교육청의 정화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담장 옆이 쓰레기하치장 또는 불법 주차장화 되는 경우가 많아 비위생적이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의 불법·선정적인 광고물 등은 학생생활지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운영을 시작으로 민간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 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보급되었다.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13년 7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70개의 감시단(총 17,591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6-2-1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단위 : 개, 명)

시·도	합 계		시 민 단 체		학 교 감 시 단	
	단체수	단원수	단체수	단원수	학교수	단원수
서울	55	6,486	3	5,803	52	683
부산	19	972	17	936	2	36
대구	8	344	8	344	-	-
인천	9	610	9	610	-	-
광주	9	378	9	378	-	-
대전	5	1,017	5	1,017	-	-
울산	8	531	8	531	-	-
세종	2	81	2	81	-	-
경기	69	3,772	69	3,772	-	-
강원	12	575	11	561	1	14
충북	5	172	5	172	-	-
충남	18	1,167	14	1,104	4	63
전북	9	407	9	407	3	31
전남	13	409	10	378	6	67
경북	9	190	3	123	-	-
경남	15	300	15	300	-	-
제주	5	179	5	179	-	-
합계	270	17,591	202	16,696	68	894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주로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계도하거나 자체 감시활동을 통해 해당 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각종 캠페인 전개 등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단위 감시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단 지정 및 철회 등 지역상황에 맞게 감시단을 운영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간 결속력 강화, 우수 사례 등 정보교류 확대 그리고 감시단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 향상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광역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감시단원의 청소년 보호정책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시단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광역별로 31명을 선발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제3장

##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고발조치·심의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의 경계 붕괴, 모바일 화상통신, UCC, 스마트폰 등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시의적, 실효적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 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가. 법·제도개선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통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체환경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로부터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곧 국가지속발전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보호·교육 지원 등의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와 인터넷 중독 등 매체역기능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에서 효율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매체 등급분류제도가 시청가능 연령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가정 내 시청지도를 위한 직접적인 활용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체물 내용표시제(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숫자나 부호 등을 이용하여 표시) 도입을 추진하여 디지털, 다매체 시대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들의 적절한 매체물 선택 및 이용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여과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아이핀·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내용이 본인 확인 전에는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 나. 매체물 심의기구 현황

우리나라의 매체물 심의기구는 각 정부기관 산하의 유관기관 및 매체별로 분리되어있는 다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 및 등급분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심의기구가 심의를 요청한 콘텐츠나 심의없이 유통되는 콘텐츠의 등급부여, 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령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연령등급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문화관련 3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등급 분류제도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심의 및 등급분류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기관의 법적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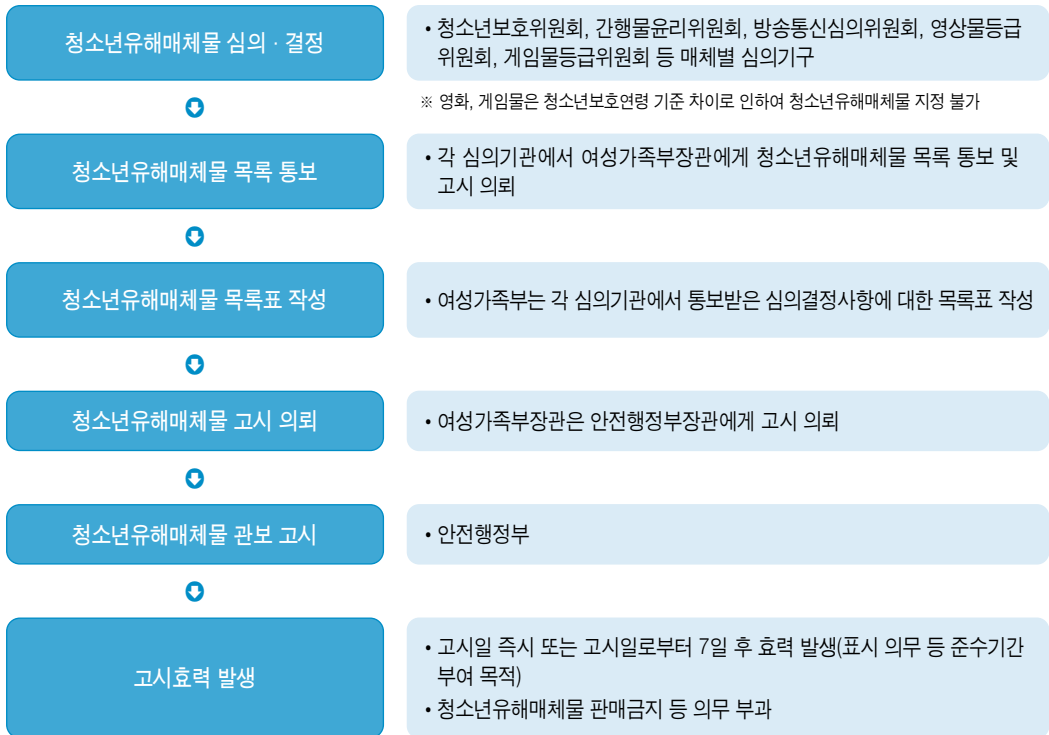
〈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심의기구	담당 매체	소관부처·법률	심의형태
청소년보호위원회	모든 매체물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법	사후심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출판법	사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CD	문화체육관광부/영화비디오법	사전등급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법	사전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	사후심의
	방송 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사전자율/사후심의병행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9조의 심의기준 등에 따라 소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에서 제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종합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 고시를 의뢰하고 있다.

[그림 6-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2).

〈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2012.12.31.기준 / 단위 : 건)

연 도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등급 위원회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	
	도서	정기 간행 물	만화 단행 집	만화 잡지	광고	전자 출판	영화	비디 오물	게임물	음반	뮤직 비디 오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영화	드라마	다 큐	만화	음악	기타	PC 통신	전기 통신			
97	59	105	1,994	29	11	12	102	444	0	0	0	1,699	0	1	19	9	8	607	0	5,100		
98	173	416	1,140	52	0	49	151	762	0	0	0	916	30	12	52	14	0	755	0	4,522		
99	304	388	1,501	14	1	16	71	428	0	4	0	280	2	5	2	0	4	61	36	3,118		
00	366	699	1,227	0	0	0	(197)	(998)	0	(460)	0	158	0	9	4	0	67	53	41	2,625 (1,655)		
01	289	983	1,387	1	0	0	(143)	(1,083)	(520)	(1,112)	0	655	58	5	99	451	975	7	407	5,317 (2,858)		
02	259	1,098	1,492	8	0	3	(86)	(1,454)	(896)	(800)	0	1,432	33	1	114	19	202	435	851	5,947 (3,236)		
03	611	1,220	1,802	131	0	256	(59)	(1,462)	(936)	(536)	0	2,768	145	0	3	510	284	0	3,537	11,267 (2,993)		
04	371	528	1,810	269	2	602	(89)	(2,746)	(1,547)	(258)	0	269	67	2	0	0	0	0	7,657	11,578 (4,640)		
05	334	318	1,464	199	0	817	(69)	(2,936)	(1,734)	(127)	0	1,304	237	0	15	2	179	0	17,131	22,001 (4,866)		
06	365	339	1,424	78	0	740	(92)	(2,355)	(861)	4	0	3,001	207	0	29	3	480	0	19,475	26,145 (3,308)		
07	414	377	1,867	46	0	776	(178)	(2,904)	(304)	344	0	6,506	190	0	151	1	840	0	15,314	26,826 (3,386)		
08	497	280	2,059	53	0	758	(139)	(2,085)	(477)	651	0	1,041	1,059	0	142	0	609	0	1,198	8,348 (2,701)		
09	809	223	1,756	229		658		(1,960)	(577)	941	0	3,119	2,094	0	533	0	1,835	0	229	12,427 (2,537)		
10	822	253	2,067	189		1,131		(3,662)	(582)	991	0	1,041	902	0	459	0	969	0	281	9,106 (4,244)		
11	858	427	2,810	16		1,102		(4,132)	(581)	672	171	2,327	2,316	0	461	0	5,524	0	386	17,200 (4,713)		
12	804	421	2,881	0	0	1,112	0	(3,682)	(759)	1,049	101	1,959	9,783	0	555	0	4,485	0	526	16,207 (4,441)		
계	7,335	8,075	28,681	1,314	14	8,032	324 (1,052)	1,634 (31,459)	0 (9,774)	4,656 (3,293)	272	28,475	9,783	35	2,638	1,009	16,461	1,918	67,067	187,734 (45,578)		
총합	53,451						1,958 (32,511)		0 (9,774)		4,656 (3,293)		272		58,401					68,985		187,734 (45,578)

주 : 1) 인터넷의 2007, 2008 대비 고시건수의 편차는 과거 모바일 사진, 화보집 이미지 등을 개별(매수) 심의 하던 것을 사이트 기준으로 심의를 변경함.

2) 영화, 비디오물 등 통계중 ( )안 숫자는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물' 숫자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아 현황 총계에 미포함. 청소년보호법 <만 19세>과 타법<만 18세>과 연령 차이로 고시 불가에 기인.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다.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음반 심의제도는 그 근거가 되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6년 11월) 되면서 주로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심의임을 고려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업무를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음반·음악파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 유통 차단 등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25,000여 곡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음반심의 이후(2006년 11월 이후) 2012년까지 유해결정 곡은 총 4,754곡(국내 1,930곡, 외국 2,824곡)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2년 10월 기존의 모든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해 새로운 심의세칙에 따라 재검토하여 총 3,952곡 중 308곡을 취소 결정하여 음반심의 기준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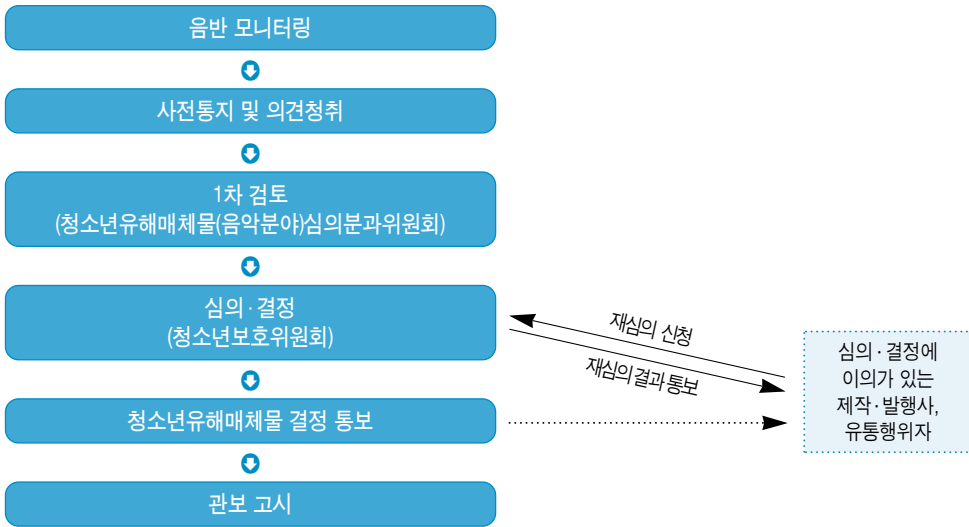
〈표 6-3-3〉 청소년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단위: 권)

구분	총계	2006년 11~12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754	4	344	651	941	991	673	1,150
국내곡	1,930	2	151	228	445	427	254	423
외국곡	2,824	2	193	423	496	564	419	727

자료: 여성가족부(2012).

[그림 6-3-2] 청소년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 제 4 장

##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학업성적·사회성 저하, 가정불화, 건강 악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가. 인터넷 중독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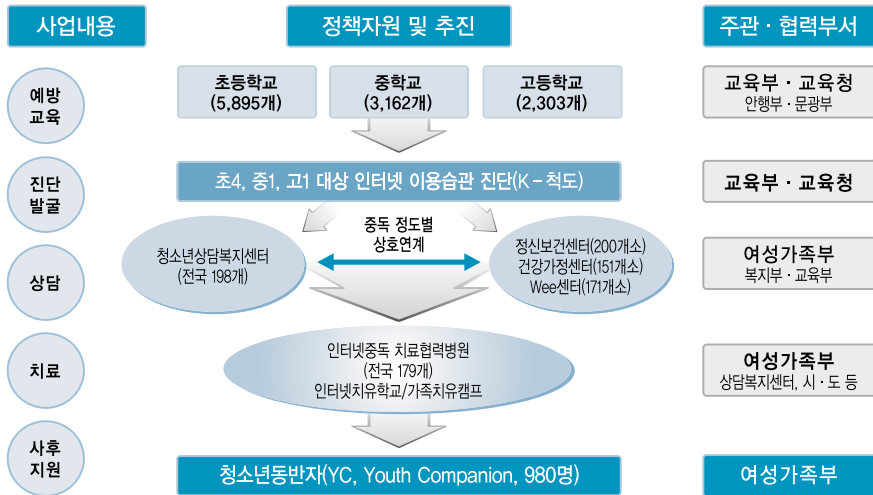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매체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의 주요한 분야로서, 이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잠재적인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2013년 현재, 전국 19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해 전국 200개소의 정신보건센터 및 179개 치료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료 기반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허브로 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 지역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자체, 교육청,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협력망을 통하여 지역 내의 인터넷 중독 대응 기관간 연계·협력은 물론, 지역 내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조기 진단 발굴 및 상담·치료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및 상담실적은 위기청소년안전망(CYS-Net) 시스템에 연계하여 지역별 중독해소 서비스지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림 6-4-1] 여성가족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 나. 인터넷 중독 치료-재활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와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재활기반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적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프로파일 연구와 중독 청소년에 대한 장·단기적 서비스의 총괄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05년부터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기반 조성 및 임상적 치료-재활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년도인 2005년에는 서울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4대 권역에 각각 4개의 중심센터(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대병원, 중앙대병원) 및 협력병원 8개소를 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층적 개인 심리치료, 입원치료 및 가족치료, 공존질환치료, 집단치료모델을 개발하였다.

2006년에는 이 사업에서 개발된 치료모델을 수정 및 보완하여 매뉴얼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협력병원의 전문의들에게 인터넷 중독 치료 모델을 교육시키는 등 치료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지역에 국한되었던 치료협력병원을 전국 64개 병원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대상 청소년들에게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7년에는 지역협력망 내에서 상담과 치료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전국 16개 시·도 96개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을 확대하고,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치료모델을 국제적으로 공유한 바 있다.

## 다. 학령전환기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실시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통한 예방·중독 해소 강화에 초점을 두고, 2009년부터 학령전환기 청소년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전수조사는 2009년 초등 4학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125만 명, 2011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186만 명, 2012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180만 명, 2013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1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3년 전수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매년 실시할 예정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학령기간 동안 최소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점검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조기 진단하여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라. 인터넷 중독 위험단계별 상담·치료 지원

### (1) 위험단계별 맞춤형 상담·치료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단계별로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통한 1차 선별결과를 근거로 지역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험군에 대한 공존질환 등 추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에게는 개인상담 및 병원치료 연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만원 이내 치료비 지원, 일반계층 30만원 이내)등을 지원하며, 잠재위험군 대상의 중독 낙인효과 예방을 위해 일반사용군과 통합하여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2) 인터넷 중독 치유평화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치료 이외에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 문화, 포레경험, 토론, 가족들과의 대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상담 및 치료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주 과정의 “기숙형 치료 학교” 과정을 운영하였는데,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2주간의 합숙을 통해 인터넷과 단절한 채 자아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치료학교 종료 후에도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를 1:1로 연계하여 치료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 상담과 생활점검을 통한 도움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기숙형 치료학교인 “인터넷치유학교”는 해마다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매년 그 운영을 확대하여 2009년에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실시하였고, 2010년 전국에서 7회, 2011년 8회를 운영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4회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족들의 이해와 협력이 치료·재활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기캠프인 “가족치유캠프”를 2006년부터 실시하였는데 특히 부모들이 적극 참여하여, 캠프 이후에도 정기적 모임을 갖는 등 인터넷 중독 치료의 긍정적인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유평화 프로그램은 평균 60%를 넘는 치유효과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일선현장 및 학부모들의 높은 지지와 인지도로 2012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대·운영하고 있다.

## 마.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성 및 대응 강화

### (1) 인터넷 중독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신규배치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및 온라인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06년 상반기에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6년 200여명의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급증한 인터넷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동반자, 학교상담사 등 총 30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치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전문화를 기하였다.

2008년부터는 매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사, 정신보건센터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전문가 과정을 신규 및 심화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실시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2008년 478명, 2009년 472명, 2010년 502명, 2011년 457명, 2012년 417명의 상담인력을 양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500명의 상담인력을 양성하였다.

특히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서비스 지연을 해소하고 적기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유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3년에는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32명을 신규로 전국 17개 시·도 상담복지센터에 배치하였다.

### (2)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상담 실시

청소년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 면접 상담(9~18시)을 원하는 경우 전국 19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인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상담에 대한 거리감을 허물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에 접속하면 사이버상담(24시간)을 통해 비밀상담, 채팅상담을 받을 수 있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번호에 #1388을 누르면 24시간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바. 인터넷(게임)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보호법 개정(2011년 5월 19일 개정)에 따라 인터넷(게임)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피해 청소년은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피해 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진단,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상담, 피해 해소 등을 위한 다양 프로그램 개발, 치료·재활 지원을 위한 협력병원 지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사.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대응 강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 치료 매뉴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014년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치료 협력병원 등에 배포하여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대상 상담, 치료 및 부모교육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가. 제도 도입 배경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2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들 중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비율은 1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들 10명 중 1명 정도가 인터넷중독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의 인터넷 주 이용 목적은 온라인게임(59.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터넷게임중독은 학습시간을 침해하고 수면부족을 야기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약화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셋다운제')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권장하는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수면권, 건강권)를 실현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나. 제도 추진 현황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의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6시)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2011년 5월 19일 개정, 2011년 11월 20일 시행).

이 제도는 PC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청소년들에 대한 보급률이 낮은 기기를 통해 진행되는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다. 또한, 법 규정에 의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여부를 매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13년 2월에는 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를 개선 고시하였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법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매체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규범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세계에서의 행동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바, 업계자율정화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시스템의 구축

업계의 자율정화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청소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모니터링, 감독 등 내부정화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정화시스템은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약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보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자율의지의 실현이다. 또한, 범위반 행위 예방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차단과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이버윤리지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이버 세상을 한층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나. 사이버윤리지수평가 실시

사이버윤리지수평가의 실시는 국가기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가 사이버 상에서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사이버윤리지수를 이용한 사업자의 윤리수준의 측정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유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P2P사이트, UCC사이트 등 광범위한 참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매체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이다.

사이버윤리지수는 2006년 6월 개발된 구성방법을 근간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한 이용자평가지표로 측정된다. 2010년에는 평가대상을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의무업체’로 확대하여 총 6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 의무업체인 포털·게임·동영상·파일공유·스포츠지 사이트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과 2013년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이트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 다.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터넷사업자 및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율정화 의지를 제고하고자 2007년부터 인터넷·게임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각 사업체에서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보호법 해설, 유해매체물의 심의 절차 기준, 고시제도 등의 강의를 청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보호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분야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였다.

## 라. 사업자의 자율정화 지원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이어서 사이버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업자의 협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게임업계의 자율규약선언, 이동통신사의 성인서비스 중단 등의 청소년보호정책이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인터넷신문 업계는 청소년 유해성광고를 자율심의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자율정화 활동은 앞으로도 법이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02-2075-8683/8686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2-2250-3190



## 제 5 장

#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 1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재범방지교육)

#### 가. 성매매 대상청소년 현황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 및 업주 등을 검거하였으며, 대상청소년은 검찰에 송치하였다.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 이수제도를 도입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2006년 6월 30일)에 따라 동 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성매매 대상청소년 전원을 입건하도록 한 대검찰청 수사지침에 따라 2006년에 비해 2007년 대상 청소년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청소년 성매매 단속이 저조함에 따라 성매매 대상 청소년 숫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계가 여성계와 청소년계로 분리되면서 검거인원 추출방식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수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표 6-5-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단위 : 건, 명)

연 도 별	검거인원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구 속	불 구 속
2006	1,745	149	1,596
2007	2,582	126	2,456
2008	2,112	81	2,031
2009	2,182	125	2,057
2010	1,345	56	1,289
2011	2,006	41	1,965
2012	4,457	124	4,333

자료 : 경찰청 내부통계자료(2013).

## 나. 성매매 대상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검사가 성매매 대상청소년에게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에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 중이며, 법적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성매매 대상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 지원에 두고 있다. 운영 대상은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상담과정 이수결정이 통보되거나 경찰에서 발견 사실이 통보된 대상청소년, 성매매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 관련시설에서 추천한 성매매피해청소년 및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성매매 피해 노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5박 6일 동안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 활동, 진로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의료·법률·학업·자립·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3년 현재 1개의 중앙센터 및 10개의 권역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표 6-5-2〉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	운영기관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의 교육상담수강 결정 통보자</li> <li>경찰의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이버또래상담실(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인천성산사랑의집(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춘천길잡이의집(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대전광역시 여자청소년 쉼터(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광주YWCA(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전북여성인권센터(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대구여성회(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ul>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 장애를 가진 성매매 대상청소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화의 샘(평화위기청소년센터)</li> </ul>
중앙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여성인권진흥원</li> </ul>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3).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서비스 목표는 청소년들이 ‘미래 가능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발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진로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탈성매매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미래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40시간 교육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사전준비, 심리검사(MMPI), 관계형성프로그램(나를 소개합니다, 만남프로그램, 행복쿠키, Let's go, 소개 및 관계형성), 치유 및 치료프로그램(심리치료, 동작치료, 푸드아트 세라피, 역할치료), 성주체성향상1(성교육, 치료프로그램, 자존감향상프로그램(개인브랜드 가치, 칭찬프로그램)), 성주체성향상2(섹슈얼리티(섹슈얼리티 알기), 성교육(성주체성), 관계형성2(비즈리본공예, 가출이데아, 영화속 나 만나기, 너를 보여줘, 문화체험활동)), 사회통합1(자원봉사), 탈성매매(백분토론, 성매매바로알기), 사회통합2(미래꿈길 찾기, 직업체험, 미래설계,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5-3〉 교육프로그램 구성

분 야	프 로 그 램	진행시간
심리진단	다면적 인성검사(MMPI), 문장완성검사	3
치유 및 치료	동작치료, 미술치료, 푸드아트테라피, 댄스테라피, 건강검진 등	6
자존감 향상	개인브랜드가치 높이기, 여성인사만나기 등	3
성주체성향상	Sexuality 점검하기, 성교육 등	6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대학방문, 진로탐색, 직업탐색, 법교육, 인권교육, 경제교육 등	9
탈성매매	탈성매매여성과의 만남, 성매매 바로알기 등	5
관계형성	레크레이션, 영화관람, 노래방이용, 쿠키만들기 등	6
기 타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등	2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3).

〈표 6-5-4〉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중앙센터	40시간 교육									지적장애	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2006	24	-	20	10	26	-	-	-	-	-	14	94
2007	108	5	58	62	47	-	-	-	-	-	25	305
2008	-	45	47	45	43	-	-	-	-	-	25	205
2009	-	44	43	36	39	34	42	-	-	-	17	255
2010	-	52	60	40	48	29	46	50	18	-	29	372
2011	-	51	46	33	33	31	43	50	22	24	22	355
2012	-	34	45	43	42	31	41	48	24	31	25	364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통계자료(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02-3460-5193



## 2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 가.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목적과 의의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의 성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 개정·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2월 4일에 다시 법을 개정·시행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열람에서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관리 되고 있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이내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미국은 1994년 제이콥웨터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을 만들어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 메간법(The Megan's Act)을 만들어 열람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에 아담월쉬 아동보호 및 안전법(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하여, 일반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내 성폭력전과자들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주별로 운영되던 등록·열람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드루 소딘 국가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를 만들어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 성범죄의 종류는 ① 강간, ② 강제추행,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④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⑥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⑦ 알선영업행위,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카메라이용 촬영 등이 해당된다. 등록대상이 되는 위반법률은 상기의

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4호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 다. 신상정보 등록 내용 및 절차

법원은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등록정보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등록대상자임과 등록정보를 제출하라는 고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하는 신상정보는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⑦ 사진(관할 경찰서, 교정시설 등에서 직접촬영)이다. 주소나 직장, 소유 차량 등이 바뀐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바뀐 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사진은 1년 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6개월에 1회 등록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는 관할경찰서 및 교정시설에서 확인 후 법무부에 보내진다. 법무부는 각 경찰서와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자를 등록대상자에게 통보해 준다. 법무부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고(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서 제외된다), 등록기간이 지난 신상정보는 즉시 폐기하며,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법무부는 등록정보를 지역주민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 라. 신상정보 공개제도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은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 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는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기간은 징역·금고 3년 초과인 경우 10년, 징역·금고 3년 이하인 경우 5년이다.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된다. 공개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되며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마.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2011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고지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정보를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 주민,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 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고지기간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이며, 고지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를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고지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의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의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실제주소지 읍·면·동 행정구역에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정보서 1부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 사. 신상정보 등록·공개대상자 현황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완료된 자는 201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12,652명이고, 공개명령이 선고되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3,786명이다.

###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6.6.30 시행)에 따라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쉼터·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2008.2.4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체육시설, 2010.1.1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4.15에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8.2에는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가정방문 학습지도사, 2013.6.19에는 경비업법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활동기획업소·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최초 도입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간이 5년이었으나 2008년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대상 성범죄까지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취업중인 자 포함)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는 조회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 장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제한자가 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 해임을 하여야 하며, 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폐쇄를 요구받은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해당된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9,183명을 실시하였고, 2012년도에는 7,000명을 실시하였다.

## 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립목적 및 의의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에 2007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의 성교육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Education’ 과 ‘Entertainment’ 개념을 혼합한 ‘Edutainment’ 라는 신개념의 성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Sexuality’ 를 재미와 감동이 함께 하는 놀이터로 이미지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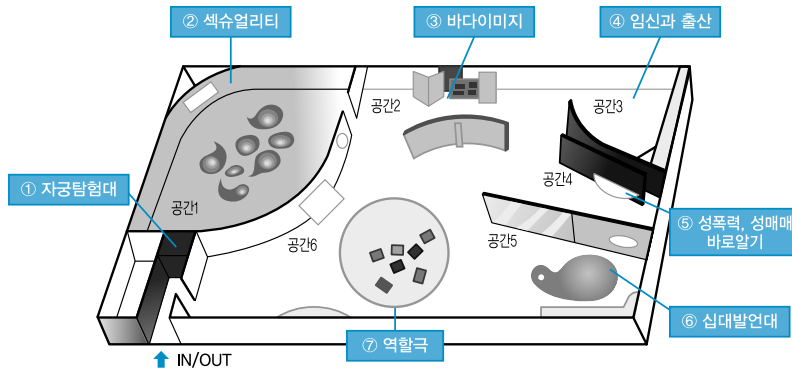
## 나. 추진배경 및 경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결여됨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멀티미디어와 다양한 설치물을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이 실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교육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 성문화분과위원회가 전국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 시행을 여성가족부에 건의(2006년 7월)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여성가족부 소관 정부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2007년 4월 민간성교육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추진단에 의해 표준 콘텐츠 및 운영매뉴얼이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콘텐츠를 갖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6-5-1]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시설 배치도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1년에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 콘텐츠를 탑재하여 농·산·어촌 등에 찾아가는 성교육이 가능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2012년 2개소, 2013년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역별 교육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동형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은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재조명 및 대안 마련,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관련 정보 제공, 성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의 중추적인 성교육 센터로서의 인프라 구축 등이다.

사업내용은 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 실시(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전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성 비행 및 성범죄 예방, 인형극을 이용한 성교육 실시 등)와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유치원, 각급학교 및 청소년수련 시설 등 출장 성교육 실시, 청소년성교육 캠프 등 특별기획사업 추진 등), 그리고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성교육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청소년성문화동아리 지원 및 자원 활동가 조직·관리) 등이다.

## 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1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11월 현재 이동형 3개소를 포함하여 44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단계적 확대 추진중이다.

〈표 6-5-5〉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7	3	2	2	1	2	1	5	3	2	1	4	3	4	2	2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상반기).

〈표 6-5-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

시·도	기관명(44개소)
서울(7)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광진구),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송파구), 탁틴청소년성문화센터(서대문구), 아해청소년성문화센터(영등포구),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도봉구), 하림이청소년성문화센터(성북구),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강남구)
부산(3)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사상구),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동래구),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인천(2)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부평구)
대전(1)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중구)
대구(2)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달서구), 대구아름 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광주(2)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북구), 광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광산구)
울산(1)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경기(5)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 와~(안산시),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딸콩달콩' (파주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시) 경기남부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소행성', 경기북부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3)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강릉시),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원주시)
충북(2)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주호암청소년성문화센터(충주시)
충남(1)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시)
전북(4)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전주시), 군산청소년성문화센터(군산시), 정읍청소년성문화센터(정읍시), 익산청소년성문화센터(익산시)

시·도	기 관 명(44개소)
전남(3)	목포청소년성문화센터(목포시), 여수청소년성문화센터(여수시),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완도군)
경북(4)	경북청소년성문화센터(김천시), 새들청소년성문화센터(포항시), 경북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안동시), 경북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남(2)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사천시), 창원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제주(2)	서귀포청소년성문화센터(서귀포시),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제주시)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제7부 요약

2012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9,596천명이며, 1980년 14,401천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도 감소세를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은 과거보다 훨씬 늘어나, 대학생 인구는 199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인구 또한 199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매우 우수한 편이어서,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가 주관하는 TIMSS 2011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참가국 50개국 가운데 수학 2위, 과학 1위를 차지하였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참가국 42개국 중에서 수학 1위, 과학 3위를 차지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집단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1,801개 학교 72,881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143개 교육지원청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방과후학교는 2012년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토요일 교실을 확대·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농산어촌 교육정책은 농산어촌 전원학교와 연중돌봄학교를 육성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은 2008년 수립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에 대한 이해제고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밖에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 제7부 청소년의 교육

---

제1장 학교교육 현황

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제3장 교육복지정책

##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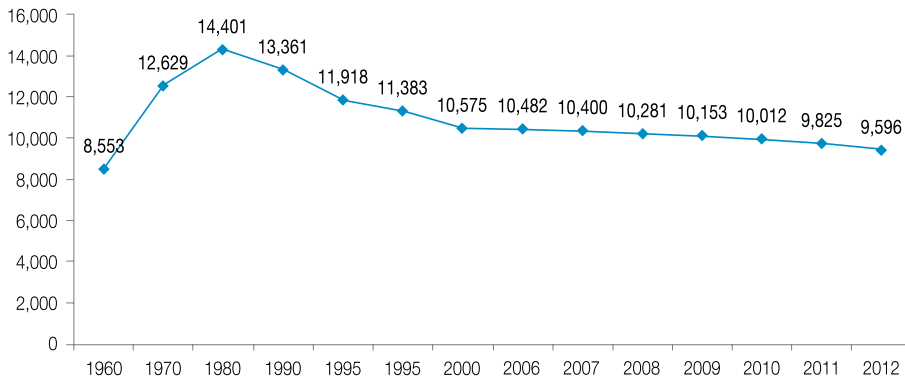
# 학교교육 현황

### 1 학령인구

2012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9,596천 명이며, 1980년 14,401천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학령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11세(초등학교)가 2,923천 명, 12~14세(중학교)가 1,859천 명, 15~17세(고등학교)가 2,019천 명, 18~21세(대학)는 2,795천 명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교 학령인구는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림 7-1-1] 학령인구

(단위 : 천명)



주 : 6~21세 기준.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표 7-1-1〉 학령인구

(단위 : 천명)

연도	계 (6~21세)			학 교 급 별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60	8,552	4,398	4,154	3,629	1,874	1,755	1,566	803	763	1,417	747	669	1,941	974	967
1970	12,604	6,523	6,081	5,711	2,962	2,749	2,574	1,334	1,240	2,101	1,087	1,015	2,218	1,140	1,078
1980	14,401	7,460	6,941	5,499	2,853	2,646	2,599	1,344	1,255	2,671	1,385	1,285	3,632	1,878	1,754
1990	13,361	6,899	6,462	4,786	2,475	2,311	2,317	1,198	1,120	2,595	1,338	1,257	3,663	1,889	1,775
1995	11,918	6,174	5,744	3,901	2,039	1,863	2,443	1,261	1,182	2,349	1,212	1,138	3,225	1,663	1,562
2000	11,383	5,960	5,423	4,073	2,169	1,903	1,869	981	889	2,166	1,126	1,040	3,275	1,683	1,591
2005	10,575	5,561	5,014	4,016	2,119	1,897	2,058	1,093	965	1,864	983	881	2,637	1,367	1,270
2006	10,482	5,522	4,959	3,919	2,061	1,858	2,097	1,116	981	1,918	1,016	901	2,548	1,329	1,219
2007	10,400	5,484	4,916	3,798	1,990	1,808	2,097	1,117	980	1,990	1,056	934	2,515	1,322	1,193
2008	10,281	5,422	4,858	3,627	1,897	1,730	2,072	1,100	972	2,056	1,091	965	2,526	1,334	1,192
2009	10,153	5,352	4,800	3,442	1,798	1,644	2,031	1,072	959	2,091	1,111	979	2,589	1,371	1,218
2010	10,012	5,276	4,736	3,276	1,710	1,567	1,974	1,037	938	2,090	2,090	1,111	2,672	1,418	1,254
2011	9,825	5,173	4,652	3,098	1,613	1,485	1,913	1,002	911	2,064	1,095	969	2,750	1,463	1,287
2012	9,596	5,044	4,551	2,923	1,517	1,406	1,859	974	885	2,019	1,065	954	2,795	1,488	16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 2

## 학생인구 및 학교 수

2012년 현재 학교급별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951,995명, 중학생은 1,849,094명, 고등학생은 1,920,087명이다.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2000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다 2006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일반계열 고등학생은 2005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전문계열 고등학생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 현재 4년제 일반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수는 2,103,958명이며, 교육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18,789명, 전문대학 재학생은 769,888명이다. 증가 추이를 보면 고등교육 재학생 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 대학생 인구는 1980년에 비해 5배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 비해

서는 약 2배나 증가하였다. 대학원생 인구는 1980년 33,939명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86,911명, 2000년 229,437명, 2011년 329,933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 처음으로 329,544명으로 전년대비 389명 감소하였다. 향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인구의 감소 추세를 볼 때, 고등 교육 인구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표 7-1-2〉 학교급별 학생수

(단위 : 명)

구분	성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열			전문계열		대 학	대학원	교육 대학	전문 대학	특수 학교
				일반·일반계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문계고					
1980	계	5,658,002	2,471,997	932,605			764,187		402,979	33,939	9,425	165,051	8,904
	여	2,745,382	1,161,351	400,316			322,078		90,534	5,786	7,723	39,883	3,391
1990	계	4,868,520	2,275,751	1,473,155			810,651		1,040,166	86,911	15,960	323,825	19,971
	여	2,362,050	1,103,222	645,092			428,087		296,129	19,560	10,290	119,345	7,743
1995	계	3,905,163	2,481,848	1,246,427			911,453		1,187,735	112,728	19,650	569,820	21,607
	여	1,869,239	1,203,668	557,899			480,697		378,418	31,675	14,687	214,310	8,003
2000	계	4,019,991	1,860,539	1,324,482			746,986		1,665,398	229,437	20,907	913,273	23,605
	여	1,890,575	888,709	627,279			366,049		596,389	80,072	15,032	339,233	8,324
2005	계	4,022,801	2,010,704	1,259,792			503,104		1,859,639	282,225	25,141	853,089	23,566
	여	1,899,694	946,974	599,806			233,067		684,238	124,930	17,856	316,326	7,980
2006	계	3,925,043	2,075,311	1,281,508			494,349		1,888,436	290,029	25,881	817,994	23,394
	여	1,861,538	973,094	608,603			227,053		696,434	131,658	17,916	310,714	7,954
2007	계	3,829,998	2,063,159	1,347,363			494,011		1,919,504	296,576	25,834	795,519	23,147
	여	1,822,727	963,020	640,729			226,944		712,735	137,118	17,658	308,453	7,855
2008	계	3,672,207	2,038,611	1,419,486			487,492		1,943,437	301,412	24,116	771,854	23,419
	여	1,752,912	952,515	677,614			222,105		727,178	141,679	16,244	305,701	7,906
2009	계	3,474,395	2,006,972	1,484,966			480,826		1,984,043	306,471	22,879	760,929	23,720
	여	1,659,970	943,231	706,607			218,178		749,329	146,083	15,335	301,395	8,050
2010	계	3,299,094	1,974,798	1,496,227			466,129		2,028,841	316,633	21,618	767,087	23,858
	여	1,575,200	937,760	707,996			210,723		778,186	152,367	14,712	304,846	8,163
2011	계	3,132,477	1,910,572	1,473,118	21,615	117,936	36,254	294,875	2,065,451	329,933	20,241	776,738	24,617
	여	1,497,652	910,783	700,553	11,769	51,859	12,993	133,084	802,075	158,523	13,765	310,247	24,617
2012	계	2,951,995	1,849,094	1,416,022	43,976	223,068	94,242	142,779	2,103,958	329,544	18,789	769,888	24,785
	여	1,413,356	883,808	683,044	23,296	98,222	34,826	64,765	821,875	159,032	12,751	307,350	8,508

주 : 2011년부터는 고등학교 유형분류가 일반·일반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문계고로 분류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2년 초등학교 수는 5,895개교로, 1980년 6,487개교보다는 592개교가 줄었으나,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중학교 수는 3,162개교로 1980년 2,100개교보다 1,062개교가 늘어났다. 2012년 고등학교 수는 총 2,303개교로 1980년 1,353개교 보다 950개교가 늘어났다.

전문계열 고등학교는 1980년 605개교에서 2012년 502개교로 크게 줄었는데, 이는 2011년에 고등학교 유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전문계열에 속했던 종합고등학교가 일반고로 분류, 일반계열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계 고등학교 수는 1980년 748개교에서 2012년 1,801개교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학은 1980년에 96개교이던 것이 2012년 189개교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전문대학은 2012년 142개교로, 200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수학교는 1980년 57개교에서 2012년 156개교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느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단위 : 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특수학교
			계	일반계열	전문계열					
1980	6,487	2,100	1,353	748	605	96	121	11	128	57
1990	6,335	2,474	1,683	1,096	587	118	298	11	117	104
1995	5,772	2,683	1,830	1,068	762	142	421	11	145	108
2000	5,267	2,731	1,957	1,193	764	172	829	11	158	129
2005	5,646	2,935	2,095	1,382	713	184	1,051	11	158	142
2006	5,733	2,999	2,144	1,437	707	186	1,051	11	152	143
2007	5,756	3,032	2,159	1,457	702	186	1,042	11	148	144
2008	5,813	3,077	2,190	1,493	697	185	1,055	10	147	149
2009	5,829	3,106	2,225	1,534	691	188	1,115	10	146	150
2010	5,854	3,130	2,253	1,561	692	179	1,138	10	145	150
2011	5,882	3,153	2,282	1,785	497	183	1,167	10	147	155
2012	5,895	3,162	2,303	1,801	502	189	1,177	10	142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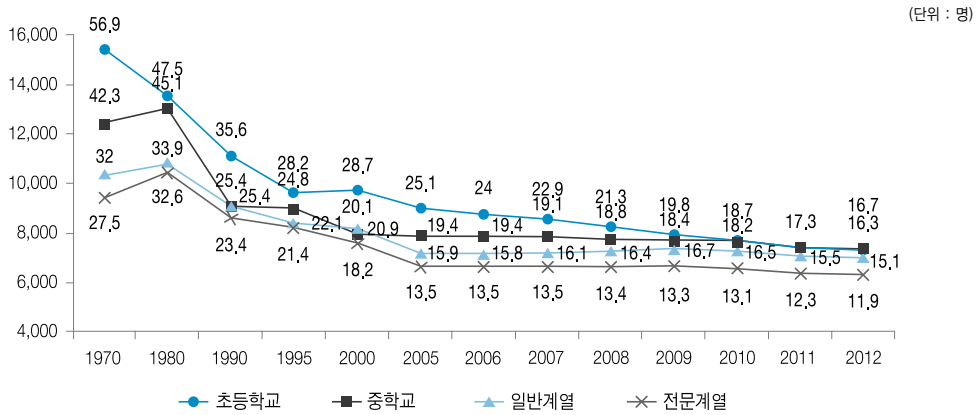
주 : 1) 일반계열 고등학교 : 2010년 이전(일반계고), 2011년 이후(일반고,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제외), 대안 특성화고, 자율고).

2) 전문계열 고등학교 : 2010년 이전(전문계고), 2011년 이후(직업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2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3명, 중학교 16.7명, 일반계열 고등학교 15.1명, 전문계열 고등학교 11.9명이다. 2000년과 비교하면, 그 수는 초등학교 12.4명, 중학교 3.4명, 일반계열 고등학교 5.8명, 전문계열 고등학교 6.3명이 줄어들었다.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 학교	고 등 학 교	
			일 반 계 열	전 문 계 열
1970	56.9	42.3	32.0	27.5
1980	47.5	45.1	33.9	32.6
1990	35.6	25.4	25.4	23.4
1995	28.2	24.8	22.1	21.4
2000	28.7	20.1	20.9	18.2
2005	25.1	19.4	15.9	13.5
2006	24.0	19.4	15.8	13.5
2007	22.9	19.1	16.1	13.5
2008	21.3	18.8	16.4	13.4
2009	19.8	18.4	16.7	13.3
2010	18.7	18.2	16.5	13.1
2011	17.3	17.3	15.5	12.3
2012	16.3	16.7	15.1	11.9

주 : 1) 일반계열 고등학교 : 2010년 이전(일반계고), 2011년 이후(일반고,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제외), 대안 특성화고, 자율고).

2) 전문계열 고등학교 : 2010년 이전(전문계고), 2011년 이후(직업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3 조기유학 현황

해외 교육기관에서의 수학을 목적으로 출국(해외이주 또는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인해 동행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외)한 초·중·고 학생 수는 2011학년도(2011.3.1 ~ 2012.2.29) 기준으로 총 16,515명이며 이는 전년대비 2,226명(11.9%) 감소한 수치이며, 한편 조기 유학생은 2006학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7,477명, 중학생이 5,468명, 고등학생이 3,570명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합 계
2005	8,148	6,670	5,582	20,400
2006	13,814	9,246	6,451	29,511
2007	12,341	9,201	6,126	27,668
2008	12,531	8,888	5,930	27,349
2009	8,369	5,723	4,026	18,118
2010	8,794	5,870	4,077	18,741
2011	7,477	5,468	3,570	16,515

주 : 1) 연도는 학년도를 의미하며 2011학년도의 경우 2012년도에 조사된 자료임. 2011학년도(2012년도) 자료기준일은 2011.3.1. ~ 2012.2.29.임.

2) 초등학교 중학교는 인정/미인정 유학자만, 고등학교는 자비유학자만 포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 4

##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2012년 4월 기준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는 24개교, 특성화 중학교는 10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2012년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4,034명으로 이는 2011년 3,829명에 비해 205명 증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수는 물론, 학생 수, 교원 수 모두 증가하고 있어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교, 명)

연 도	계			중 학 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2007	29	2,823	392	8	669	86	21	2,154	306
2008	29	2,984	419	8	766	95	21	2,218	324
2009	29	3,410	416	8	974	94	21	2,436	322
2010	32	3,565	465	9	1,007	109	23	2,558	356
2011	33	3,829	519	10	1,101	131	23	2,728	388
2012	34	4,034	564	10	1,145	141	24	2,889	423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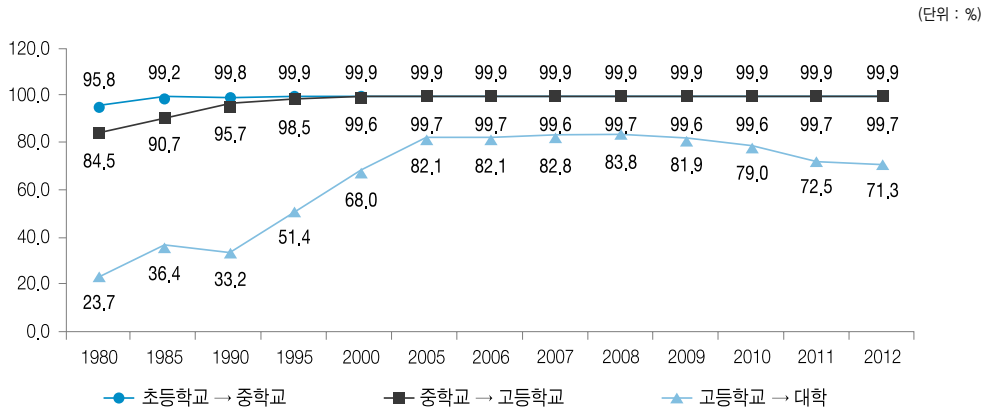
## 5

## 진학률

2012년 현재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 2000년 이후 거의 완전 취학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1.3%로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0년의 33.2%에 비해 38.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유형별 대학 진학률을 보면 일반계열 고교는 2012년 76.1%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이던 진학률이 2012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전문계열 고교 졸업자 진학률은 2012년 49.5%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11.2%p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문계열 고교를 취업중심 학교로 개편하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sup>3)</sup>

(단위 : %)

연도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 <sup>4)</sup>		
	계	계	계	일반계열	전문계열
1980	95.8	84.5	23.7	39.2	5.0
1985	99.2	90.7	36.4	53.8	9.9
1990	99.8	95.7	33.2	47.2	6.3
1995	99.9	98.5	51.4	72.8	17.2
2000	99.9	99.6	68.0	84.6	35.7
2005	99.9	99.7	82.1	88.3	62.0
2006	99.9	99.7	82.1	87.5	68.6
2007	99.9	99.6	82.8	87.1	71.5
2008	99.9	99.7	83.8	87.9	72.9
2009	99.9	99.6	81.9	84.9	73.5
2010	99.9	99.6	79.0	81.5	71.1
2011	99.9	99.7	72.5	75.2	60.7
2012	99.9	99.7	71.3	76.1	49.5

주 : 1) 일반계열 고등학교 : 2010년 이전(일반계고), 2011년 이후(일반고,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제외), 대안 특성화고, 자율고).

2) 전문계열 고등학교 : 2010년 이전(전문계고), 2011년 이후(직업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3)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수 / 졸업생 수) × 100.

4)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등 포함.

5)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업중단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1.9%로 나타나 초등학교 0.6%, 중학교 0.9%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단계로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보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적, 중퇴 및 휴학한 자들을 학업중단자로 보고 있다.

학업중단율은 2000년 이후 초등학교는 0.5% 내외, 중학교는 0.9% 내외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증감을 반복하다 2007년 이후 1.9%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 및 일탈행동이 학업중단의 주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유학자의 비율이 높아져서 국내에서의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한편 학교부적응 학생의 비율은 여전히 많은 편으로 드러났다.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

연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1980	0.1	1.2	2.5
1985	0.0	1.1	3.0
1990	0.0	1.0	1.9
1995	0.0	1.0	2.5
2000	0.4	1.0	2.5
2005	0.5	0.8	1.3
2006	0.6	0.9	1.6
2007	0.5	1.0	1.8
2008	0.5	1.0	1.8
2009	0.3	0.8	1.8
2010	0.6	1.0	2.0
2011	0.6	0.9	1.9

주 : 1) 연도는 학년도임.

2)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전년도 재적학생수 × 100.

3) 학업중단자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제적, 중퇴한 자들을 말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로 정의함.

4)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7 교육재정

## 가.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 부처 예산

2012년도 교육 부처의 예산은 49조 6,448억 원으로 1980년의 약 1조 992억 원, 1990년의 약 5조 624억 원에 이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12년 전체 정부 예산 중 교육 부처 예산 비중은 17.6%로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 부처 예산

(단위 : 천원, %)

연 도	정부예산(A)	교육과학기술부예산(B)	비 율(B/A)
1970	446,273,301	78,478,212	17.6
1980	5,804,061,441	1,099,159,170	18.9
1990	22,689,432,968	5,062,431,258	22.3
2000	93,937,057,000	19,172,027,920	20.4
2001	102,528,518,000	20,034,364,710	19.5
2002	113,898,884,000	22,278,357,817	19.6
2003	120,477,623,000	24,404,401,310	20.3
2004	126,991,802,000	26,399,680,082	20.8
2005	134,370,378,000	27,982,002,000	20.8
2006	144,807,610,439	29,127,258,513	20.1
2007	156,517,719,000	31,044,747,984	19.8
2008	183,515,764,000	35,897,425,012	19.6
2009	214,563,409,000	38,696,405,000	18.0
2010	211,992,599,000	41,627,519,000	19.6
2011	264,092,862,000	45,116,643,669	17.1
2012	282,687,337,000	49,644,828,392	17.6

주 : 1) 정부예산 = 일반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부 예산은 교육 분야 예산 현황임.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나. GDP 대비 교육재정

2012년도 교육예산은 약 44조 8,163억 원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 3.2%, 2008년 3.5%, 2009년 3.5%, 2010년 3.3%, 2011년 3.3%, 2012년 3.5%로 나타나 2012년에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단위 :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	유아 및 초중등	26.7	31.0	31.1	32.5	35.4	38.6
	고등교육	4.0	4.4	5.2	5.0	4.7	5.6
	평생교육	0.3	0.4	0.4	0.5	0.7	0.5
	교육일반	0.1	0.1	0.1	0.1	0.1	0.1
	소계	31.2	36.0	36.9	38.3	41.0	44.8
GDP 규모	975.01	1,026.45	1,065.04	1,173.27	1,235.16	1,272.45	
GDP 대비 비율	3.2%	3.5%	3.5%	3.3%	3.3%	3.5%	

주 : 1) 위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소계와 각 값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교육부(2011.10). 「201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통계청(2012). 「한국의 사회지표 : 2012 한국의 사회지표」.

## 다.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2(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6.3%보다 1.7%p 높은 8.0% 수준이다. 그러나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구성 비율은 4.9%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5.4%보다 0.5%p 낮은 수준이며, 민간재원 비중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0.9%보다 2.2%p 높은 3.1% 수준이다.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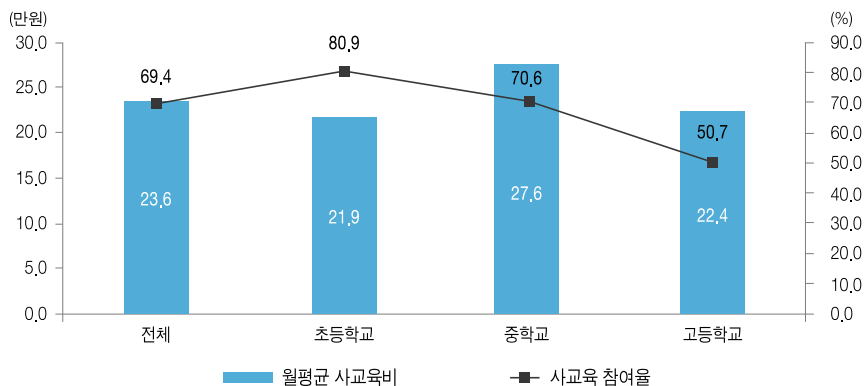
구 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GDP 대비 공교육비	6.3	8.0	7.3	6.3	5.3	6.0	5.2
정부재원	5.4	4.9	5.3	5.8	4.5	5.3	3.6
민간재원	0.9	3.1	2.1	0.5	0.8	0.7	1.7

자료 : OECD(2012). 「2012년 OECD 교육지표」.

## 라.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2012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69.4%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2.2만원(9.1%)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중학교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26.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로는 3.7%p 감소한 수치이며, 모든 학교급의 사교육 참여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림 7-1-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2012)



자료 : 통계청(2012), 「사교육비조사」.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sup>1)</sup>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p)			
	2010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0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4.0	24.0	23.6	-1.7	73.6	71.7	69.4	-2.3
초등학교	24.5	24.1	21.9	-9.1	86.8	84.6	80.9	-3.7
중학교	25.5	26.2	27.6	5.3	72.2	71.0	70.6	-0.4
고등학교	21.8	21.8	22.4	2.8	52.8	51.6	50.7	-0.9
일반고	26.5	25.9	26.5	2.3	61.1	58.7	57.6	-1.1

주 :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자료 : 통계청(2012), 「사교육비조사」.

## 제 2 장

#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 Achievement: IEA)에서 주관하는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비교 연구(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는 수학 및 과학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교육 맥락적 정보들과 성취도와의 연계분석을 근거로 하여 연구 참여국의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이다. TIMSS는 1995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4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는 1995년과 2011년, 중학교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대회 참여하였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TIMSS 2011(2012.12.11. 발표)은 초등학교 50개국, 중학교 42개국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비례층화 표집방법에 따라 표집된 초등학교 150개교 4학년 4,335명, 중학교 150개교 2학년 5,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TIMSS 2011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성취도는 참여 국가들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참여 국가들 중 2위, 과학 성취도는 1위를 나타냈으며, 이는 1995년도 수학(2위) 및 과학(1위) 순위와 동일하였다. 성취도 점수에 있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수학 성취도 점수는 2011년 605점으로 1995년 581점보다 24점 높게 나타났으며, 과학 성취도 점수는 2011년 587점으로 1995년 576점보다 11점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2학년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참여 국가들 중 1위로 매 주기 상승하고 있으며('95년 3위 → '99년 2위 → '03년 2위 → '07년 2위 → '11년 1위), 과학 성취도 역시 3위로 매 주기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95년 4위 → '99년 5위 → '03년 3위 → '07년 4위 → '11년 3위). 성취도 점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 성취도 점수는 2011년 613점으로 매년 상승하였으며('95년 581점 → '99년 587점 → '03년 589점 → '07년 597점 → '11년 611점), 과학 성취도 점수 역시 2011년 560점으로 매년 상승하였다('95년 546점 → '99년 549점 → '03년 558점 → '07년 553점 → '11년 560점).

〈표 7-2-1〉 TIMSS 초등학교 4학년 수학·과학 성취도 변화(순위 및 성취도 점수)

수학 성취도						과학 성취도					
TIMSS 1995			TIMSS 2011			TIMSS 1995			TIMSS 2011		
순위	국가	평균점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
1	싱가포르	590	1	싱가포르	606	1	대한민국	576	1	대한민국	587
2	대한민국	581	2	대한민국	605	2	일본	553	2	싱가포르	583
3	일본	567	3	홍콩	602	3	미국	542	3	핀란드	570
4	홍콩	557	4	대만	591	4	오스트리아	538	4	일본	559
5	네덜란드	549	5	일본	585	6	체코	532	5	러시아	552
12	미국	518	6	북아일랜드	562	7	네덜란드	530	5	대만	552
17	영국	484	7	벨기에	549	8	영국	528	7	미국	544
23	포르투갈	442	8	핀란드	545	10	싱가포르	523	8	체코	536
	대만	◇	9	영국	542	14	홍콩	508	9	홍콩	535
	북아일랜드	◇	9	러시아	542	14	헝가리	508	10	헝가리	534
	벨기에	◇	11	미국	541		핀란드	◇	11	스웨덴	533
	핀란드	◇	12	네덜란드	540		러시아	◇	12	슬로바키아	532
	러시아	◇	13	덴마크	537		대만	◇	12	오스트리아	532
	덴마크	◇	14	리투아니아	534		스웨덴	◇	14	네덜란드	531
	리투아니아	◇	15	포르투갈	532		슬로바키아	◇	15	영국	529

주 : 1) TIMSS 성취도 점수는 평균 500점, 표준편차 100점인 척도 점수임.

2) ◇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표 7-2-2〉 TIMSS 중학교 2학년 수학 성취도 변화(순위 및 성취도 점수)

TIMSS 1995			TIMSS 1999			TIMSS 2003			TIMSS 2007			TIMSS 2011		
순위	국가	평균점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
1	싱가포르	609	1	싱가포르	604	1	싱가포르	605	1	대만	598	1	대한민국	613
2	일본	581	2	대한민국	587	2	대한민국	589	2	대한민국	597	2	싱가포르	611
3	대한민국	581	3	대만	585	3	홍콩	586	3	싱가포르	593	3	대만	609
4	홍콩	569	4	홍콩	582	4	대만	585	4	홍콩	572	4	홍콩	586
5	벨기에	550	5	일본	579	5	일본	570	5	일본	570	5	일본	570
10	헝가리	527	6	벨기에	558	6	벨기에	537	6	헝가리	517	6	러시아	539
11	러시아	524	7	네덜란드	540	7	네덜란드	536	7	잉글랜드	513	7	이스라엘	516
15	뉴질랜드	501	9	헝가리	532	9	헝가리	529	8	러시아	512	8	핀란드	514
16	잉글랜드	498	12	러시아	526	10	러시아	508	9	미국	508	9	미국	509
18	미국	492	19	미국	502	14	호주	505	10	리투아니아	506	10	영국	507
19	라트비아	488	20	잉글랜드	496	15	미국	504	12	슬로베니아	501	11	헝가리	505
22	리투아니아	472	21	뉴질랜드	491	16	리투아니아	502	13	아르메니아	499	11	호주	505
-	네덜란드	529	22	리투아니아	482	17	스웨덴	499	14	호주	496	11	슬로베니아	505
-	호주	509	13	호주	*	20	뉴질랜드	494	15	스웨덴	491	14	리투아니아	502
	대만	◇		스웨덴	◇	-	잉글랜드	498	19	이탈리아	480	15	이탈리아	498

주 : 1) TIMSS 성취도 점수는 평균 500점, 표준편차 100점인 척도 점수임.

2) ◇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

3) - : 표본 참여율을 만족하지 못함.

4) \* : 모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표 7-2-3) TIMSS 중학교 2학년 과학 성취도 변화(순위 및 성취도 점수)

TIMSS 1995			TIMSS 1999			TIMSS 2003			TIMSS 2007			TIMSS 2011		
순위	국가	평균점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
1	싱가포르	580	1	대만	569	1	싱가포르	578	1	싱가포르	567	1	싱가포르	590
3	일본	554	2	싱가포르	568	2	대만	571	2	대만	561	2	대만	564
4	대한민국	546	3	헝가리	552	3	대한민국	558	3	일본	554	3	대한민국	560
5	헝가리	537	4	일본	550	4	홍콩	556	4	대한민국	553	4	일본	558
6	잉글랜드	533	5	대한민국	549	5	일본	552	5	잉글랜드	542	5	핀란드	552
7	벨기에	533	6	네덜란드	545	7	헝가리	543	6	헝가리	539	6	슬로베니아	543
9	러시아	523	9	잉글랜드	538	8	네덜란드	536	8	슬로베니아	538	7	러시아	542
12	미국	513	12	벨기에	535	9	미국	527	9	홍콩	530	8	홍콩	535
15	뉴질랜드	511	15	홍콩	530	9	호주	527	9	러시아	530	9	영국	533
16	홍콩	510	16	러시아	529	11	스웨덴	524	11	미국	520	10	미국	525
21	리투아니아	476	18	미국	515	12	뉴질랜드	520	12	리투아니아	519	11	헝가리	522
23	리투아니아	464	19	뉴질랜드	510	14	리투아니아	519	13	호주	515	12	호주	519
-	네덜란드	541	23	리투아니아	488	16	벨기에	516	14	스웨덴	511	13	이스라엘	514
-	호주	514	7	호주	*	17	러시아	514	16	이탈리아	495	14	리투아니아	514
	대만			스웨덴		-	잉글랜드	544	17	아르메니아	488	15	뉴질랜드	512

주 : 1) TIMSS 성취도 점수는 평균 500점, 표준편차 100점인 척도 점수임.

2) ◇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

3) - : 표본 참여율을 만족하지 못함.

4) \* : 모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TIMSS 2011 결과를 성취 수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의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은 수학의 경우 최상위권인 수월수준이 39%이었으며 우수수준 이상은 80%, 보통수준 이상은 97%, 기초수준 이상은 100%이고 기초수준 미달 학생 비율은 0%였다. 이러한 수월수준 비율은 싱가포르(4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 중앙값이 수월수준 4%, 우수수준 이상 28%, 보통수준 이상 69%, 기초수준 이상 90%, 기초수준 미달 10%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취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의 과학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을 보면 최상위권인 수월수준이 29%로 싱가포르(3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우수수준 이상은 73%, 보통수준 이상은 95%, 기초수준 이상 99%였으며 기초수준 미달 학생 비율은 1%였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은 수학의 경우 최상위권인 수월수준이 47%로 대만(49%), 싱가포르(4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우수수준 이상은 77%, 보통수준 이상은 93%, 기초수준 이상은 99%였고 기초수준 미달 학생 비율은 1%였다. 과학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은 수월수준이 20%로 싱가포르(40%), 대만(24%)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우수수준 이상은 57%, 보통수준 이상은 86%, 기초수준 이상 97%였으며 기초수준 미달 학생 비율은 3%였다.

〈표 7-2-4〉 TIMSS 초등학교 4학년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수학, 과학)

(단위 : %)

국 가	수학 성취도					국 가	과학 성취도				
	평균 점수	수월수준 (625점 이상)	우수수준 이상 (550점 이상)	보통수준 이상 (475점 이상)	기초수준 이상 (400점 이상)		평균 점수	수월수준 (625점 이상)	우수수준 이상 (550점 이상)	보통수준 이상 (475점 이상)	기초수준 이상 (400점 이상)
싱가포르	606	43	78	94	99	대한민국	587	29	73	95	99
대한민국	605	39	80	97	100	싱가포르	583	33	68	89	97
홍콩	602	37	80	96	99	핀란드	570	20	65	92	99
대만	591	34	74	93	99	일본	559	14	58	90	99
일본	585	30	70	93	99	러시아	552	16	52	86	98
북아일랜드	562	24	59	85	96	대만	552	15	53	85	97
벨기에	549	10	50	89	99	미국	544	15	49	81	96
핀란드	545	12	49	85	98	체코	536	10	44	81	97
영국	542	18	49	78	93	홍콩	535	9	45	82	96
러시아	542	13	47	82	97	헝가리	534	13	46	78	93
미국	541	13	47	81	96	스웨덴	533	10	44	79	95
네덜란드	540	5	44	88	99	슬로바키아	532	10	44	79	94
덴마크	537	10	44	82	97	오스트리아	532	8	42	79	96
리투아니아	534	10	43	79	96	네덜란드	531	3	37	86	99
포르투갈	532	8	40	80	97	영국	529	11	42	76	93
국제중앙값		4	28	69	90	국제중앙값		5	32	72	92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표 7-2-5〉 TIMSS 중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수학, 과학)

(단위 : %)

국 가	수학 성취도					국 가	과학 성취도				
	평균 점수	수월수준 (625점 이상)	우수수준 이상 (550점 이상)	보통수준 이상 (475점 이상)	기초수준 이상 (400점 이상)		평균 점수	수월수준 (625점 이상)	우수수준 이상 (550점 이상)	보통수준 이상 (475점 이상)	기초수준 이상 (400점 이상)
대한민국	613	47	77	93	99	싱가포르	590	40	69	87	96
싱가포르	611	48	78	92	99	대만	564	24	60	85	96
대만	609	49	73	88	96	대한민국	560	20	57	86	97
홍콩	586	34	71	89	97	일본	558	18	57	86	97
일본	570	27	61	87	97	핀란드	552	13	53	88	99
러시아	539	14	47	78	95	슬로베니아	543	13	48	82	96
이스라엘	516	12	40	68	87	러시아	542	14	48	81	96
핀란드	514	4	30	73	96	홍콩	535	9	47	80	95
미국	509	7	30	68	92	영국	533	14	44	76	93
영국	507	8	32	65	88	미국	525	10	40	73	93
헝가리	505	8	32	65	88	헝가리	522	9	39	75	92
호주	505	9	29	63	89	호주	519	11	35	70	92
슬로베니아	505	4	27	67	93	이스라엘	516	11	39	69	88
리투아니아	502	5	29	64	90	리투아니아	514	6	33	71	92
이탈리아	498	3	24	64	90	뉴질랜드	512	9	34	67	90
국제중앙값		3	17	46	75	국제중앙값		4	21	52	79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성별로 살펴본 TIMSS 2011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남학생이 608점으로 1995년 586점에 비해 22점 상승하였으며, 여학생은 601점으로 1995년 576점에 비해 25점 상승하였는데, 성별 간 격차는 1995년 10점에서 2011년 7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과학 성취도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2011년 590점으로 1995년 582점보다 8점 상승하였으며, 여학생은 583점으로 1995년 569점보다 14점 상승하였고, 성별 간 격차는 1995년 13점에서 7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2011년 수학 성취도는 616점으로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95년 588점 → '99년 590점 → '03년 592점 → '07년 599점 → '11년 616점), 여학생의 수학성취도는 2011년 610점으로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95년 571점 → '99년 585점 → '03년 586점 → '07년 595점 → '11년 610점). 남학생과 여학생 간 격차는 2011년 6점으로 1999년 이후 감소하였다('95년 17점 → '99년 5점 → '03년 6점 → '07년 4점 → '11년 6점).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과학 성취도는 남학생이 2011년 563점으로 199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나타났으며('95년 559점 → '99년 559점 → '03년 564점 → '07년 557점 → '11년 563점), 여학생은 2011년 558점으로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95년 530점 → '99년 538점 → '03년 552점 → '07년 549점 → '11년 558점). 과학 성취도의 남학생과 여학생 간 격차는 2011년 5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95년 29점 → '99년 21점 → '03년 12점 → '07년 8점 → '11년 5점).

〈표 7-2-6〉 우리나라 학생의 성별 수학 및 과학 성취도의 변화(초4, 중2)

(단위 : 점)

연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수학 성취도			과학 성취도			수학 성취도			과학 성취도		
	남학생	여학생	차이	남학생	여학생	차이	남학생	여학생	차이	남학생	여학생	차이
1995년	586	576	-	582	-	-	588	571	17*	559	530	29*
1999년	-	-	-	-	590	569	590	585	5	559	538	21*
2003년	-	601	10*	-	-	-	592	586	6	564	552	12*
2007년	-	-	-	583	13*	-	599	595	4	557	549	8*
2011년	608	-	7*	-	-	7*	616	610	6*	563	558	5

주 : 1) \* : 남·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2) -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재구성.



한편,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의 경우, '자신 있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11%, 중학생이 3%로 국제 평균인 34%와 14%에 비해 낮았다. 과학에 대한 자신감의 경우에도 '자신 있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15%, 중학생이 4%로 국제 평균인 15%와 20%에 각각 미치지 못하였다. 학습에 대한 흥미도의 경우, 수학 공부하는 것을 '좋아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23%, 중학생이 8%로 국제 평균인 48%와 26%보다 낮았으며, 과학 공부하는 것을 '좋아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39%, 중학생이 11%로 국제 평균인 53%와 35%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수학 및 과학의 성취도가 높았던 동양권 국가들이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표 7-2-7〉 TIMSS 2011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자신감('자신 있음' 응답 비율)

(단위 : %, 점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국 가	수 학		과 학		국 가	수 학		과 학			
	자신있음		자신있음			자신있음		자신있음			
	백분율	평균	국 가	백분율		평균	국 가	백분율	평균		
미국	40	575	오스트리아	59	549	이스라엘	31	573	이스라엘	33	568
네덜란드	37	568	헝가리	50	568	미국	24	556	미국	26	565
북아일랜드	35	598	스웨덴	49	547	호주	17	581	영국	23	579
핀란드	35	579	러시아	48	570	영국	16	571	호주	16	575
영국	33	572	미국	48	567	헝가리	16	593	뉴질랜드	14	570
러시아	33	571	대만	44	573	핀란드	15	580	싱가포르	14	630
덴마크	30	571	슬로바키아	44	556	싱가포르	14	662	홍콩	8	579
리투아니아	30	577	네덜란드	39	545	리투아니아	13	579	대만	6	648
벨기에	28	584	핀란드	38	587	러시아	12	603	대한민국	4	652
포르투갈	25	579	체코	38	556	이탈리아	12	559	일본	3	631
홍콩	24	641	영국	33	549	슬로베니아	11	586			
싱가포르	21	658	싱가포르	26	620	대만	7	709			
대만	20	634	홍콩	25	560	홍콩	7	655			
대한민국	11	660	일본	17	581	대한민국	3	723			
일본	9	640	대한민국	15	623	일본	2	~			
국제 평균	34	527	국제 평균	43	514	국제 평균	14	539	국제 평균	20	536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재구성.

〈표 7-2-8〉 TIMSS 2011 수학 및 과학에 대한 흥미('좋아함' 응답 비율)

(단위 : %, 점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수 학			과 학			수 학			과 학		
국 가	좋아함		국 가	좋아함		국 가	좋아함		국 가	좋아함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
러시아	58	554	러시아	62	561	싱가포르	32	637	싱가포르	38	617
리투아니아	58	547	대만	58	564	러시아	29	567	영국	32	562
포르투갈	57	548	싱가포르	57	600	이스라엘	26	536	미국	29	555
싱가포르	48	625	미국	56	555	리투아니아	22	531	이스라엘	29	547
홍콩	47	619	오스트리아	53	540	홍콩	19	635	홍콩	28	561
미국	45	552	일본	52	566	미국	19	536	호주	25	559
영국	44	548	홍콩	52	551	이탈리아	18	538	뉴질랜드	24	549
덴마크	37	548	슬로바키아	49	543	호주	16	553	대만	17	618
북아일랜드	36	576	헝가리	48	554	헝가리	15	549	일본	15	595
대만	34	613	스웨덴	48	537	대만	14	681	대한민국	11	623
핀란드	34	556	체코	45	544	영국	14	548			
벨기에	33	560	네덜란드	45	536	핀란드	10	560			
네덜란드	32	550	영국	44	535	일본	9	621			
일본	29	607	대한민국	39	604	대한민국	8	677			
대한민국	23	627	핀란드	36	578	슬로베니아	6	544			
국제 평균	48	509	국제 평균	53	504	국제 평균	26	504	국제 평균	35	515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재구성.

## 2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2000년 41.4%, 2004년 46.5%, 2008년 51.0%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2010년 46.5%, 2012년 45.5%로 감소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30.7%에서 2004년에는 35.7%, 2008년에는 50.8%로 높아지다가, 2010년에는 46.3%, 2012년에는 42.9%로 감소하였다.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 ('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23.1%, 2004년 27.9%, 2008년 42.7%로 높아지다가, 2010년 38.6%, 2012년 35.5%로 감소하였다. 교우관계 만족도는 2000년에 67.7%, 2004년에는 66.6%, 2008년에는 70.0%로 소폭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68.4%, 2012년에는 65.6%로 감소하였다.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에 36.2%이던 것이 2004년에는 42.6%, 2008년에는 46.9%로 높아졌으나, 2010년에는 43.9%, 2012년에는 43.1%로 다시 감소하였다. 학교시설 및 설비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23.0%에서 2004년 29.5%, 2008년 34.8%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2010년에는 34.1%, 2012년에는 33.2%로 감소하였다. 학교주변 환경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23.4%에서 2004년 27.6%, 2008년 30.7%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30.0%, 2012년에는 30.8%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항목 중 교우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교주변 환경 만족도, 학교시설 및 설비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2-9〉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

구분	2000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2년		
	만족 (매우만족 + 약간만족)	보통	불만 (약간불만 + 매우불만)	만족 (매우만족 + 약간만족)	보통	불만 (약간불만 + 매우불만)	만족 (매우만족 + 약간만족)	보통	불만 (약간불만 + 매우불만)	만족 (매우만족 + 약간만족)	보통	불만 (약간불만 + 매우불만)	만족 (매우만족 + 약간만족)	보통	불만 (약간불만 + 매우불만)
전반적인 학교생활	41.4	45.5	13.1	46.5	42.0	11.5	51.0	43.1	5.9	46.5	46.6	6.8	45.5	46.5	7.9
교육내용	30.7	48.9	20.4	35.7	48.1	16.2	50.8	39.2	10.0	46.3	43.5	10.2	42.9	43.1	13.9
교육방법	23.1	44.9	32.0	27.9	46.9	25.2	42.7	41.5	15.8	38.6	44.5	16.8	35.5	44.7	19.8
교우관계	67.7	28.6	3.7	66.6	29.3	4.1	70.0	27.3	2.7	68.4	27.9	3.7	65.6	29.5	5.0
교사(교수)와의 관계	36.2	48.4	15.4	42.6	46.0	11.4	46.9	45.0	8.2	43.9	46.8	9.3	43.1	47.8	9.1
학교시설 및 설비	23.0	35.8	41.2	29.5	39.9	30.6	34.8	40.9	24.3	34.1	42.8	23.1	33.2	42.4	24.3
학교주변 환경	23.4	44.0	32.6	27.6	45.5	26.9	30.7	43.2	26.1	30.0	45.1	24.9	30.8	43.9	25.3

주 : 「사회조사보고서」의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을, 2012년은 13세 이상을 조사하였으나 연도별 비교를 위해 15세 이상의 결과만을 제시함.

자료 : 통계청(2013), 「사회조사보고서」.

## 제 3 장

# 교육복지정책

###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가. 추진 목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여건이나 상황의 불리함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취약성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사회교육공동체를 형성하며 학교 수준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배제됨 없이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통합적 지원망을 구축함으로써 학습자의 교육적 성취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추진 경과 및 현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확대 발전 과정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은 2002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특별교부금에 의한 정책 사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2년 간 시범적으로 서울과 부산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초·중학교가 포함된 학교군을 아우르는 아동 청소년들의 생활 세계 범위의 지역(zone) 8곳을 지정하여, 23개 행정동 내 79교(유치원 34교, 초등학교 29교, 중학교 16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광역시로 확대하여 7개 지역을 새로 추가 지정하여 총 15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인구 25만 이상의 중소 도시로 확대하여 16개 시·도 30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이후 도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밀집성을 갖춘 일정 범위의 지역에 한정하기 어려워, 사업 지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포괄하여 사업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유지한 채, 교육지원청

관내의 사업학교들을 지칭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총 60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08년 말에는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지역으로 사업학교를 확대하여 2010년까지 전국 53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추진되었다.

사업 취지와 성과를 계승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 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54조 개정을 통하여 2011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개칭하였다. 사업의 재원은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었으며, 시지역에 국한하지 않게 되었으며, 지역 단위로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 수준에서도 지역사회 연계 협력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2011년에 시·도 교육청 내 지역 특성과 취약집단 실태를 반영한 사업학교 선정 기준, 예산 배부 기준, 지역사회 협력 체제, 사업 관련 교육 규칙 등 특성화된 사업 모델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을 확대하였다. 사업 추진 이후의 현황은 <표 7-3-1>과 같다. 2011년 이후 종전의 약 3배에 이르는 총 1,356개 초·중·고등학교를 사업학교로 지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총 1,801학교로 확대되었다. 사업학교에 재학하는 전체 학생수는 2012년의 경우 1,302,250명이었으며 이 사업의 주요 참여 집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 수는 72,881명으로서 이는 전체 초등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30.8%, 중학교 학령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42.9%에 해당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표 7-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구 분	2003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상 지역	8지역 (서울6, 부산2)	15지역 (기존8, 신규7)	30지역 (기존15, 신규15)	60지역 (기존30, 신규30)	60지역 (기존60)	100지역 (기존60, 신규40)	100지역 (기존60, 신규40)	114개 교육지원청	143개 교육지원청
대상 지역	-	광역시 이상	인구 25만 이상	인구 25만 이상	인구 25만 이상	모든 市	모든 市	단위학교	단위학교
학교수 (초·중·고)	45교 (초29, 중16)	82교 (초50, 중32)	163교 (초99, 중61, 고3)	322교 (초187, 중132, 고3)	322교 (초187, 중132, 고3)	538교 (초304, 중230, 고4)	534교 (초296, 중234, 고4)	1,356교 (초670, 중681, 고5)	1,801교 (초906, 중831, 고64)
학생수 <sup>1)</sup>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수)	40,707명 (4,758명)	75,189명 (9,765명)	153,178명 (16,719명)	326,826명 <sup>2)</sup> (35,110명)	304,464명 (27,904명)	490,081명 (40,275명)	452,467명 (35,725명)	1,086,434명 (71,853명)	1,302,250명 (72,881명)
지원액 (교부금) (대응투자)	238억원 (238억원) -	160억원 (110억원) (50억원)	359억원 (209억원) (150억원)	642억원 (374억원) (268억원)	514억원 (248억원) (266억원)	866억원 (504억원) (282억원)	810억원 (310억원) (417억원)	1,566억원 (1,188억원) (367억원)	1,422억원 (1,303억원) (71억원)

주 :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에는 학생수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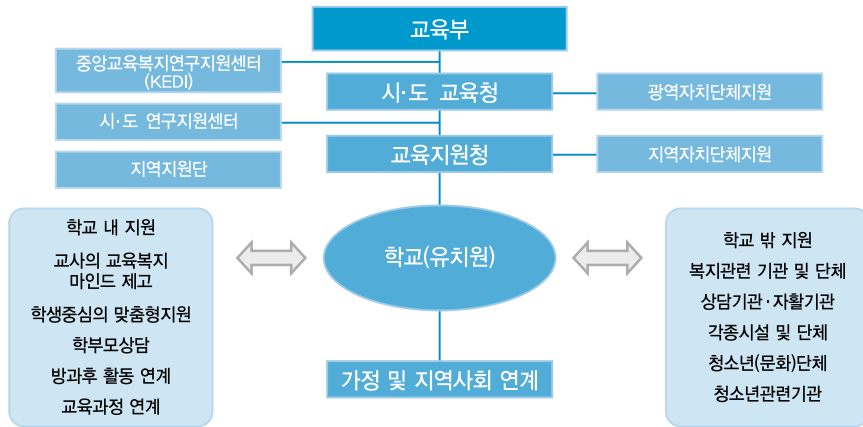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1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그림 7-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체제



## 라. 사업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이나 정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우선지원은 선별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 불리한 조건이나 상황을 우선 고려하는 통한 공정성이나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만을 겨냥하여 배타적인 지원 제공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여건과 상황의 불리함을 겪으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거나 처한 아동·청소년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필요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학교 내에서 취약집단 학생을 발굴하고, 학교 수업을 포함하여 학교 내외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자원을 개발하여 이들에게 연계할 뿐 아니라, 담임교사, 프로그램 담당교사, 학교의 전담부서, 지역사회기관 담당자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취약집단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이 특정 프로그램들을 단순히 제공한다고 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생활 세계 속에서 공동체 경험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학교에서의 사업 추진은 일부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는 데에 관심을 쏟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의 질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학생도 수업에서 소외됨이 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교수-학습의 질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초기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첫째,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두어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개발한다. 둘째,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정서·심리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긍정적 자아개념과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꾀한다. 넷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 발달과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발전하면서 학교에서는 영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설치하기보다 여러 영역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초기에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최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도 늘고 있다. 점차 영역에 구애됨 없이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학생들의 실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권장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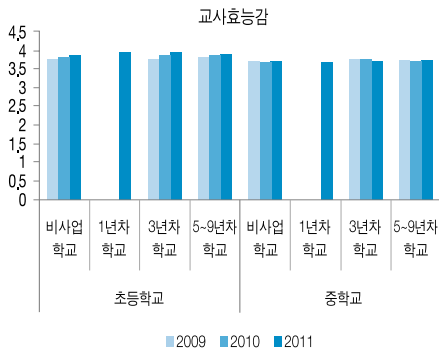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업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나 교수-학습의 개선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사업학교에서 보조교사의 활용, 학습 소외 방지를 위한 시도들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정책과 교육복지 정책 사업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 수준에서 결합하여, 교실 수업에서의 배제나 소외 예방을 위한 실천들이 시도되고 있다.

## 마. 사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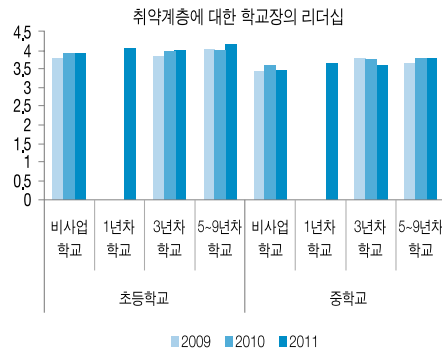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3년 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중단적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하여 학생과 학교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3차년도 연구의 주요 결과에 의하면, 사업학교는 비사업학교에 비해 교사의 효능감과 학교장의 리더십, 동아리 활동, 진로 프로그램 및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율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학교 학생들은 비사업학교 학생들에 비해 교사의 관심과 지원, 긍정적 기대 등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존감, 사회성,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극복 효능감 등에서 사업학교 기초수급 초등학생들이 비사업학교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두드러진 긍정적인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그림 7-3-2~11] 참조).



[그림 7-3-2] 교사 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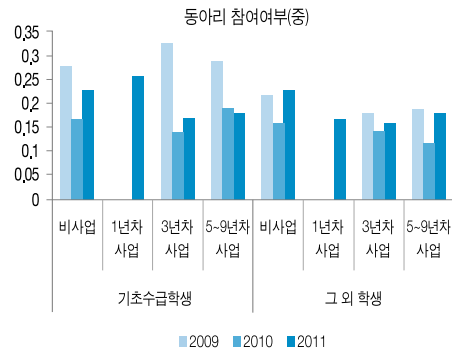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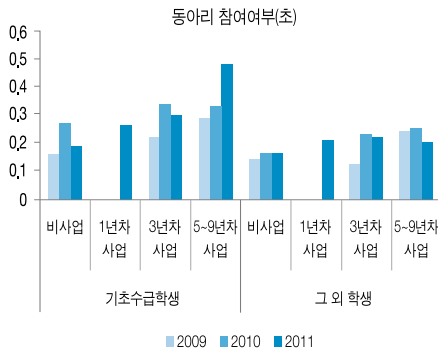
[그림 7-3-3]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장의 리더십



자료 : 류방란 외(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단적 효과분석 연구 (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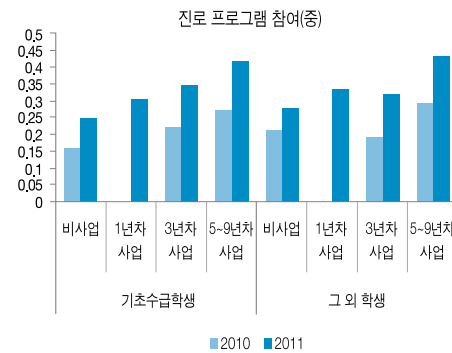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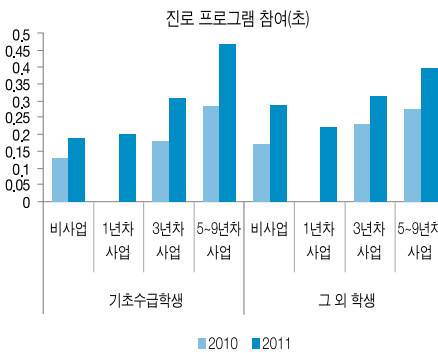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그림 7-3-4] 동아리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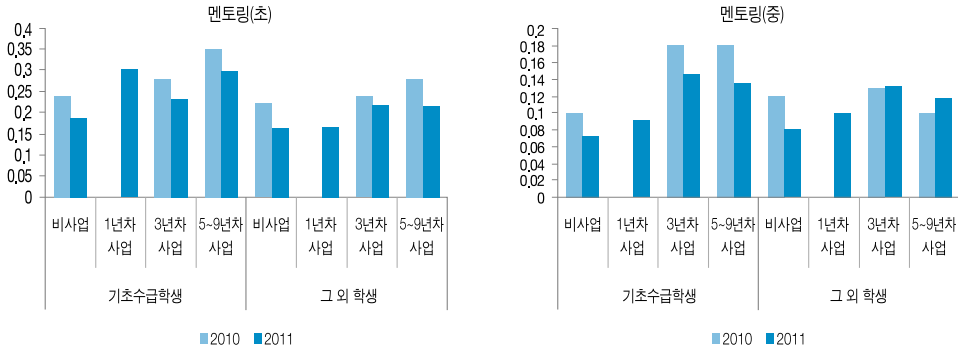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그림 7-3-5] 진로 프로그램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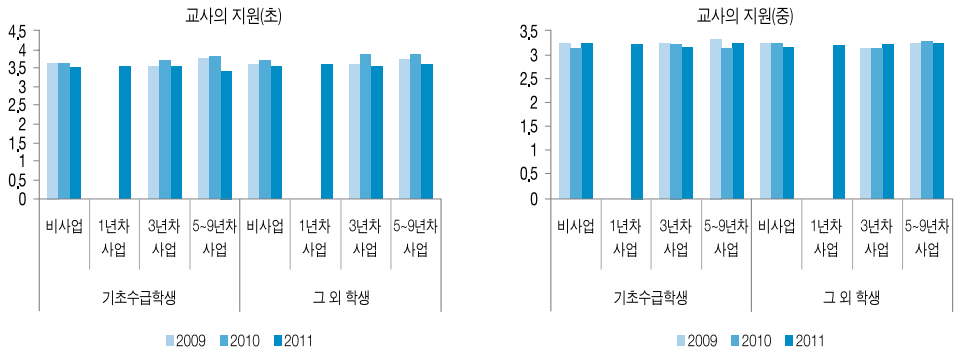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그림 7-3-6]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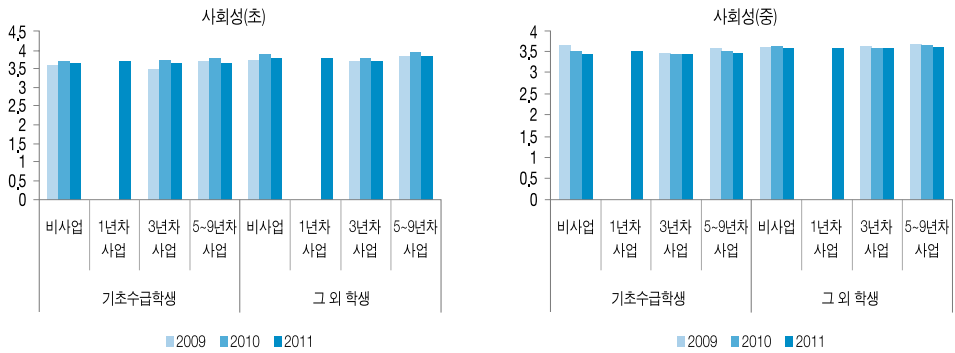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그림 7-3-7] 교사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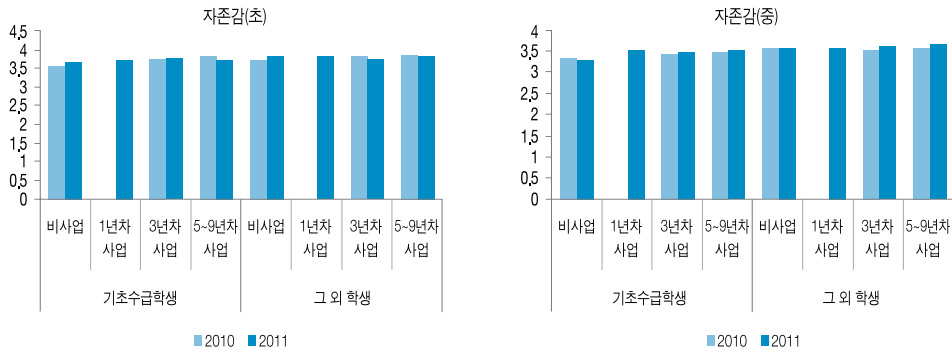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그림 7-3-8] 사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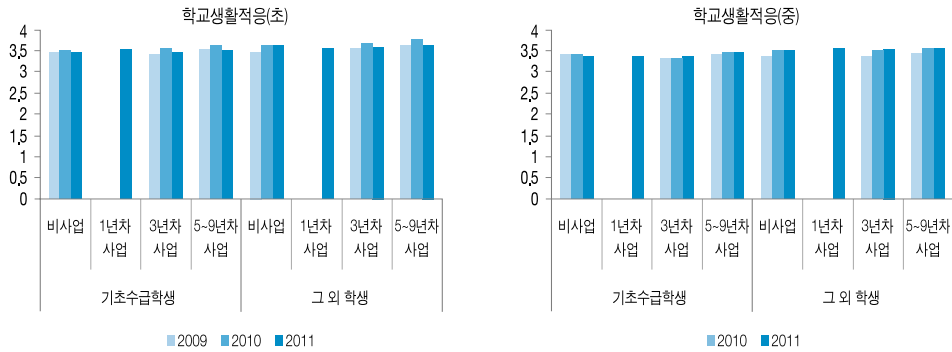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그림 7-3-9] 자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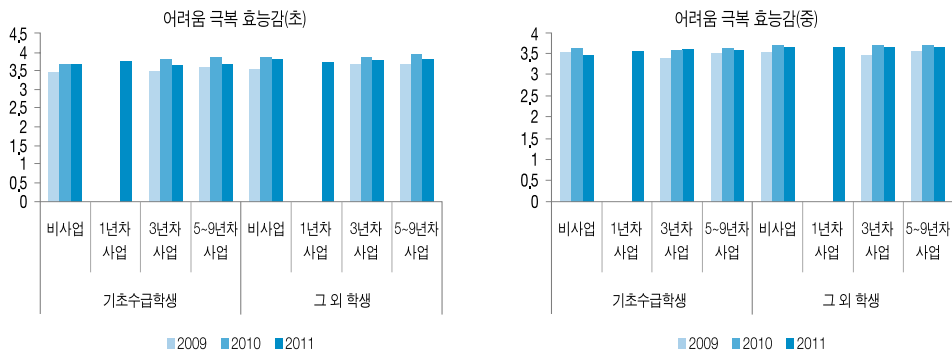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그림 7-3-10] 학교생활적응



자료 : 류방란 외(2012).

[그림 7-3-11] 어려움 극복 효능감



자료 : 류방란 외(2012).

종단적 효과 분석을 통하여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비교적 두드러진다는 점, 같은 사업학교 내에서도 우선지원을 받은 학생의 변화가 그 이외 학생보다 크다는 점, 교사의 관심과 지지, 지역 내 사회자본 등이 사업 효과 산출에 매우 핵심적인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시·도 교육청에서는 조기 개입의 효과가 큰 초등학교 사업 및 취학 전 교육과의 연계 강화, 중학교 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교사의 관심과 지지 강화, 지역사회 연계 내실화,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유관 정책과의 연계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업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 02-3460-0227



## 2 방과후학교

2012년의 방과후학교 관련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가. 민간참여 활성화 및 우수민간자원 활용

#### (1)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운영 및 확대

공모를 통하여 2012년 2월에 22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22개 대학에서는 2012년 3월부터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공모를 통하여 28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이 대학들은 2013년 3월부터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 (2)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시범운영

공신력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 및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언론기관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공모를 통하여 1차로 6개 언론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하였다('11.9 ~ '12.8). 그리고 2차로 8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12.3 ~ '13.2).

#### (2)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시범운영

공신력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 및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언론기관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공모를 통하여 1차로 6개 언론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하였다('11.9 ~ '12.8). 그리고 2차로 8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12.3 ~ '13.2).

### (3) 지방자치단체 운영 프로그램 연계 방안 마련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및 학교에 우수 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4) 방과후학교 교육기부 활성화

사회적기업 권역별 설명회, 교육기부박람회, 방과후학교 콘텐츠페어 개최 등을 통하여 방과후학교 교육기부를 활성화 하도록 하였다.

## 나. 돌봄기능 확대

오후돌봄 교실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실시)을 확대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다. 주5일수업제 대비 토요프로그램 실시 및 토요돌봄교실 확대

2012년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토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토요돌봄교실을 확대·운영하였다. 2012년 11월 기준,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39.6%(2,413,311명 / 고3학생 제외)가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중 학교토요프로그램에는 26.6%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에는 13.0%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토요돌봄교실에는 '12.6월 기준, 4,555교(77.3%)에서 39,52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취약계층 참여율 59.3%).

## 라.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정부는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취약 계층·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012년에는 60만명의 도시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간 48만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대상자수는 12만명이 증가하였고, 연간지원액은 학생 1인당 12만원이 더 증가하였다. 학생들은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듣는다. 자유수강권을 지급받는 학생수와 연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 201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40%에 대해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다. 2012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70%에 대해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다.

〈표 7-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금액(백만원)	115,210	127,116	141,021	176,581	289,188
지원학생수(명)	320,374	353,445	392,070	482,070	602,480
연간지원액(만원)	30	30	36	36	48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2)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2012년에는 46,948개의 학급에 대해 총 65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1학급당 평균 152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대부분 무료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도시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 2012년 참여율의 경우, 농산어촌(82.8%)이 도시(69.9%)와 전국(71.9%)에 비해서 높았다. 2011년도의 경우,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72.8%였다.

〈표 7-3-3〉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금액(억원)	528	382	421	515	657
지원학급수(개)	14,645	14,605	16,210	17,162	46,948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표 7-3-4〉 농산어촌, 도시, 전국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단위 : %)

구 분	농산어촌	전 국	도시 지역
2012년	82.8	71.9	69.9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3) 초등돌봄교실 지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과 후와 주말, 방학 중에 안전하게 보호·지도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돕기 위해 방과후학교에서는 돌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주로 운영되며, 맞벌이 가정 자녀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초등 돌봄 프로그램은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설비로 리모델링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실시된다. 돌봄교실에는 숙제지도, 독서, 놀이, 운동, 특기적성, 체험학습, 기타 인성지도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2년 현재 5,652개교(전체 초등학교의 96.0%)이며, 돌봄교실수는 7,086개이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총 159,248명이다. 돌봄교실 참여 학생 중 맞벌이 가정 자녀가 60.3%,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25.0%를 차지하였다. 참여학생의 학년을 보면, 1학년 42.8%, 2학년 33.1%, 3학년 10.7%, 4학년 이상이 13.4%로 나타났다. 참여학생 중의 66.4%는 무상, 33.6%는 유상으로 참여하였다.

〈표 7-3-5〉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운영학교수	1,421	2,275	2,716	3,413	5,117	5,430	5,652
운영교실수	1,631	2,491	3,030	3,819	6,200	6,639	7,086
참여학생수	31,788	43,720	51,110	66,691	104,496	124,013	159,248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표 7-3-6〉 계층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저소득층자녀	맞벌이가정자녀	기 타	계
학생수(명)	39,845	95,965	23,438	159,248
비율(%)	25.0	60.3	14.7	100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표 7-3-7〉 학년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운영학교수	68,191	52,766	17,036	8,478	6,510	6,267	159,248
참여학생수	42.8	33.1	10.7	5.3	4.1	3.9	100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표 7-3-8〉 초등돌봄교실 수강료 부담 현황

(단위 : 명, %)

구 분	무상참여	유상참여	계
학생수(명)	105,699	53,549	159,248
비율(%)	66.4	33.6	100

주 : 유상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부담 수강료 36,142원('12.4월 기준).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마. 방과후학교의 주요 성과

### (1) 학생참여율

2012년 전국 99.9%의 학교(11,361개교)에서 71.9%의 학생(4,839,657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6.7%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7-3-9〉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교참여율	99.9	99.8	99.9	99.9	99.9	99.9	99.9
학생참여율	42.7	49.8	54.3	57.6	63.3	65.2	71.9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2) 강좌 현황

2012년 4월 현재, 교과 강좌 367,025개(60.9%), 특기·적성 강좌 235,605개(39.1%), 총 602,630개의 방과후학교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행 초기인 2006년에 비해 4.6배가 증가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수는 매년 증가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학생 1인당 평균 2.7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월 평균 부담액은 31,314원으로 나타났다.

〈표 7-3-10〉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과프로그램	75,651	90,813	117,534	161,348	338,891	355,158	367,025
특기적성프로그램	54,850	68,403	112,885	124,581	156,074	175,492	235,605
계	130,501	159,216	230,339	285,929	494,965	530,650	602,630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내용별 강좌 현황을 보면, 수학, 영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율(각각 15.7%)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국어(11.0%), 과학(10.1%), 체육(9.6%), 기타(9.5%) 순으로 나타났다. 국·영·수·사·과 주요 교과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의 59.7%를 차지하였다.

〈표 7-3-11〉 방과후학교 내용별 강좌 현황

(단위 : 개, %)

구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제2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독서 논술	기타	계	
프로그램 수 (개)	초	12,222	31,200	2,779	17,395	29,837	3,813	28,146	23,979	36,138	26,299	9,699	30,522	252,029
	중	16,669	22,397	14,236	17,467	23,648	2,183	10,855	4,100	16,375	1,510	3,328	13,219	145,987
	고	37,267	40,855	26,302	26,112	41,361	1,282	2,834	1,779	5,622	3,808	3,884	13,508	204,614
	계	66,158	94,452	43,317	60,974	94,846	7,278	41,835	29,858	58,135	31,617	16,911	57,249	602,630
비율(%)	11.0	15.7	7.2	10.1	15.7	1.2	6.9	5.0	9.6	5.2	2.8	9.5	100.0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3) 강사 구성

2012년 4월 현재, 총 303,060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현직교사가 56.5%, 외부강사가 4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좌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기적성 강좌는 45.3%, 교과강좌는 54.7%를 차지하였다. 특기·적성 강좌의 강사는 현직교사가 31.9%, 외부강사가 68.1%로 외부강사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교과 강좌의 경우에는 현직교사가 77.0%, 외부강사가 23.0%로 현직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12〉 방과후학교 강사 구성 현황

(단위 : 명, %)

강좌 유형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특기·적성	43,854	31.9	93,573	68.1	137,427	45.3
교과	127,484	77.0	38,149	23.0	165,633	54.7
계	171,338	56.5	131,722	43.5	303,060	100.0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4) 수요자 만족도

아래의 표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통해 매년 설문조사하는 수요자 만족도 결과이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학생 만족도 75.8점, 학부모 만족도 75.4점을 획득하였다(2012년에는 학생 317,221명, 학부모 309,928명이 조사대상이 되었음). 특기적성 계발, 학업실력 향상, 사교육비 경감, 향후 지속적 참여의사 등에 있어 모두 70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2011년도에 비해 학생,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만족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표 7-3-13〉 방과후학교 만족도

(단위 : 점)

연도	학 생				학 부 모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008	77.6	64.9	54.7	69.1	74.6	67.6	60.0	69.6
2009	78.4	58.2	50.3	64.2	73.7	63.0	56.1	65.6
2010	80.6	61.0	59.1	67.9	78.0	65.1	62.5	69.4
2011	82.0	67.0	61.7	73.8	79.2	70.0	64.8	73.7
2012	83.8	70.0	63.0	75.8	80.8	72.4	65.9	75.4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표 7-3-14〉 방과후학교 참여효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구 분	2011		2012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특기적성계발에 도움	71.6	71.9	73.2	73.5
학업실력향상에 도움	71.2	70.6	72.0	71.8
사교육비 경감 효과	-	71.9	-	72.3
향후 지속적 참여의지	71.4	71.2	72.9	75.6

자료 : 교육부(201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 가. 농산어촌 교육정책

정부 수립 이후 농산어촌 교육 정책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초등의무교육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추진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차질이 빚어지다가 1954년 '6개년 완성계획'의 입안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50년대 중반 이후 학교설립이 본격화되었다. 초등학교의 기회 확대에 이어 중등 교육 기회의 획기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1963년 사립학교법이 공포된 이후 중등 사립학교의 설립이 전국 각처에서 이뤄졌으며, 1969년 중학교 무시험입학제 시행은 중등 교육 기회의 확대가 이뤄지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아울러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 역시 중등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교육기회 확대 정책은 도시, 농산어촌 구분 없이 진행되었다. 6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집중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기회 및 교육여건의 균등화를 전제로 하는 의무교육에서 도농간 교육격차의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1967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도서벽지 학교 및 근무 교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50년대 이래로 오지벽촌까지 학교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82년부터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든 학교에 대해 인위적인 통폐합을 시작하였다. 학교 통폐합은 90년대 들어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1997년부터는 학교급간 통합운영학교가 출현하였다. 현재 학교 통폐합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학교는 통폐합 예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통폐합의 경우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통폐합 추진 초기에 통폐합 논리로 학습권 보장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투자 효율성 차원의 경제적 논리가 부각되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함께 농산어촌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여차등 보상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농산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2004년을 기점으로 잡을 수 있다. 2004년 이후를 농산어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농산어촌 지원 사업들을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계획에 종합하여 체계화한 제1차 5개년(05~'09) 기본계획에 이어 2차 5개년('10~'14)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농산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 공간으로 구상한다는 비전하에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 부문은 교육 기회 보장, 교육비 부담 경감, 교원 근무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차 5개년 시행 기간 중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과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2010년 16천개 소규모 학교에서 2012년 전체 학교로 확대되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2010년부터 3년간 2,402억원이 지원되었다. 아울러 버스 교체와 통학비 지원 등 농산어촌 학생의 원거리 통학을 위해 1,095억원이 지원되었다.

농산어촌 교육정책의 새로운 변화는 ‘교육복지’ 관점에서 농산어촌 교육의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점은 90년대 이후이며, 1995년 5.31 교육개혁의 비전으로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천명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활용되었다. 교육부는 1996년 12월에 최초로 교육복지종합대책(1997~2001)을 수립하였으나 당시 종합대책에는 직접적인 농산어촌교육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어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2004년 10월 참여복지 5개년 계획(교육복지 부문)을 수립하였다.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교육부적용 해소,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정책추진체제 구축 등의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는데, 농산어촌 교육에 관한 내용은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 농산어촌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농산어촌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 교원초빙제 확대, 향토교사 적극 육성, 농산어촌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복지 대책(2008. 12)을 마련하고 이 가운데 농산어촌 학생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원학교, 통합운영학교 재정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면 지역에 소재하는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전원학교 육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2009년 6월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다. 전원학교로 선정된 단위학교가 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사업 컨설팅, 평가 및 관리를 전담하는 사업관리전담센터로서 한국농산어촌교육연구센터를 두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역할분담을 통하여 사업학교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전원학교는 ‘학력이 우수한 학교’,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를 표방하며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두 지원하는 종합형, 시설만 지원하는 시설형,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프로그램형 등 세 가지 유형 110교로 출발하였다. 110교에 3년간(2009~2011) 총 1,391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1년 정부의 유사사업 통합 방침에 따라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전원학교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신규 통폐합본교 및 통합운영학교를 전원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2010년 30교, 2011년 18교, 2012년 15교가 3년 지원 전원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63교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수에 비해 중학교 수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중학교 30교를 3년 지원 신규 전원학교로 추가 지정하였다. 1단계 전원학교 사업이 종결된 2012년에는 1단계 사업이 종료된 전원학교와 연중돌봄학교 중에서 성과평가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1년 지원 전원학교를 공모하여 196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1단계 전원학교 사업은 3+1 시스템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전원학교는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자율학교로,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어 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산어촌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모델학교를 말한다. 또한, 전원학교는 자연체험 학습장·생태연못·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시설과 전자칠판·IP TV 등을 갖춘 첨단 e-러닝 교실을 구축하여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 간 강력한 연계 하에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의 시설·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7-3-15〉 전원학교 참여 지역 및 학교 수

(단위 : 개교)

구 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0	초	-	-	-	-	16	10	5	14	12	18	16	11	2	104
	중	-	-	-	-	2	2	2	6	6	7	4	7	-	36
	학교수	-	-	-	-	18	12	7	20	18	25	20	18	2	140
2011	초	-	-	-	-	16	13	5	16	13	27	17	12	2	121
	중	-	-	-	-	6	5	4	10	10	14	7	11	-	67
	학교수	-	-	-	-	22	18	9	26	23	41	24	23	2	188
2012	초	3	-	5	-	16	24	14	15	14	42	29	18		180
	중	-	1	3	1	10	12	7	13	13	18	14	17		109
	학교수	3	1	8	1	26	36	21	28	27	60	43	35		289
2013	초	-	-	-	-	2	6	1	6	6	22	10	4		57
	중	-	-	1	-	4	3	2	4	5	7	4	6		36
	학교수	-	-	1	-	6	9	3	10	11	29	14	10		93

자료 : 교육부,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3), 2012 전원학교 육성사업 성과분석.

〈표 7-3-16〉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도별 사업비

(단위: 억 원)

연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009년	• 첨단 e-러닝교실(110교*2억)	220							1,391
	• 종합 지원학교(55교*15억)	570	513	88					
	• 시설비 지원 학교(33교*7.5억)								
	• 프로그램 지원 학교(22교*4.5억)								
2010년	• 통합본교 프로그램 지원(30교*3천)			9	9	9			27
2011년	• 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30교*1억)			30	30	30			90
	• 통합본교 프로그램 추가 지원(18교*3천)				5.4	5.4	5.4		16.2
2012년	• 전원학교, 연중돌봄학교 재공모 학교(196교)				96.8				96.8
	- 전원학교 종합 지원학교(34교)								
	- 전원학교 시설비 지원학교(18교)								
	- 전원학교 프로그램 지원학교(10교)								
	- 연중돌봄학교(134교)								
	• 통합본교 프로그램 추가 지원(15교*3천)					4.5	4.5	4.5	13.5
계		790	513	127	141.2	48.9	9.9	4.5	1,634.5

자료: 교육부(2011),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개요.

한편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전원학교 학업성취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우수학력 학생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기초미달학생비율 달성목표(0.8%)를 2011년도에 조기 달성하였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업성취도 수준이 2010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2012년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전년도 대비 0.8% 감소하였고, 초등학교는 전년도 대비 0.2%, 중학교는 0.3%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감소되었다.

〈표 7-3-17〉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차별 학업성취도 수준

(단위: %)

구 분	우 수		보 통		기 초		미 달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2
초등학교	39.5	36.8	38.3	42.7	21.5	19.7	0.7	0.8	0.6
중학교	14.6	15.5	42.0	45.9	37.1	35.0	6.3	3.6	3.3
계	27.7	23.6	40.1	44.7	28.9	29.2	3.4	2.5	1.7

자료: 전원학교 자체평가보고서, 각 년도.

또한,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11년도 사업 성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원학교 초·중학교의 전체 학생수는 농산어촌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비 20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재학생 변화율은 전년도 대비 3.8% 하락하였고, 전국의 재학생 변화율(4.8% 하락)에 비해 감소율이 작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재학생 비율이 감소한 가운데 전체 전원학교 중 32.4%는 재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원학교가 공교육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지역 학교를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벽을 극복하고 나아가 농산어촌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인재육성의 산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유지 혹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접근을 독려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업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공동체로서 지역사회학교가 마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6개 군의 면단위 농산어촌 학교에 1개 군당 3억원, 연간 총 258억원을 기준으로 3년간(2009.3 ~ 2012.2) 재정을 지원하여 추진하였다. 연간 학생 1인당 지원액 1백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사업 학교의 학생 총수를 기준으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되 2차년도부터 시·도 교육청의 대응투자 30%를 의무화하였다.

연중돌봄학교는 학교 교육력 강화, 학생에 대한 365일 교육복지 지원을 표방하였다. 사업대상 학교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공모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지역과 학교의 교육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및 협력의지가 있는 관내 면 소재 학교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 교육청이 광역 차원의 지역교육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학교에 대해 심사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원 신청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청의 지정 사유 및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 학교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비를 조정·지원하였다. 2009년도에 378개교, 2010년에 383개교, 2011년 382개교가 선정·운영되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에서는 농산어촌 학생에게 학기중, 주말, 방학중에 학습결손을 치유하고,

돌봄 기능이 열악한 가정을 대신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여 학습과 생활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다.

〈표 7-3-18〉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정 현황

(단위 : 개, 개소)

시·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지역수	1	1	2	1	4	11	9	9	8	17	13	10	86
학교수	10	2	9	2	15	55	46	44	39	47	77	36	382

자료 : 교육부(2011), 2011년도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계획.

2009년에는 378교에 29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기본 지원액에 2009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등 지원액을 포함하여 총 230억원(지원금 140억원, 대응투자 90억원), 2011년에는 277.4억원(지원금 188억원, 대응투자 89.4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7-3-19〉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계
국고지원비	29,800,000	14,000,000	18,800,000	62,600,000
대응투자비	-	9,000,000	8,940,000	17,940,000
합 계	29,800,000	23,000,000	27,740,000	80,540,000

주 : 2009년 사업계획 수립 시 2010년부터 298억원의 30%(90억원) 대응투자 확보 의무화.

자료 :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2),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는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향상에 있다. 특히 복지적 차원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구제 여부에 주목하였다. 사업비의 1/3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투자되기도 하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의 변화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도별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중돌봄학교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연차별로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기초미달학생비율 달성목표(0.8%)를 2011년도에 조기 달성하였다. 다만 2010년 대비 2011년 우수학력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우수 학력 비율도 연차별로 향상되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은 3년간 4.5%, 2.6%,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7-3-20〉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변화

(단위 : %)

구 분	우 수			보 통			기 초			미 달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초등학교	39.3	43.8	39.0	41.3	38.2	44.5	17.6	17.0	15.8	1.8	0.9	0.7
중학교	14.1	15.9	17.9	44.1	44.3	48.5	34.4	35.3	29.8	7.4	4.5	2.8
계	27.1	30.6	26.3	42.7	41.1	46.7	25.8	25.7	25.0	4.5	2.6	2.0

자료 :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2).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의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11년도 사업 성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 만족도는 84.5점으로 조사되었고, 학부모는 82.8점, 교사는 72.1점이다. 한편, 재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연중돌봄학교 초·중학교의 전체 학생수는 2009년 대비 학교당 평균 8.4명이 감소하였으나, 면지역의 전체 학생수 감소 비율의 1/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돌봄과 교육의 기능이 혼합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자아효능감, 특기 및 적성의 인지 등 학습능력, 학교의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인식, 정서적 안정성 등 심리·정서적 상태, 인간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의식 등 사회성과 같은 제반 심리적 특성 검사 결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돌봄학교 사업은 면지역 소재 2개 이상의 학교(초등 1교, 중등 1교 포함)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요건으로 하여 지역 단위 교육네트워크 구축을 독려했다. 이를 통해, 면에 소재하는 학교가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에 대한 365일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완화될 것이며, 학생이 도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단, 본 사업이 궁극적으로 농산어촌교육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 즉, 단위 학교의 프로그램 위주 사업 보다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연중돌봄학교 사업은 2011년 전원학교 육성사업으로 편입되고 2012년 382교중에서 134교가 재공모를 통해 전원학교로 선정되어 1년간 지원을 받았다. 2012년을 끝으로 연중돌봄학교 사업은 종료되었다.

## 라.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

전국에 102개의 통합운영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극히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 제도를 1997년 법제화한 이후, 통합운영학교의 학교 급간 통합수준 확대와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최초로 7~8월 사업공모를 통하여 3년간(2010~2012) 연차적 재정지원을 추진하였다.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하는 기본 프로그램 89교, 매년 2천 5백만원을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 21교를 선정·육성하였다. 2010년 4월 1일 기준 전체 통합운영학교 102교 중에서 기본프로그램 90개, 특별프로그램 29개가 신청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총 119개 프로그램 중에서 110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기본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은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 수로는 89교가 참여하였다.

통합운영학교 육성사업은 통합운영학교 활성화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해 특히,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 모델을 육성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취지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지원하며, 통합운영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및 교육활동 및 학생집단 통합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 학교 운영 및 재정운영, 효과적인 교육활동 구성, 교사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고, 학교급간 계열성 확보를 도모하고, 통합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통합운영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과 교육을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7-3-21〉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정 현황

(단위 : 개교)

구 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중	-	-	5	1	6	7	3	6	9	-	5	42
중·고	2	-	-	3	-	13	3	11	3	5	1	41
초·중·고	-	4	1	-	-	-	1	-	-	-	-	6
합 계	2	4	6	4	6	20	7	17	12	5	6	89

자료 :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3),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2010년~2012년 3년간 총 45억을 지원하였는데, 통합운영학교 기본프로그램 지원학교 89개 교에 교당 연간 1천만원 씩 3년간 교부를 하였고, 통합운영학교 특별프로그램 지원학교 21개교에 교당 연간 2.5천만원 씩 3년간 교부를 하였다.

〈표 7-3-22〉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교부내역(2010~2012)

(단위 : 개교, 백만원)

구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기본 프로그램	학교수	2	4	6	4	6	20	7	17	12	5	6	89
	지원 금액	60	120	180	120	180	600	210	510	360	150	180	2,670
특별 프로그램	학교수	-	1	2	2	2	2	1	5	3	2	1	21
	지원 금액	-	75	150	150	150	150	75	375	225	150	75	1,575
합계	60	195	330	270	330	750	285	885	585	300	255	4,245	

자료 :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3),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한편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통합운영학교의 연차별 기초학력미달 수준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점차 낮아졌고,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2012년 전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약간 상승하였고, 중학교는 점차 낮아졌다.

〈표 7-3-23〉 통합운영학교 연차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단위 : %)

통합 유형	학교급	2010	2011	2012
초·중 통합	초등학교	2.1	1.3	1.2
	중학교	4.4	4.0	2.2
	평균	3.3	2.6	1.7
중·고 통합	중학교	5.8	3.5	5.1
	초등학교	0.0	0.0	1.6
초·중·고 통합	중학교	2.7	2.8	0.9
	초등학교	0.0	0.0	1.6
	평균	1.3	1.4	1.2

자료 :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3),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통합운영학교 육성사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12년도 사업 성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통합운영학교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전년도대비 4.4점 증가, 중학생은 7.6점 증가, 고등학생은 7.3점 증가하였다. 한편 재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재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2년 감소 비율이 2011년에 비해 낮아졌고, 마찬가지로 중·고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재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2년 감소 비율이 2011년에 비해 낮아졌다.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재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2년 감소 비율은 2011년에 비해 높아졌고, 고등학생의 경우 재학생 수가 2011년에 비해 증가되었다.

통합운영학교는 단계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통합운영학교 유형별로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의무교육과 국민공통기본교육의 일관성 차원에서, 중·고 통합운영학교는中等교육의 계열성 심화와 다양화 차원에서,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는 도서 등 고립된 지역의 학교모델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교가 획일적인 모델의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개별 학교의 자발적, 창의적 노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관계자의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 수준에서 우수 사례 발굴과 협의체 구성으로 인한 정보 공유, 적절한 재정 지원으로 인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는 전국에서 통합운영학교 6개교가 연구학교로 선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02-6913-8941

## 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 가.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다양화는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주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의 증가에 따라 학교에서도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7-3-24〉 참조). 표에는 제시되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도시에 많으나 학교 재학생 대비 비율은 농촌이 높은 편이다.

〈표 7-3-24〉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2007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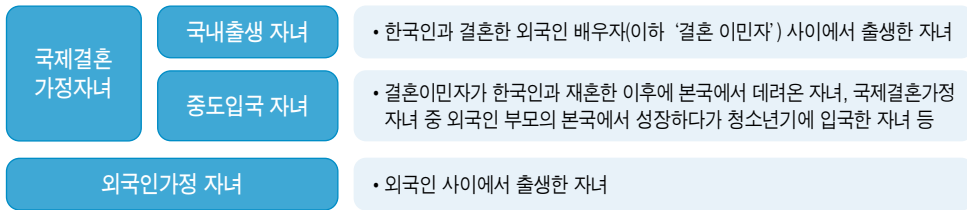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다문화 학생 수(A)	14,654	20,180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전체 학생 수(B)	7,734,531	7,617,796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19%	0.26%	0.35%	0.44%	0.55%	0.70%	0.86%

자료 : 교육부(201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보도자료, 2013. 10. 22.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은 초기에는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2010년 전후로 중도입국 청소년도 정책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2. 3. 12)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다음 [그림 7-3-12]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림 7-3-12]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이 분류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을 보면 한국 출생 학생이 82%, 중도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자녀가 각각 9%정도에 해당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중 대다수인 약 71% 정도가 초등학교에, 20%정도가 중학교에, 9% 정도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3-25> 참조).

<표 7-3-25>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2012~2013년)

(단위: 명)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출생	29,303	8,196	2,541	40,040 (85.3%)	32,831	9,174	3,809	45,814 (82.1%)
중도입국	2,676	986	626	4,288 (9.0%)	3,065	1,144	713	4,922 (8.8%)
외국인자녀	1,813	465	348	2,626 (5.6%)	3,534	976	534	5,044 (9.1%)
계	33,792	9,647	3,515	46,954	39,430	11,294	5,056	55,780
(비율)	(74.1%)	(19.7%)	(6.2%)		(70.7%)	(20.3%)	(9.0%)	

자료: 교육부(201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보도자료, 2013. 10. 22.

## 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 개요

학교 사회에 새로운 구성원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정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원 대책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4년

간('09 ~ '12) 총 7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지원방안에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초등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을 4개 정책과제로 하여 총 14개 세부 실행과제가 포함되었다. 이 지원방안은 매년 당해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던 이전과는 달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 교육청은 각 지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세움으로써,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정책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09년 9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8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참석)가 구성되었다. 주로 반기마다 이루어지는 동 위원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부처 합동) 수립, 부처간 사업 연계·조율 및 협력 등을 꾀하였다.

2012년에는 종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문화가정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선진화 방안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문화학생 교육 내실화 및 재능 발현 지원, 다문화 친화적 교육 체제 구축, 다문화학생 교육 체계화를 위한 범사회적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3년 교육부에서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방안(2013. 10. 22)을 통해 특히 공교육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 자녀를 위해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특별학급 운영 등의 정책을 보완하였다.

## 다. 주요 정책 내용

### (1)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08.2.22)하였다. 이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통해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08.2.22)하였다. 이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통해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중도입국 자녀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2월 27일에 다문화가정 동반·중도 입국 자녀 등의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을 개정하였다. 2010년에는 취학전 예비과정(3개소)과 정규 학교의 특별학습(5개소)을 설치하여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에 예비 학교를 인정하였다.

2012년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중도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다문화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방안과 다문화예비학교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정규학교 배치 전에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도록 하여 정규학교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신국에서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2013년에는 탈북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포함시켜 학력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중학교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 진입과 적응을 돕는 다문화 특별학급이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개정을 추진하였다.

## (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내실화와 재능 발현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교 적응 및 학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하여 교사, 예비 초등교사, 퇴직교원 등이 참여하는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1 멘토링 강화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방학에는 집중 캠프를 실시하여 학기 중 멘토링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특기적성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의 재능 발현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글로벌 브릿지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출신국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향상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부모의 출신국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인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2011년에는 2개 분야 4개 대학(서울교대, 카이스트, 경남대(수학, 과학), 광주교대(리더십))에서 실시되었던 것을 2012년에는 4개 분야(수학·과학, 리더십, 언어, 예체능)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하여 중등수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다솜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2012년 서울과 제천에 다솜학교가 설치되었으며, 인천에도 다솜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학교에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특화된 학교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 (3)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이중언어 강사의 활용

교원양성 단계에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강좌를 운영하여 예비교사의 다문화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9 ~ 2010년에 추진한 교대 및 국립대 사범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성과를 사립대 사범대학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중앙다문화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 전문직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부터 한국어, 모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발, 교육하여 이중언어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125명의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였으며 이들을 2012년부터 다문화 유아나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유치원,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에 강사로 배치, 활용하였다.

2013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다문화언어강사’를 추가하였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개정). ‘다문화언어강사’를 중등 영어 이외 외국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외국어 능통자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별도로 규정된 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게 이주 부모의 언어를 가르치고 모든 학생을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다문화 이해 확산과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재나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을 위한 것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학생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다문화 친화적인 교과서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교과서 검토 작업을 추진하였다. 유치원(5세 누리과정)부터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교육 내용이 범교과 학습요소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실태 분석 등 전문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원)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 상담한 교사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 심사를 거쳐 전국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상 교사 등에게는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워크숍 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학술대회나 연수의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 가. 탈북학생 입국 현황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약칭 탈북주민)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탈북청소년(정규학교에 재학하는 ‘탈북학생’을 포함한 포괄적 범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체 탈북주민은 지난 2000년에 31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 2,927명까지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6세에서 20세 이하의 탈북 청소년은 2000년에는 60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656명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하였다.

〈표 7-3-26〉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명)

대상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체 (입국자수)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2,706	1,502
6~20세 (입국자수)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78	656	306	501	253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www.unikorea.go.kr).

한편 교육부는 매년 4월 기준으로 탈북학생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탈북청소년의 기준을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데 비해서, 교육부는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을 포함하여,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 출생으로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탈북학생은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현재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은 총 2,254명이다. 이 가운데 2,022명은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232명(전체의 10.3%)의 청소년이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교육시설에서 수학 중이다. 이 밖에 정규학교나 대안학교에서 수학하지 않고 사설 학원을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7-3-2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연 도	학 교 급 별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7. 4.	341(49.6)	232(33.8)	114(16.6)	687(100.0)
2008. 4.	495(51.2)	288(29.8)	183(19.0)	966(100.0)
2009. 4.	562(49.2)	305(26.7)	276(24.1)	1,143(100.0)
2010. 4.	773(54.5)	297(21.0)	347(24.5)	1,417(100.0)
2011. 4.	1,020(60.7)	288(17.1)	373(22.2)	1,681(100.0)
2012. 4.	1,204(60.4)	351(17.6)	437(21.9)	1,992(100.0)
2013. 4.	1,159(57.3)	478(23.6)	385(19.0)	2,022(100.0)

자료 : 교육부, 탈북학생 조사 통계자료, 각 년도.

〈표 7-3-28〉 탈북청소년 수학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13. 4)	600	559	231	247	192	193	232	2,254
	1,159		478		385			
	2,022							

주 : '13. 4월 기준.

자료 : 교육부(2013), 탈북학생 조사 통계자료.

## 나. 탈북학생 교육의 문제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힘겨운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남한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입국 이전에 학습공백기가 길다는 데 있다. 북한에서 학생들은 경제난으로 출석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이 열악하여 학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은 대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학습공백기가 길다. 무엇보다도 교육내용에서 영역과 수준의 차이, 용어와 개념의 차이로 인하여 탈북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력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탈북학생의 기초학력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근거한 다문화 학생 분석(신진아 외, 2012)에서 탈북학생은 국제결혼(국내출생, 중도

입국), 외국인 집단과 함께 다문화 학생집단으로 분류되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별로 성취수준을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탈북학생들은 모든 교과에서, 다른 모든 다문화 학생집단과 비교해서 우수학력 학생 비율은 가장 낮고, 기초미달학생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국어과의 경우, 우수학력 비율을 보면, 전국 31.0%, 다문화 전체 21.4%, 국제결혼(국내출생) 22.5%, 국제결혼(중도입국) 11.9%, 외국인 20.0%인데 비해서 탈북학생은 8.2%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기초미달 학생 비율을 보면 전국 1.4%, 다문화 전체 2.7%, 국내출생(국제결혼) 1.9%, 중도입국(국제결혼) 4.8%, 외국인 8.0%인데 비해서 탈북학생은 무려 11.8%를 기록하였다. 이를 보면 탈북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북학생들은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은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 종단연구 1차 조사 결과(이향규 외, 2011년)에 의하면 학교친구들이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안다(38.9%)와 모른다(39.7%)가 비슷한 비율이다. 모른다는 답변은 중국출생의 경우(41.5%)가 북한출생의 경우(37.8%)보다 많았다. 다른 학교에 전학 간다면 부모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겠다고 답한 경우도 중국출생의 경우(69.4%)가 북한출생의 경우(64.7%)보다 높았다.

한편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교육부 조사결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학생에 비해서 크게 높다. 전체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연차적으로 4.9%(10), 4.7%(11), 3.3%(12)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0.9%(10), 2.5%(11), 2.6%(12)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8.5%(10), 4.4%(11), 3.8%(12)로 감소하고, 고등학교는 9.1%(10), 10.1%(11), 4.8%(12)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율(초 0.6%, 중 0.9%, 고 1.9%)와 비교하면 대단히 높다. 초등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최근 상승하는 이유는 가정 사정으로 인한 해외 이주나 거주지 이동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다. 탈북학생 교육의 목적 및 지원 체계

탈북학생 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다. 여기에 교육지원은 탈북청소년이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한 이후, 입국 초기부터 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는데 필요한 통합적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탈북학생 교육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탈북학생이 정규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교 밖에서 탈북청소년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탈북청소년교육은 정규학교 중심의 통합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밖에서 민간교육시설 등을 통하여 학교 밖 탈북학생이 교육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롯한 탈북주민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 라.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현황

### (1) 초기 적응교육지원 강화

탈북청소년의 초기 적응교육은 하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정규학교와 대안학교에 이르는 적응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탈북학생을 위한 표준(보충)교재 개발, 삼죽초와 하나둘 학교 지원, 협력학교와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탈북학생을 위한 표준(보충)교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보충)교재는 일차적으로 탈북 학생의 입국초기 학습 보충에 활용할 수 있는 보충 교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앞으로 통일 상황에 대비하여 남북한 표준이 되는 기본교재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탈북학생의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통일대비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2년부터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둘째, 남한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의 입국초기 단계 교육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적응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탈북학생이 입국 초기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재학하게 되는 삼죽초와 하나원 하나둘 학교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탈북학생의 초기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삼죽초에 2명의 보조교사(탈북학생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탈북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나둘학교에 교과별 교사를 파견하여 학생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한다. 셋째, 하나원 재원 생활을 마치고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학업 수준의 격차 등으로 인해 정규학교에 적응하는데 겪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비학교(하늘 꿈학교)와 특별학급(논현중)을 시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정착한 탈북 학생이 일정 기간 개별화 교육을 이수한 후 원적학교로 복귀하여 정규학교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2) 개인별 체계적 통합적 맞춤형 교육 강화

탈북학생이 정규학교에서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탈북 학생 멘토링은 정규학교의 중심 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탈북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한 사례관리 지원, 전담코디네이터,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교사, 1대1 맞춤형 교육으로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링은 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1명의 멘토교사가 선정되어 탈북학생의 학습,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탈북교사가 1대1 학습지도를 실시하여 학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탈북학생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탈북학생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탈북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을 추진하였다. 셋째,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탈북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탈북학생이 10명 이상 재학중인 15개 학교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탈북학생을 지도한다. 전담코디네이터는 탈북학생에 대한 기초 학습지도, 생활지도, 가정방문과 학부모 상담을 맡고 있다. 지난 해 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운영 지원을 하였는데, 올해부터 통일부 예산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탈북학생에 대한 교과지도, 문화체험 활동 등 정서 및 심리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3) 성장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탈북학생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사회에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서는 HOPE 프로그램, 탈북학생과 일반학생의 소통 프로그램,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탈북학생 가운데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HOPE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영어와 수학의 교과 학습능력, 그리고 예체능 분야의 잠재능력 갖춘 탈북학생을 선발하여 우수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가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 단위에서 탈북학생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남한학생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셋째, 탈북학생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캠프, 상담단, 박람회 등을 실시하였다.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진로진학상담단을 운영하였으며, 탈북학생 진로진학박람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공동 실시)를 실시하였다. 또한 탈북학생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입학확대를 확대하였다.

### (4) 탈북학생 친화적 교육기반 구축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으로 교사연수 및 연구, 상호이해 교육, 학부모교육,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회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첫째,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정규학교 교사의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 지도교사 및 관리자의 학생 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각 지역의 탈북학생 지원 체제를 체계화하기 위해 교원연구회를 확대하였다.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한 원격연수, 심화연수 등을 실시하여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탈북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지만 이에 대한 연수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실시하여 탈북학생에 대한 지도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탈북청소년 교육기관·단체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청, 복지관 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유관단체 간에 원활한 소통 및 협력연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교육포털 및 상담 콜센터 운영, 탈북학생 실태 연구, 통일대비 연구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교육, 통일대비 교육통합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통일대비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탈북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상호이해를 위한 자료개발, UCC 공모 등을 통해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사례 공모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탈북학생 담당 교사 및 전문가간에 탈북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 제8부 요약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보다 20.8%p 낮은 26.6%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 통학이나 학원 수강 등 학업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학업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7.1%에 달한다. 한편 한국 청소년의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7.3%p 낮은 9.0%를 나타내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청소년 근로자의 명목임금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청소년·청년들의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2013년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청년취업 인턴제도는 2013년에 지원 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탐색·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용 직업심리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온라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워크넷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해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용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등 구체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1년 1318 알바 신고센터를 도입하여 근로 중 피해사례를 신고받고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제8부 청소년과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제3장 청소년의 직업·진로정책

## 제 1 장

#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는 2012년 162만 6천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26.6%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22.1%, 여자 청소년은 30.9%로 남자 청소년의 군 입대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이 늦는 등의 영향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61.3%)보다 34.7%p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경제활동인구 <sup>1)</sup>	2,758	2,034	1,671	1,554	1,507	1,525	1,535	1,626
경제활동참가율 <sup>2)</sup>	36.9	33.3	28.1	26.3	25.4	25.5	25.5	26.6
· 남 자	31.2	26.7	23.1	21.0	20.4	20.2	20.6	22.1
· 여 자	41.9	39.0	32.7	31.1	29.9	30.4	30.1	30.9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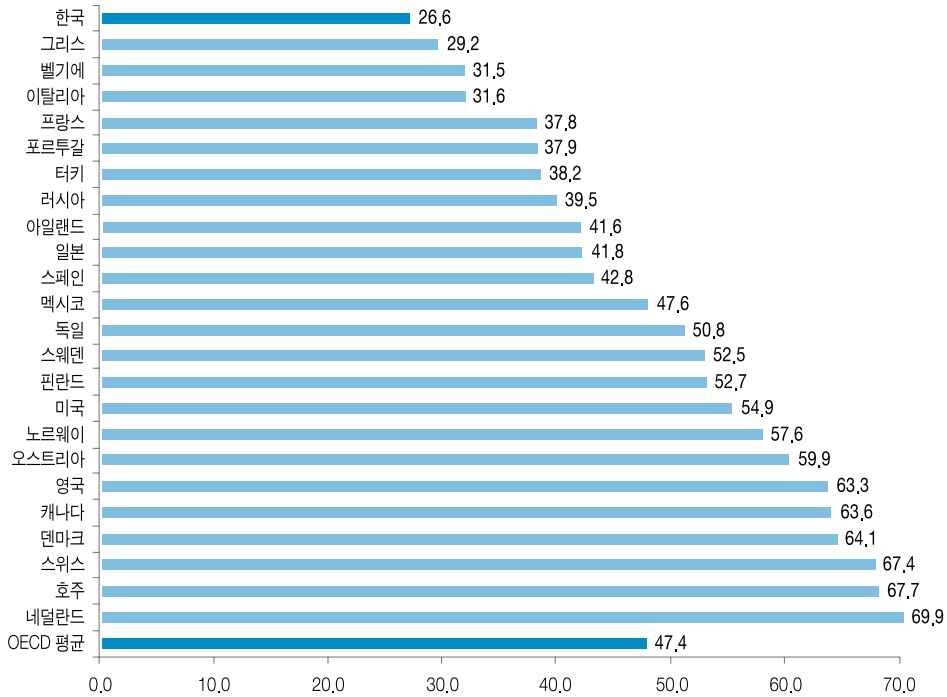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8-1-1〉에서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36.9%에서 2012년 26.6%로 10.3%p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 30%를 유지하다 2007년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성별 추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1995 : 2012 = 31.2 : 22.1)과 여자 청소년(1995 : 2011 = 41.9 : 30.9)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폭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이같이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 진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은 1995년 51.4%에서 2001년 70.5%로 증가한 이후 2010년 79.0%로 상승한 후 2012년 71.3%로 하락하였다.

[그림 8-1-1] 2012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단위 : %)



주 : 15 ~ 24세 비교.

자료 : OECD(2012). 「Employment Outlook」.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이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47.4%로 우리나라보다 20.8%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청소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는 그리스, 벨기에, 이탈리아 정도이다. 네덜란드(69.9%)나 호주(67.7%), 스위스(67.4%), 덴마크(64.1%), 캐나다(63.6%), 영국(63.3%) 등의 국가들은 60%가 넘는 높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8-1-2〉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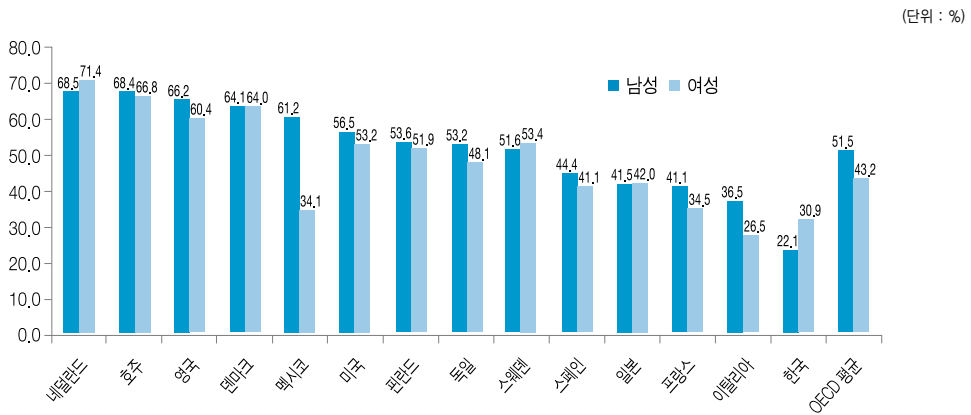
구 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5 ~ 24세	36.9	33.3	28.1	26.3	25.4	25.5	25.5	26.6
남 자	31.2	26.7	23.1	21.0	20.4	20.2	20.6	22.1
여 자	41.9	39.0	32.7	31.1	29.9	30.4	30.1	30.9
15 ~ 19세	12.0	9.1	7.3	6.5	6.2	6.9	7.6	7.7
남 자	9.5	8.0	6.5	5.6	4.9	5.5	6.3	6.3
여 자	14.5	10.3	8.1	7.5	7.5	8.5	9.0	9.1
20 ~ 24세	63.1	57.2	52.6	50.1	49.2	48.9	48.0	48.9
남 자	58.8	49.8	47.3	43.9	44.1	42.7	42.3	43.3
여 자	66.1	62.6	56.4	54.6	53.0	53.5	52.3	5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연령계층별·성별로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12.0%에서 2009년 6.2%로 떨어졌다가 2012년 7.7%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4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63.1%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2년 48.9%로 낮아졌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참가율이 낮아진 것은 20~24세 남자 청소년들로 1995년 58.8%에서 2012년 43.3%로 15.5%p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 비해서는 1.0%p 높아졌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자 청소년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의무복무제의 영향으로 대학졸업 시점이 여자보다 늦고 입영대기로 보내는 시기 등이 있어 여자 청소년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4%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은 12.3%p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8-1-2] 2012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자료 : OECD(2012), 「Employment Outlook」.

## 2

##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2012년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47만 8천 명으로 2011년에 비해 약 3천 명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집 안에서 가사를 맡고 있는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학생,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등이 포함된다.

육아와 가사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1.8%로 2004년 이후 가장 적은 비중이며, 학교 통학이나 학원 수강 등을 의미하는 재학·수강은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87.1%를 기록했다. 청소년이라는 연령대의 특성상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 수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현황 추이

(단위 : 천명, %)

연 도	비 경제 활동인구		육아 가사		재학 수강		쉬었음		그 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4년	4,136	100.0	143	3.5	3,527	85.3	173	4.2	293	7.1
2005년	4,079	100.0	90	2.2	3,488	85.5	185	4.5	317	7.8
2006년	4,176	100.0	81	1.9	3,632	87.0	158	3.8	305	7.3
2007년	4,266	100.0	81	1.9	3,764	88.2	137	3.2	284	6.7
2008년	4,365	100.0	86	2.0	3,852	88.3	138	3.2	289	6.6
2009년	4,427	100.0	88	2.0	3,887	87.8	162	3.7	291	6.6
2010년	4,456	100.0	79	1.8	3,888	87.3	155	3.5	334	7.5
2011년	4,481	100.0	83	1.8	3,901	87.1	179	4.0	318	7.1
2012년	4,478	100.0	79	1.8	3,900	87.1	185	4.1	314	7.0

주 : 재학, 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과 기관수강 등을 포함. 그 외는 취업준비, 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결혼준비, 구직 활동, 발령대기, 진학준비, 기타 등을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도 아니면서 취업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를 추려내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15~24세)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2년 18만 5천 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05년에 4.5%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3.2%로 감소하였는데, 2009년에 다시 3.7%로 증가했고, 2010년은 다시 3.5%로 감소했다가 2011년 4.0%, 2012년 4.1%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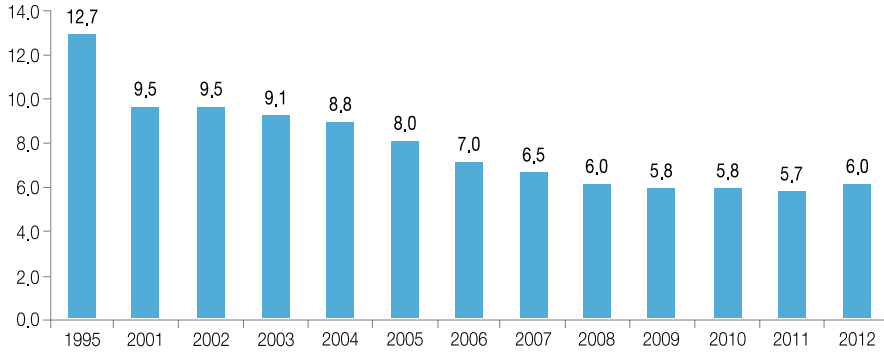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2012년 15~24세 청소년 취업자는 147만 9천 명으로 2011년(138만 7천 명)에 비해 9만 2천 명이 증가하였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의 59.4% 보다 35.1%p 낮은 24.2%로 나타났다.

[그림 8-1-3]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전체 취업자(2,468만 명)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나타나 2011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1995년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대학 진학률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1998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청년 고용률의 하락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계층별로 취업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취업자 중 15~19세의 비율은 2011년 16.4%에서 2012년 15.6%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20~24세의 취업자 비율은 83.6%에서 84.4%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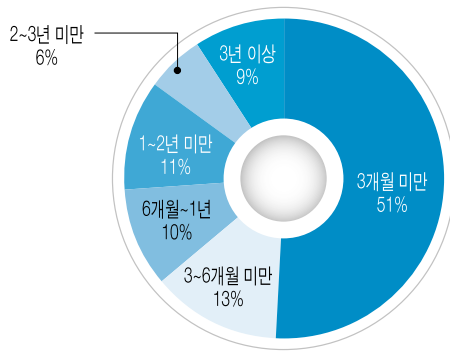
〈표 8-1-4〉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5~24세	1,524	100.0	1,410	100.0	1,359	100.0	1,375	100.0	1,387	100.0	1,479	100.0
남자	577	37.9	522	37.0	510	37.5	514	37.4	523	37.7	590	39.9
여자	947	62.1	887	63.0	848	62.5	861	62.6	863	62.3	890	60.1
15~19세	211	13.9	190	13.5	178	13.1	204	14.8	227	16.4	230	15.6
남자	98	6.4	83	5.9	72	5.3	81	5.9	96	7.0	97	6.6
여자	113	7.4	107	7.6	106	7.8	123	8.9	130	9.4	133	9.0
20~24세	1,313	86.1	1,220	86.5	1,181	86.9	1,171	85.2	1,160	83.6	1,249	84.4
남자	479	31.5	439	31.1	438	32.2	433	31.5	427	30.8	497	33.3
여자	835	54.6	780	55.4	743	54.7	738	53.7	733	52.9	757	5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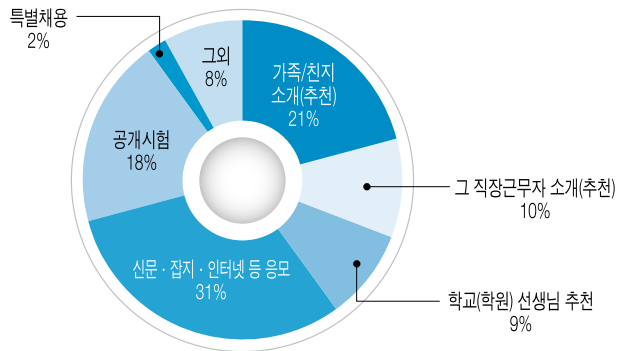
[그림 8-1-4]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자료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청(소)년 취업자가 첫 취업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이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3~6개월 미만이 13%, 6개월~1년 미만이 10%, 1~2년 미만이 11%, 2~3년 미만이 6%, 3년 이상이 9%로 나타났다. 학교를 졸업(혹은 중퇴)한 후 첫 취업을 하는 데에는 평균 11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1-5]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자료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5~29세 청소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가족/친지나 직장 근무자, 학교 선생님 등의 추천을 통한 이른바 '연고취업'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가 31%, 그리고 공개시험은 19%를 차지하였다. 연고취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친지의 소개나 추천이 21%, 직장 근무자의 소개나 추천이 10%, 그리고 학교 선생님 추천이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2012년 전체 청소년 실업자는 14만 6천 명, 실업률은 9.0%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9.7%)이 여자 청소년(8.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15세 이상 전체 실업자는 85만 5천 명으로 실업률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8-1-5〉 청소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청소년 실업자 수 <sup>1)</sup>	173	208	180	147	145	149	150	148	146
○ 청소년 실업률 <sup>2)</sup>	6.3	10.2	10.0	8.8	9.3	9.9	9.8	9.6	9.0
• 남 자	7.8	12.3	11.7	11.4	11.5	11.9	11.2	12.1	9.7
• 여 자	5.3	9.0	9.0	7.2	7.9	8.6	9.0	8.1	8.5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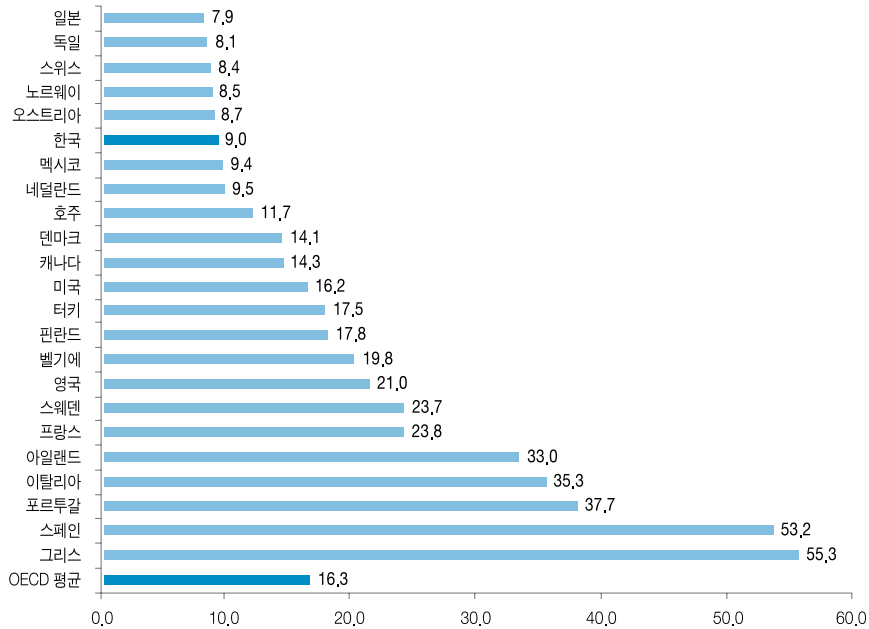
2)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청소년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6.3%, 2002년 8.5%이었으나 2003년 10.1%로 높아진 이후 10% 이상의 실업률에 머무르다 2007년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 9.9%까지 실업률이 상승했으나 2012년에는 9.0%로 하락한 상태이다.

[그림 8-1-6] 청소년 실업률 국제비교

(단위 : %)



주 : 15 ~ 24세 비교.

자료 : OECD(2012). 「Employment Outlook」.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전체 평균(16.3%)보다 7.3%p 낮아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실업 문제가 최대 사회 현안 중 하나인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실업률은 각각 55.3%, 53.2%, 35.3%, 23.8%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산학협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취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은 각각 8.1%와 7.9%로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하위권임에도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청소년들의 학교 재학률이 워낙 높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청소년 실업률은 15~19세가 8.8%로 20~24세(9.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4세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9.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 실업률은 12.1%에서 9.7%로 2.4%p 하락하였고, 여자 청소년 실업률은 8.1%에서 8.5%로 0.4%p 상승하였다. 15~19세의 남자 청소년 실업률은 12.2%에서 2.7%p 하락했고, 20~24세 남자 청소년 실업률은 전년도보다 2.3%p 하락했다. 15~19세의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전년에 9.7%에서 8.4%로 1.3%p 낮아졌고, 20~24세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7.8%에서 8.5%로 0.7%p 상승하였다.

〈표 8-1-6〉 연령계층별·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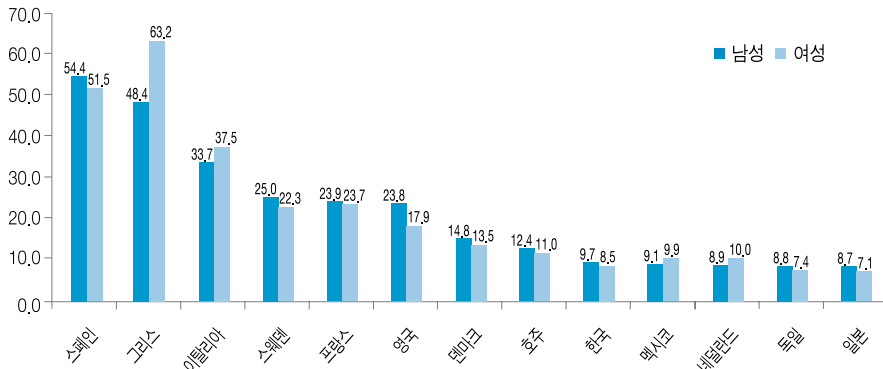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15~24세	147	8.8	145	9.3	149	9.9	150	9.8	148	9.6	146	9.0
남 자	74	11.4	68	11.5	69	11.9	65	11.2	72	12.1	64	9.7
여 자	73	7.2	77	7.9	79	8.6	85	9.0	76	8.1	83	8.5
15~19세	22	9.3	22	10.2	25	12.2	28	11.9	27	10.8	22	8.8
남 자	10	9.5	12	12.2	13	15.1	15	15.1	13	12.2	10	9.5
여 자	11	9.2	10	8.6	12	10.3	13	9.6	14	9.7	12	8.4
20~24세	126	8.7	123	9.2	124	9.5	122	9.5	121	9.4	124	9.0
남 자	64	11.7	64	11.4	56	11.4	50	10.4	59	12.1	53	9.8
여 자	62	6.9	67	7.9	67	8.3	72	8.9	62	7.8	71	8.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그림 8-1-7] 2012년 성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2), 「Employment Outlook」.

OECD 국가들의 청소년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청소년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액 및 초과급여 기준으로 19세 이하가 13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7.6%p 증가하였고, 20~24세는 161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2.7%p 상승하였다.

2012년 20~24세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153만 6천 원, 전문대졸의 경우 161만 8천 원, 대학교졸은 176만 8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간의 임금 격차가 전문대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보다 작음을 보여준다. 증감률을 보면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명목임금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명목임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선회했다.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 천원, %)

연 도	임 금 수 준		증 감 률	
	19세 이하	20~24세	19세 이하	20~24세
2001	792	877	10.8	5.3
2002	874	978	10.4	11.5
2003	903	1,047	3.3	7.1
2004	973	1,112	7.8	6.2
2005	1,059	1,200	8.8	7.9
2006	1,167	1,285	10.2	7.1
2007	1,197	1,324	2.6	3.1
2008	1,166	1,377	-2.6	4.0
2009	1,106	1,381	-5.2	0.3
2010	1,022	1,427	-7.6	3.3
2011	1,267	1,575	24.0	10.4
2012	1,363	1,618	7.6	2.8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표 8-1-8〉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 천원, %)

연 도	임 금 수 준			증 감 륜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2001	868	869	994	4.6	5.6	8.4
2002	970	945	1,111	11.8	8.7	11.8
2003	1,029	1,018	1,200	6.1	7.7	8.0
2004	1,095	1,098	1,218	6.4	7.9	1.5
2005	1,174	1,190	1,306	7.2	8.4	7.2
2006	1,262	1,255	1,416	7.5	5.5	8.5
2007	1,294	1,304	1,450	2.5	3.9	2.5
2008	1,334	1,355	1,510	3.1	3.9	4.1
2009	1,334	1,365	1,513	0.0	0.1	0.1
2010	1,365	1,403	1,563	2.3	2.8	3.3
2011	1,523	1,548	1,712	11.6	10.3	9.5
2012	1,536	1,618	1,768	0.8	4.5	3.3

주 : 20~24세 이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표 8-1-9〉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2003	전체	23.5	201.8	23.4	204.7	23.6	195.2
	19세 이하	23.5	202.3	23.8	211.7	23.4	197.8
	20~24세	23.6	198.9	23.7	212.0	23.5	192.8
2004	전체	24.4	209.5	24.3	212.1	24.7	203.5
	19세 이하	24.5	208.4	24.6	215.1	24.5	204.5
	20~24세	24.6	207.5	24.7	220.3	24.6	200.8
2005	전체	23.2	201.4	23.1	212.1	23.5	194.8
	19세 이하	23.4	198.9	23.5	215.1	23.3	196.4
	20~24세	23.5	198.8	23.8	220.3	23.3	192.1
2006	전체	22.9	198.0	22.9	200.3	23.0	192.8
	19세 이하	23.3	196.8	22.9	200.3	23.4	195.5
	20~24세	23.1	197.0	23.6	209.5	22.8	190.9
2007	전체	22.3	191.5	22.2	194.0	22.3	186.2
	19세 이하	22.6	200.2	23.1	204.4	22.3	198.4
	20~24세	22.4	193.0	23.0	205.8	22.1	186.8
2008	전체	21.8	188.7	21.9	191.6	21.8	182.6
	19세 이하	21.7	185.6	21.0	176.8	22.2	192.0
	20~24세	21.9	188.9	22.3	204.6	21.7	181.3
2009	전체	22.8	194.8	22.7	197.2	22.8	189.6
	19세 이하	21.2	182.1	21.2	186.9	21.2	179.9
	20~24세	22.6	193.9	22.7	205.9	22.6	188.5
2010	전체	22.5	192.8	22.5	195.7	22.5	186.9
	19세 이하	19.8	163.5	19.7	165.4	19.9	162.2
	20~24세	22.5	189.9	22.6	200.3	22.4	184.9
2011	전체	22.2	189.3	22.2	192.7	22.2	182.4
	19세 이하	20.7	172.6	20.3	172.6	20.9	172.6
	20~24세	22.1	187.9	22.4	200.0	22.0	181.5
2012	전체	21.4	182.3	21.4	185.8	21.3	175.7
	19세 이하	20.1	170.5	19.7	166.9	20.4	172.7
	20~24세	21.3	181.6	21.7	194.3	21.1	174.9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2012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9세 이하 청소년 노동시간(170.5시간)이 20~24세(181.6시간)보다 11.1시간 짧았다. 성별의 경우, 19세 이하는 여성 청소년의 근로시간이 더 길고, 20~24세는 남성의 근로시간이 더 긴 경향을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 : 02-2629-7382



## 6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생활과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3년 수행한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은 전국 중·고등학생 10,119명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광범하게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조사된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16.6%, 여자 청소년의 17.4%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7%에 불과한 반면, 고등학생은 26.9%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열별로 비교해 본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은 22.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특성화 고등학생은 절반을 넘는 50.2%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해 계열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목고 및 자율고 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4.5%에 불과했다. 학업 성적의 경우, 학업 성적이 높은 편이라고 답한 학생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2.0%인 데 비해, 학업 성적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3%로 나타나, 학업 성적이 낮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1-1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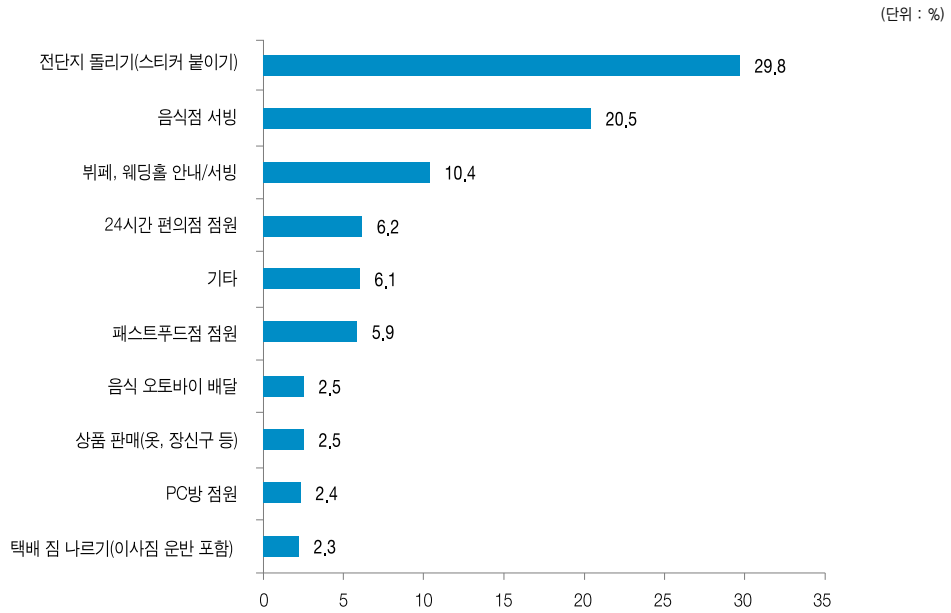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 자	5,276	16.6	83.4
	여 자	4,777	17.4	82.6
학교급	중학교	4,931	6.7	93.3
	고등학교	5,123	26.9	73.1
고교 계열	일반계	3,691	22.8	77.2
	특성화	913	50.2	49.8
	특목/자율	519	14.5	85.5
학업 성적	낮은 편	3,381	22.3	77.7
	중간	4,086	15.6	84.4
	높은 편	2,543	12.0	88.0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를 조사한 결과,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붙이기)가 29.8%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서빙(20.5%), 뷔페·웨딩홀 안내/서빙(10.4%), 24시간 편의점 점원(6.2%), 기타(6.1%), 패스트푸드점 점원(5.9%), 음식 오토바이 배달(2.5%), 상품 판매(웃, 장신구 등)(2.5%), PC방 점원(2.4%)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8-1-8] 지금까지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제 2 장

##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13년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신규졸업자는 635,827명으로 이들 중 99.7%인 633,990명이 고등학교 및 기타 학교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진학자 중 중졸 취업 인구수는 1천여 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진학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은 70.8%이다.

〈표 8-2-1〉 2013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 명, %)

구 분	졸업자수	진 학 자						
		비율(%)	총 계		일 반 계		전 문 계	
계	계		여	계	여	계	여	
총 계	635,827	99.7	633,990	304,547	448,792	221,263	185,198	83,284
국 립	2,081	99.7	2,074	997	1,319	670	755	327
공 립	519,970	99.7	518,470	249,764	368,186	181,521	150,284	68,243
사 립	113,776	99.7	113,446	53,786	79,287	39,072	34,159	14,714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13년도 고등학교 신규졸업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489,423명, 전문계 고등학교 141,774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각각 5,297명과 50,14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4.8%인 데 비해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67.9%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자는 상당수가 재수생으로 추정된다.

〈표 8-2-2〉 2013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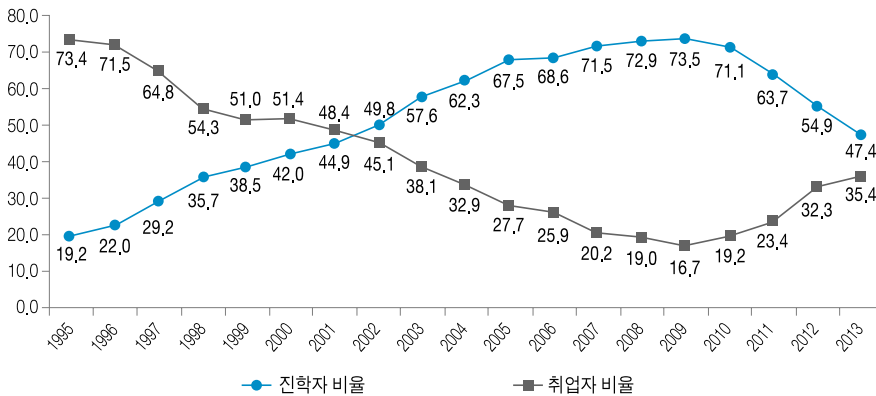
구 분	합 계		일 반 계		전 문 계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졸업자	631,197	295,217	489,423	236,841	141,774	64,350
진학자	446,474	219,922	379,290	187,085	67,184	32,837
취업자	55,443	24,759	5,297	2,242	50,146	22,517
무직자	99,162	389,841	81,262	32,324	17,900	6,660
입대자	1,389	-	607	-	782	-
미상	28,729	11,552	22,967	9,216	5,762	2,336
취업률	30.2	32.9	4.8	5.1	67.9	71.5

주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그림 8-2-1] 전문계 신규 졸업자의 진학자와 취업자 비율 추이

(단위 : %)



전문계 고등학교 신규졸업자들 중 진학자와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진학자 비율은 47.4%로 취업자 비율(35.4%)보다 높은 편이다. 졸업 후 취업이라는 완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진학자 비율이 취업자 비율보다 높아진 시기는 2002년(진학자비율 : 취업자 비율 = 49.8% : 45.1%)으로 그 이전까지는 취업자 비율이 진학자 비율보다 높았으나 2002년 이후에는 졸업자 대비 진학자 비율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진학자 비율은 73.5%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취업자 비율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13년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들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졸업자 2,536명 중 취업자는 343명으로 진학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취업률은 24.0%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에 비해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8-2-3〉 2013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 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시각장애	227	83	103	40	91	30	33	13
청각장애	131	58	44	25	55	23	32	10
정신지체	1,829	641	804	265	161	50	864	326
지체장애	197	85	82	28	14	5	101	52
정서·행동장애	152	25	71	11	22	5	59	9
합 계	2,536	892	1,104	369	343	113	1,089	410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 4 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대학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5,142명 중에서 취업자는 286,896명이며, 건강보험DB와 연계한 취업률은 59.3%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들의 경우는 184,817명 중 102,621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DB와 연계한 취업률은 61.2%였다. 일반대 졸업자들의 건강보험DB와 연계한 취업률은 55.6%로 전문대에 비해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8-2-4〉 2013년 대학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sup>1)</sup>		전 문 대		일 반 대	
	전 체	여 자	전 체	여 자	전 체	여 자
졸업자	555,142	282,197	184,817	107,024	294,952	144,003
졸업자 중 유학생	17,415	9,438	1,108	552	10,418	5,759
진 학 자	39,641	18,134	9,635	5,697	25,753	10,765
취업자	286,896	139,343	102,621	59,597	140,155	63,937
입 대 자	4,103	-	1,976	52	1,631	99
취업불가능자	176	78	52	20	99	51
기 타	192,284	106,490	63,530	37,230	109,639	59,345
미 상	4,522	2,524	1,528	889	2,469	1,355
제외대상	10,105	6,190	4,367	3,039	4,788	2,791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	59.3	56.1	61.2	61.0	55.6	51.3

1) 전문대, 일반대 외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대학원, 사내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수치임.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취업통계연보」.

전문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졸업자는 31,391명 중 12,719명이 취업해 가장 낮은 취업률(46.1%)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교육계열 졸업자는 9,649명 중 7,535명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81.9%)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의약계열(70.8%)과 공학계열(65.6%)의 취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2-5〉 2013년 전문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계열	인 문	사 회	교 육	공 학	자 연	의 약	예체능
졸업자		7,201	55,595	9,649	40,369	13,226	27,386	31,391
졸업자 중 유학생		77	423	20	374	32	10	172
진 학 자		839	3,192	212	1,499	567	922	2,404
취업자		3,066	29,685	7,535	24,482	7,029	18,105	12,719
입 대 자		82	521	5	535	163	224	446
취업불가능자		6	9	1	11	16	1	8
기 타		2,892	19,742	1,637	12,556	5,018	7,363	14,322
미 상		98	342	24	278	99	116	571
제외대상		141	1,681	215	634	302	645	749
취업률		50.6	59.6	81.9	65.6	57.9	70.8	46.1

주 : 취업률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임.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취업통계연보」.

〈표 8-2-6〉 2013년 일반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 계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졸업자	38,360	89,298	15,238	68,719	35,257	15,041	33,039
졸업자 중 유학생	1,682	5,858	157	1,220	575	58	868
진학자	3,486	3,048	866	8,228	6,861	516	2,748
취업자	14,844	42,328	6,471	39,447	14,389	10,121	12,555
입대자	202	438	118	302	133	44	394
취업불가능자	22	30	5	17	6	4	15
기타	15,656	35,607	7,073	18,651	12,755	4,101	15,796
미상	539	906	70	435	275	20	224
제외대상	1,929	1,083	478	419	263	177	439
취업률	47.8	53.7	47.5	67.4	52.5	71.1	43.9

주: 취업률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임.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취업통계연보」.

이어서 일반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의약계열 졸업자는 15,041명 중 10,121명이 취업해 71.1%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예체능계열 졸업자는 33,039명 중 12,555명이 취업해 가장 낮은 취업률(43.9%)을 보여주고 있다.



## 제 3 장

# 청소년의 직업·진로정책

### 1

## 청소년고용촉진대책

### 가.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기별 청년고용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종합대책, 부문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03년에는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해외취업 등 장단기 대책을 종합한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2005년에는 학교-노동시장 간 이행 원활화에 중점을 둔 ‘청년고용촉진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촉진대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고졸이하 학력 청년층의 실업자가 전체 청년실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실업률도 전체 청년실업률보다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이 마련·시행되었다.

2007년도에는 그간의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2010년까지 연장키로 하고 청년학생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학교의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취약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2008년에 들어서서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국내노동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성장을 주도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학·관 협약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2009~2013년) 해외취업지원(5만명), 해외인턴(3만명), 해외자원봉사(2만명)를 통해 총 10만 명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취업애로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친화적 일자리지원, 직업체험 확대,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청년고용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추가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2009년 말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어 고용 상황도 조금씩 나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쏠림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이 우려되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보고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의 정보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전용 일자리 중개시스템(잡영)을 구축하고 산학연계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향후 2년간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 개 이상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차 프로젝트는 일터 학습의 장 확충,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 강화, 지방대생을 위한 반듯한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청년 벤처 창업과 벤처 공동채용 확대 등의 대책을 담았다.

2013년 10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안에서 30대 미취업자들이 시행령상의 청년의 나이(15~29세) 규정으로 인해 취업기회 제한을 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청년 나이를 만 34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고용지원 정책의 일환인 청년취업 인턴제도는 2013년에 지원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인턴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창직인턴제 사업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청년창직인턴제도는 청년의 창직,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선배 창업인으로부터 창직, 창업에 필요한 지식, 경험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나. 직업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고용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올바른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CAP+,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올라 프로그램, 취업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은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훈련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만 15~29세)을 대상으로 총 4.5일간(27시간) 진행되며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취’ 프로그램은 구직의욕과 취업자신감이 낮은 만 18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효능감 제고 및 구직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5일(3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희망’ 프로그램도 만 18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원만한 사회진출 및 적응을 돕기 위해 대인 관계 향상과 의사소통 개선에 초점을 두고 4일(23시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라(all-A)’는 청년층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이 극히 저하되어 원활한 직업 생활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4일간(23시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며 삶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취업캠프’는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구직의욕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합형 과정이다.

청소년 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인 잡스쿨(Job School)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2일짜리 프로그램이다. 첫날은 진로특강을 듣고, 둘째날은 직업과 관련된 대학 학과와 산업분야의 직업 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보호관찰소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스쿨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1~6개월)은 직업현장에서 직접 일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이 장시간 근로제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수시간을 개정해 1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2012년부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잡월드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잡월드에서 ‘골라답자 나의 꿈’, ‘가로세로 직업찾기’ 등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다.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알맞은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심리 검사를 비롯한 직업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진로 진학상담교사, 취업지원관, 직업상담원, 커리어코치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용센터와 워크넷에서는 각종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검사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것으로 청소년 및 청년용 직업심리검사 14종(초등학생 진로인식 검사,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자가탐색형,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청소년 적성검사(중/고), 청소년 직업인성검사(중1~고2), 청소년 진로발달검사(중2~고3), 직업가치관검사(중3~), 학과(전공) 흥미검사(고1~고3), 창업진단검사, 영업직무 기본역량검사를 비롯하여, 만 18세 이상의 청년을 위한 직업선택도검사, 직업적성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구직효율성검사, 창업진단검사, 영업직무 기본역량검사, IT직무기본역량검사, 직업전환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단위 : 명)

연 도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	계
2002	173,121	225,687	398,808
2003	189,495	250,132	439,627
2004	228,866	384,395	613,261
2005	247,333	304,028	551,361
2006	253,709	321,631	575,340
2007	200,100	252,862	452,962
2008	132,114	237,445	359,559
2009	133,085	189,960	323,045
2010	153,820	394,630	548,450
2011	341,301	1,219,934	1,561,235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2).

〈표 8-3-2〉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단위 : 명)

연 도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적성 검사	구직효율성 검사	구직욕구 진단검사	창업진단 검사	직업전환 검사 등	계
	S형	L형						
2002	131,370	76,914	12,043	2,156	17,270	1,740	1,802	243,295
2003	98,710	69,839	11,022	1,837	12,363	935	336	193,771
2004	159,315	89,724	26,833	5,605	9,798	19,199	8,043	308,719
2005	97,400	80,604	17,679	2,064	23,586	1,647	692	222,980
2006	117,028	87,636	23,547	2,289	5,865	2,504	1,194	240,063
2007	80,207	78,713	15,457	1,334	5,123	842	79	181,755
2008	134,200	93,843	41,887	6,323	16,333	6,272	6,158	243,295
2009	145,582	121,953	117,524	19,889	30,385	8,610	9,528	245,297
2010	148,558	142,173	142,277	19,512	24,592	9,503	16,418	503,033
2011	172,328	182,342	149,230	21,816	31,328	9,050	17,123	583,217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2).

주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용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함.

아울러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서, 초·중·고·대·특성화고용 진로 지도프로그램(CDP), 사회과·과학과 진로탐색자료(중·고, 특성화고 취업지원로드맵, 대학교 취업 지원로드맵), 직업카드, 직업동영상 활용매뉴얼, 사이버진로교육원 이러닝콘텐츠 등을 비롯한 진로 교육 자료와 진로지도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용으로 2003년도에 개발·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초등 2007년 개정, 중학교 2011년 개정)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0년 개발 보급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로지도프로그램(CDP)은 초·중·고·특성화고·대 등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 학기용 자료로서 총 5종으로 개발·보급되었으며, 교사용 매뉴얼과 학습자용 워크북, 수업진행용 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성화고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학교급(특성화고/대학교)에 따라 학년별로 강조해야 할 구직역량과 이를 위한 활용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교급별 취업지원 로드맵을 2010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및 교과통합형 진로지도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과·과학과 세부 과목들에 대해 단위별 진로지도를 위한 탐색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학부모대상 진로특강 자료, 직업심리검사 해석을 위한 동영상과 슬라이드 등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로 보급하였다.

카드형태의 직업진로교육 매체인 '직업카드' 역시 전국 고용센터와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되어 청소년워크넷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직업진로지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적 진로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진로교육센터(<http://cyber-edu.keis.or.kr>)를 개원하여 이력서 작성과 면접준비에 필요한 강좌 등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및 대학 취업관계자와 취업지원관, 담당공무원, 커리어코치, 민간 직업상담원 및 취업알선원 등의 직업진로지도 관련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직업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은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데 2011년에는 초·중·고 일반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 학교 취업지원관, 교장·교감·장학사 등을 위한 진로지도전문화 교육과, 대학(교) 취업 및 경력개발 담당자, 지자체 및 민간취업관련기관 담당자, CAP+, 취업희망 등을 비롯한 집단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 라.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2011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 대표직업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2003년부터 온라인 서비스(<http://www.work.go.kr>) 형태로 직업정보는 물론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전공)정보 및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

사전, 「학과정보」, 「신생 및 이색직업」 등 초등학교에서 성인까지의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자료도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입체적인 매체를 통해 생생한 직업 정보 확인과 직업탐색이 가능하도록 ‘내일을 Job아라’와 ‘Work & Life’를 비롯한 직업 및 취업 지원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이 모든 자료는 각급 학교에 DVD로 배포되는 한편, 방송 송출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또한 이들 매체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지도기법이 소개된 직업동영상 활용 매뉴얼도 함께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1년부터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과정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마.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취업지원 확대

1998년 11월 이후 인터넷 방식의 「워크넷(Work-Net, www.work.go.kr)」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일자리정보, 직업정보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고용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력서작성과 구직신청, 채용정보 북마크, 알선요청, 직업상담 등의 개별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 메일링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취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워크넷에 「대기업채용정보」 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대기업의 구인정보를 취합·제공하였고, 「지역고용동향」 항목의 신설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한 각종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밖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소개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동영상 이력서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취업자료실」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여 취업관련뉴스와 가이드, 동영상, 직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직종별, 지역·산업단지별, 역세권별, 대기업채용정보, 단시간 근로채용정보, 전공계열별, 청년인턴인재정보 등 특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채용대행을 지원할 수 있는 「e-채용마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채용마당」은 기업에게는 채용에 따른 비용, 인력, 시간을 절감시키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구직자에게는 우수기업체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워크넷상의 구인·구직표 서식 개정 및 인증시스템 강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 및 제공을 통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였다.

2011년부터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일자리 정보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차세대 워크넷종합고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가.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정부는 2005년 6월 20일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은 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대책으로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방안,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의 제고방안,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방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성과점검을 통한 평가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2008년 6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나.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중 연소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서 법정 근로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1~2월, 7~8월)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연소근로자 보호조항과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 1,940개소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58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7,581건은 시정조치, 7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으며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청소년 사용 금지 직종에 대한 불법 근로를 지도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 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등에 대한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교사에 대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외의 종합대책에서는 사례별 구제방법 지정, 직업 교육 연구시범학교 워크숍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전문계 고교 CEO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은 관련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문계 고교 및 평생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인문계 고교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중·고교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프로그램인 잡스쿨(Job School) 운영 시 학생에 대한 직업의식 및 법정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실 운영 시 취업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교실에는 경찰서장 등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 순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1:1 집중상담이 진행되는 상담교실 등이 있다.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다수고용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연소자 근로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 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 10월 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주 협회 등과 협약 체결, 온라인 사이트 운영, 지역 청소년단체와 공동 캠페인 전개, 팸플릿·포스터 제작·배포 등 중·고등학교 및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2006년에 구축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싸이월드 타운 홈페이지에 이어, 2008년 3월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 이웃맺기 이벤트, 오행시 컨테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령 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청소년 스스로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정책프로슈머가 될 수 있도록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제1기: 20개 팀, 제2기: 30개 팀, 제3기: 30개 팀)를 선발하였고, 월별 홍보미션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노동관계법령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청소년 리더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이 연계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전개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알바십계명 홍보를 위한 '알·지·최·서·방 UCC 공모전' 개최하고 수상작을 활용해 청소년 근로 권익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 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고용노동부는 워크넷(<http://work.go.kr>)을 통해 청소년층의 진로·직업·진학·취업가이드, 직업심리검사, 청소년 직장체험, 진로와 직업 이터닝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잡영(jobyoung)을 통해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워크넷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연소근로자들이 권리구제방법을 몰라서 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1318 알바신고센터」를 2011년 도입하였다. 1318 알바신고센터는 각급 학교에 설치되고 학교에 배치된 전담교사(생활지도교사 등)가 수집된 피해사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총 47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근로감독관은 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개설, 알바신고센터 확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 전문인력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 사례를 감시·적발하게 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제9부 요약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된 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1년 4.4%에서 2012년 5.1%로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재산범을 포함한 생계형 범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은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고, 범죄예방교실과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명예경찰소년단을 활성화하였다. 검찰은 우범소년 결연사업, 학교담당검사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법무부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과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기소유예 대상자 및 대안교육명령 대상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실시, 청소년적성검사실 운영, 법교육과 보호자특별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기관으로는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이 있으며, 각 기관에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비행청소년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 제9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제1장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제2장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 제 1 장

#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 1

## 청소년 비행의 동향

지난 5년간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비율을 보면 2008년에는 5.5%이었다가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2011년에는 4.4%를 나타내었고, 2012년에는 약간 증가하여 5.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소년범 구성비율이 2009년부터 감소한 것은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도에 비율이 약간 증가한 것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이 수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9-1-1〉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구성비율

(단위 : 명, %)

연 도	구 분	전체범죄자	소년범죄자	구성 비율(%)
2008		2,472,897	134,992	5.5
2009		2,519,237	113,022	4.6
2010		1,954,331	89,776	4.5
2011		1,907,641	83,068	4.4
2012		2,117,737	107,490	5.1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2012년 소년범죄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재산범이 47,605명(4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폭력범이 32,774명(34.7%), 교통사범이 12,103명(11.3%), 강력범이 2,790명(2.6%),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759명(0.7%) 순이었다. 재산범이 2008년도에 39,688명(29.4%)이었던 것에 반해, 2012년에 47,605명(44.3%)로 재산범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재산범 중 절도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형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9-1-2〉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34,992	113,022	89,776	83,068	107,490	
강력범	소 계	3,016	3,182	3,106	3,289	2,790
	흉악범	1,427	1,608	999	1,268	1,104
	성폭력	1,589	1,574	2,107	2,021	1,686
폭력범	소 계	34,067	29,488	23,276	22,233	32,774
	공 갈	1,046	1,495	1,422	1,509	2,827
	폭행·상해 등	33,021	27,993	21,854	20,724	29,947
재산범	소 계	39,688	45,774	40,478	37,978	47,605
	절 도	33,073	38,494	33,534	31,380	37,256
	횡령 등	1,855	1,664	1,483	1,528	2,448
	장 물	571	820	722	454	1,200
	사 기	4,189	4,796	4,739	4,616	6,701
교통사범	27,666	18,138	13,842	11,523	12,103	
저작권법 위반	20,272	7,720	275	318	759	
기 타	10,283	8,720	8,799	7,727	11,459	

주: 1) 흉악범: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상해등: 폭행·상해의죄 + 폭력행위등처벌법(공갈죄 제외) + 기타.

3) 횡령 등: 횡령 + 배임 + 손괴.

4) 교통사범: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자료: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2012년 전체 소년범의 연령을 보면 16세 소년범이 24.3%에 이르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17세 22.5%, 18세 20.9%, 15세 19.5%, 14세 12.1%, 14세 미만 0.8%의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14세 이하 소년범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저연령 소년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9-1-3〉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8	134,992 (100)	3,800 (2.8)	16,638 (12.3)	26,385 (19.5)	26,932 (20.0)	21,784 (16.1)	20,808 (15.4)	18,645 (13.9)
2009	113,022 (100)	1,98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
2010	89,776 (1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
2011	83,068 (1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
2012	107,490 (1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도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58.4%인데 반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41.6%로 전년도에 비하여 0.9% 상승하였다.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08년 7.1%에서 2012년 13.6%로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년범죄의 상습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표 9-1-4〉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연도	계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08	114,699 (100)	79,285 (69.1)	15,476 (13.5)	7,553 (6.6)	4,299 (3.7)	8,086 (7.1)
2009	102,573 (100)	65,990 (64.3)	15,103 (14.7)	7,637 (7.4)	4,799 (4.7)	9,044 (8.9)
2010	82,368 (100)	50,830 (61.7)	12,091 (14.7)	6,546 (8.0)	4,070 (4.9)	8,831 (10.7)
2011	75,658 (100)	45,047 (59.5)	11,391 (15.1)	6,254 (8.3)	3,900 (5.1)	9,074 (12.0)
2012	96,728 (100)	56,527 (58.4)	14,403 (14.9)	7,669 (7.9)	5,001 (5.2)	13,128 (13.6)

주 : 1) 2008년 6월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 됨.

2) 전체 합계에서 미상은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2012년도 소년범죄의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83.1%, 여자가 16.9%로 남자의 비율이 4배 이상 많다. 그러나 2008년 남자소년의 범죄율이 80.4%를 기록한 이후 2009년 82.7%, 2010년 80.8%, 2011년 82.8%, 2012년 83.1%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에, 여자소년의 범죄비율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간 감소하여 17.3%가 된 후 2010년에는 19.2%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9-1-5〉 소년범죄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남 자		여 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8	계	134,992	80.4	26,510	19.6
2009	계	113,022	82.7	19,513	17.3
2010	계	89,776	80.8	17,315	19.2
2011	계	83,068	82.8	14,326	17.2
2012	계	107,490	83.1	18,151	16.9

자료 :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 2 청소년 마약류 사범 동향

마약이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데인, 모르핀, 코카인 등)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09년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 2010년까지 감소하다가 2011년 다시 소폭 증가한 이후 2012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18~19세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마약류 퇴치 홍보 및 계몽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구 분	전체 마약류 사범	청소년 마약류사범			
			15세 이하	16~17세	18~19세	합 계
2008		9,705	6 (31.6)	0 (0)	13 (68.4)	19 (100)
2009		11,875	0 (0.0)	15 (18.3)	67 (71.7)	82 (100)
2010		9,732	0 (0.0)	6 (17.1)	29 (82.9)	35 (100)
2011		9,174	1 (2.4)	16 (39.0)	24 (58.6)	41 (100)
2012		9,255	1 (2.6)	9 (23.7)	28 (73.7)	38 (100)

자료 : 대검찰청(2013), 마약과 내부통계자료.

청소년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을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중이 68.4%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 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MDMA(엑스터시), LSD(무색 무미 무취 환각제) 등을 가리킨다. 청소년의 경우 전문의약품에 의한 경우보다는 본드 등의 흡입에 의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마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퇴치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9-1-7〉 청소년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구 분	전 체	청소년 마약류			
			마 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 마	합 계
2008		9,898	-	16 (69.6)	7 (30.4)	23 (100)
2009		11,875	2 (2.4)	55 (67.1)	25 (30.5)	82 (100)
2010		9,732	-	16 (45.7)	19 (53.3)	35 (100)
2011		9,174	-	34 (82.9)	7 (17.1)	41 (100)
2012		9,255	-	26 (68.4)	12 (31.6)	38 (100)

자료 : 대검찰청(2013), 「마약류 범죄백서」.

### 3 학생범죄의 동향

전체 소년범죄 대비 학생범죄 구성 비율은 2008년 65.7%, 2009년 69.1%, 2010년 69.3%, 2011년 69.4%, 2012년 68.5%로, 소년범죄 중 학생범죄의 비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에 약간 감소하였다.

〈표 9-1-8〉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전체범죄(A)	소년 범죄		학생 범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B)
2008	2,472,897	134,992	5.5	88,701	65.7
2009	2,519,237	113,022	4.5	78,077	69.1
2010	1,954,331	89,776	4.6	62,173	69.3
2011	1,907,641	83,068	4.4	57,672	69.4
2012	2,117,737	107,490	5.1	73,684	68.5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2009년도 통계부터 학생범죄의 대상은 7세 이상 18세 이하로 변경됨.

자료 :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2012년도 학생범죄자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16세가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5세(22.7%), 17세(20.6%), 18세(15.4%), 14세(15.3%), 10~13세(0.7%) 등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도에 14세 이하 학생범죄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저연령 학생범죄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표 9-1-9〉 학생범죄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7~9세	10~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8	88,701 (100)	53 (0.1)	2,029 (2.3)	13,731 (15.5)	20,428 (23.0)	18,456 (20.8)	14,477 (16.3)	11,947 (13.5)	7,580 (8.5)
2009	78,077 (100)	44 (0.1)	1,180 (1.5)	13,022 (16.7)	19,061 (24.4)	17,588 (22.5)	15,116 (19.4)	12,066 (15.4)	-
2010	62,173 (100)	11 (0.0)	191 (0.3)	7,630 (12.3)	15,713 (25.3)	14,620 (23.5)	12,548 (20.2)	11,460 (18.4)	-
2011	57,672 (100)	21 (0.0)	102 (0.2)	4,504 (7.8)	14,077 (24.4)	15,326 (26.6)	12,597 (21.8)	11,045 (19.2)	-
2012	73,684 (100)	40 (0.0)	561 (0.7)	11,281 (15.3)	16,775 (22.7)	18,430 (25.0)	15,244 (20.6)	11,353 (15.4)	-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2009년도 통계부터 학생범죄의 대상은 7세 이상 18세 이하로 변경됨.

자료 :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 제 2 장

##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 1 청소년 비행의 예방

## 가. 경찰의 예방활동

##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경찰은 2005년 초,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성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강력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5년부터는 피해학생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음성화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신학기 초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으로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6개 관련 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고기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학생 등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선도하는 조건으로 불입건’한 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피해신고 학생은 비밀보장과 함께 담당경찰을 서포터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호활동의 결과 학교폭력의 중심이었던 폭력서클이 자진해체를 하는 등 학교폭력이 위축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자진신고 학생에 대한 선도조건부 불입건 제도의 정착으로 2012년 자진신고 기간에는 693명이 불입건 처리되고, 68명이 입건되었다.

〈표 9-2-1〉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기 간	합 계	자진신고				단속 및 피해신고		
			계	조 치			계	조 치	
				불입건	입 건	소년부 송치 등		입 건	소년부 송치 등
2008	6.2 ~ 8.31	13,614	7,515	6,901	498	116	6,099	5,041	1,058
2009	3.16 ~ 6.15	11,579	5,682	4,348	931	403	5,897	5,074	823
2010	3.15 ~ 5.14	6,472	3,504	3,076	335	93	2,968	2,445	523
	9.1 ~ 10.31	5,532	3,108	2,794	243	71	2,424	2,107	317
2011	3.14 ~ 5.15	5,466	3,205	2,933	206	66	2,261	1,882	379
	9.1 ~ 10.31	2,479	2,479	864	715	115	1,615	1,318	297
2012	3.19 ~ 4.20 10.22 ~ 11.30	2,811	744	693	68	56	2,037	1,197	840

주 : 1. 불입건은 훈방, 즉결심판이 포함됨.  
 2. 입건은 구속, 불구속이 포함됨.  
 3. 소년부송치 등에는 소년부 송치와 기타 등이 포함됨.

자료 : 경찰청(2013). 「경찰백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012년 6월 18일에는 전국 16개 지방청에 117신고센터를 개소하여 경찰·교육부·여성이족부 합동으로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9-2-2〉 학교전담경찰관 주요활동성과(2012년)

(단위 : 횟수, 명, 건)

범죄예방교육		신고 접수	사건처리		사후관리		교사활동지원	
횟 수	인 원		선도심사위 참여	자치위 참여	파해학생 멘토링	가해학생 선도	학생지도	교권확립
15,175	2,026,015	4,157	528	5,258	7,849	7,111	841	239

자료 : 경찰청(2013). 「경찰백서」.

2012년 6월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활성화되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건처리는 물론이고 가해·피해학생 사후관리까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 하고 있다. 2012년에 전국 지역별로 51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었다.

## (2) 유해환경 정화활동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및 미디어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종 풍속업소 등 유해업소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청소년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음란·폭력성 각종 매체물과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유흥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총 14,067명을 적발하여 46명을 구속하고 14,02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 유해약물 단속 위반자는 11,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시키거나 출입하게 한 자는 1,414명,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통해 판매·대여하거나 포장 표시한 자는 870명, 성적퇴폐나 풍기문란 등 유해행위를 한 자는 625명에 이르렀다.

〈표 9-2-3〉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단 속 내 용				조 치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	구 속	불구속
2008		8,645	1,305	220	6,677	443	9	8,638
2009		8,567	1,544	291	6,230	502	4	8,563
2010		8,154	1,351	442	5,882	479	10	8,144
2011		9,575	1,690	1,039	6,337	509	6	9,569
2012		14,067	1,414	870	11,158	625	46	14,021

자료: 경찰청(2013), 「경찰백서」.

## (3) 사랑의 교실 운영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총 8,5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9-2-4〉 사랑의 교실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참가인원		7,630	6,837	17,877	9,859	8,531

자료: 경찰청(2012), 「경찰백서」.

#### (4)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스스로가 각종범죄 및 제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5·6학년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발대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3일 명예경찰소년단 전국 확대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전국학교로 선발대상을 확대하여 2012년 전국 1,422개교 16,935명의 명예경찰소년단이 활동하고 있다.

〈표 9-2-5〉 명예경찰소년단 현황

(단위 : 개교, 명)

연 도	구 분	실시학교(개교)	명예경찰소년단(명)
2008		3,295	25,120
2009		2,153	24,323
2010		1,719	20,053
2011		1,510	19,250
2012		1,422	16,935

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명예경찰소년단은 청소년의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이나 저학년 어린이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연대감 쌓기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교통캠페인, 경찰서 견학 및 112 순찰, 도보순찰 체험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명예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도교사 및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방지활동도 하고 있다.

명예소년단은 2012년도에 경찰서 견학 및 체험활동을 586회(1,527개교, 15,925명), 교통캠페인 3,370회(1,953개교, 22,817명), 봉사활동 818회(829개교, 8,356명) 등을 하였다.

〈표 9-2-6〉 명예경찰소년단 활동 현황

(단위 : 회, 개교, 명)

구분 연도	경찰서 견학 및 체험			교통캠페인			봉사활동			학교폭력방지활동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회	명	회	지도 교사	명예 경찰	대상자
2008	485	1,889	19,972	4,514	3,849	39,609	1,396	1,836	10,014	185	493	4,769	3,197	520	585
2009	445	1,763	17,057	3,543	2,850	37,303	867	917	9,443	102	208	3,830	2,672	476	655
2010	542	1,823	18,431	4,192	3,152	30,758	1,169	1,328	10,736	189	273	5,034	3,179	554	541
2011	477	1,382	16,517	4,295	3,390	28,465	1,096	1,136	10,398	51	75	4,124	2,169	454	426
2012	586	1,527	15,925	3,370	1,953	22,817	818	829	8,356	34	40	2,676	1,966	719	844

자료 : 경찰청(2013), 「경찰백서」.

## 나. 검찰의 예방활동

### (1)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일부터 서울·부산·광주·제주지검 및 산하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하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씨클에 가입하거나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도 우범소년 결연사업 가운데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는 2,206회 개최되었고, 범죄예방위원 교육은 2,348회 이루어졌다. 우범소년 중 결연 대상을 7,049명 선정하여 실제로 7,205명이 결연을 맺었다.

〈표 9-2-7〉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연 도	구 분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	결연대상 선정인원	결연인원	지역추진 대회	범죄예방 위원교육
2008		1,825	4,933	4,535	387	563
2009		2,023	6,970	6,389	512	997
2010		1,730	5,336	4,511	460	1,491
2011		1,721	3,546	3,545	386	1,857
2012		2,206	7,049	7,205	473	2,348

자료 :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 (2) 학교담당검사제

학교담당검사제는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주변 폭력근절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의 수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 유관기관이나 민간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위원 등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학교담당검사의 활동실적을 보면 합동순찰 6,632회, 간담회 2,079회, 우범학생 면담 15,360명, 선도강연 1,904회 등이다.

〈표 9-2-8〉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단위 : 회, 명)

연 도	구 분	합동순찰	간담회	우범학생 면담인원	선도강연
2008		4,953	1,924	9,052	1,126
2009		5,651	2,063	10,576	1,466
2010		6,691	2,631	11,997	1,176
2011		6,125	1,667	8,971	879
2012		6,632	2,079	15,360	1,904

자료 :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함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도입의 배경은 소년은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개선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여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된 뒤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373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소년선도보호 방법은 접촉선도, 원호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 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5,812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표 9-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 명)

연도	구분	소년범죄	선도조건부기소유예
2008		134,992	5,886
2009		113,022	7,104
2010		89,776	2,967
2011		89,068	1,363
2012		107,490	5,812

자료 :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표 9-2-1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폭력행위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재산범죄	기타
2011		1,363	364	603	7	7	196	66	120
2012		5,812	1,680	2,277	25	36	569	275	950

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표 9-2-1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1		1,363	176	297	353	267	185	85
2012		5,812	790	1,296	1,388	1,247	701	390

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기존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이외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소년범에게 적용함으로써 선도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그 종류를 보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서 전문가를 통해 일정기간 심리검사, 정신교육, 분노조절 훈련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 인성개발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청소년인 자원봉사 대학생이 범죄청소년과 1대1로 결연하여 상담·스포츠·문화활동·봉사활동 등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대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전문상담가로부터 전문적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있다.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의 일부 개정으로 검사결정전조사제도(소년법 제49조의 2)를 도입하여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비행 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명시 하였으며, 이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 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 3).



#### (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동법 제15조 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는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620호(2008. 6. 3.)에 따라 위탁이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회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 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소년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는 2012년도에 4,976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실시하였고, 그 중 재범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은 408명이다.

〈표 9-2-1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명)

구 분 연 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 제	취 소
2007	26,2823	5,258	12,134	4,218	66
2008	361,907	3,421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	3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	7,423	2,912	408

자료: 대검찰청(2013), 「마약류 범죄백서」.

## 다. 법무부의 예방활동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 (1) 개요

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안산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직원 56명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학교에서 의뢰)과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대한 법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학계나 지역사회에서 강조한 비행예방의 중요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행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비행예방에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센터’라는 명칭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행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9-2-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 임무

구 분	기 관 명	설립일	교 육 과 정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부산·창원·청주·광주	2007.7.23	- 상담조사 - 결정 전 조사 - 대안교육
	대구·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2012.6.	- 보호자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대전	2007.7.23	- 법교육 및 법문화 직무연수 -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안산	2007.7.23	- 대안교육, 보호자 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 연구·개발 및 직무연수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13).

〈표 9-2-1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실적 현황

(단위 : 명)

구분	내용	대안교육	심리상담	상담조사	결정전 조사	보호자 교육
2009	계	43,263	8,187	2,951	298	2,791
	부산센터	7,031	563	276	25	140
	광주센터	1,644	869	679	53	635
	청주센터	3,626	310	425	10	278
	안산센터	16,153	1,970	-	-	-
	창원센터	14,809	416	667	30	485
	대전센터	-	-	-	-	-
2010	계	61,865	4,366	1,688	230	1,516
	부산센터	19,015	603	254	10	170
	광주센터	12,099	796	603	57	486
	청주센터	7,607	504	406	1	342
	안산센터	15,120	1,918	-	-	277
	창원센터	8,024	545	425	162	241
2011	계	63,312	5,762	1,646	24	1,683
	부산센터	26,303	724	431	1	465
	광주센터	9,848	602	419	-	348
	청주센터	10,670	526	343	8	301
	안산센터	12,407	3,399	-	-	296
2012	창원센터	4,084	511	453	15	273
	계	66,388	7,448	2,790	7	3,044
	부산센터	21,667	614	433	-	749
	창원센터	4,006	433	492	-	430
	대구센터	5,423	456	155	-	195
	광주센터	3,881	610	448	-	366
	청주센터	16,686	567	286	7	328
	안산센터	10,771	3,260	-	-	289
	서울남부센터	505	450	272	-	186
	서울북부센터	1,548	596	359	-	254
인천센터	1,901	462	345	-	247	

주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슬로몬 로파크로 별도 운영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 (2)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 대안교육 실시

2002년부터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신설된 6개의 청소년비행 예방센터와 소년분류심사원 및 7개의 대행소년원에서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안교육으로 진로·성격 등 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안교육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생 생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수료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은 비행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3) 기소유예 대상자 및 대안교육명령 대상자 등의 대안교육 실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성의 조기개선과 함께 재비행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 진단기법과 교육 프로그램을 비행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 교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강화 및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은 비합숙 체험교육 방식으로 심리 검사, 심성훈련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2008년부터 소년원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42조의 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대안교육명령을 받은 소년에 대해 1개월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9-2-15〉 대안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학 교	검 찰	법 원	기 타
2008	11,095	8,798	1,516	211	570
2009	44,959	5,629	1,425	294	37,611
2010	63,513	11,396	1,124	342	50,651
2011	67,471	21,280	1,191	911	44,089
2012	71,796	26,068	2,034	1,274	42,420

주 : 2008년 학교대안교육인원에 법교육인원이 포함되었으나 2009년부터 기타인원에 포함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 (4) 청소년적성검사실 운영

1996년 2월부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는 4개 소년원에서 청소년적성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적성검사실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능·적성·성격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행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9-2-16〉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 원	5,481	5,256	6,438	7,973	9,445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 (5) 법교육

법교육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5년 3단계 5개년 법교육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교육시설 및 법문화 체험관 조성, 법교육 교사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8일 「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대국민 법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청소년의 법과 생활’, ‘나는야 법쟁’ 등 맞춤형 법교육 학습교재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교육 출장강연제, 학생 자치법정, 교사 직무연수와 법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교 법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 (6) 보호자특별교육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으로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보호자특별교육을 위하여 법무부는 청소년 이해, 자녀지도방법, 자녀-부모관계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12회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

〈표 9-2-17〉 보호자교육 실적

(단위 : 명)

구 분 연 도	계	보호자특별교육명령	일반위탁소년 보호자
2008	3,494	56	3,438
2009	5,465	455	5,010
2010	6,626	293	6,333
2011	7,498	483	7,015
2012	8,101	527	7,574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 2 비행 청소년의 사법 처리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 가. 경찰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소년범죄조사시 전문가참여제’란 소년범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가정·학교 환경 등 43개 비행촉발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 항목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3년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이후, 2004년 5개 경찰서, 2005년 45개 경찰서, 2006년부터 2008년에는 52개 경찰서, 2009년에는 60개 경찰서, 2010년 70개, 2011년 100개, 2012년 120개 경찰서로 확대운영 중이다.

2007년부터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시, 가해학생 조사에 전문가참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저위험군 학생은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경찰단계에서

선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이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고 있다. 전문가참여비율은 2008년 5.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전체소년범의 9.6%에 해당하는 10,258명이 전문가참여조사를 받았다.

〈표 9-2-18〉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연도별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운영관서(개소)	52	60	70	100	120
전체소년범(명)	123,044	118,058	94,862	86,621	107,018
참여소년범(명)	6,266	5,507	7,172	7,639	10,258
참여비율 (%)	5.1	4.7	7.6	8.8	9.6

주 : 경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와 검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가 다른 것은 검찰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수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자료 : 경찰청(2013), 「경찰백서」.

## 나. 검찰

2012년도 검찰이 소년범죄를 처리한 내역을 보면 전체 소년범죄자 102,871명 중 기소유예 41.8%, 소년보호 송치 35.5%, 구공판 4.8%, 구약식 2.9% 등이다.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소년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매우 낮고,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부 송치는 2008년도 21.0%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율과 불기소처분율이 높은 것은 검찰단계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하여 비행사건화하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9-2-19〉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7	88,104 (1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21 (0.0)	93 (0.1)	1,809 (2.1)
2008	134,992 (1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46 (0.0)	104 (0.1)	2,370 (1.8)
2009	133,022 (1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16 (0.0)	86 (0.1)	1,535 (1.4)
2010	89,776 (100)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11 (0.0)	93 (0.1)	1,392 (1.6)
2011	83,060 (100)	4,691 (5.6)	3,025 (3.7)	1,666 (2.0)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86 (0.1)	1,455 (1.8)
2012	102,871 (100)	7,877 (7.7)	4,898 (4.8)	2,979 (2.9)	56,668 (55.1)	6,113 (5.9)	43,013 (41.8)	324 (0.3)	7,218 (7.0)	36,478 (35.5)	21 (0.0)	- (0.0)	141 (0.1)	- (0.0)

자료 :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 다. 소년분류심사원

### (1)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하였고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7월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 규명,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시에 참고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2) 위탁소년의 수용

위탁소년의 수용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 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 및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하고, 인권보호와 보건·위생, 비행의 감염 방지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소년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8년 소년분류심사원의 신수용인원은 5,620명이었으나 2009년 6,065명, 2010년 6,295명, 2011년 6,68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 6,582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일일평균수용인원은 2008년 341명에서 2009년 399명, 2010년 419명, 2011년 456명, 2012년 464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9-2-20〉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신수용인원	5,620	6,065	6,295	6,682	6,582
1일 평균수용인원	341	399	419	456	464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 (3) 처우·교육활동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차림표에 따라 급식하며 피복·침구류, 세면용품, 학용품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위탁소년의 건강관리 및 질병을 치료하고, 시설내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 통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회는 위탁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탁소년의 교육은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심리극·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체육활동·시청각 교육·독서지도·레크레이션 등 심성순화 교육과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별 관계 인사를 초빙하여 신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 위탁소년의 신상 및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머니회를 운영하여 무의탁소년 등 불우 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 (4) 분류심사

분류심사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말하며, 요보호성 여부의 판별이 분류심사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분류심사는 심사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분류심사는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분류심사는 수용된 모든 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며, 일반분류심사를 한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의 특수분류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분류심사관과 심리학·교육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 종류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송부함으로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소년원·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5,435명이었는데, 이 중 일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4,008명이고, 특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1,427명이었다.

〈표 9-2-21〉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용분류 심사	계	5,198 (100)	5,627 (100)	5,723 (100)	6,007 (100)	5,435 (100)
	일반분류심사	3,796 (73.0)	3,729 (66.3)	4,380 (76.5)	4,634 (77.1)	4,008 (73.7)
	특수분류심사	1,402 (27.0)	1,898 (33.7)	1,343 (23.5)	1,373 (22.9)	1,427 (26.3)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 (5) 소년심판절차 개선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 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상담 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①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2003년 7월 새롭게 도입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대상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징, 능력과 욕구 등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질과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비행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자료로 송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소년의 훈육과 지도 지침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소년의 비행성을 없애기 위한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설수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모든 소년사건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처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사의 소년사건 심리시 심층적·과학적 판단에 기여하며, 상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보호자에게 자녀의 지도방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대상소년에게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교육 등을 통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담조사제는 서울 소년분류심사원과 7개의 대항소년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소년원)에서 2008년 5,952명, 2009년 5,106명, 2010년 5,301명, 2011년 5,296명, 2012년 5,1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9-2-22〉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법원보호처분	합 계	위탁심사	상담조사	조사비율
2008		30,222	11,150	5,198	5,952	36.9
2009		35,819	10,733	5,627	5,106	30.0
2010		32,416	11,024	5,723	5,301	34.0
2011		35,072	11,303	6,007	5,296	32.2
2012		36,105	10,583	5,435	5,148	29.3

주 : 상담조사 인원에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상담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 ②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

분류심사관심리참여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결과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서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의 일환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라. 소년법원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와 가정지원을 말한다.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가정법원, 대전·대구·부산·광주에 지방법원 가정지원, 인천·수원, 춘천·청주·창원, 의정부, 전주, 제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13개소가 있다. 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 4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가정법원으로 승격되면서 소년부가 설치되었고, 2012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 지방법원 가정지원도 가정법원으로 승격되어 단독 소년부가 설치되었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2012년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3,536건으로, 검사송치가 67.5%(36,13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서장 송치가 23.9%(12,799명), 법원 송치가 5.3%(2,848명), 다른 법원 소년부에서 이송된 경우가 2.9%(1,588명)이다.

〈표 9-2-23〉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법원 소년부에서 이송	보호자등에 의한 통고 (법 제4조제3항)
2008	41,754 (100)	1,745 (4.2)	29,124 (69.8)	10,781 (25.8)	84 (0.2)	20 (0.0)
2009	48,007 (100)	2,050 (4.3)	33,385 (69.5)	11,609 (24.2)	949 (2.0)	14 (0.0)
2010	44,200 (100)	2,212 (5.0)	31,715 (71.8)	9,213 (20.8)	1,026 (2.3)	34 (0.1)
2011	46,497 (100)	2,417 (5.2)	32,803 (70.6)	9,401 (20.2)	1,818 (3.9)	58 (0.1)
2012	53,536 (100)	2,848 (5.3)	36,133 (67.5)	12,799 (23.9)	1,588 (2.9)	168 (0.3)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3.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년법원에서 행한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의 현황을 보면, 보호처분의 비율은 2008년 76.4%에서 2012년 71.2%로 5.1% 감소하였다. 검사의 불처분 결정률은 2008년 5.1%에서 2010년 6.9%까지 증가하였다가 2012년 4.5%로 감소한 반면에, 검사 송치율은 2008년 0.4%에서 2012년 1.4%로 계속 증가하였다.

〈표 9-2-24〉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단위 : 명, %)

연도	구	계	보 호 처 분																	
			소계	1호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2호 수강 명령	3호 사회 봉사 명령	4호 단기 보호 관찰	5호 장기 보호 관찰	6호 소년 보호 시설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소년원 송치	1,2 호	1,2,3 호	1,2,4 호	1,2,5 호	1,2,3,4 호	1,2,3,5 호	1,3 호
2008		39,532 (100)	30,222 (76.4)	6,214 (15.7)	130 (0.3)	181 (0.5)	-	10 (0.0)	410 (1.0)	-	6 (0.0)	762 (1.9)	857 (2.2)	972 (2.5)	-	3,535 (8.9)	874 (2.2)	765 (1.9)	1,576 (4.0)	227 (0.6)
2009		47,865 (100)	35,819 (74.8)	5,883 (12.3)	71 (0.0)	268 (0.6)	23 (0.1)	2 (0.0)	128 (0.3)	100 (0.2)	22 (0.0)	919 (1.9)	992 (2.1)	3,388 (7.1)	572 (1.2)	4,891 (10.2)	1,186 (2.5)	1,905 (4.0)	1,581 (3.3)	1,148 (2.4)
2010		45,090 (100)	32,416 (71.9)	4,527 (10.0)	37 (0.1)	116 (0.3)	34 (0.1)	13 (0.0)	73 (0.2)	81 (0.2)	11 (0.0)	861 (1.9)	806 (1.8)	4,251 (9.4)	615 (1.4)	4,473 (9.9)	1,309 (2.9)	1,777 (4.0)	1,288 (2.9)	1,399 (3.1)
2011		48,713 (100)	35,072 (72.0)	4,021 (8.3)	18 (0.0)	53 (0.1)	77 (0.2)	28 (0.0)	9 (0.0)	150 (0.3)	15 (0.0)	883 (1.8)	1,019 (2.1)	4,123 (8.5)	874 (1.8)	4,998 (10.3)	1,393 (2.9)	2,420 (4.9)	1,990 (4.1)	1,629 (3.3)
2012		50,771 (100)	36,150 (71.2)	4,222 (8.3)	51 (0.1)	104 (0.2)	103 (0.2)	71 (0.1)	14 (0.0)	195 (0.4)	7 (0.0)	1,206 (2.8)	1,169 (2.3)	4,518 (8.9)	1,040 (2.0)	5,180 (10.2)	1,118 (2.2)	2,266 (4.5)	1,831 (3.6)	1,405 (2.8)
연도	구	보 호 처 분								불처분	심 리 불개시	타법원 이송	검 사 송 치	기타*						
		1,3,4호	1,3,5호	1,4호	1,5호	4,6호	5,6호	5,8호	기타											
2008		1,960 (5.0)	1,838 (4.6)	6,259 (15.8)	2,599 (6.6)	137 (0.3)	142 (0.4)	408 (1.0)	360 (0.9)	2,020 (5.1)	6,801 (17.2)	332 (0.8)	152 (0.4)	5 (0.0)						
2009		2,183 (4.6)	1,731 (3.6)	4,780 (10.0)	1,256 (2.6)	192 (0.4)	739 (1.5)	1,708 (3.6)	151 (0.3)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						
2010		2,182 (4.9)	1,482 (3.3)	3,593 (8.0)	880 (1.9)	104 (0.2)	747 (1.6)	1,689 (3.7)	68 (0.1)	3,105 (6.9)	7,338 (16.3)	1,840 (4.0)	391 (0.9)	-						
2011		2,418 (5.0)	1,352 (2.8)	3,689 (7.6)	808 (1.7)	146 (0.3)	922 (1.9)	1,915 (3.9)	122 (0.2)	2,579 (5.3)	7,905 (16.2)	2,536 (5.2)	621 (1.3)	-						
2012		2,087 (4.1)	1,560 (3.1)	3,054 (6.0)	637 (1.3)	56 (0.1)	1,164 (2.3)	2,607 (5.1)	485 (1.0)	2,278 (4.5)	9,209 (18.1)	2,441 (4.8)	693 (1.4)	-						

주 : 2008년도 6월 22일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처분 유형이 7호처분에서 10호처분으로 변경됨.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3.

## 마. 형사법원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9세 미만자의 제1심 소년형사사건의 재판현황을 보면 집행유예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부정기형과 벌금형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년형사 사건에서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정기형도 매우 낮은 비율로 선고되고 있다.

2012년에 종국처리된 소년범 4,377명 중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었고, 부정기형이 804명(18.4%)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가 557명(12.7%), 벌금형이 118명(2.7%), 정기형이 7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25〉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금	기타
2008	5,026 (100)	-	1 (0.0)	215 (4.3)	531 (10.6)	1,504 (29.9)	554 (11.0)	2,222 (44.2)
2009	6,160 (100)	-	-	462 (7.5)	587 (9.5)	1,828 (29.7)	681 (11.1)	2,602 (42.2)
2010	5,294 (100)	-	-	472 (8.9)	503 (9.5)	1,577 (29.8)	590 (11.1)	2,152 (40.7)
2011	3,499 (100)	-	-	14 (0.4)	492 (14.1)	610 (17.4)	133 (3.8)	2,250 (64.3)
2012	4,377 (100)	-	-	7 (0.2)	804 (18.4)	557 (12.7)	118 (2.7)	2,531 (66.0)

주 : 1) '기타'에는 선고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등이 포함됨.

2) 본 통계는 2010년까지는 20세 미만자, 2012년부터는 19세 미만자가 기준임.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3.

## 3

## 비행 청소년의 교정교육

## 가. 소년원

## (1) 임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공포된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의 일반교육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는 특성화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영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 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공공 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안양 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중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무자동화, 영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도의교육,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소년원 학생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춘천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

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07년까지 총 30여 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로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덕 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는 대덕 소년원을 ‘대산학교’로 개교하고 8호처분자의 경우 개방형 단기집중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대덕소년원을 대전소년원으로 직제상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는 청주 소년원의 직제를 개정하여 여자소년원으로 개칭하고, 안양소년원에서 여자소년원생을 청주로 인수 하였다.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안양·청주, 춘천·제주 등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과거의 수용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 (2) 보호소년의 수용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

소년법 개정 이전의 처우과정은 단기과정(6호), 일반과정(7호)으로 구분되었다. 단기과정은 6개월 이하를 수용하고, 일반과정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A과정,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의 B과정, 15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의 C과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이후의 소년원 처우 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정(10호)으로 구분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7호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호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표 9-2-26〉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단위: 명, %)

연도	계	의 료 (6개월 미만)	단 기 (6개월 미만)	장 기			평균수용기간 (개월)
				일반A	일반B	일반C	
2008 (~08.6.21)	651 (100)	4 (0.6)	318 (48.9)	144 (22.1)	104 (16.0)	81 (12.4)	8.9
연도	계	7호 (의료)	8호 (1개월)	9호 (단기)	10호 (장기)	평균수용기간 (개월)	
							구분
2008 (*08.6.22~)	2,526 (100)	66 (2.6)	895 (35.6)	783 (30.9)	782 (30.9)	6.9	
2009	2,672 (100)	52 (2.0)	1,218 (45.6)	684 (25.6)	718 (26.8)	4.93	
2010	2,755 (100)	56 (2.0)	1,339 (48.6)	771 (28.0)	589 (21.4)	5.1	
2011	2,559 (100)	69 (2.7)	1,329 (51.9)	644 (25.2)	517 (20.2)	5.1	
2012	3,211 (100)	103 (3.2)	1,660 (51.7)	792 (24.7)	656 (20.4)	4.6	

주: 1) 2008.6.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과정을 10호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지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처분(1개월 이내)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보호소년은 교육과정을 마치면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결정하고, 6개월~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에 수용된 신수용 보호소년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소년원 신수용인원은 전년도 2,960명보다 15.8% 증가한 3,429명이었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계속 감소하였다가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90명이었다.

〈표 9-2-27〉 보호소년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 도	출원사유	신수용인원	1일 평균수용인원
2008		1,732	1,361
2009		2,775	1,191
2010		2,822	1,162
2011		2,960	1,264
2012		3,429	1,390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 (3) 소년원 교육

소년원 교육혁신의 결과, 지난 1999년 9월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 및 '컴퓨터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소년원 학생이 각종 수상을 하였으며, 컴퓨터 및 각종 기능 자격을 취득하였다. 2012년도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1,581명이었고, 외국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48명, 일반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900명 등이다.

〈표 9-2-28〉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950	2,685	2,644	2,980	3,125
외 국 어		222	74	45	41	48
컴 퓨 터		1,478	1,389	1,387	1,642	1,581
일 반 기 능		600	584	634	670	900
기 타		650	638	578	627	596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보호소년들이 입시퇴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 2012년 313명이 취업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정착을 하였다.

〈표 9-2-29〉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단위: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취업인원	339	335	328	261	313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한편 2012학년도에 고등학교 92명, 대학교 45명 등 총 137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값진 향학의 꿈을 이루었다.

〈표 9-2-30〉 소년원 학생 진학 현황

(단위: 명)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13	166	108	111	137
대 학교	49	52	38	22	45
고등학교	64	114	70	89	92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소년원 학교는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의 명칭 및 교육과정은 〈표 9-2-31〉과 같다.

〈표 9-2-3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구분	기관(학교명)	대상	교육과정
수도권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학교 교과교육</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사진영상·측량)</li> <li>• 보호자교육</li> </ul>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교과교육</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미용·피부미용·제과제빵·텔레마케팅)</li> <li>• 보호자교육</li> </ul>
강원권	춘천소년원 (신춘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위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li> <li>•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li> <li>• 위탁소년 인성교육</li> <li>•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li> </ul>
충북권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7호, 8호 9호, 10호 위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재활교육, 8호처분자(男) 교육</li> <li>•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li> <li>• 위탁소년 인성교육</li> <li>•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li> </ul>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8호 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호처분자(女) 교육</li> <li>•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li> <li>• 보호자교육</li> </ul>
호남권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위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교과교육</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li> <li>•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li> <li>• 위탁소년 인성교육</li> <li>•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li> </ul>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자동차용접·건설기계운전·건축환경설비)</li> <li>•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보호자교육</li> </ul>
영남권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위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li> <li>•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li> <li>• 위탁소년 인성교육</li> <li>•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li> </ul>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0호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자동차용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li> <li>•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보호자교육</li> </ul>
제주권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호 9호 10호 위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li> <li>• 8호처분자(제주지역 男) 교육</li> <li>•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li> <li>• 위탁소년 인성교육</li> <li>•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li> </ul>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 (4)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가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관은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가족합숙제, 1일 생활제, 가정관 면회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의탁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자립생활관은 경기(의왕, 안양),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한다.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이나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 (5)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하도록 하고 있고, 22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 중인 학생이 교과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표 9-2-32〉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출원사유 연도	계	퇴원	임시퇴원	처분변경	이송	기타
2008	2,793 (100)	871 (31.2)	857 (30.7)	10 (0.3)	1,013 (36.3)	42 (1.5)
2009	4,020 (100)	1,722 (42.8)	950 (23.6)	20 (0.5)	1,289 (32.1)	39 (1.0)
2010	3,941 (100)	1,821 (46.2)	934 (23.7)	26 (0.6)	1,121 (28.5)	39 (1.0)
2011	4,137 (100)	1,790 (43.2)	926 (22.4)	16 (0.4)	1,376 (33.3)	29 (0.7)
2012	4,707 (100)	2,151 (45.7)	1,195 (25.4)	26 (0.6)	1,307 (27.8)	28 (0.6)

주 : 1) 기타는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 인원임.

2) 2009년부터 퇴원인원 증가는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처분(1개월이내 소년원송치) 인원증가에 기인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원장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심사를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부를 심사·결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시퇴원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임시퇴원생이 임시퇴원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재수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도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현황을 보면, 퇴원이 4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송이 27.8%, 임시퇴원이 25.4% 순이다.

## 나.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 다만,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는 2004년까지는 천안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법무부예규에 의해 천안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소년수형자를 전담 수용하였다. 그러나 교정본부 직제 개편으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소년범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

### (1) 수용현황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156명, 2009년 169명, 2010년 146명, 2011년 114명, 2012년 170명을 차지하였다.

〈표 9-2-33〉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용인원	156	169	146	114	170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최근 5년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절도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강간 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 소년수형자 중 강간범 등이 54명(31.7%), 절도범이 42명(24.7%), 강도범 등이 24명(14.1%), 살인범이 11명(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34〉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

죄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56 (100)	169 (100)	146 (100)	114 (100)	170 (100)
절 도		73 (46.8)	62 (36.7)	45 (30.8)	26 (22.8)	42 (24.7)
사기·횡령		1 (0.6)	3 (1.8)	3 (2.1)	0 (0.0)	2 (1.2)
폭력·상해		9 (5.8)	8 (4.7)	1 (0.7)	5 (4.4)	17 (10.0)
강간 등		24 (15.4)	44 (26.0)	32 (21.9)	33 (28.9)	54 (31.7)
강도 등		24 (15.4)	32 (18.9)	33 (22.6)	18 (15.8)	24 (14.1)
살 인		9 (5.8)	6 (3.6)	11 (7.5)	10 (8.8)	11 (6.5)
과실범		5 (3.2)	2 (1.2)	3 (2.1)	1 (0.9)	2 (1.2)
기 타		11 (7.0)	12 (7.1)	18 (12.3)	21 (18.4)	18 (10.6)

주 :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2013).

소년수형자의 형명을 보면 유기징역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고형은 거의 없었다. 최근 5년간 소년수형자의 형기를 보면 3년 미만의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년 미만의 징역형, 10년 미만의 징역형, 1년 미만 징역형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장기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단기징역형의 비율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도에는 3년 미만 유기징역형의 비율이 5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25.9%, 10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7.6%, 1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7.1%, 15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2.3%, 1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표 9-2-35〉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죄 명						
	계	156 (100)	169 (100)	146 (100)	114 (100)	170 (100)
징역형	무기	-	-	-	-	-
	15년 이상	-	-	-	3 (2.6)	3 (1.8)
	15년 미만	3 (1.9)	3 (1.8)	5 (3.4)	2 (1.8)	4 (2.3)
	10년 미만	14 (9.0)	15 (8.9)	15 (10.3)	12 (10.5)	13 (7.6)
	5년 미만	27 (17.3)	42 (24.9)	45 (30.8)	38 (33.3)	44 (25.9)
	3년 미만	87 (55.8)	89 (52.7)	58 (39.7)	48 (42.1)	94 (55.3)
	1년 미만	24 (15.4)	19 (11.2)	23 (15.8)	10 (8.8)	12 (7.1)
	6월 미만	1 (0.6)	1 (0.6)	-	1 (0.9)	-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2013).

## (2) 교정교육

교정교육은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교화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도 소년교도소에서의 학과교육 인원은 55명인데, 이 중 일반학과 교육을 받은 자는 2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자는 30명이다.



〈표 9-2-36〉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인원(계)	85	75	75	75	55
일반학과교육	35	35	35	35	25
방송통신고 (졸업인원)	50 (8)	40 (6)	40 (13)	40 (13)	30 (5)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2012).

### (3) 출소

소년수형자는 해당형기가 종료하면 출소하게 되지만, 형기가 종료하기 전에도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1/3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소년수형자 중 가석방된 자의 비율은 2008년 18.3%, 2009년 16.5%, 2010년에 18.4%, 2011년 14.5%, 2012년 19.8%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9-2-37〉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연도 \ 석방사유	계	가석방	집행종료결정	만기석방	기타
2008	317 (100)	58 (18.3)	-	164 (51.7)	95 (30.0)
2009	103 (100)	17 (16.5)	-	44 (42.7)	42 (40.8)
2010	114 (100)	21 (18.4)	-	66 (57.9)	27 (23.7)
2011	69 (100)	10 (14.5)	-	45 (65.2)	14 (20.3)
2012	86 (100)	17 (19.8)	-	40 (46.5)	29 (33.7)

주 : 1) 집행종료결정은 단기만료 후 장기도래전의 석방, 만기석방은 장기만료로 인한 석방을 의미함.

2) '기타'는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사망, 노역종료 등을 포함함.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2013).

## 다. 보호관찰소

### (1) 개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사,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범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된 보호관찰은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사범(1994년), 성인형사범(1997년), 가정폭력사범(1998년), 성매매사범(2004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2008년)로까지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2011년 전체 보호관찰 접수인원 121,188명 중 소년대상자는 46,336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의 34.7%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청소년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청소년대상자의 높은 변화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 조직

보호관찰행정 중앙조직으로는 인사 및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보호관찰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보호법제과,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보호관찰과가 있고,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에 18개 보호관찰소와 38개 보호관찰지소, 서울지역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대전지역에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 (3) 보호관찰 실시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 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소년법의 개정

으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 부과연령이 10세로 하향되었다.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신규 접수인원은 2008년 36,099명, 2009년 46,686명, 2010년 45,990명, 2011년 46,336명, 2012년 47,62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9-2-38〉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 비율
2008		95,137	36,099	37.9
2009		115,191	46,686	40.5
2010		86,435	45,990	53.2
2011		121,188	46,336	38.2
2012		108,495	47,621	43.9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3).

2012년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보호처분 38,131명(80.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소유예처분 6,172명(13.0%), 임시퇴원 2,009명(4.2%), 집행유예 1,203명(2.5%)순이다.

〈표 9-2-39〉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신고 유예	집행 유예	소년 보호	가석방	임시 퇴원	가정 보호	성매매 보호	기소 유예	성구매자 교육	벌금 대체	이수 명령
2008	36,099	1	1,907	30,488	97	945	9	32	2,591	29	-	-
2009	46,686	4	2,174	40,139	95	1,156	6	29	3,060	24	9	-
2010	45,990	1	1,723	38,681	53	1,177	3	15	4,255	8	78	2
2011	46,336	0	905	40,164	34	1,089	2	7	4,087	9	35	4
2012	47,621	1	1,203	38,131	51	2,009	6	1	6,172	9	34	4

주 : 1) 접수는 신수와 이입을 합산, 보호관찰은 광의의 의미임.

2)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은 2009년부터, 이수명령은 2010년부터 실시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3).

보호관찰 기간 중 청소년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법정준수사항(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및 외출제한명령 등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대상자와의 초기면담,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일반, 주요, 집중 대상자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등급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통제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생활근거지에서의 면접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 전담 직원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특화된 처우와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발부할 영장에 의하여 구인하고 유치한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가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 56개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지역사회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별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자특별교육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표 9-2-40〉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단위 : 명)

성적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성적 양호자	계		183	369	105	626	862
	가해제		183	369	105	626	861
	부정기형 종료		-	-	-	-	1
성적 불량자	계		19,459	24,903	25,873	27,890	32,853
	경고		14,674	18,827	19,037	21,305	26,671
	구인		1,538	1,987	2,153	2,007	1,759
	유치		1,490	1,943	2,095	1,936	1,670
	취소·변경 등 <sup>1)</sup>		1,638	2,033	2,444	2,449	2,538
	기타 <sup>2)</sup>		119	113	144	193	215

주 : 1) 취소·변경은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가석방·임시퇴원취소, 선도위탁취소, 가정보호취소임.

2) 기타는 기간연장, 보호관찰 정지, 사회봉사허가 취소를 포함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3).

####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청소년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연령은 14세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2012년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8,175명이고,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510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6,665명이다.

〈표 9-2-41〉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 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08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65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67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19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3).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은 12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2012년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인원은 10,612명이고,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0,026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86명이다.

〈표 9-2-42〉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 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8	5,847	5,620	227	-	40	77	-	14	96
2009	10,397	9,954	443	3	-	2	-	46	382
2010	9,779	9,212	567	-	-	78	2	43	444
2011	10,135	9,518	617	-	11	277	-	74	255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	63	359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3).

### (5) 판결(결정)전 조사 및 환경조사

판결(결정)전 조사는 법원이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명하기 위하여 판결(결정)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법원의 적정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신설되었다(소년법 제49조의2).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대한 범죄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교정 교육자료와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그리고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환경조사 결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소장은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수용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판결(결정)전조사는 2008년 3,036건에서 2012년 15,10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환경조사는 2008년 1,477건에서 2012년 1,500건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표 9-2-43〉 청소년대상자 판결(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실적

(단위 : 건)

연도	구분	환경조사(소년원 의뢰)	판결(결정)전조사
2008		1,477	3,036
2009		1,668	4,848
2010		1,454	10,856
2011		1,380	12,422
2012		1,500	15,104

주 : 판결(결정)전조사는 판결전조사와 결정전조사를 합산한 것임.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3).



## 제10부 요약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포함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 청소년이용시설을 포함하는 청소년이용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은 청소년보호·재활센터와 같은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의 청소년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단체 관련기관 종사자가 있다. 이 중 청소년지도사는 1,2,3급 모두 합쳐 2012년까지 총 30,092명이 양성되었고 청소년상담사는 1,2,3급 모두 합쳐 2012년 현재 총 6,097명이 배출되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두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상시 점검단속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가족정책실과 연관한 별도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을 두고 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있으며, 청소년 정책 관련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는 1989년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연구와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 시설

제2장 청소년지도자

제3장 청소년단체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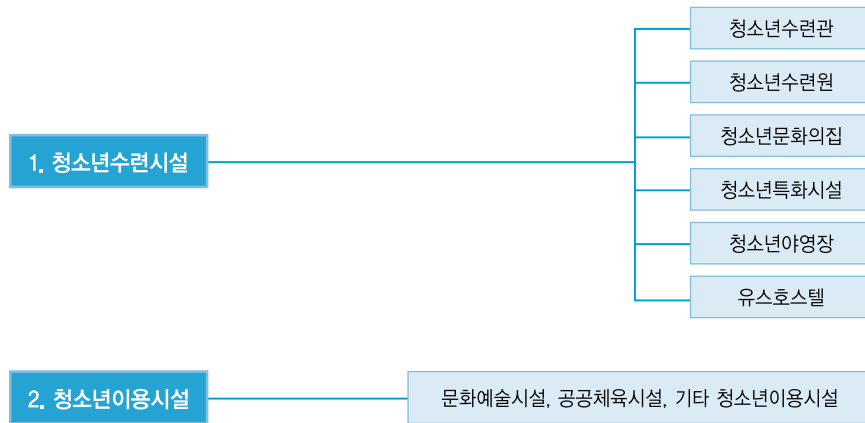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 제 1 장 청소년 시설

## 1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10-1-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가. 청소년수련시설

### (1) 수련시설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권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2월 기준 753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53	181	219	173	45	127	8
공공	485	177	215	42	27	16	8
민간	268	4	4	131	18	111	0

자료 : 여성가족부(2012.12.31. 기준).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아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53	181	219	173	45	127	8
서울	61	33	17	2	0	4	5
부산	24	8	9	4	2	1	0
대구	13	5	6	1	0	1	0
인천	26	8	6	5	4	3	0
광주	11	5	4	1	0	1	0
대전	13	4	7	1	0	1	0
울산	9	1	6	2	0	0	0
세종	1	0	1	0	0	0	0
경기	144	28	41	47	4	23	1
강원	81	14	27	16	6	17	1
충북	46	9	9	15	2	11	0
충남	49	9	10	14	3	13	0
전북	54	11	20	13	3	6	1
전남	44	13	11	8	7	5	0
경북	63	16	11	14	7	15	0
경남	71	14	15	25	4	13	0
제주	43	3	19	5	3	13	0

주 : 국립청소년시설(3개) - 중앙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 평창수련원(강원도 평창군)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라남도 고흥군) 포함.  
 '13. 7월 개원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라북도 김제시)는 상기통계 미포함.

자료 : 여성가족부(2012.12.31. 기준).

## (2) 수련시설의 설치

### ① 중앙정부의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시설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를 건립·운영 중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 간의 네트워크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내(동곡)에 부지 547,160㎡, 연면적 35,144㎡ 내외 규모로 약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6월에 준공되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을 위한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부지 483,818㎡, 연면적 18,539㎡ 규모에 약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는 우주분야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우주 체험 활동의 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부지 282,617㎡, 연면적 14,075㎡ 규모의 우주체험관, 우주생활관 등을 약 4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7월에 준공되었다.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는 농업생명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생명 과학·농업기술·생태환경의 특화된 체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에 부지 37,932㎡, 연면적 10,871㎡ 규모의 농·생명 실험시설 등을 약 2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되었다.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는 해양환경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해양 자원 개발 및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부지 49,730㎡, 연면적 13,506㎡에 해양환경체험시설 등을 약 372억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되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많은 생활권 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0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청소년시설 건립에 사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10년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명칭 변경)에 의한 지원으로 건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수련시설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신규건립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부지 선정 시 청소년의 접근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27개소 신규건립 및 기존 시설 39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7개소 신규건립, 35개소 기능보강을 지원 중이다.

### ③ 수련시설 설립 사전검토와 주택건설시 설치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국립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입지조건이나 내부구조,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비율을 각각 5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생활공간 주변에서 손쉽게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단지 안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3,000호를 초과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3) 수련시설 운영지원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구조부의 균열,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사항, 석축, 옹벽, 담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에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 법적근거 마련, 2013.11.29시행)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 안전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단체가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동법 제25조에서는 수련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부터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각 청소년시설 운영 주체들에게 상황 개선 및 위상을 제고토록 유도하고 있다.

## 나. 청소년이용시설

### (1) 청소년이용시설 개념과 유형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② 「과학관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④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 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⑥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⑧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 ①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 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

#### ② 과학관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 ③ 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 기본체육시설 등이 있다.

## 2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 가.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보호법(1999년 일부개정) 제33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 폭력이나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와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청소년재활센터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이에 청소년보호센터에서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이나 소송업무대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를 운영해왔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은 청소년, 가출청소년, 성범죄피해 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년 9월부터 운영되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하는 NGO와 경찰, 행정당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였다. 2004년도에는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incenter)를 개설하였다.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는 2011년 청소년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이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보호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이 있으며,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담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다.

## 나. 청소년복지시설

### (1)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9~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쉼터유형에 따라 일시 7일 이내, 단기 3개월(최장 9개월) 이내, 중장기 2년(최장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1992년 시범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서울YMCA 청소년쉼터가 개소한 이래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2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전국에 총 103개소의 쉼터를 운영 중이다.

2005년에는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보호시설 체계화를 위해 청소년 쉼터를 일시쉼터(드롭인센터), 단기쉼터(청소년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였으며, 각 청소년쉼터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1년부터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접근·개입을 위해 아웃리치 전담인력을 전국 일시쉼터에 배치하였고, 2012년부터는 일시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야간보호기능을 추가하였다.

###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2012년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법 제31조).

2012년 현재 경기, 대전,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민간과 지자체에 의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근거 마련을 토대로 향후 예산 지원 및 시설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최근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보호시설로 보내지거나 학업중단, 가출 등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위기청소년과 ADHD,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시설에서는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거주형 기관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2012년 12월에 개원하였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입교대상자는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만 9~18세)이고, 입·퇴소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는 입교생에게 필요한 상담·치료, 보호, 자립지도, 교육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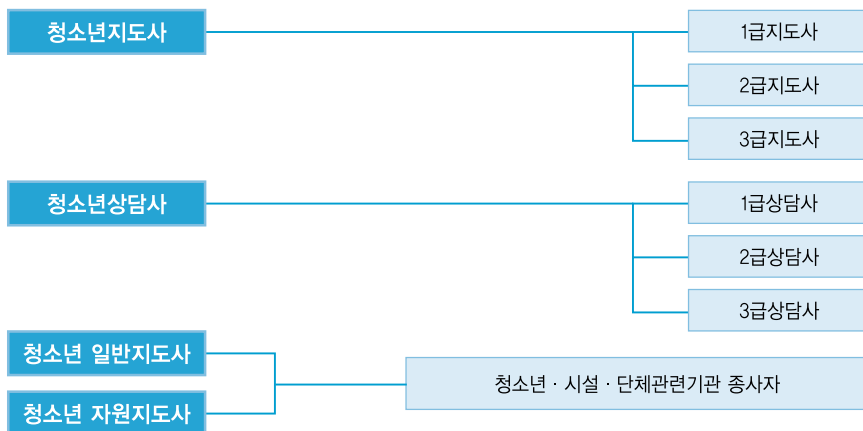


## 제 2 장 청소년지도자

###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2년까지 총 30,092명이 배출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6,097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림 10-2-1] 청소년 지도자의 분류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가.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li> <li>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li> <li>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사람</li> <li>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li> <li>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li> <li>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li> </ol>

등급	응시자격기준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료 : 여성가족부(2012).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별표 1의 2)

구분	검정 과 목	검 정 방 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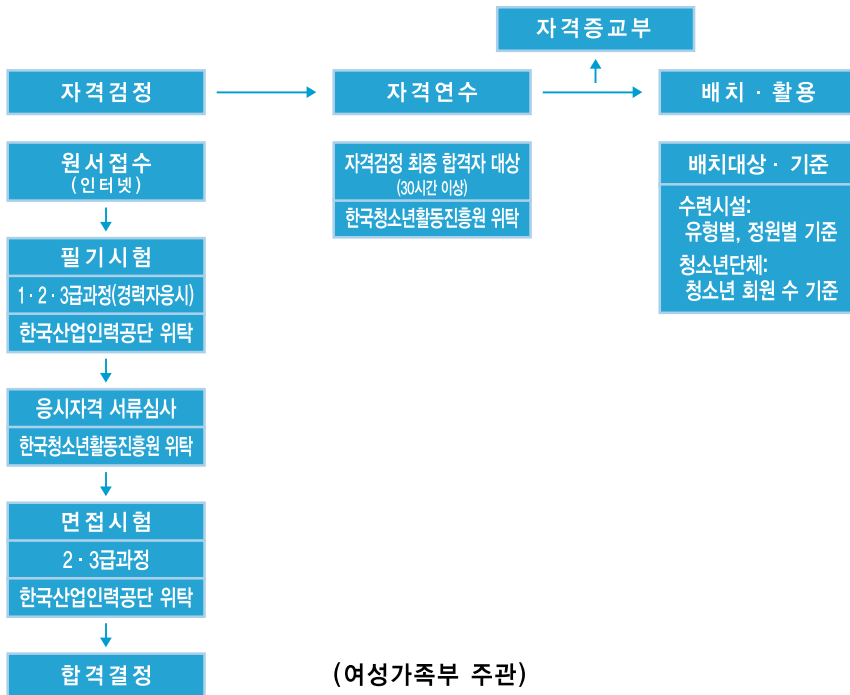
주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연수를 실시한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2급 자격기준 중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와, 3급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12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470명, 2급 청소년지도사 19,645명, 3급 청소년지도사 8,977명 등 총 30,092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2012년도에는 총 3,262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는데 이중 여성이 2,642명으로 81.0%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급은 8명, 2급은 2,502명, 3급은 752명 등이었다. 연도별 지도사 양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1급		2급		3급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3	-	-	311	174	156	72	467	246	713
1994	78	18	229	146	137	100	444	264	708
1995	81	20	193	168	137	116	411	304	715
1996	36	11	105	88	54	47	195	146	341
1997	98	33	167	147	110	80	375	260	635
1998	87	33	122	158	93	100	302	291	593
1999	77	51	266	264	96	114	439	429	868
2000	70	43	255	330	139	151	464	524	988
2001	58	39	421	569	221	275	700	883	1,583
2002	78	39	310	527	189	286	577	852	1,429
2003	47	43	269	431	194	386	510	860	1,370
2004	28	46	232	431	180	400	440	877	1,317
2005	14	17	160	296	217	688	391	1,001	1,392
2006	43	47	314	478	148	218	505	743	1,248
2007	11	20	247	448	37	146	295	614	909
2008	7	20	342	1,744	114	517	463	2,281	2,744
2009	11	23	359	1,806	186	546	556	2,375	2,931
2010	20	33	437	1,937	177	691	634	2,661	3,295
2011	30	52	436	1,826	140	567	606	2,445	3,051
2012	3	5	454	2,048	163	589	62	2,642	3,262
누계	877	593	5,629	14,016	2,888	6,089	9,394	20,698	30,092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 청소년수련시설 |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청소년단체 |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자료 : 여성가족부(20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라.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청소년기본법 제24조2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보수교육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역량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1회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록인원이 3,224명으로 2013년 10월말 기준 1,45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 3

## 청소년상담사

### 가.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 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대학의 학생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대상 병원, 일반 청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등에서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비고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자료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과목은 1급 5과목, 2급과 3급은 각각 6과목이며,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과한 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로 본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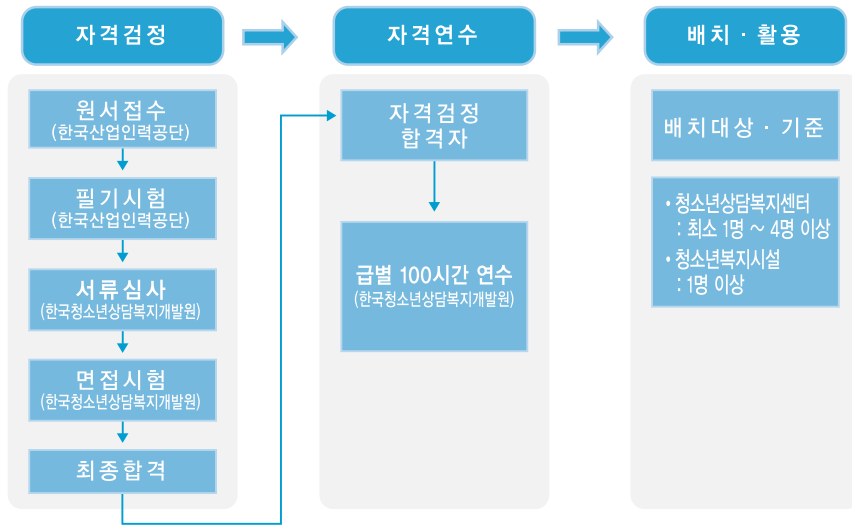
등급	검정 과 목		검정 방법	
	구분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li> <li>•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li> <li>•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li> </ul>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li> <li>•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li> <li>•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li> <li>• 이상심리</li> </ul>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심리</li> <li>• 집단상담의 기초</li> <li>• 심리측정 및 평가</li> <li>• 상담이론</li> <li>• 학습이론</li> </ul>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자료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표 4.

## 나.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100시간 이상 의무 연수를 실시하며,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활용된다.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은 청소년상담 관련 이론과 실제적인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급·2급·3급 모두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연수 형태는 급별 책무에 맞는 질적 교육을 위하여 이론, 세미나,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등급	연수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수퍼비전</li> <li>• 청소년위기개입Ⅱ</li> <li>• 청소년관련법과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프로그램개발</li> <li>• 청소년문제세미나</li> </ul>
2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li> <li>• 청소년 위기개입Ⅰ</li> <li>• 부모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진로·학업상담</li> <li>• 지역사회상담</li> </ul>
3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개인상담</li> <li>• 청소년 매체상담</li> <li>• 청소년 발달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집단상담</li> <li>• 청소년 상담현장론</li> </ul>

자료 :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31조 별표 2.

## 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상담사 양성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총 10회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 304명, 2급 2,108명, 3급 3,685명으로 총 6,097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였다.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연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03	8	99	22	271	37	247	684
2004	4	17	6	84	11	92	214
2005	5	16	21	150	19	132	343
2006	6	24	17	154	10	196	407
2007	0	1	11	166	17	279	474
2008	6	41	23	171	39	411	691
2009	3	12	20	219	56	461	771
2010	1	13	12	128	21	311	486
2011	1	18	16	282	27	391	735
2012	3	26	31	304	65	863	1,292
계	37	267	179	1,929	302	3,383	6,097

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2).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급 청소년상담사 또는 2급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두고, 3급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자료: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별표 5.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기본법 제23조).

## 라.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청소년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 3 장 청소년단체

###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www.koreayouth.net)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외 청소년 단체의 상호연락과 제휴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 12월 8일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의 협의기구로 창립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 교환, 청소년단체간의 상호협력 도모와 청소년관련 정부부처와 유관 사회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1966년 8월 10일에는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WAY)에 가입하였으며, 1972년 8월 15일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AYC)의 창설멤버가 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등, 청소년육성 운동을 확대·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현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 11월 11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이후 2005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회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재 73개 회원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228만여명의 청소년회원과 104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자 등 총 332만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회원단체 가입은 청소년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단체가 된다. 회원단체 중에는 7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가 가입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청소년관련 분야의 국제기구(WAY, AYC, UN Youth Unit, AUN, ASEF, EYF 등)활동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 지원,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우수 청소년단체와 모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의 포상, 국제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관리, 기타 청소년 및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을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청소년세상 - 참여! 배려! 열정! 희망! -'의 해로 정한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과 창의적 체험활동·자유학기제 등의 실시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단체와 민·관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협의회와 회원단체의 위상과 입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청소년관련 사회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청소년단체 및 기업, 유관기관과의 연대활동을 위해 다각도의 대정부·대국민·대국민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정책의 흐름을 읽고 청소년단체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정책연구세미나와 청소년단체 전문연수에도 진력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회의 및 청소년기자단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분야의 정보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포털사이트의 운영과 청소년학술정보지인 '오늘의청소년', 청소년단체총람, 사업활동종합보고서 발간 등 출판홍보활동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또한 회원단체와 청소년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여 단체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단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찬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개선활동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청소년분야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나아가 국제 청소년기구의 정회원국 역할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및 지도자의 글로벌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와 국제청소년포럼, 기타 국제행사 등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계의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국제교류행사를 추진하여,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국제무대에서 넓은 시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생활체육·유아교육 기능 등을 두루 갖춘 유스호스텔인 국제청소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개원 후 13년 동안 국내·외 청소년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연면적 3,658평의 규모로 동시숙박 가능인원이 270여 명이며, 국내외 대학생, 청소년 및 단체를 위한 기본적인 유스호스텔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기관의 연수 및 세미나, 각종 행사 및 연회 등의 장소이자, 수영, 헬스 등 생활체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청소년분야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CENTERS)는 전국의 760여 개 공공 및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협의와 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책 제안 등을 위해 1989년 10월 1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으로 창립하였고, 2002년도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였으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 명칭을 정하여 2004년 2월에 공포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9조의거 2005년 2월에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활동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연계사업 개발 운영지원, 청소년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실천 방안 수립, 우수 마케팅 사례 발굴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유관기관, 청소년지도자 등과 상호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방협회의 구성 및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지원체제 구축 등이다.



## 제 4 장

#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 1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가. 설치경위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정부조직은 청소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청소년국이다. 이후 체육부의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이후, 1997년 3월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청소년조직은 다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국으로 변화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되어 활동하여 왔다.

이렇게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 정책기능(육성 및 보호)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 설치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위원회 직제」를 제정, 「청소년위원회」를 공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2010년 1월 18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으며 동시에 부처명이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이후 청소년정책을 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여성부 보육정책,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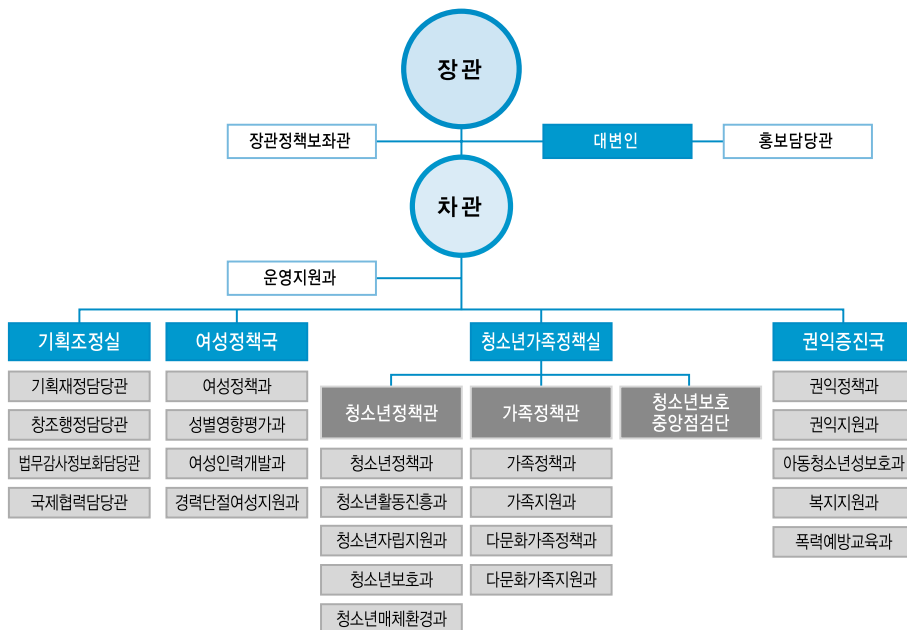
이와 함께 2008년 2월 29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한편, 2010년 1월 18일 가족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안사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가족정책 및 청소년육성·보호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나. 조직구조 및 업무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등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보하고 있다.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10-4-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주요 기능

<p>청소년정책과</p>	<p>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          청소년정책 전달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청소년활동진흥과</p>	<p>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연수 및 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p>

청소년자립지원과	<p>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감독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가출·비취학·학업중단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p>
청소년보호과	<p>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 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등에 관한 사항          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p>
청소년매체환경과	<p>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포장·전시·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단속 등의 대책 수립 및 시행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과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p>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조직은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으로 구성되며,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등 5개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정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단위 : 명)

직 급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정원	2	1	4	2	14	13	6	2	1	2	47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다. 청소년정책의 변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정부의 청소년 정책담당 부서의 변천과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 정책 기구의 변천과정은 앞의 설치 경위에서 알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10-4-3〉 청소년정책의 변천

단계	시 기	기간	특 성	명 칭	주 무 부 처
1단계	1948. 8. ~ 1964. 9.	16년	부처별 산발추진	부처별 관련업무 추진	각 부처
2단계	1964. 10. ~ 1977. 8.	13년	부처차원의 조정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내무부/무임소장관실
3단계	1977. 8. ~ 1988. 6.	11년	정부차원의 조정	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문교부
4단계	1988. 6. ~ 2005. 4.	7년	정부차원의 조정, 부처차원의 총괄 집행	청소년육성위원회	체육부/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5단계	2005. 4. ~ 2008. 2.	3년	청소년조직 통합, 단일청소년 전담 조직 출범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무총리실
6단계	2008. 3. ~ 2010. 2.	2년	정부차원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7단계	2010. 3. ~ 현재		여성가족부 개편 및 이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2010).

1단계인 1948년 8월부터 1964년까지는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도 없고, 전담하는 행정 기구도 없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까지의 13년간이다. 이 시기에 내무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주요 업무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차원의 조정과 보호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까지이며,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2단계의 부처차원의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조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조정을 시작하였으며, 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의 청소년관련 정책이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였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하였다.

4단계는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6월 1일부터 2005년 4월까지로 볼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관련 전담조직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고,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곧 청소년정책 조정실로 확대되었으며, 이 시기 청소년현장이 제정(1990년 5월 12일)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바뀌면서 청소년업무의 영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1991년 6월 27일)되었고,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는 청소년기본법이 제정(1991년 12월)되었다. 이후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시 청소년정책조정실은 청소년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시기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10월 25일 새로운 청소년현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 기구조정도 함께 단행되었는데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었다.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년 2월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를 전담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다.

제5단계는 2005년 4월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과 단일 청소년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 곤란,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미비,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청소년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6단계는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된 후부터 2010년 2월까지를 말한다.

제7단계는 2010년 1월 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

## 2 청소년 관련업무 추진기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상 정책 영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4-4〉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영역	세 부 과 제	소관부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전부처
	청소년희망카드 도입	여성가족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여성가족부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여성가족부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외교부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남북한청소년교류기회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증진	통일부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영역	세 부 과 제	소관부처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온라인·미디어매체활용 참여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여성가족부
	청소년 체력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정신건강위기도검사 및 적절개입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각 부처
	건강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 조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저소득·장애·농산어촌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정서적·행동적장애청소년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학대피해아동·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법무부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자립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청소년(청년) 주거 지원	교육부, 국토교통부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네트워크기반 직업훈련 도입등 직업체험환경 여건 강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의 지역사회 이동 및 청소년종합안전망구축	여성가족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부처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여성가족부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아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비행 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여성가족부, 법무부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및 홍보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지원 및 선도·보호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영역	세 부 과 제	소관부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정책 위상 및 성과 평가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및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추진	여성가족부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	여성가족부
	정책분석·평가에기반한정책수립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2013).

부처별 청소년업무의 특성을 보면 부단위 기관에서는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청소년이 대상고객인 사업에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청단위 기관에서는 정책예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예산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종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뉘어서 추진되던 아동, 보육, 청소년 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추진되어 오다 2010년 1월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17개 시·도의 청소년관련 행정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시·도 청소년 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청소년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 각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 10-4-5〉 시·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현황

시·도	담당실국	청소년분야
서울	여성가족정책실	이동청소년담당관
부산	여성가족정책관	이동청소년담당관
대구	사회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인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광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울산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종	안전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경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강원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충북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충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전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전남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경북	보건복지국	다문화행복과
경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제주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정책과제중 세부 추진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성격은 각 시도별로 상이한데, 다음과 같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제주는 심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고 경기와 전남은 자문기구와 심의기구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표 10-4-6〉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시·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시·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서울	자문기구	강원	자문기구
부산	심의기구	충북	자문기구
대구	심의기구	충남	자문기구
인천	자문기구	전북	심의기구
광주	심의기구	전남	자문/심의
대전	심의기구	경북	자문기구
울산	자문기구	경남	자문기구
경기	자문/심의(주요시책 및 기금)	제주	심의기구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5 정부 산하기관

###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www.kywa.or.kr)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에 의해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여 청소년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기록 관리를 위한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dovol.youth.go.kr)”, 청소년들이 신체단련·자기개발·자원봉사·탐험활동을 고르게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그리고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국립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여 2013년 말 현재 5개소의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관련하여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1급, 2급, 3급)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연수와 함께 2013년부터 법제화된 현직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연수를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12년 8월 기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사회 이슈가 되는 청소년문제들을 분석·연구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심각해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청소년 관련 기관에 보급·운영하는 등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상담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위탁운영하는 등 국가자격제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친구의 문제를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조언하는 또래상담자 양성 교육, 건강한 청소년육성에 목적을 둔 품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및 전문연수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경찰, 학교, 청소년관련 시설들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 지원체계(CYS-Net)을 운영·지원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하여 컨설팅 지원, 관계자 회의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등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및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버상담센터 운영과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의 전문상담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등 사이버상담 등 청소년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진로를 포기

하거나 보호시설 등에 입소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학교복귀,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건강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11박 12일 기숙형 치료학교 (RESCUE)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실시와 인터넷 중독 기숙형 치료학교 운영 등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제 5 장

#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가. 설립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www.nypi.re.kr, 원장 이재연)은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 1989년 7월 1일에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처음 설립되어 청소년정책관련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993년 1월 1일에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되었고 1999년 1월 29일부로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다. 한편, 2005년 국무총리산하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가 통합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속이 이관되었고, 2007년 5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기초이론연구, 현안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 정책평가지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청소년 단체·시설, 청소년지도자 등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사업의 방향설정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자문하는 청소년정책사업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청소년 생활환경, 의식, 여가, 활동 등의 실태와 변화 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기초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기초조사 기능’,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연구·개발 기능’,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 및 자문·지원과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정책평가·자문 기능’, 넷째, 청소년관련 전문가·학계·기관과의 협력사업과 외국청소년전문기관과의 교류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인 협력체계와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는 ‘대외교류·협력 기능’, 다섯째, 청소년연구 및 정책



개발의 방향제시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정책협의회, 정보서비스사업을 통한 연구자료 및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기능’ 등이 있다.

## 나. 조직 및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93년 1월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될 당시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5실 7부의 체계였으나, 1995년 12월 이후 기획조정실, 홍보사업단, 복지환경실, 수련활동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등 5실 1단 12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팀제를 도입하여 4실 5부 8팀으로 재개편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부설기구로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중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998년에는 자립경영 기반구축 및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육성정책연구실, 복지정책연구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연구기획부, 총무부 등 2실 1센터 2부로 기구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기획부와 총무부를 기획조정실과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영역별 업무를 팀제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부서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분리 운영하는 등 3실 1국 1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5년 초에는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를 통한 청소년 정책 수립의 시계열적 기초자료 축적을 위하여 정책기초연구실을 신설하여 4실 1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의 통합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본부, 1국, 4실, 5팀 체제로 개편하였다. 즉, 기획조정본부에 연구기획팀, 예산기획팀, 대외협력·자격검정팀 등 3팀으로, 감사실 외에 청소년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실, 통계조사연구실 등 3개의 연구실로, 사무국에 총무팀과 경리팀 등 2팀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이후 2011년에 기획조정본부 내 3개 팀을 연구기획·대외협력팀과 예산기획·성과관리팀 등 2팀으로 개편하였으며, 2012년에는 각 연구실을 활동·역량연구실, 보호·복지연구실, 통계·기초연구실 등 전문분야별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디지털·글로벌 시대 청소년의 창의력과 도전정신 계발을 지원하는 국가 청소년 연구·정책 수립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기획의 체계화, 과학적 연구관리 체계 확립, 연구 성과의 정책반영과 사회적 확산을 통하여 연구기획의 체계화와 전문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경영목표의 체계적 추진, 합리적·효율적 조직 구성 및 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관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기관경영과 조직운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도모하며, 셋째,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청소년정책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연구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와 위상강화를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 다. 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년도 연구과제는 ① 정관상 설립목적 및 정부시책과의 적합성, ② 국정과제 부합성, ③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위상에 부합한 과제, ④ 아동·청소년·가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제, ⑤ 원내 각 실별 고유기능 주요 연구영역의 부합성, ⑥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도 및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과제 등 6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업은 기관고유사업으로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사업, 연구지원사업, 일반사업이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발주하는 수탁용역사업 과제가 있다.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년도 연구사업의 기본연구사업 과제로 ① 미래 환경변화 전망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과제 I, ②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③ 국가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④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⑤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⑥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⑦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⑧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⑨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⑩ 수시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일반사업으로는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II,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 체계 개발연구 II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IV, □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연구관련사업으로 ①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② 청소년 연구관련 교류·협력사업, ③ 지역 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3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연구지원사업으로, ④ 연구기획 사업비, ⑤ 학술지·간행물 발간, ⑥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⑦ 전산·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 4개 사업을 수행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수행을 위한 기초 연구로 2013년에 37개의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담당했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는 201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2010년 6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센터 조직은 소장 중심의 정책전략기획팀, 정책평가연구팀 등 2팀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정책전략기획팀은 중장기 정책 및 청소년정책 의제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슈브리프 및 정책리पोर्ट를 발간하고, 주요 정책현안 및 이슈 관련 청소년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범부처적 차원에서 정책입안이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책평가연구팀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평가 체계를 통해 정책협약의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단체·시설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유관기관 등의 최신 동향 분석, 주요 자료 번역을 소개하는 등 국내의 청소년정책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 2

##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1991년도부터 각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학부, 대학원 등에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을 둔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은 현재 38개교에 달한다. 이 중에는 각 대학별로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학부 또는 대학원만을 설치한 곳도 있다. 한편 평생교육 관련 학과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위한 교과과정을 설치한 곳도 있다.

4년제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서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초당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한국체육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이상 가나다 순) 등이며, 사이버대학 중에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한국복지사이버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더불어 목포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청소년관련 학과를 연계 전공으로, 전문대학으로는 군장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원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가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 광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백석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세대학교, 호서대학교(이상 가나다 순) 등에서 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는 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의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의 설치 또는 청소년관련 학과로의 독립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 관련 분야의 발전과 확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창출하며,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들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학회는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분야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청소년(관련)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자 상호 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청소년학의 정립과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청소년학연구'라는 학술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는 2004년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4년 학회 창립과 더불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인 '미래청소년학회지'를 발간하였고, 매년 4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청소년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시설 및 환경을 보급하고 기존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청소년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2년 창립되었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인 '청소년시설환경'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고, 국제교류/봉사활동, 국제심포지엄, 학술대회, 작품집 발간, 월례세미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1998년에 청소년복지의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설된 학회이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청소년복지연구' 학술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부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학회는 아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한국청소년연구' 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제연구소,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교육전략21, 한국청소년정책학회, 한국시민청소년학회 등 청소년관련 민간 연구기관에서 왕성하게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학의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독립 연구기관 및 대학 부설, 단체 부설 등의 민간 연구기관은 늘어날 전망이다.

###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세계 각국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개발관련 기관 간의 협의회로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 WARDY)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 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연구개발기관 간 정보와 학술교류 확대를 통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21세기에 추구되어야 할 지구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11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청소년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청년사회학연구회)은 이러한 취지의 세계협의기구 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를 기점으로하여 1997년 10월 7일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6개국의 8개 기관 대표들이 한국에 모여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창립기념으로 ‘청소년폭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① 청소년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 ②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상호방문 추진, ③ 청소년 관련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회원국 간의 상호교류와 연대 강화, ④ 청소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등이다.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국제심포지엄과 공동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국제심포지엄은 제1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1997년 10월 7일 ‘청소년폭력의 국제비교’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998년 9월 23일에는 서울에서 ‘21세기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한·중·일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1999년 10월 11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청소년과 청소년연구’란 주제로 제2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2000년 10월 10일에는 서울에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정책수립의 과제 -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참여 증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3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2002년 6월 20일에는 서울에서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2004년 11월 11일에는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 역할’이란 주제로 역시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또한 2005년 10월 11일에는 과천에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2006년 9월 6일에는 서울에서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007년에는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과정’,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등의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2008년에는 ‘청년기의 사회화에 대한 한·일 비교’, 2009년에는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 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독일의 장애아동, 청소년지원 정책’,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선진국의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 국제세미나’ 등이 개최되었다. 2010년에는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2011년에는 '한-핀란드 공동세미나', '한-사우디아라비아 국립 청소년연구센터 공동포럼', '한-중 청소년정책 국제세미나' 등이 개최되었다.

한편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가 수행한 공동연구로는 1997년 '청소년의식에 관한 한·중·일 국제비교연구', 1999년 '청소년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한·중·일을 중심으로', 2000년 '새천년 청소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한·중·일을 중심으로', 2001년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연구' 등이 있다. 2006년에는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 비교조사'가, 2007년에는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고교생의 생활 의식 국제비교 연구',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06년 ~ 2008년의 3개년에 걸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가 공동 수행되었다. 2009년에는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발달과 정책방안 연구'를 공동수행하였으며, 2006년~2010년의 5개년에 걸쳐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가 공동으로 추진되었고, 2010년~2011년에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1997년 6개국 8개 기관이 가입한 이후, 2013년 기준 총 10개국 13개 기관이 현재 세계청소년 개발협의회에는 참여하고 있다.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 현황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www.nypi.re.kr	82-2-6913-8910
중국	중국청년정치학원 (Chinese Youth University for Political Science)	100089 25 Xisanhuan Beilu,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86-10-8856-7101
	중국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 (Shanghai Youth Administration Official College)	No. 574 West Jiangwan Road, Shanghai, China		86-21-6540-5700
일본	일본청소년연구원 (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15, Kasumigaokacho, Shinjuku-ku, Tokyo160, Japan	www1.odn.ne.jp/youth-study	81-3-3475-2535
	게이오대학21세기연구소 (KeioUniversity21COE-CCC)	6th Floor, Mita Toho Building 3-1-7 Mita, Minato-ku Tokyo 108-0073, Japan		81-3-5427-1045
싱가폴	국립청소년청 (National Youth Council)	113 Somerset Road National Youth Centre, Singapore 238165	www.nyc.gov.sg	65-6-734-4233
호주	청소년연구센터 (Youth Research Centre)	Youth Research Center Faculty of Educ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Victoria 3010 Australia	www.yam.edfac.unimelb.edu.au	61-3-8344-9633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독일	포츠담대가족아동연구소 (Potsdam University Family-Children Research Center International Council on National Youth)	Burgwall 15, 16727 Oberkrämer OT Vehlefanzt	www.sturzbecher .de	49-(0)3304-397010
영국	영국국립청소년청 (The National Youth Agency)	17-23 Albion Street, Leicester LE1 6GD	www.nya.org. uk	44-1-16-285-3700
핀란드	핀란드연구네트워크 (The Finnish Research Network)	The Finnish Youth Reseach Society Olympiastadion Etelaarre 00250, Helsinki, FINLAND	www.alli.fi	358-0-348-24323
미국	아이오와대국립가족지원센터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Family)	University of Iowa School of Social Work 100 Oakdale Campus, W206 OH Iowa City, IA 52242-5000	www.uiowa.edu/~ nrccfp	1-319-335-4965
	뉴욕아동환경연구그룹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365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6, United States	www.cernyc. org	1-212-817-1902
사우디 아라비아	국립청소년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Youth Studies, King Saud University)	PO. Box 75148, Riyadh, 11578, Kingdom of Saudi Arabia	www.ncys.ksu. edu.sa/eng	966-1-467-0381
말레이시아	사회과학연구원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Studies)	43400 UPM Serd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60-3-8947-1865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제 6 장

#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 1

###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2013년도 청소년정책 예산은 총 1,714억원으로 일반회계 584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06억원, 청소년육성기금 62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6-1〉 연도별 청소년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 청소년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예비비 (일반 회계)	광특회계 (균특)	청소년육성기금		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1995	-	-	28,098	2,000	-	-	-	13,654	4,309	10,000	58,061
1996	-	-	37,896	3,000	-	-	-	18,984	6,300	10,000	76,180
1997	-	-	52,591	3,000	-	-	-	21,645	10,803	10,000	98,039
2000	-	-	25,954	1,000	4,111	-	-	26,525	10,814	12,350	80,754
2003	-	-	25,084	-	7,077	-	-	36,607	13,979	7,000	89,747
2004	-	-	23,149	-	8,817	-	-	30,248	41,610	6,000	109,824
2005	-	-	10,872	-	9,950	-	8,138	37,643	52,436	6,000	125,039
2006	-	-	-	-	-	19,825	321	45,442	67,727	4,500	137,815
2007	-	-	-	-	-	35,388	-	43,128	74,812	-	153,328
2008	-	116,433	-	-	-	-	-	39,251	75,182	-	230,866
2009	-	182,641	-	-	-	-	-	36,522	81,741 (증진기금 3,463 포함)	-	300,904
2010	20,885	-	-	-	-	-	-	34,215	90,652	-	145,752
2011	21,671	-	-	-	-	-	-	49,417	73,491	-	144,579
2012	47,435	-	-	-	-	-	320	41,477	58,036	-	147,268
2013	58,427	-	-	-	-	-	-	50,550	62,435	-	171,412

주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예산은 제외되었음.

- 2010년 : 4,603백만원(일반회계 1,085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518백만원).
- 2011년 : 5,687백만원(일반회계 1,580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81백만원).
- 2012년 : 5,979백만원(일반회계 2,053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 2013년 : 8,623백만원(일반회계 3,441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182백만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일반예산은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자립지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청소년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고 있다.

##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 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청소년기본법 제54조)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에 의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청소년기본법 제55조)는 ① 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③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④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⑥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⑦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⑧ 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⑨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수입 재원으로는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이 유일한 수입 재원이고 그나마 2011년에 경륜경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익금의 30%를 받던 것이 19.5%로 축소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확충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2013년까지의 누계 조성규모는 7,942억원이며, 재원별로는 정부출연금 35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금 766억원, 경륜사업수익법정 출연금이 3,719억원, 복권기금전입금 870억원,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적립금이 2,237억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사용액을 살펴보면, 2013년까지 청소년육성 사업 지원에 7,272억원, 기타 경비등에 86억원을 합하여 총 7,35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순 조성액은 2013년 기준으로 583억원이다. 기금설치 원년도인 1989년도에는 기금조성액이 극히 빈약하여 청소년 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지만, 1990년도에는 8억 5천만원, 1991년도에는 10억 4천만원, 1992년도에는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분기점으로 점차 지원액이 급증하였다. 즉, 1994년

에는 90억원을, 1999년에는 126억원을 지원하였고, 이후 2004년 407억원, 2005년에는 488억원, 2006년에는 689억원, 2007년에는 748억원, 2008년에는 752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613억원, 2010년에는 698억원, 2011년에는 738억원, 2012년에는 619억원, 2013년에는 683억 원을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조성액(A)						사용액(B)				순 조성액 (A-B)	계	
	정 부 출연금	민 간 출연금	경료사업 수익법정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기금 전출	계			
1989	-	5,000	-	-	206	5,206	132	-	-	132	5,074	5,074	
1990	-	5,000	-	-	1,363	6,363	847	3	-	850	5,513	10,587	
1991	-	5,010	-	-	2,299	7,309	1,031	9	-	1,040	6,269	16,856	
1992	-	8,150	-	-	3,415	11,565	1,507	12	-	1,519	10,046	26,902	
1993	10,000	5,000	-	-	3,965	18,965	1,613	6	-	1,619	17,346	44,248	
1994	-	11,000	-	-	5,285	16,285	9,034	13	-	9,047	7,238	51,486	
1995	10,000	10,000	-	-	7,749	27,749	4,484	15	-	4,499	23,250	74,736	
1996	10,000	10,000	-	-	8,739	28,739	5,415	8	-	5,423	23,316	98,052	
1997	5,000	10,000	111	-	11,598	26,709	8,209	6	-	8,215	18,494	116,546	
1998	-	4,400	5,888	-	15,453	25,741	6,245	6	-	6,251	19,490	136,036	
1999	-	3,000	6,251	-	13,271	22,522	12,547	7	-	12,554	9,968	146,004	
2000	-	-	11,836	-	11,201	22,037	9,905	7	-	9,912	13,125	159,129	
2001	-	-	32,320	-	13,160	45,480	7,284	84	-	7,368	38,112	197,241	
2002	-	-	46,920	-	10,094	57,014	9,443	21	-	9,464	47,550	244,791	
2003	-	-	70,805	-	14,725	85,530	14,363	31	-	14,394	71,136	315,927	
2004	-	-	40,786	-	14,686	55,472	40,670	72	-	40,742	14,730	330,657	
2005	-	-	24,623	-	19,710	44,333	48,721	57	-	48,778	-4,445	326,212	
2006	-	-	14,330	-	16,878	31,208	68,857	48	-	68,905	-37,697	288,515	
2007	-	-	2,846	735	17,634	21,215	74,750	62	-	74,812	-53,597	234,918	
2008	-	-	17,489	255	8,141	25,885	75,138	45	-	75,183	-49,298	185,620	
2009	-	-	15,672	860	11,085	27,617	61,060	262	22	61,344	-33,727	151,893	
2010	-	-	19,312	2,964	5,947	28,223	69,473	113	213	69,799	-41,576	110,317	
2011	-	-	20,266	4,318	2,841	27,425	70,247	3,286	306	73,839	-46,414	63,903	
2012	-	-	22,235	34,417	1,955	58,607	58,650	3,207	30	61,887	-3,280	60,623	
2013 (계획)	-	-	20,245	43,416	2,314	65,975	67,617	-	-	622	68,294	-2,319	58,304
계	35,000	76,560	371,935	86,965	223,714	794,174	727,242	7,435	1,193	735,870	58,304		

주 : 1) 2009년~2012년 사업비는 시설비(건설중인 자산에 들어간 비용)를 제외한 금액.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075-8613/8617



# 부 록



##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연번	학 교	학과명(전공명)	주 소
1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석사)	(137-701) 서울 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Tel : 02) 2258-7723
2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상담교육전공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박사) 청소년학 전공	(154-4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Tel : 031) 249-9032
3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110-8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6 Tel : 02) 6361-1862
4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동청소년지도복지전공	(139-701)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Tel : 02) 940-5082
5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 평생교육과	(503-70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52(진월동) Tel : 062) 670-2057
6	군장대학교	청소년교육지도과	(573-709)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Tel : 063) 450-8270
7	나사렛대학교	청소년복지과	(331-71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Tel : 041) 570-7773
8	대구과학대학교	이동청소년지도과	(702-72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 Tel : 053) 320-1139
9	대구의대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복지상담학과 일반대학원 청소년복지상담학과(석·박사) 보건복지대학 청소년교육상담과	(706-06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동로 136 Tel : 053) 819-1348
10	대원대학교	청소년지도과	(390-702)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 Tel : 043) 645-9171
11	동서대학교	청소년상담심리전공	(617-71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주례동) Tel : 051) 320-2115
12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전공	(614-714)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엄광로 176 Tel : 051) 890-1197
13	디지털서울문화 예술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학과	(456-86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 1길 26 안산캠퍼스 Tel : 031) 400-8551
14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박사) 사회과학대학 청소년지도학과	(120-7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 02) 300-0620

연번	학 교	학과명(전공명)	주 소
15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120-7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Tel : 02) 300-1207
16	목포대학교	청소년지도 (연계)전공	(534-729)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Tel : 061) 450-2114
17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청소년상담학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과	(330-70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Tel : 041) 550-9114
18	백석문화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전공	(330-70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58 Tel : 041) 550-0700
19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청소년상담전공	(617-70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Tel : 051) 320-1930
20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년지도 (연계)전공	(139-77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Tel : 02) 970-5114
21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사)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 02) 760-0525
22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계열 청소년복지상담학과	(464-895)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 Tel : 1577-4990
23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연산협동과정 청소년교육학과(석·박사) 일반대학원교육학과청소년상담전공 (석·박사) 인문과학대학 청소년교육상담학과	(336-745)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22 Tel : 041) 530-1146
24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전공(석사)	(156-74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Tel : 02) 820-0277
25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Tel : 063) 270-2693
26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 1577-7177
27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사) 사회복지학과 청소년전공	(156-86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 02) 820-5114
28	초당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543-701)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Tel : 061) 453-4960
29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363-794)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길 10 Tel : 043) 210-8114
30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석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아동청소년복지학과	(450-701)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Tel : 031) 659-8114

연번	학 교	학과명(전공명)	주 소
3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청소년교육과(석사)	(110-79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Tel : 1577-9995
32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청소년복지상담학과	(712-881)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46-10 Tel : 1644-9775
33	한국체육대학교	생활체육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38-7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Tel : 02) 410-6752
34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Tel : 042) 629-7227
35	한려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545-704) 전라남도 광양읍 한려대길 94-13 Tel : 061) 760-1117
36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석·박사) 인문사회학부 아동청소년복지학과	(35-706)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Tel : 041) 660-1144
37	한세대학교	치료상담대학원 상담학과 아동청소년상담 전공(석사)	(435-742)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번지 Tel : 031) 450-5114
38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청소년문화 상담학과 (석사) 일반대학원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박사) 인문대학청소년문화 상담학과	(336-795)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Tel : 041) 540-5114

##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2013년 9월 기준, 단위: 명)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인원수	청소년 회원수	설립 목적
	직위	성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함종한	1965. 12. 8	3,321,221(2,285,513)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
기독교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	정신철	1996. 12. 30	84,691	83,327	아동·청소년 육성, 복지, 자선 사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존엄성 실현
국제청소년교류연맹	총재	유정수	2009. 04. 07	4,008	2,847	청소년의 국제적 이해와 국제인으로서의 역량 함양
국제청소년연합	회장	박문택	2001. 05. 31	93,770	93,090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시대 주도 청소년 양성
그린웨일리·그린스카우트연합	총재	장만규	1994. 10. 12	3,200	2,100	청소년 환경교육 및 훈련으로 자연보호 정신 함양
기독교청소년협회	이사장	정진해	1995. 10. 30	12,902	9,819	기독교정신에 의한 청소년상담 교육으로 인재양성
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류태영	2002. 06. 27	702	137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줌
대건청소년회	이사장	이성효	1998. 09. 21	3,000	900	청소년활동을 통해 건전 사회 기풍 조성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청소년육성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전준호	1920. 06. 20	18,840	8,389	불타의 가르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계발과 사회정화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RCY)	총재	유종근	1953. 04. 05	259,443	242,119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현 및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공헌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본부장	김찬호	1929. 12. 01	10,666	9,347	종교, 지육, 체육, 봉사생활로 바른 교회생활 기여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인원수	청소년 회원수	설립 목적
	직위	성명				
대한청소년총효단연맹	총재	김영희	1997. 12. 30	22,470	19,943	총효예의 연구와 교육 및 수련 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비로자나청소년협회	회장	강동우	2000. 07. 24	6,259	5,956	청소년에게 불교이념을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
삼동청소년회	이사장	안민순	1989. 01. 18	8,545	7,508	일원주의 사상의 도덕적 품성 함양과 세계평화에 기여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이사장	조규만	1999. 09. 01	26,498	24,188	가톨릭정신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
성산청소년효재단	이사장	최성규	1994. 02. 28	4,816	4,635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보호·지도육성 및 가치관 확립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차광선	1948. 06. 21	56,628	55,449	절대 정직·순결·무사·사랑으로 청소년 건전 지도 육성
숲사랑소년단	이사장	김명전	1991. 07. 24	4,488	4,291	국토보전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 전개 및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아름기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안구현	1992. 06. 29	758	431	지·덕·체가 균형잡힌 청소년 육성과 한민족의 주체성 전파
아이섹코리아	중앙 위원장	이인수	1962. 11. 26	800	800	미래의 유능한 경영인 양성과 국제적 교류
어린이재단	대표이사	지훈상	1948. 10. 15	618,562	396,765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보호 및 지원
우리누리청소년회	이사장	이만희	1997. 04. 08	1,600	1,011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해 수련활동 제공 및 미래 지향적 청소년육성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회장	이성희	1977. 03. 17	2,513	1,013	선도활동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민동석	1954. 01. 30	9,061	5,561	교육, 과학, 문화보급 및 국제 교류를 통한 인류복지증진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인원수	청소년 회원수	설립 목적
	직위	성명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김영순	1961. 04. 01	15,349	0	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 성 교육 및 가정복지 도모
청소년과사람사랑	이사장	양종수	1994. 12. 22	5,977	5,161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박현성	1966. 04. 16	67,577	54,624	청소년불자 실행활동 지도와 청소년육성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김종기	1995. 10. 31	164,717	87,480	청소년 수련활동·선도·유해 환경정화·복지증진
탁틴내일	이사장	최영희	1995. 03. 01	54,715	186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총재	윤점열	1996. 09. 30	31,468	30,084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상임고문)	(여원택)	1946. 05. 10	137,361	121,873	소녀와 젊은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봉사 실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총재	김경옥	1948. 04. 25	150	30	참된 인간세계 실현위한 그리스도의 화해와 교회일치
한국라보	이사장	박종렬	1973. 12. 31	5,266	3,724	각국 간의 상호민박을 통한 친선 문화교류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이사장	이재정	1997. 07. 15	96,829	36,628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와 국제 간의 이해 증진
한국불교청년지도자회	이사장	반승일	1911. 06. 15	35,820	32,400	불타의 정신계승 및 인격도야와 청소년육성
한국B.B.S중앙연맹	회장	김상백	1964. 09. 05	18,996	17,811	우애와 봉사의 이념아래 청소년 보호와 지도
한국 4-H본부	총재	홍문중	1954. 11. 09	76,371	68,866	4-H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소양과 기술 지원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인원수	청소년 회원수	설립 목적
	직위	성명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함종한	1922. 10. 05	197,305	170,142	민주시민 자질향상 도모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1922. 04. 20	91,564	15,378	젊은 여성의 기독생활 실천 및 평화와 정의사회 건설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안재웅	1903. 04. 03	130,448	16,750	기독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문화 창조
한국우주소녀단	총재	서상기	1989. 03. 11	46,103	43,528	우주시대 인재양성 및 정보화 선진과학입국 실현
한국웃음운동 청소년진흥회	회장	김성업	2009. 12. 16	11,967	8,868	웃음운동 캠페인 활동 및 교육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총재	임성준	1967. 04. 17	58,449	28,235	야외여행활동을 통한 풍부한 지식과 건전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총재	이군현	2002. 03. 22	4,995	4,675	발명영재의 발굴지원을 통해 유능한 발명인 육성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회장	최노사	1991. 05. 04	31,710	21,809	복음선교와 후원활동을 통한 청소년육성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청소년봉사단연맹	총재	유주영	2011. 04. 19	82,319	28,035	국제사회에 기둥이 될 청소년 세대를 육성하는데 기여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이사장	김순희	1997. 10. 24	5,251	4,753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및 인성교육을 위한 교화
한국청소년스포츠팀연맹	이사장	이수호	2008. 09. 18	1,847	1,819	스포츠클럽 연합단체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현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황우여	1981. 03. 19	315,709	284,979	청소년 전인교육을 통한 민족·국가관 확립
한국청소년연합	이사장	김창신	1997. 11. 27	33,500	33,000	인간사랑 자연사랑 나라사랑의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창달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인원수	청소년 회원수	설립 목적
	직위	성명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문헌일	1964. 09. 11	39,265	2,769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활동 지도로 민주시민 육성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이사장	강병연	1993. 08. 25	322	256	심신단련과 지도육성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 확립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	김병후	2000. 02. 25	500	350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한국항공소년단	총재	하성용	2005. 08. 02	7,100	6,961	항공, 우주교육을 통한 도전, 개척정신 함양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백석현	1980. 05. 24	147,683	52,182	해양개척정신 고취를 통한 진취적 기상증진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회장	박찬성	1989. 07. 10	72,000	62,321	강건한 신체와 올바른 품성 및 국가관 확립
한국환경청소년단	총재	김진호	2001. 05. 09	7,500	5,149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정착과 자연환경 계몽 감시운동
한국환경청소년연맹	이사장	유범진	2005. 03. 02	3,000	2,250	환경사랑 활동과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환경보전 확산 이바지
흥사단	이사장	반재철	1913. 05. 13	16,606	6,162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
21세기공동체개발원	이사장	손대근	1994. 06. 28	1,200	800	수련거리연구 개발·보급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상 제시
대한치어리딩협회	이사장	이선화	2008. 08. 25	3,500	3,100	치어리딩 보급을 통해 생활체육 진흥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문화예술교육협회	이사장	허찬영	2007. 08. 10	305	160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세계화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이돈희	2009. 02. 13	2,877	2,877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단체활동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인원수	청소년 회원수	설립 목적
	직위	성명				
청소년흡연·음주예방 협회	회장	윤종필	2008. 02. 26	4,000	2,000	술과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민주시민의식 함양제고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회장	김창연	2005. 12. 24	1,935	1,877	청소년골프선수 선발 및 육성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 협회	회장	강경순	2003. 10. 06	9,000	8,000	해양스포츠 지도교육 능력 함양 및 해양환경보전활동
한국향토사랑 청소년봉사단	이사장	이경희	2004. 09. 10	28,445	27,835	향토봉사 활동을 통한 향토사랑 및 조국 사랑 기여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김상룡	2008. 03. 24	30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남정달	1996. 03. 01	24개 지역청소년단체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박장동	2002. 10. 11	31개 지역청소년단체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임장근	2001. 09. 07	35개 지역청소년단체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정근두	1998. 03. 05	19개 지역청소년단체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최영수	2001. 12. 04	13개 지역청소년단체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신백식	1995. 05. 11	13개 지역청소년단체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13).

###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2013. 11월 기준)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서울	수련관	수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세상
서울	수련관	역삼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서울	수련관	강남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서울	수련관	강동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문화의집	강북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서울	수련관	강북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서울	수련원	봉도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재)원불교유지재단
서울	수련관	강서청소년회관	공공	위탁	(사)흥사단
서울	수련관	화곡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유스호스텔	국제청소년센터	민간	직영	(사)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서울	수련관	관악청소년회관	공공	위탁	(사)온터드레희
서울	수련관	삼성산청소년수련관	민간	직영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수련관	광진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흥사단
서울	수련관	구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	수련관	금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금천구청
서울	문화의집	노원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수련관	노원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문화의집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공	위탁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수련원	도봉숲속마을	민간	직영	(재)송석문화재단
서울	문화의집	쌍문동청소년랜드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문화활동협회
서울	문화의집	도봉구립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문화의집	창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수련관	창동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광운학원(광운대학교) 조무성
서울	문화의집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동작복지재단
서울	문화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동작복지재단
서울	수련관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특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서울	수련관	마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서울	문화의집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명지전문대학
서울	수련관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문화의집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문화의집	방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수련관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공공	위탁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수련관	서초유스센터	공공	위탁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문화의집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서울YWCA
서울	수련관	성동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수련관	성북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서울	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
서울	수련관	송파청소년수련관	공공	수탁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유스호스텔	서울올림픽파크텔	민간	직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문화의집	목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서울	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서울	문화의집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공공	위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서울	수련관	살레시오교육회관	민간	직영	(재)천주교살레시오
서울	수련관	문래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	문화의집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서울	수련관	돈보스코청소년센터	민간	직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
서울	특화시설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공공	위탁	연세대학교
서울	특화시설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	위탁	(재)한국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서울	유스호스텔	하이서울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특화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공공	위탁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수련관	용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수련관	은평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엔젤스헤이븐
서울	문화의집	종로청소년문화센터	공공	위탁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수련관	서울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서울	수련관	중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서울	특화시설	청소년문화교류센터	공공	위탁	대산문화재단
서울	유스호스텔	서울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서울	수련관	망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서울	수련관	중랑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부산	수련원	오마이랜드부산	민간	직영	해화학원
부산	수련관	금정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문화의집	기장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수련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수련원	기장문화예절학교	공공	위탁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야영장	장안캠프	민간	직영	개인(조민수)
부산	문화의집	양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불국토청소년도량
부산	수련관	양정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불국토청소년도량
부산	문화의집	화지청소년문화회관	민간	직영	동래정씨 대종중
부산	문화의집	부산진구청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부산YMCA
부산	수련관	금곡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문화의집	북구청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문화의집	사상구청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부산YMCA
부산	수련관	사상구청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부산YMCA
부산	수련관	구덕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야영장	구덕청소년야영장	공공	위탁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수련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부산광역시청
부산	문화의집	함지골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수련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문화의집	중구청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수련관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대한적십자사
부산	문화의집	해운대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해운대구청장
부산	수련원	해운대청소년수련원	민간	민간	(재)해성
부산	유스호스텔	부산유스호스텔아르피나	민간	직영	부산관광공사
대구	문화의집	중구청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대구중구청
대구	문화의집	동구청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대구	유스호스텔	팔공산맥섬석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팔공산맥섬석유스호스텔
대구	수련관	서구청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함께하는 마음재단
대구	문화의집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대구	수련관	북구청소년회관	공공	위탁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대구	문화의집	북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대구	수련관	수성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문화의집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수련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수련원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대구	수련관	달성군청소년센터	공공	위탁	(재)달성복지재단
대구	문화의집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달성군
인천	수련관	동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문화의집	동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문화의집	화수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인천	수련관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수련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인천부평구문화재단
인천	수련관	계양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수련관	서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문화의집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문화의집	가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문화의집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수련관	강화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군시설관리공단
인천	문화의집	강화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군시설관리공단
인천	수련원	강화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조병돈
인천	수련원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최기산
인천	유스호텔	강화유스호텔	민간	직영	이경래
인천	수련원	강화성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재)성산청소년재단 최성규
인천	수련원	마니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주)마니산수련원 윤혜정
인천	유스호텔	서해청소년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서해교육문화 고재룡
인천	야영장	화도마니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윤종식
인천	야영장	강화갯벌나무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김선미
인천	야영장	강화비버리힐즈야영장	민간	직영	신봉희
인천	수련원	그레이스힐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서울도시가스(주)
인천	유스호텔	강화로얄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강화로얄호텔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인천	야영장	성산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재)성산청소년호재단
인천	수련관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	수련관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	공공	위탁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광주	유스호텔	광산유스호텔	공공	위탁	글로벌비전청소년교육연합
광주	수련관	광산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광주	수련관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송원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	문화의집	동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단법인 맥치청소년교육원
광주	수련관	동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단법인 맥치청소년교육원
광주	수련관	북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인권센터
광주	수련관	서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광주	문화의집	서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서구청장
광주	수련원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광주	문화의집	빛고을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광주	문화의집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흥사단
대전	수련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공공	위탁	대전YMCA
대전	수련원	대전청소년수련마을	공공	위탁	(사)대전청소년심신수련회
대전	수련관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공공	위탁	(재)대전가톨릭청소년회
대전	문화의집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대전YWCA
대전	문화의집	갈마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걸스카우트대전연맹
대전	문화의집	도솔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대전흥사단
대전	문화의집	삼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성광청소년문화회관
대전	문화의집	탄방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전국주부교실대전시지부
대전	수련원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대전	유스호텔	유성구유스호텔	공공	위탁	한국BBS대전충남연맹
대전	문화의집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대전가톨릭청소년회
대전	문화의집	대덕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대전	수련관	대덕구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울산	문화의집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울산YWCA
울산	문화의집	문수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걸스카우트 울산연맹
울산	문화의집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울산흥사단
울산	문화의집	동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울산	문화의집	남목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울산기독교청년회
울산	수련관	울주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	수련원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사)삼동청소년회
울산	수련원	울산학생교육원	공공	직영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울산	문화의집	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세종	문화의집	세종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청소년진흥재단세종시지부
경기	수련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공공	위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관	권선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영통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장안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관	광교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관	수정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금광청소년문화의집	민간	직영	금광교회
경기	수련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수련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문화의집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공공	위탁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문화의집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경기	문화의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부천YMCA
경기	수련관	동안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관	만안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석수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만안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원	안양블루몬테 유스호텔&리조트	민간	직영	현대엠코주식회사
경기	수련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경기	문화의집	일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경기	문화의집	선부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아름다운 청소년들
경기	문화의집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안산YWCA
경기	수련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	유스호텔	한국민속촌유스호텔	민간	직영	조원관광개발(주)
경기	수련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신갈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유림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수지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원	용인시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유스호텔	파인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파인리조트
경기	수련원	한터캠청소년수련의집	민간	직영	김용실
경기	유스호텔	홈브리지캐빈호텔	민간	직영	삼성에버랜드(주)
경기	유스호텔	홈브리지힐사이드호텔	민간	직영	삼성에버랜드(주)
경기	유스호텔	스위트유스호텔	민간	직영	조영희
경기	유스호텔	용인씨씨유스호텔	민간	직영	석천씨씨(주), 용인씨씨(주)
경기	문화의집	평택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평택YFC
경기	문화의집	원평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평택YMCA
경기	문화의집	북부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평택YFC
경기	문화의집	안중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평택YMCA
경기	수련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공공	위탁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수련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유스호텔	서평택아츠밸리유스호텔	민간	직영	황선길
경기	문화의집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좋은친구들
경기	문화의집	광명시립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경기	특화시설	근로청소년복지관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경기	문화의집	나름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
경기	수련관	시흥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기	문화의집	시흥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시흥YMCA
경기	문화의집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군포시민의모임
경기	문화의집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군포타임내일
경기	수련관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단법인군포문화재단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경기	수련원	새싹동산청려수련원	민간	직영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경기	수련원	하내테마파크	민간	직영	전학열
경기	수련관	화성시여성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화성시문화재단
경기	문화의집	나래울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경기	유스호스텔	한울유스센터	민간	직영	임화순
경기	수련원	유네스코평화센터	민간	직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	수련원	청학서당예절교육수련원	민간	직영	서재옥
경기	수련원	자연나라	민간	직영	㈜동심에드피아
경기	수련원	덕평수련원	민간	직영	신한개발㈜
경기	수련원	㈜앤타임스아카데미	민간	직영	이관응
경기	문화의집	부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BBS이천시지회
경기	문화의집	창전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BBS이천시지회
경기	수련관	이천시희청소년문화센터	공공	위탁	(재)이천시민장학회
경기	수련원	김포로그벨리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김형금
경기	문화의집	사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원	김포시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통진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련관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양촌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아영장	중앙(근지암)아영장	민간	직영	(사)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	수련원	근지암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올림픽관광
경기	아영장	경기도청소년아영장	공공	위탁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	문화의집	안성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경기	수련원	엄마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임계두
경기	문화의집	덕풍2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청소년비전센터
경기	수련관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의왕시인재육성재단
경기	문화의집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경기	문화의집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여주군수
경기	수련원	여주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홍영광
경기	유스호스텔	비전빌리지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마임
경기	유스호스텔	여주황학산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신재운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경기	수련원	여주리치빌리지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주)리치빌리지
경기	수련원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문진국
경기	유스호텔	서봉유스호텔 1관	민간	직영	은희문
경기	유스호텔	서봉유스호텔 2관	민간	직영	은희문
경기	수련관	과천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과천시장
경기	문화의집	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휴지 중
경기	수련원	SN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윤천목
경기	수련원	청운인성수련원	민간	직영	이강조
경기	수련원	미리내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주)미리내
경기	유스호텔	한국아쿠르트인재개발원	민간	직영	(주)한국아쿠르트
경기	유스호텔	양평SN유스호텔	민간	직영	임경호
경기	유스호텔	고양유스호텔	민간	직영	정철호
경기	문화의집	고양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고양문화재단
경기	수련원	중산힐스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주)중산힐스
경기	야영장	서삼릉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사)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	수련관	고양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고양YMCA
경기	수련원	서울YMCA일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재)서울YMCA
경기	수련원	수동유스타운	민간	직영	박원희
경기	수련원	우리마을수련원	민간	직영	김영일
경기	수련원	서경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서경대학교
경기	수련원	국제광림비전랜드	민간	직영	광림교회 김정석
경기	수련관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남양주도시공사
경기	수련관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경기	문화의집	교하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파주YMCA
경기	문화의집	금촌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파주문화원
경기	문화의집	문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해피월드복지재단
경기	수련원	영산수련원	민간	직영	(재)순복음선교회
경기	수련원	대한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오희택
경기	수련관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경기	수련원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신필호/신평호
경기	수련관	양주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양주시장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 치 주 체	운 영 주 체	운 영 자 ( 단 체 )
경기	수련원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경기	유스호텔	일영살롬유스호텔	민간	직영	(재)기독교대한가림유지재단
경기	문화의집	양주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양주시장
경기	수련관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공공	직영	포천시청
경기	유스호텔	베어스타운유스호텔	민간	직영	황영철
경기	유스호텔	광림유스호텔	민간	직영	광림교회
경기	수련원	포천염광수련원	민간	직영	최주일
경기	수련원	산정호수유스타운	민간	직영	이종욱
경기	수련원	은곡유스타운	민간	직영	이민우
경기	수련원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사)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경기	수련원	축구마을	민간	직영	㈜이아마을
경기	수련원	아침햇살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바로교육문화
경기	문화의집	동두천청소년문화회관	공공	직영	동두천시청
경기	유스호텔	그린캠프유스호텔	민간	직영	위정자
경기	수련원	드림아일랜드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하나레저 임성수
경기	수련원	영인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양병희(대한예수교영안교회)
경기	수련원	유스토리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김성식
경기	수련원	서울시학생교육원	공공	직영	서울특별시교육청장
경기	수련원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청심국제문화재단
경기	유스호텔	가평유스호텔	민간	직영	임문갑, 장명순
경기	수련원	삐띠프랑스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한홍섭(에프엔에프)
경기	유스호텔	상천에덴유스호텔	민간	직영	김해성(한국기독교에덴성회)
경기	수련원	코스모피아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이세영
경기	야영장	연인산캠핑장	공공	위탁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경기	수련원	가평목동수련원	민간	임대	(사)대한청소년육성회경기도지부
경기	유스호텔	자연과별유스호텔	민간	직영	이영이
경기	수련원	군남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명진기업
경기	수련관	연천군청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분당사회관장
경기	유스호텔	임진강유스호텔	민간	직영	박찬명
경기	유스호텔	왕림리유스호텔	민간	직영	이기석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강원	수련관	강원도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천주교회 춘천교구
강원	문화의집	강원도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천주교회 춘천교구
강원	문화의집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춘천YWCA
강원	수련관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강원	수련원	강춘청소년수련원	민간	위탁	(사)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강원	야영장	오항리청소년야영장	공공	위탁	춘천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강원	유스호텔	기화유스호텔	민간	직영	㈜산책 커뮤니케이션
강원	유스호텔	강춘유스호텔	민간	직영	이장일
강원	유스호텔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공공	위탁	춘천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강원	문화의집	원주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원주YMCA
강원	문화의집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강원	수련관	원주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원주YMCA
강원	수련원	원주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고명학
강원	수련원	예동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경안개발
강원	수련원	간현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임상규
강원	유스호텔	치악산드림랜드유스호텔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외야활동협회
강원	유스호텔	치악산황둔유스호텔	민간	직영	치악산황둔밸리(주)
강원	유스호텔	동서울유스호텔	민간	직영	㈜동서울레스피아
강원	문화의집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강릉시장
강원	수련관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강릉시장
강원	수련원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강원	유스호텔	대관령유스호텔	민간	직영	기세남
강원	문화의집	동해시향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동해시장
강원	문화의집	동해시송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동해시장
강원	수련관	동해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동해시장
강원	야영장	동해송지골청소년야영장	공공	직영	동해시장
강원	문화의집	문곡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태백시
강원	문화의집	상장청소년문화의집 (황지청소년장학센터)	공공	직영	태백시
강원	문화의집	철암청소년문화의집 (철암청소년장학센터)	공공	직영	태백시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강원	수련관	태백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태백시
강원	유스호텔	O2 유스호텔	민간	직영	태백관광개발공사
강원	특화시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공공	직영	태백시
강원	문화의집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속초YMCA
강원	수련관	속초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강원	유스호텔	설악산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설악산유스호텔
강원	문화의집	도계청소년장학센터	공공	직영	삼척시장
강원	수련관	삼척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삼척시장
강원	문화의집	원덕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삼척시장
강원	문화의집	홍천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홍천군수
강원	수련원	홍천군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홍천군수
강원	유스호텔	홍천대명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대명레저산업
강원	야영장	홍천군청소년야영장	공공	직영	홍천군수
강원	수련관	홍천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춘천YMCA
강원	수련원	횡성군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문화협회
강원	야영장	풍수원성당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재단법인천주교원주교구
강원	유스호텔	신안종합유스호텔	민간	직영	신안종합리조트
강원	유스호텔	유토피아유스호텔	민간	직영	유토피아유스호텔(주)
강원	유스호텔	둔내유스호텔	민간	직영	로알관광(주)
강원	유스호텔	세계유스호텔인재개발원	민간	직영	개인
강원	야영장	서원면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개인
강원	수련관	영월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원주YMCA
강원	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강원	문화의집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평창군수
강원	수련원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주)호렙동산 평창점
강원	유스호텔	용평리조트유스호텔	민간	직영	용평리조트
강원	유스호텔	평창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리드패밀리
강원	유스호텔	휘닉스빌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보광
강원	문화의집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문화의집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문화의집	사북청소년장학센터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강원연맹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강원	문화의집	철원군청소년회관	공공	직영	철원군수
강원	수련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공공	직영	철원군수
강원	수련원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공공	직영	철원군수
강원	수련관	화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화천군수
강원	수련원	한국안전문화수련원	민간	직영	(주)네이블여행사
강원	문화의집	양구읍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양구군
강원	문화의집	남면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양구군
강원	문화의집	양구동면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양구군
강원	문화의집	빙산면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양구군
강원	수련관	양구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양구군
강원	야영장	양구군청소년야영장	공공	직영	양구군
강원	문화의집	인제남면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인제군
강원	문화의집	인제북면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인제군
강원	문화의집	기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인제군
강원	수련원	인제미리내캠프	민간	직영	(주)미리내캠프
강원	수련원	만해마을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만해사상실천선양회
강원	수련관	고성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고성군
강원	문화의집	현내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고성군
강원	문화의집	거진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고성군
강원	수련원	알프스수련의집	민간	직영	(주)알프스리조트
강원	수련원	설악수련의집	민간	직영	김혜순
강원	수련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강원연맹
충북	수련관	청주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학)주성학원
충북	문화의집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충북	유스호텔	사조마을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수안보사조마을
충북	수련관	충주시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재)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수련원	전원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주)서평종합건설
충북	유스호텔	일양유스호텔	민간	직영	일양유스호텔
충북	수련원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	민간	직영	박명숙
충북	수련원	박달재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이종진
충북	문화의집	제천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아름다운청소년들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충북	수련관	제천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아영장	후산리청소년아영장	민간	직영	이기철
충북	아영장	학생아영장	공공	직영	제천교육지원청장
충북	유스호텔	청풍유스호텔	공공	위탁	동대문구청장
충북	유스호텔	충주호월악산유스호텔	민간	직영	김지수
충북	수련관	청원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흥사단
충북	수련원	서당골청소년수련원관광농원	민간	직영	박주희, 최지수
충북	문화의집	보은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
충북	수련원	별방유스타운	민간	직영	이용태
충북	수련원	속리산알프스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한창환
충북	유스호텔	열림원유스호텔	민간	직영	장동익
충북	유스호텔	태동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한창환
충북	수련원	속리산유스타운	민간	직영	(주)계룡산업
충북	유스호텔	수련연수유스호텔	민간	직영	박승화
충북	유스호텔	속리산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계룡산업
충북	수련관	옥천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옥천군수
충북	문화의집	이원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옥천군수
충북	문화의집	청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옥천군수
충북	수련관	영동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영동군수
충북	수련원	송호청소년수련원	민간	위탁	임묘진
충북	수련관	증평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증평복지재단
충북	유스호텔	증평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증평유스호텔(권세원)
충북	수련원	진천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진천군수
충북	문화의집	괴산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괴산군수
충북	수련관	괴산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대한청소년총효단
충북	수련원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
충북	수련원	청소년수련마을보람원	민간	직영	(재)오운문화재단 보람원
충북	수련원	화양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화양청소년수련원
충북	수련원	음성군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음성군수
충북	문화의집	음성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음성군수
충북	수련원	꽃동네사랑의연수원	민간	직영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충북	수련관	단양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단양군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충북	문화의집	단양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단양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충북	문화의집	매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매포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충북	유스호텔	소백산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세촌 소백산유스호텔
충북	유스호텔	단양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단양유스호텔
충북	수련원	반딧불수련원	민간	직영	(주)반딧불수련원
충남	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충남	수련관	천안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호서대학교
충남	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충남	야영장	독립기념관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독립기념관
충남	야영장	천안용연청소년야영장	공공	위탁	(사)JCI KOREA-동천안
충남	유스호텔	천안상록유스호텔	민간	직영	공무원연금공단
충남	문화의집	천안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천안시장
충남	유스호텔	천연휴식공간유스호텔	민간	직영	전정길
충남	유스호텔	계룡산갑사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계룡산갑사유스호텔(노수장)
충남	문화의집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공공	위탁	(사)한국BBS대전충남연맹공주시회
충남	유스호텔	공주유스호텔	민간	직영	공주유스호텔
충남	문화의집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
충남	수련관	보령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충남	수련원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이병직
충남	수련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공공	위탁	(학)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충남	수련원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사)한국인성문화원
충남	수련원	서해안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재)서해안청소년수련원
충남	문화의집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한서대학교
충남	수련관	서산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서산시복지재단
충남	문화의집	논산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논산시장
충남	수련관	논산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논산시장
충남	수련원	케이티앤지 상상미당 논산	민간	직영	(주)컴퍼니에스에스
충남	수련관	금산다락원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금산군수
충남	수련원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제)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충남	수련원	부여군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재)부여군청소년수련원
충남	문화의집	부여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부여군청소년수련원
충남	유스호텔	삼정부여유스호텔	민간	직영	삼정관광호텔
충남	유스호텔	자연부여유스호텔	민간	직영	자연부여유스호텔
충남	문화의집	서천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서울기독교청년회
충남	수련원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청양송의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충남	수련원	군포시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군포시장
충남	수련원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충남	수련관	홍성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충남	문화의집	홍성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충남	야영장	예산저수지청소년야영장	공공	직영	예산군수
충남	수련관	태안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태안군수
충남	유스호텔	아가페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아가페유스호텔
충남	수련원	만리포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오인근
충남	유스호텔	안면도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안면도유스호텔
충남	수련원	안면도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안면도청소년수련원
충남	유스호텔	꾸지나무골유스호텔	민간	직영	꾸지나무골유스호텔
충남	유스호텔	안면도해양유스호텔	민간	직영	안면도해양유스호텔
충남	유스호텔	청포대썬셋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케이와이엠청포대썬셋유스호텔
충남	수련원	한양여대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한양여자대학교청소년수련원
충남	수련원	당진시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인천 YMCA 청소년재단
충남	문화의집	합덕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당진시청
충남	문화의집	당진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당진시장
충남	유스호텔	합덕유스호텔	민간	직영	대전카톨릭청소년회
충남	유스호텔	대호유스호텔	민간	직영	한국농어촌공사
전북	수련관	솔내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문화의집	전주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전북	문화의집	완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문화의집	호지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아모스청소년회
전북	문화의집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흥사단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전북	수련관	군산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수탁	(사)군산YMAC
전북	문화의집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군산기독교청년회
전북	문화의집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수련관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익산YMCA
전북	수련관	익산YMCA 청소년수련관	민간	직영	(재)익산YMCA
전북	수련원	청소년특전캠프	민간	직영	(유)대한특전수련원
전북	유스호스텔	익산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수련관	정읍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정읍YMCA
전북	문화의집	신태인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정읍시장
전북	문화의집	정읍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정읍시장
전북	문화의집	정읍청소년문화체육관	공공	직영	정읍시장
전북	문화의집	남원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남원YMCA
전북	수련원	남원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주)남원지리산유스호스텔
전북	유스호스텔	지리산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남원지리산유스호스텔
전북	문화의집	김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김제시장
전북	수련관	김제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김제시장
전북	문화의집	금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김제시장
전북	유스호스텔	모악산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최지승
전북	문화의집	만경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김제시장
전북	수련원	만경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문화의집	신흥청소년문화의집	민간	민간	권영세
전북	수련원	세인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조만석
전북	수련원	청정테마센터(청정인성수련원)	민간	직영	이강동
전북	문화의집	원주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봉상청소년육영회
전북	수련관	원주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원주군수
전북	야영장	한국스카우트송광훈련장	민간	직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전북	야영장	진안군마이산청소년야영장	공공	위탁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전북협회 진안지회
전북	수련원	대광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장흥기
전북	수련원	만덕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원불교재단
전북	수련관	진안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한국YMCA전국연맹유지재단 진안YMCA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전북	수련관	무주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수련원	무주수련원	민간	직영	이장호
전북	문화의집	안성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나누는사람들
전북	야영장	반딧불청소년야영장	공공	직영	무주군수
전북	수련원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무주군수
전북	문화의집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장수군수
전북	유스호스텔	(주)장수힐스리조트	민간	직영	(주)장수힐스리조트
전북	수련원	우석수련원	민간	직영	우석대학교총장
전북	수련원	임실군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임실군수
전북	수련원	회문산청소년수련의집	민간	직영	윤병규
전북	수련관	순창군청소년센터	공공	직영	순창군수
전북	수련관	고창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고창군수
전북	문화의집	성내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고창군수
전북	유스호스텔	선운산유스호스텔	공공	직영	고창군청
전북	문화의집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고창군수
전북	수련원	썬리치랜드청소년수련의집	민간	직영	김순오
전북	유스호스텔	채석강리조트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심기분
전북	문화의집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부안군수
전북	특화시설	부안군청림청소년수련시설	공공	직영	부안군수
전남	수련관	목포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목포 YMCA
전남	문화의집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공공	위탁	목포 YMCA
전남	문화의집	여수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한국청소년육성회여수지구회
전남	수련관	여수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여수 YMCA
전남	수련원	순천시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전남)
전남	야영장	순천시청소년수련원야영장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전남)
전남	유스호스텔	순천시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전남)
전남	수련관	순천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순천시청
전남	수련관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일송정)	공공	위탁	광주YMCA(광주기독교청년유지재단)
전남	문화의집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광양YMCA
전남	수련관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공공	위탁	광양YMCA
전남	야영장	대나무골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대나무골야영장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전남	문화의집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담양군수
전남	수련관	담양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국제청소년교육재단
전남	수련원	성암국제수련원	민간	직영	(재)국제청소년교육재단
전남	문화의집	곡성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전남	야영장	곡성군청소년야영장	공공	위탁	(사)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전남동부지부
전남	문화의집	구례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구례군
전남	수련관	구례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갯돌청소년육성회
전남	수련원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공공	위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남	문화의집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고흥군수
전남	유스호스텔	보성유스호스텔(주)	민간	직영	임원택
전남	문화의집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보성기독교청소년협회
전남	수련관	화순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화순군수
전남	수련관	장흥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들청소년센터
전남	문화의집	장흥군회진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회진면사무소
전남	문화의집	장흥군관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관산읍사무소
전남	수련원	(사)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 (남도국제교육원)	민간	직영	(사)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
전남	수련원	해남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임창완
전남	유스호스텔	해남유수영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사)월드유스비전해남군지부
전남	유스호스텔	해남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자연사랑메아리
전남	수련관	영암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영암군수
전남	수련관	무안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무안군
전남	야영장	함평군청소년야영장	공공	직영	함평군수
전남	수련원	스카이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주)스카이교육(조사일)
전남	야영장	옥정골쉼터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강낙현
전남	야영장	장성군청소년야영장	공공	직영	장성군수
전남	수련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전라남도
전남	수련원	완도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문화의집	완도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사)꿈틀
전남	야영장	완도청소년야영장	공공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전남	수련관	진도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남호청소년회
전남	유스호텔	진도군유스호텔	공공	위탁	(사)한국리더문화협회
전남	수련관	신안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엘림코뮤니오
경북	문화의집	포항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북	수련관	포항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북	수련원	구룡포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북	야영장	한터울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김규태
경북	유스호텔	성도비치유스호텔	민간	직영	최인석
경북	수련관	경주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경주시
경북	수련원	국민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주)국민관광농원
경북	수련원	보문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주)보문청소년수련원
경북	수련원	서라벌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삼봉개발(주) 경주지점(최건환)
경북	수련원	OK그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양진형
경북	유스호텔	경주시산내유스호텔	공공	위탁	(사)청소년서라벌문화원 정분남
경북	유스호텔	금성유스호텔	민간	직영	김행조
경북	유스호텔	불국사유스호텔	민간	직영	손우익
경북	유스호텔	서울유스호텔	민간	직영	박정오
경북	유스호텔	신라유스호텔	민간	직영	이종찬
경북	유스호텔	해누리유스호텔	민간	직영	진성우
경북	유스호텔	토함산유스호텔	민간	직영	(주)토함산유스호텔
경북	유스호텔	포시즌유스호텔	민간	직영	윤선길
경북	유스호텔	한국관유스호텔	민간	직영	김정자
경북	유스호텔	동궁유스호텔	민간	직영	박순열
경북	유스호텔	계림유스호텔	민간	직영	송영일
경북	유스호텔	Remember유스호텔	민간	직영	김성기
경북	유스호텔	황룡유스호텔	민간	직영	신종헌
경북	문화의집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김천시
경북	수련관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공공	위탁	(재)경북청소년육성재단
경북	수련관	안동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수련원	안동예절학교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안동예절학교
경북	문화의집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구미시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경북	수련관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구미시
경북	수련원	구미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사)청소년밝은세상
경북	문화의집	영주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영주시
경북	수련관	영주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BBS경상북도연맹
경북	수련원	마라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마라마을발전협의회
경북	수련원	영풍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김은희
경북	야영장	아지청소년야영장	공공	직영	영주시
경북	수련관	영천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영천시
경북	수련원	성덕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재)성덕유지재단
경북	야영장	보현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조정숙
경북	문화의집	상주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상주시
경북	수련관	상주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상주시
경북	야영장	상주학생야영장	공공	직영	상주교육청
경북	문화의집	문경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문경시
경북	수련관	문경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문경시
경북	수련원	선유동유스파크	민간	위탁	(사)한국청소년문화협회
경북	유스호텔	문경새재유스호텔	공공	직영	문경시
경북	문화의집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경산시
경북	수련원	계림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경산시
경북	문화의집	군위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군위군
경북	문화의집	성주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성주군수
경북	수련관	의성군청소년센터	공공	직영	의성군
경북	수련원	수하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영양군
경북	문화의집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영덕군
경북	수련원	칠보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곽경수
경북	야영장	영덕군청소년야영장	공공	직영	영덕군
경북	수련관	청도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청도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경북	야영장	옥계청소년야영장	공공	직영	고령군
경북	수련관	칠곡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칠곡군
경북	유스호텔	아카데미유스호텔	민간	직영	송옥현
경북	수련관	예천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예천군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경북	수련관	봉화군청소년센터	공공	직영	봉화군
경북	아영장	봉화학생아영장	공공	직영	봉화교육장
경북	문화의집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울진군
경북	수련관	울진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울진군
경북	문화의집	울릉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울릉군
경북	수련관	울릉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울릉군
경남	수련원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
경남	문화의집	마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마산YMCA
경남	수련원	여항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심태희
경남	수련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공공	위탁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문화의집	진해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창원시장
경남	문화의집	여좌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창원시장
경남	아영장	진해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수련관	창원시진해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경남	문화의집	봉림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수련관	늘푸른전당	공공	위탁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수련관	진주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진주시장
경남	수련관	통영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한국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
경남	유스호텔	사랑섬유스호텔	민간	직영	권휘수
경남	문화의집	사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재)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경남	수련관	사천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경남	수련원	김해수련장	민간	직영	김은진
경남	문화의집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김해시
경남	수련관	김해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김해시시설관리공단
경남	수련원	가야연수원	민간	직영	가야개발㈜
경남	수련원	봉화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선진규
경남	문화의집	밀양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범죄예방위원밀양지역협의회
경남	수련원	아멘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조주형
경남	아영장	옥색청소년아영장	민간	직영	학교법인 동래학원
경남	수련관	밀양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수련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경남	유스호텔	거제유스호텔	민간	민간	임춘남
경남	수련원	거제그린유스타운	민간	민간	임만규
경남	유스호텔	거제해와나루유스호텔	민간	민간	(주)해성 이성관
경남	문화의집	육포청소년문화의집	공공	공공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수련원	가배랑리조트수련원	민간	민간	(주)가배랑리조트수련원
경남	문화의집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공공	양산시청
경남	유스호텔	유스호텔파래소	민간	민간	(주)영남관광개발
경남	수련관	양산시청소년회관	공공	공공	양산시청
경남	수련원	해운청소년수련원	민간	민간	해운개발(주)
경남	수련원	자굴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사)경남사회진흥연수원
경남	수련관	의령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주)남강레저(박기곤)
경남	수련원	홍의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사)경남청소년교육개발원
경남	수련원	아리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정정숙
경남	수련원	온누리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김윤현
경남	문화의집	영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푸른섬터장학재단
경남	문화의집	창녕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푸른섬터장학재단
경남	문화의집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고성군(고성군수)
경남	유스호텔	금송유스호텔	민간	직영	정청명
경남	유스호텔	남해바다유스호텔	민간	직영	박희택
경남	유스호텔	남해유스호텔	민간	직영	박희택
경남	유스호텔	한려유스호텔	민간	직영	한대섭
경남	유스호텔	상주비치유스호텔	민간	직영	천인순
경남	유스호텔	상주유스호텔	민간	직영	정우승
경남	수련원	하동군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경남	수련원	부일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윤영화
경남	야영장	한가람청소년야영장	민간	직영	이재웅
경남	문화의집	진교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히동군수
경남	수련원	몽양당청학동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김보곤
경남	유스호텔	청학동고목당유스호텔	민간	직영	김원석
경남	유스호텔	청학동명륜학당유스호텔	민간	직영	김미경
경남	수련원	청학동서당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서흥석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경남	수련원	청학수련원	민간	직영	이명희
경남	수련관	하동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하동군수
경남	수련관	산청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산청군수
경남	수련원	소남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김경호
경남	수련원	지리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조임순
경남	수련원	경호강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한영지
경남	야영장	황매산청소년야영장	공공	위탁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
경남	수련원	황석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조종원
경남	문화의집	거창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거창YMCA
경남	수련원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사)흥사단
경남	유스호스텔	덕유산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강철훈
경남	수련원	합천호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홍성렬
경남	수련관	합천군청소년수련관	공공	위탁	(사)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경남본부
경남	수련원	대암산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성진경
경남	문화의집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합천군수
제주	수련관	제주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제주도지사
제주	수련원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함종한)
제주	수련원	제주청소년수련원	공공	위탁	한국스카우트연맹(함종한)
제주	수련원	남국청소년수련원	민간	직영	남국청소년수련원(신장실)
제주	문화의집	도남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시청(김상오)
제주	문화의집	도평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제주	문화의집	아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아라1동마을회
제주	문화의집	용담1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시
제주	문화의집	이도1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시청(김상오)
제주	문화의집	추자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시청
제주	문화의집	화북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제주	문화의집	한림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시청(김상오)
제주	야영장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공공	위탁	흥사단(반재철)
제주	유스호스텔	명도암유스호스텔	공공	위탁	흥사단(반재철)
제주	유스호스텔	메이폴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메이폴유스호스텔
제주	유스호스텔	뉴코리아유스호스텔	민간	직영	(주)세호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 영 자 (단체)
제주	유스호텔	아르본유스호텔	민간	직영	(유)형석 아르본
제주	유스호텔	월드와이드유스호텔	민간	직영	할렐루야기도원
제주	유스호텔	조이빌제주유스호텔	민간	직영	㈜아트오브리빙
제주	유스호텔	제주리조트타운유스호텔	민간	직영	㈜메트로패밀리
제주	수련관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제주도지사
제주	수련관	대정청소년수련관	공공	직영	제주도지사
제주	수련원	성산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신풍리마을회
제주	수련원	안덕청소년수련원	공공	직영	대평리마을회
제주	문화의집	강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강정동마을회
제주	문화의집	남원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도지사
제주	문화의집	법환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법환동마을회
제주	문화의집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서귀포YWCA
제주	문화의집	송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송산동청소년지도협의회
제주	문화의집	신산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도지사
제주	문화의집	안덕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도지사
제주	문화의집	예래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예래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제주	문화의집	토평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토평동마을회
제주	문화의집	표선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직영	제주도지사
제주	문화의집	하호청소년문화의집	공공	위탁	하호마을회장
제주	야영장	모구리아영장	공공	직영	제주도지사
제주	야영장	서귀포학생문화원야영장	공공	직영	제주도교육청
제주	유스호텔	객코스유스호텔	민간	직영	양경이
제주	유스호텔	노블렛유스호텔	민간	직영	노블렛유스호텔
제주	유스호텔	아로마리조트제주유스호텔(주)	민간	직영	김지인
제주	유스호텔	중문에스피유스호텔	민간	직영	중문에스피유스호텔
제주	유스호텔	중문웰유스호텔	민간	직영	중문웰유스호텔
제주	유스호텔	C&P리조트유스호텔	민간	직영	C&P리조트유스호텔

자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3).

## 부록 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순번	지역		쉼터명	유형	성별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11개소)						
1	서울	용산구	1) 시립이동쉼터	일시(이동형)	공용	010-9884-1318
2	서울	용산구	2) 시립일시쉼터	일시(고정형)	공용	02-718-1318
3	서울	금천구	3) 시립금천쉼터	단기	여자	02-3281-8205
4	서울	관악구	4) 시립신림쉼터	단기	남자	02-876-7942
5	서울	노원구	5) 노원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2-948-2664
6	서울	강서구	6) 강서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2-2697-7377
7	서울	강남구	7) 강남구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2-512-7942
8	서울	관악구	8) 시립신림중기쉼터	중장기	남자	02-3281-7942
9	서울	구로구	9) 성심디딤돌쉼터	중장기	여자	02-2688-1318
10	서울	성북구	10) 안젤라의 집	중장기	여자	02-916-8778
11	서울	서대문구	11) 어울림청소년쉼터	중장기	여자	02-302-9006
[2] 부산광역시 (5개소)						
12	부산	사상구	1) 부산일시청소년쉼터	일시(고정형)	공용	051-303-9670
13	부산	사상구	2) 부산의료특화형이동쉼터	일시(이동형)	공용	051-303-9670
14	부산	사상구	3) 부산남자단기쉼터	단기	남자	051-303-9672
15	부산	수영구	4) 부산여자단기쉼터	단기	여자	051-756-0924
16	부산	금정구	5) 부산여자중장기쉼터	중장기	여자	051-581-1388
[3] 대구광역시 (5개소)						
17	대구	중구	1) 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53-659-6290
18	대구	달서구	2) 달서구 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53-526-1317
19	대구	중구	3) 중장기 청소년쉼터	중장기	여자	053-426-2276
20	대구	수성구	4) 일시청소년쉼터	일시	남·여	053-764-1388
[4] 인천광역시 (8개소)						
21	인천	부평구	1) 한울타리	일시(고정형)	공용	032-516-1318
22	인천	연수구	2) 꿈꾸는별	일시(고정형)	공용	032-817-1318

순번	지역		센터명	유형	성별	전화번호
23	인천	남동구	3) 하모니	단기	여자	032-468-1318
24	인천	남구	4) 바다의별	단기	남자	032-438-1318
25	인천	부평구	5) 우리들	단기	남자	032-442-1388
26	인천	부평구	6) 하늘목장	단기	여자	032-528-2216
27	인천	남동구	7) 예꿈	증장기	여자	032-465-1393
28	인천	남구	8) 별마루	증장기	남자	032-875-7718
[5] 광주광역시 (4개소)						
29	광주	북구	1) 광주광역시청소년일시쉼터	일시(이동형)	공용	062-609-1318
30	광주	북구	2) 광주광역시청소년단기여자쉼터	단기	여자	062-609-1310
31	광주	동구	3) 광주광역시청소년단기남자쉼터	단기	남자	062-227-1388
32	광주	동구	4) 광주광역시청소년증장기여자쉼터	증장기	여자	062-366-1318
[6] 대전광역시 (5개소)						
33	대전	중구	1) 대전광역시이동일시청소년쉼터	일시(이동형)	공용	042-221-1092
34	대전	중구	2) 대전광역시드림인센터	일시(고정형)	공용	042-673-1092
35	대전	중구	3) 대전광역시청소년남자쉼터	단기	남자	042-223-7179
36	대전	중구	4)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단기	여자	042-256-7942
37	대전	서구	5) 대전광역시증장기청소년여자쉼터	증장기	여자	042-534-0179
[7] 울산광역시 (4개소)						
38	울산	북구	1)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52-261-1388
39	울산	남구	2) 울산 남구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52-269-1388
40	울산	울주군	3) 울산광역시청소년쉼터	증장기	남자	052-223-5186
41	울산	남구	4) 울산 남구 여자증장기청소년쉼터	증장기	여자	052-265-1388
[8] 경기도 (21개소)						
42	경기도	의정부시	1) 이동청소년쉼터	일시(이동형)	공용	031-871-1318
43	경기도	안양시	2) 민들레트락	일시(고정형)	공용	031-464-1388
44	경기도	남양주시	3) 남양주일시청소년쉼터	일시(고정형)	공용	031-591-1319
45	경기도	수원시	4) 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31-232-4866
46	경기도	성남시	5) 성남시 단기청소년쉼터(남자)	단기	남자	031-722-6260
47	경기도	용인	6) 용인푸른꿈청소년남자쉼터	단기	남자	031-276-0770

순번	지역		센터명	유형	성별	전화번호
48	경기도	안산시	7) 자유세대	단기	남자	031-502-2542
49	경기도	안양시	8) 청소년쉼터 포유	단기	남자	031-455-9182
50	경기도	의정부시	9) 남자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31-829-1318
51	경기도	고양시	10) 고양청소년쉼터동지	단기	남자	031-969-0091
52	경기도	수원시	11) 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31-232-7982
53	경기도	성남시	12) 성남시 청소년여자단기쉼터	단기	여자	031-7758-1213
54	경기도	부천시	13) 부천시모듬이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32-343-1880
55	경기도	안산시	14) 한신	단기	여자	031-485-0079
56	경기도	의정부시	15) 여자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31-837-1318
57	경기도	평택시	16) 평택시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31-652-1384
58	경기도	시흥시	17) 시흥사던가여자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70-4158-0079
59	경기도	군포시	18)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중장기	남자	031-399-7997
60	경기도	고양시	19) 고양열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자	031-918-1366
61	경기도	용인	20) 용인푸른꿈청소년여자쉼터	중장기	여자	031-264-7733
62	경기도	구리시	21) 구리여자청소년쉼터 보금자리	중장기	여자	031-564-7707
<b>[9] 강원도 (5개소)</b>						
63	강원	춘천시	1) 강원도단기남자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33-255-1002
64	강원	춘천시	2) 강원도단기여자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33-255-1004
65	강원	춘천시	3) 강원도중장기청소년쉼터(보금자리)	중장기	남자	033-244-5118
66	강원	원주시	4) 강원도중장기여자청소년(루치아)쉼터	중장기	여자	033-735-1320
67	강원도	춘천시	5) 강원도청소년일시쉼터	일시	남·여	033-256-0924
<b>[10] 충청북도 (5개소)</b>						
68	충북	청주시	1) 청주시청소년일시쉼터	일시	남녀혼합	043-224-6662
69	충북	청주시	2) 청주시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43-231-2676
70	충북	청주시	3) 청주시청소년쉼터느티나무	단기	여자	043-276-1318
71	충북	청주시	4) 충청북도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자	043-266-2204
72	충북	충주시	5) 디딤돌청소년쉼터	중장기	여자	070-7758-1690
<b>[11] 충청남도 (6개소)</b>						
73	충남	천안시	1) 천안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41-578-1388



순번	지역		센터명	유형	성별	전화번호
74	충남	천안시	2) 천안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41-578-1388
75	충남	아산시	3) 아산시청소년남자단기쉼터	단기	남자	041-548-1326
76	충남	천안시	4) 천안청소년쉼터	중장기	남자	041-578-1388
77	충남	홍성군	5) 청로 일사청소년쉼터	일시	공용	041-634-6564
78	충남	홍성군	6) 청로 여자청소년쉼터	중장기	여자	041-631-6560
[12] 전라북도 (5개소)						
79	전북	전주시	1) 전주푸른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63-252-1091
80	전북	전주시	2) 전주한울안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63-251-3530
81	전북	전주시	3) 임마누엘청소년쉼터	중장기	남자	063-244-1774
82	전북	군산시	4) 군산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자	063-451-1091
83	전북	익산시	5) 익산청소년일시쉼터	일시(고정)	공용	063-838-1091
[13] 전라남도 (4개소)						
84	전남	목포시	1) 목포유달단기 남자쉼터	단기	남자	061-278-1388
85	전남	목포시	2) 목포유달단기 여자쉼터	단기	여자	061-283-1088
86	전남	여수시	3) 여수중장기 여자쉼터	중장기	여자	061-661-0924
87	전남	여수시	4) 여수 일사 청소년쉼터	일시(고정형)	남자	061-644-0918
[14] 경상북도 (6개소)						
88	경북	구미시	1) 구미시청소년(단기)쉼터	단기	여자	054-444-1388
89	경북	구미시	2)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단기	남자	054-455-1234
90	경북	포항시	3) 포항중장기남자쉼터	중장기	남자	054-284-1318
91	경북	안동시	4) 경상북도청소년쉼터	중장기	여자	054-857-6137
92	경북	포항시	5) 포항시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자	054-244-1318
93	경북	울진군	6) 울진군청소년일시쉼터(꿈-나래등지)	일시	공용	054-781-8006
[15] 경상남도 (5개소)						
94	경남	창원시	1) 하라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55-237-1318
95	경남	김해시	2) 김해YMCA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55-332-1318
96	경남	창원시	3) 마야청소년쉼터	중장기	남자	055-274-0924
97	경남	창원시	4) 꿈누리 청소년일시쉼터	일시	공용	055-285-7361
98	경남	창원시	5) 클라라의집	중장기	여자	055-552-1318

순번	지역		센터명	유형	성별	전화번호
[16] 제주특별자치도 (5개소)						
99	제주	제주시	1) 제주청소년쉼터	단기	여자	064-751-1388
100	제주	제주시	2) 성지청소년쉼터	중장기	남자	064-759-1388
101	제주	서귀포시	3) 온누리청소년쉼터	중장기	여자	064-733-1376
102	제주	제주	4) 제주청소년일시쉼터	일시	남녀	064-796-0922
103	제주	서귀포시	5) 동광청소년쉼터	단기	남자	064-762-0361

자료 : 여성가족부(2013).

##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도명	시 설 명	운영 주 체
서울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서울	노원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양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서울	영등포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서울	동작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강남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청소년세상
서울	중랑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연맹
서울	강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운대학교
서울	도봉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운학원
서울	성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서대문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은평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시립 은평청소년수련관
서울	서초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송파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연맹
서울	마포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지전문대학(마포청소년수련관)
서울	광진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흥사단
서울	강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서울	관악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온터드레회
서울	동대문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
서울	용산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온터드레회
서울	구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구로건강복지센터
서울	강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종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석복지재단
서울	성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부산시연맹
부산	영도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부산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
부산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대구	대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기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기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기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기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인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인천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광주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인권센터
광주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인재육성아카데미
광주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
대전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YWCA
울산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울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울산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기독교사회봉사회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대건청소년회
경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정부YMCA
경기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생명안전화
경기	광명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청예단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경기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택YMCA
경기	동두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법무부범죄예방위원동두천지구협의회
경기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산제일복지재단
경기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양기독교청년회
경기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경기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기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산청년회의소
경기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흥YMCA
경기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기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기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의왕시인재육성재단
경기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육성재단
경기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주청년회의소
경기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원공과대학교
경기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기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기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장신대학교
경기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삼동청소년회 연천지회
경기	기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월드유스비전
경기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기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북대학교
경기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강원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천주교춘천교구
강원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릉YMCA
강원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주기독교청년회(원주YMCA)
강원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강원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주YMCA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강원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강원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연맹
강원	동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푸른동해
강원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춘천YMCA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충북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북보건과학대학교(구)주성대학
충북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충북	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혼합직영
충북	청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충북	영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충북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BBS충북연맹 음성군지회
충북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충북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충북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충북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평복지재단
충북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한국청소년체험문화재단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남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BBS대전충남연맹 공주지회
충남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산문화원
충남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충남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충남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
충남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충남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시복지재단
충남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YMCA
충남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충남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문화원
충남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충남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태안청년회의소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충남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충남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동청소년회 계룡지회
충남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동청소년회
전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YWCA
전북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원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쌍백합청소년육성위원회
전북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북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법인 해인학원
전남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남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수YWCA
전남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연사랑메아리
전남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들청소년센터
전남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남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남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꿈틀
전남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양YMCA
전남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영광지부
전남	회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회순기독교청년회
전남	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전남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보성기독교청소년협회
전남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전남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
전남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경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북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울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북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경남	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창원시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경남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경남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의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함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창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하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산청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경남	합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직영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성지문화재단
제주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성지문화재단

자료: 여성가족부(2013).



## 청소년백서 편집위원 및 집필진, 감수자 명단

### ▶▶ 기획·편집

김석병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조선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문위원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화거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행정원

김병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훈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문연구원

### ▶▶ 집필진(가나다순)

고익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김 민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석병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김인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부장  
 김흥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배주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신인식 보건복지부 사무관  
 양태정 한국교육개발원 유치중등교육통계 팀장  
 은주희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문연구원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이현복 보건복지부 주무관  
 조규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조중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팀장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봉호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김태훈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문연구원  
 류기욱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박선민 질병관리본부 기술연구원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송준행 통계청 사무관  
 안상현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  
 오정희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주현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문연구원  
 임연기 공주대학교 교수  
 조선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문위원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 감수진(가나다순)

문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박철웅 백석대학교 교수  
 오승근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유진이 평택대학교 교수

박순진 대구대학교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유희식 중앙대학교 교수

## 2013 청소년백서

---

발행인 | 조 윤 선

발행처 | 여성가족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기 획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 화 | 02-2075-4500

인 쇄 |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발행일 | 2013. 12.

발간등록번호 | 11-1383000-000102-10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